

# 2020년도 하반기 종합편성PP 재승인 백서

2021. 2.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목 차

I. 2020년도 하반기 종합편성PP 재승인 주요경과 .....	1
II.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사전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	5
1.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건, '19.5.10) .....	7
2.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속기록, '19.5.10) .....	27
3. '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안건, '19.8.23) .....	41
4. '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속기록, '19.8.23) .....	60
III. 재승인 신청 안내 .....	69
1. '20년도 하반기 종합편성PP 재승인 신청 안내 .....	71
IV. 시청자 의견청취 .....	191
1.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	193
2. 시청자 의견청취용 사업계획서 요약문 .....	198
V.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	205
1.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안건, '18.12.12) .....	207
2.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속기록, '18.12.12) .....	219
3.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2사 시정명령(안건, '19.1.29) .....	230
4.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2사 시정명령(속기록, '19.1.29) .....	237
5. '18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안건, '19.11.22) .....	246
6. '18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속기록, '19.11.22) .....	258
7.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제출결과 보고(안건, '20.2.19) .....	264
8.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제출결과 보고(속기록, '20.2.19) .....	276
9.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안건, '20.9.16) .....	283

10.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속기록, '20.9.16) .....	295
11.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시정명령(안건, '20.10.7.) .....	301
12.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시정명령(속기록, '20.10.7.) .....	307
<b>VI. 재승인 심사 .....</b>	<b>311</b>
1.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	313
2. 세부 심사기준 .....	315
3. 심사평가 결과 .....	334
4. 심사의견서 .....	340
5. 심사위원회 회의 및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	347
1) 제1차 회의 .....	350
2) 제2차 회의 .....	369
3) 제3차 회의 .....	384
4) 제4차 회의 .....	389
5) 제5차 회의 .....	405
6) 사업자 의견청취 .....	409
<b>VII. MBN 청문 .....</b>	<b>465</b>
1. MBN 청문조서 .....	467
2. MBN 청문주재자 의견 .....	474
<b>VIII. 재승인 의결 .....</b>	<b>479</b>
1. 종편PP 재승인 의결(안건, '20.11.27) .....	481
2. 종편PP 재승인 의결(속기록, '20.11.27) .....	506
<b>IX.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b>	<b>521</b>
1. 종편PP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공고문) .....	523

I. 2020년도 하반기 종합편성PP  
재승인 주요경과



## 주요 경과사항

- '19. 5. 10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
- '19. 8. 23 「'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20. 4. 28 재승인 신청법인 대상 설명회 개최
- '20. 5. 28~29 JTBC, MBN 재승인 신청서 접수
- '20. 9. 16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위원회 보고
- '20. 10. 7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따라 재승인 조건 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 의결
- '20. 9~11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20.11.3~6)
- '20. 11. 5 JTBC, MBN 의견청취
- '20. 11. 23 MBN 청문 실시
- '20. 11. 27 JTBC, MBN 재승인 의결





Ⅱ.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1.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안건, '19.5.10)

##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 - 21 - 092호	심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9. 5. 10.	
공개여부	공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9. 5. .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9. 5. 10.(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

## 1. 의결주문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여 2019년 이후에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하기 위함

## 3. 경과사항

- ‘18. 2월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관련 방통위 사무처 의견수렴
- ‘18. 7~11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 미디어 2인, 회계 1인, 법률 1인, KISDI 1인 등 전문가 5인으로 구성
- ‘18. 12. 18.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회의
- ‘18. 12. 26.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방통위 보고
- ‘19. 1. 2. ~ 1. 18.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 ‘19. 2. 19.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검토를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
- ‘19. 4. 17.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회의

#### 4. 주요내용

##### 가. 재허가·재승인 대상

(재허가·재승인 만료일 기준)

구분		19년	20년	21년
지상파 방송	텔레비전 (DTV) 라디오	12월(지역MBC 13개사, OBS, 지역민방 7개사 등 33개사)	12월(KBS, MBC, SBS, EBS, 지역MBC 3개사 등 10개사)	12월(CBS, 극동방송, 국악 방송)
	초고화질 텔레비전 (UHDTV)	12월(수도권KBS, MBC, SBS)	12월(지역KBS, 지역MBC 7개사, 지역민방 6개사 등 14개사)	-
	이동 멀티미디어 (DMB)	12월(안동MBC, 광주방송, TBC, G1, 제주방송)	12월(KNN, 수도권KBS, MBC, SBS, YTN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12월(지역KBS, 부산 MBC, 광주MBC, 대전 방송 등 7개사)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		-	3월(YTN, 연합뉴스TV) 4월(TV조선, 채널A) 11월(JTBC, MBN)	-

※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TBN)과 공동체라디오FM 7개사(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는 '22년도 심사 예정

#####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15인으로 구성
-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수립 시 결정
  -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구분	분야	비고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 분야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	담당 과장

## 다.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제5호·제6호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 심사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대분류)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TV	R	DMB	공동체R	종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50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함

## 라. 재허가·재승인 여부 결정

- (총점)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
- (유효기간)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시 3년을 부여
- (이행점검주기)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1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6개월\*로 설정

\* 6개월 단위 이행점검이 성격상 불가능한 조건은 제외(예: 콘텐츠 투자)

- (조건부가)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중점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은 종전과 같이 50%로 변동이 없으며, 중점 심사사항 이외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변경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의 경우, 감점항목(관계법령 위반 정도 및 시정명령 건수 등)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

- (중점심사사항)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 마.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매체별 심사항목(중분류) 개선
  - △공익성 항목의 중복 해소 △프로그램 수급과 투자 항목 분리 △투자 항목 중복 해소 △경영 관련 심사 시 '경영전략' 심사 강화 △외주상생



관련 항목 명시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신설 △종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 신설

○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여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의견접수를 유도하되, 기존의 우편, FAX, E-mail 의견 접수도 배제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전체 분량을 제한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성도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의결 시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반영

※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및 기본계획(안) 반영 여부·사유 등은 붙임2 참고

## 7. 향후 계획

○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 수립

※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허가·재승인 심사

- 붙임 1.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1부  
2. 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

**2019. 5.**



**방송통신위원회**

## □ 대상 방송사업자

- 2019년 1월 1일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만료일 기준)

구분		19년	20년	21년
지상파 방송	텔레비전 (DTV) 라디오	12월(지역MBC 13개사, OBS, 지역민방 7개사 등 33개사)	12월(KBS, MBC, SBS, EBS, 지역MBC 3개사 등 10개사)	12월(CBS, 극동방송, 국악 방송)
	초고화질 텔레비전 (UHDTV)	12월(수도권KBS, MBC, SBS)	12월(지역KBS, 지역MBC 7개사, 지역민방 6개사 등 14개사)	-
	이동 멀티미디어 (DMB)	12월(안동MBC, 광주방송, TBC, G1, 제주방송)	12월(KNN, 수도권KBS, MBC, SBS, YTNDMB, 한 국DMB, 유원미디어)	12월(지역KBS, 부산MBC, 광주MBC, 대전방송 등 7개사)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		-	3월(YTN, 연합뉴스TV) 4월(TV조선, 채널A) 11월(JTBC, MBN)	-

※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TBN)과 공동체라디오FM 7개사(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는 '22년도 심사 예정

## □ 심사 기본방향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등을 중점 심사
-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지상파 TV·라디오·DMB, 공동체라디오, 종편·보도PP 각 매체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심사 실시

##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 심사위원회 구성

- 각 분야 전문가 9 ~ 15인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수립 시 결정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를 위촉

구분	분야	비고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	담당 과장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 심사위원회 구성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 및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 제시 등

## □ 심사기준 및 배점[안]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한 현행 심사사항의 틀과 매체별 배점은 심사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유지함

심사사항(대분류)	지상파방송				PP	
	TV	R	DMB	공동체R	종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50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매체별 심사항목(중분류)의 명확화와 차별화를 통해 매체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심사를 진행함
- (공익성 개념의 중복 해소 및 명확화) 공익성 심사는 프로그램 편성 위주로, 공적책임·공정성 심사는 제도적 장치 위주로 심사

### < 공익성과 공적책임·공정성 심사사항 비교 >

공익성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자 방송, 비상업적 공익광고, 재난방송 편성실적 등 프로그램 편성 위주로 심사
공적책임·공정성	프로그램 품질 제고 노력(심의제재 건수 감축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선거관련 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편성 규약 제정·공표 실적 등

※ 기존 방송사업자가 제출하던 공익적 캠페인, 행사 등의 실적은 현행대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심사

- (편성수급·제작투자 구분 및 투자 심사 항목 조정) 프로그램 수급과 투자가 혼재되어 평가받지 않도록 두 항목을 분리 신설\*하고, 투자는 프로그램 투자 항목과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항목에서만 심사하도록 조정

- \* 종편PP는 기존 평가항목(수급, 제작, 협력)을 프로그램 투자 평가항목으로 대체하고, DMB는 기존 평가항목(DMB전용 프로그램 (재)제작)에서 프로그램 투자 실적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체라디오는 소규모임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투자 평가항목을 신설하지 않음
- (경영 관련 심사의 내실화) 인력운영, 자원조달 등 관리역량과 함께 중장기 경영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으로 변경
- (외주 상생제도 평가 강화)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항목을 '외주 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으로 변경하여 외주상생방안 심사를 강화
- (지역방송사 특성 반영) 지역 방송사의 자체제작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실적 평가' 항목을 신설
- (종편PP '프로그램의 균형 편성' 항목 추가) 종편의 특정 장르(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과다 편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심사
- 매체별·채널별 구분 없이 방송평가는 40%, 재허가·재승인 심사결과는 60%를 반영(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외)
  - 종전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를 반영
- ※ 종전 재허가·재승인 시 이미 반영된 제재 감점은 제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영
  - '세부 심사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 재허가·재승인 여부 결정 등

○ (총점)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

○ (유효기간)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3년을 부여

※ 유효기간 차등화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가 소유한 여러 방송국의 심사점수가 서로 다른 경우(예, 포항CBS와 광주CBS 점수가 다른 경우), 유효기간 차등 부여로 오히려 해당 방송사가 매년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동일한 유효기간을 부여하도록 예외 규정

○ (이행점검주기)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1년,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6개월\*로 설정

\* 6개월 단위 이행점검이 성격상 불가능한 조건은 제외(예: 콘텐츠 투자)

○ (조건부가)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중점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은 종전과 같이 50%로 변동이 없으며, 중점 심사사항 이외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변경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의 경우, 감점 항목(관계법령 위반 정도 및 시정명령 건수 등)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

○ (중점심사사항)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 □ 시청자 의견수렴 방식 개선

-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여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의견접수를 유도하되, 기존의 우편, FAX, E-mail 의견접수도 배제하지 않음

## □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

- 사업계획서 전체 분량을 제한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성도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의결 시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반영

(붙임) 매체별/채널별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안)



<붙임> 매체별/채널별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안)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25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⑦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⑧ 지역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투자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지역)	50(비계량) 5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15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비계량) 30(계량) 5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⑫ 외주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⑮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정도*** ⑯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10(비계량) 6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지역 방송사의 경우, ⑤번-⑦번 항목의 배점 40점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광고판매 지원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배점은 ⑯으로 병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 지상파 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25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⑦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⑧ 지역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투자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지역)	50(비계량) 5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15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비계량) 30(계량) 5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⑫ 외주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⑮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지역 방송사의 경우, ⑤번-⑦번 항목의 배점 40점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비계량) 60(비계량) 60(비계량)	2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 및 편성계획의 적정성 ⑥ DMB 전용 프로그램 (재)제작 및 확보 계획의 적정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⑧ 채널구성 계획 이행여부 및 계획의 적정성	10(비계량) 3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12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난시청 해소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⑫ DMB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40(비계량) 40(계량) 50(비계량) 50(비계량)	1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⑬ 외주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⑭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⑮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⑯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4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6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제작 투자 실적 심사 포함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 공동체 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① 지역주민을 위한 방송의 공적역할 수행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② 청취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소출력 커뮤니티 매체로서 지역사회발전 기여 실적 및 계획	120(비계량)  80(비계량) 150(비계량)	35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④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⑤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150(비계량) 50(비계량)	200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⑥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⑧ 재무적 건전성 ⑨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30(비계량) 50(계량) 120(비계량) 50(비계량)	350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⑩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⑪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⑫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감점(계량)* 감점(계량)* 100(비계량)	100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비계량) 70(비계량) 20(비계량)	21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 계획의 우수성 ⑧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80(비계량) 20(비계량) 40(비계량)	19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30(계량) 2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⑫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⑮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0(비계량) 80(비계량) 30(비계량)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 계획의 우수성	60(비계량) 70(비계량) 30(비계량)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40(비계량) 30(계 량) 10(비계량)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⑪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⑫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지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2.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 사전 기본계획  
(속기록, '19.5.10)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5. 10.(금)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9-21-092)

###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여 2019년 이후에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018년 2월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관련 방통위 사무처 의견수렴 후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12월 18일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 26일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을 보고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후 2월 19일 사업자 의견검토를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 4월 17일 사업자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15인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심사사항은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사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허가·재승인 여부 결정 관련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합니다. 유효기간은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시에 3년을 부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행점검주기도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1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6개월로 선정하여 점수대별로 차등화하였습니다. 조건부가의 경우에도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점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은 종전과 같이 50%로 변동이 없으나, 중점 심사사항 이외의 심사사항의 과락 기

준을 40%에서 50%로 변경하였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의 경우에는 감점 항목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매체별 심사항목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익성 항목의 중복 해소, 프로그램 수급과 투자 항목 분리, 투자항목 중복 해소, 경영 관련 심사 시 '경영전략' 심사 강화, 외주상생 관련 항목의 명시,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신설, 종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 신설 등의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여 의견수렴 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 전체 분량을 제한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성도 및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의결 시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및 기본계획(안) 반영 여부와 사유 등은 <붙임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기본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별 심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옥 상임위원

- 제4기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근거로 크게 6개 심사사항과 매체별 심사항목을 재검토하고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심사항목을 명확하게 하면서 지상파TV와 DMB, 종편PP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작년 말 재허가·재승인 개선안 보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였고, 상임위원들도 이달 초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방송사 임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당한 의견들은 가능한 한 수용했다고 평가합니다. 방송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우려를 나타낸 부분은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과락 기준을 높인 이유는 방송사업자들의 공적책임과 관리능력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서 시청자 복지를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과락 항목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며, 방송사들에 대한 시청자와 방통위의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라 여기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을 높였음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상향된 기준보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각 방송사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경영전략 항목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전략수립이 어렵다거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영전략의 수립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영전략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방송과 경영환경 변화와 내부 역량을 감안해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려 노력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경영성과는 경영전략을 잘 세웠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립된 전략을 제대로 실행해 내느냐 하는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실행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경영전략의 공개 수준도 각 방송사가 세부계획에 맞추어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상장회사의 대부분이 경영전략을 공개하고 주주들과 투자자 설득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가운데 시청자 의견수렴 방식은 좀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접수 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접수를 하는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중심, 시청자 중심의 능동적 방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청접유율 조사 때 설문조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사방식으로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이면서도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방송사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 재허가·재승인 사전 계획안에 담고 있는 방통위의 정책적인 변화 의지를 잘 읽어내고 적극 대응해 줬으면 합니다.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성가신 제도가 아니라 방송사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성장과 발전계획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부위원장

- 앞서 허 욱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잘하셨으니까 저는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수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과락점수를 더 높여서 강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사업자들 의견청취를 지난번에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다들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과락점수를 40%에서 50%로 올리는 데 대한 우려가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신중하게 배점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올리는 것을 혼자 반대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개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배점을 할 때 비계량 정성평가가 약 60% 정도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단히 주관적인 자의적인 심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여권에 우호적인 분들이 더 많이 심사위원회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 심사가 공정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방송사업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라도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될 경우에 자칫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해서 또 그런 방송을 해 왔던 방송사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또 심지어는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비계량 정성평가의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할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과제로 올려서 중기과제 정도로 설정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담보해낼 수 있느냐,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방송사업자들도 승복을 할 테고, 또 그만큼 심사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기본계획의 수정안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중점 심사사항에 조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지상파 방송사업자라도 중편사업자나 보도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중점심사항목에 대해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과락을 받을 경우에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진즉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상파 사업자들이, 특히 공영방송들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중점심사항목, 예를 들어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엄정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공영방송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은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상파라도 소위 말하는 세칭 메이저방송이라도 재허가 심사 때 중점심사항목, 방송의 공정성, 또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편파방송을 계속 할 경우에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런 경종을 울려 주는 의미에서 저는 사무처의 중점심사항목을 강화한 것을 환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고, 생각 같아서는 공영방송은 이런 공정성, 공적책임에 관한 중점심사항목을 과락을 60% 이상으로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영전략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새로 배점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경영전략이라고 하면 거기에 영업비밀도 있을 수 있고, 또 각 방송사업자마다 어느 점에 치중할 수 있느냐 하는 전략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상파의 경우에는 전략 배점을 당초 30점으로 강화를 하려고 하다가 20점으로 낮추고 재무적 안정성에 오히려 배점을 10점 정도 더 높여서 조정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청취 결과 그렇게 조율된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종합편성채널일 경우에는 이 배점이 경영전략을 평가하는 것이 5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을 20점으로 매겼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변동 없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런 부분이 일부 종편사업자들이 왜 지상파는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경영전략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점을 낮추어 줬는데 왜 여전히 종편은 경영전략을 50점으로 높이 배점을 매겼느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상파까지는 못 낮추더라도 50점에서 40점 정도로 약간 낮추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 배점을 조율할 수 없는지 제안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상파방송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마련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재허가 심사, 그리고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의의가 없으며, 사무처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많은 의견청취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위원님들과도 사전에 많은 논의를 하였고, 저는 이 안 자체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제3기 때부터 방통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민감한 재허가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종편들도 그렇고 지상파도 했고, 그런데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구성한 적은 없습니다. 심사위원 추천단체 선정부터 해서 그 단체에서 대체로 3배수 정도 추천해 오면 거기에서 어떤 분을 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킬지까지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놓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천단체, 그 추천단체에서 추천한 분들 중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3기 때는 야당 추천위원으로서 방통위원을 했지만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여권에 우호적인 심사위원 선임이 관행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3기 때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관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관행이었다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점심사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면서 과락 제도에 대해 우려를 하셨는데 과락 제도라는 것이 중점심사항목을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이나 공적책무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 국장님 그런 것이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과락 문제 중점심사항목도 있고 중점이 아닌 것도 있고, 기존에는 중점만 50%를 과락으로 하고 나머지 중점이 아닌 것은 40% 하다가 이번에 중점이 아닌 것까지 다 50%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락제도가 있는 것이 중점심사항목입니다. 그래서 과락제도 부분은 방통위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에 대해 그런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말 그대로 과락을 맞았다면 우리가 재허가 불허 그리고 재허가나 재승인을 주더라도 조건부로 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락제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부분 이런 심사를 할 때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들이 운영하는 과락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심사 시 과락제도 다 운영하고 있고, 유료방송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락 제도는 이런 허가 심사나 인가 심사에 있어서는 통상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재승인이나 재허가 제도의 무용론이 나온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시겠

지만 과거의 특정 사업자들은 공적책임이나 공익성·공정성 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 심사에서 매우 높은 점수로 그냥 무난하게 재승인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지상파 사업자들은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두 차례 재허가 불허할 수 있는 점수인 650점 미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부과하고 재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방송사가 없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번 재허가·재승인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앞으로 심사할 사업자 중에서는 어쩌면 세 번째로 재허가나 재승인 불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기본적으로 방송사업자들의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 구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면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심사절차를 진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무처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적으로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제가 사전 논의할 때도 한번 질문드린 것 같은데 심사점수가 650점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서에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일부 지상파나 종편사업자들이 반대해 왔습니다. '규제기관의 자의성과 임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견으로 보면 수용인데 이것이 애매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과거처럼 하자는 것인데 과거처럼 했다면 우리가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없는 조건도 부과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기존에도 650점 미만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조건을 붙인 케이스가 있고, 650점 이상이나, 미만이나에 따라 조건의 강도에 차이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50점 이상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는 형태의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없는 조건이라고 표현을 썼던 것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썼던 부분인데 사업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오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현행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가져왔습니다.

#### ○ 고삼석 상임위원

- 개인적으로 사전 보고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650점 미만 사업자는 사실상 불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방송사를 계속 운영하도록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제출한 재허가·재승인 신청서가 불합격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을 요구해서라도 방송을 잘 운영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든간에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허가 불허하면 정리되지만 조건부로 재허가할 때는 심사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이 방송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추가로 부과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정리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제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용이 안 됐지만 외주상생제도 평가에 대해서 이것이 방송평가와 중복이 된다, 아니면 특정사업자의 경우 경영위기를 증폭시키고 고착시키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0여년

외주제작제도가 운영되면서 솔직히 지상파들이 외주제작시장 육성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그 이면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제작현장에서 스태프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최근에 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허가·재승인 심사과정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마련되고 있는 외주제작 개선대책, 이러한 것들이 조건에 안착이 되어서 외주제작 시장이 투명하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같이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를 좀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앞에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또 허 욱 위원님, 고삼석 위원님도 큰 골격에 대해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두 가지만 우선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 관리라는 항목,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배점은 지상파 사업자들은 의견을 줘서 그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부 수용되어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종편 쪽에서는 어떤 사들이 이것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종편 전체 4사의 의견인지...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편·보도PP 쪽에 의견을 물어봤고 그중 특정 2개사에서 지상파와 동일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통위의 재허가·재승인 업무, 또 허가 승인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 동의를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심사위원장을 방통위원 또는 외부 인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방통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기 방통위원회가 방송사업자 간의 비대칭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장을 방통위원이 맡아야 한다, 앞으로 상세하게 논의할 때 그

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안이기에 때문에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 민감성을 감안해 해오던 종편과 보도전문PP에 대한 블라인드 심사는 거둬내고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 초반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할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걸려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기한을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석진 부위원장님께서 중기과제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고삼석 위원님께서도 중기과제를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기준점은 650점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650점에 미달했을 때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는데 구간 설정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령 620점이든지 600점이든지 그런 구간을 설정해서 그 미만은 아예 재허가를 거부한다, 재승인을 거부한다, 그다음에 가령 700점 이상은 어떤 권고사항도 없이 재허가·재승인을 한다, 이런 별도의 구간 설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까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마다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3회일 경우에는 아예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중기과제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방통위가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업자들을 옥죄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하는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자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경영이나 또는 공익적·공공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단, 저는 그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입니다. 즉, 심사기준을 확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상파는 당초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관해서 30점 부분을 20점으로 낮추어졌고, 재무적 안정성을 오히려 20점에서 30점으로 10점 배점 조정을 했는데, 왜 종편은 이것을 바꾸지 않았느냐와 관련해서 종전 종편 출범 이후 또 안정적인 사업의 계획과 운영을 위해 용어만 '경영전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지 경영계획의 적정성은 쪽 50점 항목이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 항목 자체에서 기존 종편의 경우에는 경영전략이라는 표현이 없을 뿐이지 실제 내용을 보면 향후 경영전략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서 심사가 되어 왔고, 그에 비해 지상파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상에서 주로 조직이나 인력 운영과 같은 관리적인 측면 위주로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번에 저희가 안을 냈을 때 종편의 경우에 거부감이 지상파에 비해 낮았고, 지상파는 사실상 새롭게 뭔가 대단한 내용을 다시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반대를 강하게 했던 것이고, 종편에서는 특별히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냈습니다.

#### ○ 허 옥 상임위원

- 그런 면에서 사실상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영전략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종편은 심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점수가 유지된 반면에, 지상파TV는 경영전략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서 지상파 사업자들이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점을 조정하여 재무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차후에 경영전략 배점을 높인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종편PP의 경우 종전에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경영전략 및 관리실적, 계획의 적정성이 50점으로 되다가 갑자기 이 항목의 배점을 변경할 경우에 종편PP사 내부에 있어서 심사의 유불리가 갈리는 상황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기준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기존 항목을 유지하는 것이 심사기준의 명확화, 일관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차후라도 제대로 된 리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종전 기준의 일관성, 그리고 이 기준을 바꿈에 있어서 종편PP 내부에 있어서 유불리가 갈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부위원장

- 존경하는 표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냥 지나가게 되면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될 것 같아서 기록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상파와 달리 종편 심사 때 블라인드 심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비대칭 규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블라인드를 걷어내는 것이 맞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재허가·재승인 심사 위원장을 내부에서 방통위원이 맞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파와 달리 종편·보도PP 심사 때는 외부에서 심사위원장을 위촉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보다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에 아주 중립적인 인사를 위촉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원회에 방통위원 구성이 아무래도 여야 3:2 구도로 정파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한쪽 정파 쪽을 더 많이 반영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맡으시는 분이 그런 정파적 이해를 걷어내고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국장님, 심사 위원장은 당장 오늘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는 없지요?

####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심사위원장 문제는 나중에 심사에 임박해서 세부심사기준 만들 때 그때 결정합니다.

#### ○ 김석진 부위원장

-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다 공정하게 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에 어떤 심사위원을 정할 것인지를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표 위원님께서 점수 배점, 총점 650점 이하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거나 조건부로 재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재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점수 구간을 하나 더 설정해서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아예 방송을 폐쇄하는, 문을 닫게 하는 이런 구간을 하나 설정하는 것이 당초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이것이 비계량 정성평가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이런 심사구조 때문에 자칫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계량 정성평가에서 지나치게 과락 점수를 집단으로 심사위원들께서 줄 경우에 어느 방송사 하나를 폐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언론탄압이지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놓고 마지막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 점수를 설정해서 그 이하로 받으면 자동으로 바로 문을 닫게 하는 이 구조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그런 기준 설정 자체가 되어 있다는 자체가 언론으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게 합니다. 누가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문을 닫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방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탈락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 부위원장님과 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 입장을 정리해 놓겠습니다. 특히 제3기 방통위원으로 활동할 때 재허가·재승인 심사뿐만 아니라 법정위원회 위원장들까지 저는 가급적이면 방통위 상임위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맡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종편 재승인 심사, 지상파 재허가 심사는 대단히 민감하고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데, 저는 어떤 분이든 그 역할을 맡게 되면 최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원칙은 상임위원들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사업자들의 성과와 관련된 평가인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회 위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의를 하다 보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가 여기에서 보면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경우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역대로 보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에서 비계량 정성평가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기준 점수로 보면 비계량평가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계량평가가 통상 430점에서 440점 정도 됩니다. 사업자마다 약간 다르고, 나머지가 비계량

평가이기 때문에 560점, 570점이 비계량 평가가 되겠습니다.

#### ○ 고삼석 상임위원

- 매년 하는 방송평가는 대부분 계량평가입니다. 계량평가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학점으로 이야기하면 A나 B+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계량척도를 주고 거기에 맞추면 다 통과합니다. 그런 평가와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송평가도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까지 계속 개선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비계량평가 항목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허가·재승인하는 그 시점에는 계량적인 수치로 나오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의 심사위원들께서 정성평가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 오히려 이것이 더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공적책무를 잘했느냐, 공정성과 공익성을 구현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데는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 이러한 것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좋은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신다면 이러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제가 구간 설정을 아래위로 더 하는 것이 중기과제로 검토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똑같이 오랜 기간 언론을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단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라는 것이 650점 기준점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점 아래가 나왔을 때는 방통위원들의 자의적인 권한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쪽 그리고 높은 쪽 두 구간을 별도로 설정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600점 이런 예도 들었는데 지금까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600점 아래로 내려간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것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그동안 사무처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체별로 의견수렴도 하는 등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함께 한두 가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허가·재승인 업무는 방통위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중요한 업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통해 방송계 품격을 제고함으로써 더 좋은 방송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지만 재허가·재승인 업무 자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는 그 목적에 우리의 재허가·재승인 사업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방송은 사회적 공기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공적책무를 수행함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이라는 엄격한 제도

운영을 통해 그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단순히 허가 승인기간 만료에 따른 요식행위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방송사업자들에게도 그렇겠지만 우리 사무처에서 특히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식행위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 우리 방송사들의 품질을, 품격을 제고하는 행위, 또 반대로 이것을 통해 방송사업자를 옥죄거나 골탕을 먹이거나 특정한 사업자를 탈락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이 점에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종편들도 10년이 넘어선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재허가·재승인 과정을 통해 우리 방송들의 품격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달라진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이 방송을 보는 눈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 스스로 향후 재허가·재승인 기간 동안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써 더욱 더 신뢰받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또 이런 우리의 뜻이 사업자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무처에게 준비부터 심사 전 과정에 완벽을 기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상기해서 과거의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항인 만큼 심사위원회 구성 시 결격사유를 철저히 따져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시고 각 단계에서 절차를 지키고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호하거나 두루뭇술한 표현이 없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여 준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특정사업자를 괴롭히거나 골탕 먹이고, 또는 어떤 비판적인 언론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3. '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  
(안건, '19.8.23)

##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 - 41 - 161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9. 8. 23.	
공개여부	공개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9. 8. .

#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9. 8. 23.(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1. 의결주문

-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2020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3. 주요경과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19.5.10.)

## 4. 주요내용

### 가. 재승인 대상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 2개사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유효기간
종편PP	(주)조선방송	TV조선	김민배	'20. 4. 21.
	제이티비씨(주)	JTBC	손석희 홍정도	'20. 11. 30.
	(주)채널에이	채널A	김재호 김차수	'20. 4. 21.
	(주)매일방송	MBN	장승준 류호길	'20. 11. 30.
보도PP	(주)와이티엔	YTN	정찬형	'20. 3. 31.
	(주)연합뉴스티브이	연합뉴스TV	조성부	'20. 3. 31.

※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

## 나. 심사 기본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 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 분량은 사전 기본계획('19.5.10.)에 따라 본문 500페이지 이내로 제한
- 재난·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종편PP·보도PP의 재난 방송 공적책무를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 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
    - ※ 심사위원 위촉기준 및 결격사유는 [붙임] 참조
-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 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 분	분 야 (인원)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3)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운영

-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 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배점과 평가방법 결정
-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

※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라.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 사전 기본계획 의결 후 발생한 변경사항(「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국무회의 보고, '19.5.14.) 관련 심사를 위해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

-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종편 ·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	50
계	1,050***	1,050***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19.5.10.)』은 필요 시 세부계획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 심사평가 후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마. 재승인 여부 결정 등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총점 700점 이상 사업자의 경우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시) 3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 바. 기타사항

- 현행 ‘방송 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른 콘텐츠 투자금액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방송제작에 쓰이는 비용임에도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콘텐츠 투자금액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함
  - ※ 심사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중 ‘⑥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작성 시 세부기준을 참고

## 5. 추진일정

- '19. 8~9월                    중편·보도PP 재승인 신청 공지
  - ※ 승인유효기간이 '20.11월인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은 별도 진행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9. 9월)
- '19. 9~10월                중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9. 10~12월             중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20. 1~2월                중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2~3월                중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20. 4월                    중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 공지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20. 4월)
- '20. 5월                    중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20. 6~9월                중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20. 10~11월                    중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11월                        중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20년도 중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안). 끝.

---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

---

**2019. 8.**



**방 송 정 책 국**

##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

### □ 대상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총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 2개사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유효기간
총편PP	(주)조선방송	TV조선	김민배	'20. 4. 21.
	제이티비씨(주)	JTBC	손석희 홍정도	'20. 11. 30.
	(주)채널에이	채널A	김재호 김차수	'20. 4. 21.
	(주)매일방송	MBN	장승준 류호길	'20. 11. 30.
보도PP	(주)와이티엔	YTN	정찬형	'20. 3. 31.
	(주)연합뉴스티브이	연합뉴스TV	조성부	'20. 3. 31.

※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

### □ 심사 기본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분량은 사전 기본계획('19.5.10.)에 따라 본문 500페이지 이내로 제한

- 재난·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종편PP·보도PP의 재난방송 공적책무를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3)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

○ 심사위원 위촉기준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 심사위원 결격사유

- '17.1.1.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 '17.1.1.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 '17.1.1.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의 위원,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 일정 기간을 정하여 법률·정책·경영·회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계약
- '17.1.1.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뉴스통신사·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법인의 2020년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 '17.1.1.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심사위원회 운영

### ○ 기본방향

-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배점과 평가 방법 결정
-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

※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 의견청취

- (청취내용)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 불가피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심사평가 방안

- (평가원칙)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
- (평가방식)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평가 : 방송평가, 재정적 능력, 법령위반 및 시정명령 건수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를 부여
  - 비계량평가 :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 점수를 부여

< 비계량평가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

구분	등급	내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 시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 심사기준 및 배점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 사전 기본계획 의결 후 발생한 변경사항(「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국무회의 보고, '19.5.14.) 관련 심사를 위해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
  -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	50
계	1,050***	1,050***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19.5.10.)』은 필요 시 세부계획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 심사평가 후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 □ 재승인 여부 결정 등

- (재승인 여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승인 유효기간)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5년, 650점 이상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시) 3년을 부여
- (이행점검주기)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650점 이상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1년, 6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6개월\*로 설정

\* 조건 성격상 6개월 단위 이행점검이 불가능한 조건은 제외(예: 콘텐츠 투자)

- (조건 부가)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 중, 감점항목(관계법령 위반 정도 및 시정명령 건수 등)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

- (중점 심사사항\*)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 □ 추진일정

- '19. 8~9월      중편·보도PP 재승인 신청 공지
  - ※ 승인유효기간이 '20.11월인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은 별도 진행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9. 9월)
- '19. 9~10월     중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9. 10~12월    중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20. 1~2월      중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2~3월      중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20. 4월        중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 공지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20. 4월)
- '20. 5월        중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접수
- '20. 6~9월     중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20. 10~11월   중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11월      중편PP(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20년도 중편·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비계량) 70(비계량) 20(비계량)	21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 계획의 우수성 ⑧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80(비계량) 20(비계량) 40(비계량)	19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30(계량) 2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⑫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⑮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⑯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50
계		1,05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0(비계량) 80(비계량) 30(비계량)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 계획의 우수성	60(비계량) 70(비계량) 30(비계량)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40(비계량) 30(계량) 10(비계량)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⑪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⑫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⑮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50
계		1,05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4. '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  
(속기록, '19.8.23)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8. 23.(금) 14:31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나.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9-41-161)

###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결과입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지난 5월 10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승인 대상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이며,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이티비씨(주)와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분량은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본문 500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종편PP와 보도PP의 재난방송 공적책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 기본계획 의결 후에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 사전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는 기본계획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이나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결정하신 바와 같이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후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과 배점 그리고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사전 기본계획 의결 후 발생한 변경사항 심사를 위해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사사항별 배점은 <표>를 참조하시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이 6번 항목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50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심사평가 이후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승인 여부 결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승인유효기간은 총점 700점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인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3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 담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현행 '방송 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른 콘텐츠 투자금액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여 방송제작에 쓰이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콘텐츠 투자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콘텐츠 투자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8월 중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 공지를 하고, 9~10월에 걸쳐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3월까지의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티비씨(주)와 (주)매일방송에 대해서는 2020년 4월부터 별도로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내년 3~4월에 승인유효기간이 끝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의 재승인 세부 계획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실시해 온 심사계획이어서 심사기본계획의 큰 방향은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세부계획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분량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 본문 500페이지 이내로 하도록 제시하고, 재난·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종편 및 보도PP에 대해서도 재난방송의 공적책무를 심사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비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도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심사위원 선정이며, 심사과정의 엄격함과 투명성 제고 역시 중요합니다. 최근 종편 PP의 위상은 지상파방송을 일부 넘어서거나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편PP도 영향력에 비례하는 공적책무를 부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심사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종편PP의 소유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재승인 심사에서는 소유 지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일부 종편PP의 소유 지분 합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재승인 심사기간에 심사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유구조 부분이 재승인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 허 옥 상임위원

- 이것이 필수 심사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으로 재승인해서 허가 승인장을 내주기 때문에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주시지요.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오늘 보고자의 보고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특히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지난번 종편 재승인 때도 콘텐츠 제작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논란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우리 세부기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것은 사업자들에게 다 공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돼도 상관없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사업자 의견을 많이 반영한 셈이 됐는데, 예를 들면 자체제작 인력의 인건비나 또 간접비도 전부 콘텐츠 투자금액에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 의견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많이 줄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계정과목도 다 열거해서 전부 다 통지가 가는 것이지요? 다 알려진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들을 다 게재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논란의 소지를 많이 줄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무처가 많이 애쓰고 정비를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업자들 반응도 좋게 나오는 것이지요? 불만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100%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 김석진 부위원장

- 100%는 할 수 없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거의 수용했고, 사업자 의견 수렴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잘하셨습니다. 제작년인가요? 우리가 종편 심사를 해보니까 제작비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는 세부기준이, 또 간접비·직접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됐다는 부분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승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경을 크게 쓰는 부분이고, 아울러 저희들 심사도 굉장히 엄격하게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부계획이 마련된 것은 그 사이의 기준들보다는 개선한 것이 많아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재난방송을 별도로 50점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방송평가에서도 일부는 재난방송에 관해 평가합니다만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인 유효기간이 구간별로 700점 이상은 재승인 기간이 5년, 700점 미만은 4년, 650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렇게 구간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650점 아래가 되면 '조건부 재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20점대로 3년간 세 차례 연속 '조건부 재승인'이 된다면 이런 것은 패널티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세부계획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650점 미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 연속으로 몇 차례 계속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상임

위원 또는 일반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임위원이 꼭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지상파방송 재허가 때도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재허가 심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칙과 합리성,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사위원장 문제는 심사를 앞두고 구성할 때 다시 논의해서 그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승인할 때 소유 지분 구조나 주주 구성의 적정성은 보지 않지요? 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최초 승인 때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재승인할 때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승인 때는 심사배점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특정 종편은 주주 구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특정 종편은 주주 간의 지분 변동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승인 심사와는 또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재승인과 관련 없이 현행법상 위반되면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재승인해야 할 시점까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주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승인 심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는 시점이 재승인 심사기간과 겹치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같이 여기에 넣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문제가 되는 사항이 시점이 언제 명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일단 재승인과

별개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재승인 시점에 문제로 확정된다면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특정 언론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이 실은 10년 전에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 허가 때, 최초 승인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지금 다시 불거져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승인 심사할 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재승인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전부 사무처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사업자에 대한 허가·재허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들을 놓치다 보면 꼭 나중에 특혜를 줬으니, 아니면 심사가 부실하게 됐니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종편들 승인해 주고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제출도 한계가 있지만 다른 새로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표철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승인·재승인은 아마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입니다. 이것이 또 전형적인 규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업무보다도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이런 사전 세부계획이 면밀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나 일정, 심사의 과정에서 어떠한 하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승인·재승인, 허가·재허가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결격사유가 없도록,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리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Ⅲ. 재승인 신청 안내



1. '20년도 하반기 재승인 신청 안내

---

# 2020년도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 안내

---

2020. 4.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목 차

I. 재승인 개요 .....	74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	74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	74
3. 재승인 여부 결정 .....	75
4. 추진일정 .....	75
5. 유의사항 .....	76
II. 재승인 심사 .....	77
1. 심사 기본 방향 .....	77
2. 심사절차 .....	78
3. 심사위원회 구성 .....	79
4.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	79
III.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요령 .....	80
1. 제출서류 및 제출 부수 .....	80
2. 작성 및 제출 요령 .....	82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	83
IV. 재승인 신청서 .....	84

## I. 재승인 개요

###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승인 유효기간이 '20년 하반기에 만료되어 동법 제17조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자

###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승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20.5.29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등
- 제출처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문의 :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  
- 02-2110-1431, hyerlee@korea.kr / 02-2110-1435, lcs16@korea.kr /  
02-2110-1434, ssh0530@korea.kr

### 3

## 재승인 여부 결정

---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총점 700점 이상 사업자의 경우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시) 3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 4

## 추진 일정

---

- '20. 5. 29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
- '20. 6~10월 신청서 검토 및 보정, 시청자 의견접수 등
  -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견 수렴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
- '20. 10~11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11월 재승인 여부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재승인과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본 안내서에 기재된 심사 일정, 심사 계획은 심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Ⅱ. 재승인 심사

### 1 심사 기본 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심사사항2)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심사사항3),
  -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재난·재해 발생 빈도 및 그 피해 증가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종편PP의 재난방송 공적책무를 심사
-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2

## 심사절차

---

- 신청서류 접수 및 보정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서류 징구 및 보정사항 통보
- 시청자 의견 청취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 재승인 대상 방송사는 시청자 의견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 현장실사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실시
- 의견청취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 참석대상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 ※ 법인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복수 대표자 모두 참석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심사평가 :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신청법인의 제출 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항목별로 심사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등 심사결과 통보
  -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등 심사결과를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표

### 3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

### < 심사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미디어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3)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4

##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 제1항 및 제17조(재허가 등) 제3항에 따른 법정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구성

### < 심사사항 및 배점 >

심사사항	총점PP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
합 계	1,050***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은 필요 시 세부계획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체 배점의 10%(100점) 범위 내에서 정의하도록 명시

\*\*\*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 Ⅲ.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 요령

#### 1. 제출서류 및 제출부수

#####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요약문 등으로 구성

##### <재승인 신청 서류 현황>

1. 신청공문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 ① 재승인 신청서
  - ② 서약서
  - ③ 신청법인 명세
  - ④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 ⑤ 승인장 사본
  - ⑥ 주간기본편성표
3. 부속서류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5.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5.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원본 보정 후 제출

## □ 제출부수

구분	서류	원본	사본	USB	비고
최초 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2	1	-
	3. 부속서류	1	1	1	-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2	-	-	파일 제출 (재무제표 등)
보정 후 재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18	1	
	3. 부속서류	1	18	1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	-	-	필요시 재제출
추후 통보시	5.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1	18	1	

※ 보정 후 접수일은 추후 조정하여 통지

### ○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세부 제출 자료

### ○ 별도제출자료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
- 주주현황 및 주주변동내역 엑셀파일

### ○ 승인장은 스캔하여 그림파일(JPEG)로 변환, 수록

## 2

## 작성 및 제출 요령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
-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 명조, 13”,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
  - ※ 재무제표는 한글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제출
-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
-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는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같음”,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사본의 경우 겹표지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8),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
  - 부속서류의 표지에 해당 사업계획서의 목차를 표기하고 각각의 페이지에 쪽수를 표기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는 500쪽 이내로 제한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별도로 2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항목을 적시
  - ※ 요약문은 원본보정 후 별도 제출
- 첨부한 재승인신청서 양식은 표준양식이며, 각 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하여 제출

- 각 항목별로 기간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 (JTBC) 실적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계획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MBN) 실적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계획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작성기간 예외(예시)

- (콘텐츠 투자) 콘텐츠 투자 계획은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작성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현황) JTBC는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MBN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작성

※ 최종적인 실적 작성기간은 심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통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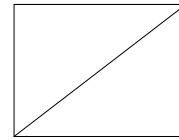
- 주요 실적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부속서류로 제출
- 신청서 접수 이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담당자 현황
  - 사무관(02-2110-1431), 주무관(02-2110-1435)

※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사항은 상기 담당자에 문의

재승인신청서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

원본

2020. 00.

로고 (주)OO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 목 차

I. 재승인 신청서 .....	0
II. 서약서 .....	0
III. 신청법인 명세 .....	0
IV.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	0
V. 승인장 사본 .....	0
VI. 주간기본편성표 .....	0

# I. 재승인 신청서

##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승인 내용	승인번호		승인일자
	소재지 (주된 사무소)	주소 : 전화 :	공급분야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수지견적	역무제공내용	수신자 불만처리

「방송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서 1부.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100,0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 □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 ※ 재승인 신청서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9호, 2017.9.2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 1. 신청인

- ※ 복수 대표자인 경우, 모든 대표자와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
- ※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 2.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별첨”으로 기재한 후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 3.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 각각의 항목에 “별첨”으로 기재한 후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 Ⅱ. 서약서

# 서 약 서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 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술한 사업계획 등이 국민과 방송통신 위원회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재승인을 받을 경우,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00월 00일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 **Ⅲ. 신청법인 명세**



# 1

## 개요

---

※ 방송사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방송현황 등을 기술

# 2

##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

---

※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3

## 연혁

---

※ 최초 승인장 교부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

## 4

## 법인 현황

구분		세부 내역			
방송법인 명칭		국문			(약칭)
		영문			(약칭)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법인설립일자				자본금(단위:억원)	
구분	회사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약력	임기
법인대표자					... ~ ...
편성책임자					-
임원					... ~ ...
					... ~ ...
					... ~ ...
					... ~ ...
					... ~ ...
5%이상 주요주주 현황		주주명	대표이사	참여지분(%)	회사자본금

5

주주 관련 사항

1. 주주 현황

① 구성 주주의 법인명 (성명)	대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② 구성 주주간 특수 관계자 명	출자비중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③ 외국인 지분		④ 대기업 해당 여부 (0, ×)	⑤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0, ×)
				주 식 수	지 분 율	법인명 (성명)	대 표 자	국 적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해당 여부 (0, ×)	총합 비율 (%)		
총계													

※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모든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세부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음

- ①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 법인은 법인명을, 개인은 성명을 기재하며, 개인 주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
- ② 구성주주 간 특수관계자 명 :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당해 방송사업자의 구성주주 간 관계를 표시하되, 특수관계자가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특수관계자 명을 기재
  - 각 방송사업자는 5%이상 주주에게 <6.. 기타 제출사항>의 ‘특수관계자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必)’를 작성토록 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받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5%이상 주주사가 특수관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사에 ‘특수관계자 확인서’의 첨부1(주주현황)을 제공해야 함.
  - ※ 5% 미만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확인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기재사실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을 기재
- ③ 외국인 지분
  - 외국인 해당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란에 "o"을 표기
  - 총합비율(%) : 구성주주의 「방송법」 제14조에 따른 외국인 지분 비율(%)을 기재
- ④ 대기업 해당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란에 "o"을 표기
- ⑤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 해당 란에 "o"을 표기

**2. 주주 변동내역(‘17.1.1.~’20.4.30.)**

(단위 : 백만원)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3. 주주 및 자본금 변동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변동 계획
주 주	
자본금	

※ 해당 사업자만 기재하며, 기업공개 계획 등을 포함

## **IV.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1

## 공적책임 · 공정성 실적 및 계획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수행실적 및 방송 서비스의 보편성 구현 수행실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차원에서 방송 심의제재 건수 감축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과 관련 사항을 포함시킬 것
  - 출연자 섭외 시 전문성 등 자질 검증장치, 관련규정 등
  -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심의제재의 원인이 된 출연자에 대한 조치사항

프로그램명 (분야)	제재 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자체 조치사항 (조치일자)
000 (보도)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 0조제0항	방송언어 객관성	외부출연자 3명 출연정지 1개월 (20XX.1.1.)
	권고, 의견제시			정치적중립	진행자 1명 경고 및 프로그램 폐지 (20XX.12.10.)

※ 자체 조치사항 : 진행자, 제작진, 내부 출연자, 외부출연자 등 조치(법정제재 및 행정 지도 포함)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이행실적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이행실적
- 방송언어 순화 실적
- 편성규약(제정일자, 주요내용, 공표방법·공표현황, 주요 이행사항 등)
- 공익적 캠페인, 행사 등의 실적 등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관련 이행실적 등
  - ※ 제도적 장치 위주로 작성

##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구현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제고를 위한 향후계획(심의제재 건수 감축 등)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계획
- 편성규약 제정 및 공포 계획 등
- 공익적 캠페인, 행사 등의 계획 등



## 2

## 시청자 권익 보호 실적 및 계획

### 1. 시청자 참여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이행실적
-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관련 이행실적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양식)

○ 운영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합계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제시의견 활용실적 건수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시정 요구) 반영 내역						
순번	제안내용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제안시기	비고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시정요구) 중 미반영 내역						
순번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내역		미반영 사유		비고	
○ 시청자 위원 명단(연도별 작성)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실적(양식)

(단위 : 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방송시간) (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 세부 내역 >

방송기간	프로그램 명	방송시간(분)	비고
'17. 1.1 ~ '17. 9.30	시청자 세상	60	
'17. 9.31 ~ '18. 10.7	시청자 평가	60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시청자 참여 관련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2. 시청자 불만처리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 '연도별 자체심의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이행실적
- 자체심의 기구 설치 및 운영 관련 이행실적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양식)

(단위 : 건)

구분	불만접수건수	불만처리건수	미처리건수	불만처리비율(%)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양식)

(단위 : 건)

대분류	중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프로그램 불만	내용 불만										
	진행자 불만										
	출연자 불만										
	자료화면 불만										
	자막 불만										
	편성불만										
	소 계										
프로그램 관련 시정요구	영상 및 기사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청										
	소 계										
시청자 권익보호	피해보상에 관한 건										
	저작권에 관한 건										
	명예훼손에 관한 건										
	소 계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등 이용 불만										
	기술관련 불만										
	소 계										
기타											
합계			100%		100%		100%		100%		100%

※ 시청자불만처리 유형 분류 기준(44쪽)에 따라 작성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양식)

(단위 : 건)

대분류	중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프로그램 불만	내용 불만										
	진행자 불만										
	출연자 불만										
	자료화면 불만										
	자막 불만										
	편성불만										
	소 계										
프로그램 관련 시정요구	영상 및 기사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청										
	소 계										
시청자 권익보호	피해보상에 관한 건										
	저작권에 관한 건										
	명예훼손에 관한 건										
	소 계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등 이용 불만										
	기술관련 불만										
	소 계										
기타											
합계			100%		100%		100%		100%		100%

※ 시청자불만처리 유형 분류 기준(43쪽)에 따라 작성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연도별 자체심의 현황(양식)

<20xx년>

전체방송 프로그램 편수	심의현황			심의 미필 건수	심의시기			심의결과	
	대본심의 건수 (비율)	제작물 심의건수 (비율)	전체심의 건수		사전심 의 건수 (비율)	당일심 의 건수 (비율)	사후심 의건수 (비율)	지적 건수	이행 건수

※ 자체 심의규정과 연도별 자체심의 세부 실적(심의실적,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 등)은  
부속서류로 제출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참고 - 시청자불만처리 유형 분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프로그램 불만	내용 불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불만 등
	진행자 불만	진행자의 언행에 대한 불만 등
	출연자 불만	출연자에 대한 출연 불만 또는 출연자 발언 등에 대한 불만 등
	자료화면 불만	자료화면의 선정성 폭력성 및 다른 자료화면 사용에 대한 불만 등
	자막 불만	자막 오기 자막 표현에 대한 불만 등
	편성불만	프로그램 편성 관련 불만 등
프로그램 관련 시정 요구	영상 및 기사 삭제 요청	영상 및 기사 불만 등
	정정보도 요청	리포트나 제작 프로그램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민원인의 정정 및 삭제 요청 사항 등
시청자 권익보호	피해보상에 관한 건	보도 또는 프로그램 방영에 따른 피해보상 사항 등
	저작권에 관한 건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 등
	명예훼손에 관한 건	보도 또는 프로그램 방영에 따른 명예훼손 사항 등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등 이용 불만	다시보기 불만, 이용 장애, 프로그램 소개 업데이트, 시청자 게시판 등
	기술관련 불만	방송 기술 및 난시청(종합편성 제외) 등
기타	기타	화질불만 등

### 3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기여실적

###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양식)

연도	일자 <sup>1)</sup>	지역 <sup>2)</sup>	유형 <sup>3)</sup>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액(백만원) <sup>4)</sup>	비고
2017년							
소계							
2018년							
소계							
2019년							
소계							
2020년							
소계							
합계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①지역적 ②사회적 ③문화적 기여실적은 양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

- 1)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
- 2) 시·도(서울특별시는 제외)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4)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 지역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실적(양식)

< 개요 >

(단위 : 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제작 실적		%		%		%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세부내역 >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 <세부내역>의 방송시간 합과 <개요>의 방송시간은 동일해야 함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계획

##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시간, 편성비율, 방송실적 등은 월간방송실시결과 작성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 1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

### 1. 기획·편성의 우수성 및 독창성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의 당초 기본방향 및 목표와의 부합 여부
- 방송분야별, 장르별 편성 관련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양식)

분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보도																
교양																
오락																
총계																

- 1)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향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양식)

분야	2020년 4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시간 <sup>1)</sup>	비율 <sup>2)</sup>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보도												
교양												
오락												
총계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 1)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주요 방송 프로그램 편성계획

편성일자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기획의도 및 개요	비고

## 2. 편성의 자율성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관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3. 수급 실적 및 계획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관련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 □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수급 실적(양식)

<20XX년>

구분		재승인 시 사업계획			실적		
		시간 <sup>1)</sup>	비율	비용 <sup>2)</sup>	시간	비율	비용
자체	순수자체제작 <sup>3)</sup>						
	공동제작 <sup>4)</sup>						
	소계						
외주제작 <sup>5)</sup>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sup>6)</sup>						
	국외물 구매 <sup>7)</sup>						
	소계						
총계			100%			100%	

- 1) 제작원별 프로그램 시간 및 비용 합은 연간 시간 및 비용(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비용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임
- 3)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 가지는 경우
- 4)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5)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방송법 제72조제1항). 단, 공동제작의 3요건 중 당해 방송사업자가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외주제작에 포함하며, 구매로 분류되는 경우
- 6) 국내물 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7)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간 <sup>1)</sup>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계													

구분		2020년			
		계획		실적	
		시간 <sup>1)</sup>	비율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계					

1) 제작원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2020년 ~ 2025년까지 연도별 제작 계획>

구분		2020년 4분기			2021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구분		2022년			2023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 비용은 변경된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

구분		2024년			2025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구분		2020년 4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계													

## 2

##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 프로그램 투자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프로그램 투자 기본방향
- 방송프로그램 투자 관련 실적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투자 실적(양식)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계획	실적 <sup>2)</sup>	계획	실적 <sup>2)</sup>	계획	실적 <sup>2)</sup>	계획	실적 <sup>2)</sup>
자체	순수자체제작 <sup>3)</sup>								
	공동제작 <sup>4)</sup>								
	소계								
외주제작 <sup>5)</sup>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sup>6)</sup>								
	국외물 구매 <sup>7)</sup>								
	소계								
총계									

- 1) 제작원별 프로그램 비용 합은 연간 비용(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실적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의 비용을 작성
- 3)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 가지는 경우
- 4)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5)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방송법 제72조제1항). 단, 공동제작의 3요건 중 당해 방송사업자가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외주제작에 포함하며, 구매로 분류되는 경우
- 6) 국내물 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7)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 프로그램 투자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프로그램 투자 기본방향
- 방송프로그램 투자 관련 계획

<2020년 ~ 2025년까지 연도별 투자 계획>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 비용은 변경된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기준'(121쪽)에 따라 작성

※ 2020년도 계획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기준으로 작성

## < 참고 -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

※ 20년도 이후 프로그램 수급, 투자 비용 산정 시 참고하여 작성

### □ 개요

- 방송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자체, 외주)하거나, 구매한 비용 (“콘텐츠 투자금액”이라 함)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 자체 :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사업자가 직접 제작하는 것
  - 외주 :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외부의 제작자가 제작하여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것
  - 구매 :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제작완료 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 목적으로 사오는 것
- ※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 대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한 영업비용과 기타 영업외비용 항목 중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재승인 사업계획서 중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 작성 시 본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요망
- 콘텐츠 투자금액(계정과목별 금액이 아니라 총액 기준) 산정 시 이하 계정과목에 따라 계획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필요 시 방통위가 인정여부 판단

### □ 자체제작 계정과목 및 세부내용

-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아직 완전한 자산형태를 갖추지 못하므로, 제작이 완료될 때 까지는 선급금으로 산정
  - 다만, 일반적인 선급금과 구별하기 위해서 ‘방송프로그램 선급금’으로 분류
    - \* 사업자의 회계연도 내에서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그램
- 방송사 내부 제작인력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도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
  - ※ 복리후생비(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에 사용된 비용), 법정부담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포함

-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도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되, 본 세부기준 적용 이후 신규투자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 상각비부터 인정

\* 감가상각비 : 시간의 경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방송장비 등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

\*\*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 외 무형자산) 상각비 : 시간의 경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

① 원고료 : 제작업무 중 작가, 통·번역 관련비용(사전기획료 포함)

예시) 문예비, 작가료, 사전기획료, 교열담당보수료, 원고료, 구성대본료, 외화번역료, 번역료 등

② 출연료 : 제작업무 중 출연자와 관련한 비용(전속금 포함)

예시) 출연료, MC료, 아나운서/기상캐스터 출연료, 특별출연료(직원), 가족 및 단체출연료, 음성배역, 사회자료, 성우출연료 등

③ 연출료 : 제작업무 중 연출(조연출, FD 등 포함) 관련 비용(사전기획료 포함)

예시) 연출료, 보도제작부스텝료 등

④ 기자인건비 : 제작업무 중 취재·촬영 기자와 관련한 비용

※ 인건비 이외 비용은 업무별 계정과목으로 할당

⑤ 영상촬영/편집비 : 제작업무 중 영상촬영\* 또는 편집 관련 비용 (영상촬영장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등 포함)

\* 촬영 기자, 영상촬영장비 차량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별도 계정과목)

예시) 카메라임차료, 촬영료, 헬리캠, 편집료, 중계지미짚 임차, 6mm 외 기타 장비, 동시녹음, 외부카메라 등

⑥ **음악/음향효과비** : 제작업무 중 음악·음향효과와 관련한 비용  
(CD, tape 등 저장매체, 음반CD 구입비, 효과료 등)

※ 음악저작권료는 포함되지 않음(별도 계정과목)

예시) 음악료, 소모품비, 음악작곡용역비, 음악/음향 등

⑦ **미술효과/세트/조명비** : 제작업무 중 미술(CG)효과, 세트, 조명관련 비용(자막 포함)

예시) 삽화료, CG료, 미술비, 미술효과료, 세트비/세트장치(설치 해체료 포함), 구조물, 소도구, 전식, 철구조물 외, 특수효과, 외주미술비, 소품비, 조명, 자막료, 중계조명 임차 등

⑧ **의상/헤어/코디/분장비** : 제작업무 중 의상, 헤어, 코디, 분장과 관련한 비용

예시) 분장용품/분장료, 코디, 의상, 미용 등

⑨ **제작진행비** : 제작 관련 진행성 경비로서, 회의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조사연구비, 취재비 등 관련 비용(교통비, 유류비, 소품비 등 미포함)

※ 여비/교통비, 차량주유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별도 계정과목)

예시) 기자실사용료, 취재지원비, 취재보조비, 진행비, 외주관리진행비, 자체 제작진행비, 편집진행비, 연출제작진행비, 여론조사비 등

⑩ **외주용역비** : 제작업무 중 외부 인력(파견 포함)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괄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비용

예시) 파견업무대행, 외주용역비, 제작용역사원, 제작외주용역비, 제작용역비 등

⑪ **여비/교통비** : 제작 관련 국내외 출장비(일비, 식비, 숙박비 등) 및 교통비 등 비용(사전기획 포함)

예시) 국내출장비, 해외출장비, 조기출근교통비, 사전답사, 항공료, 주차료, 식대, 시내교통비, 숙박비, 해외코디비, 해외통역비 등

⑫ **방송제작차량비** : 방송제작과 관련한 차량 비용[임차료, 차량유지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등 포함]

※ 방송제작과 관련한 차량 : 취재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제외

예시) 제작차량용역비, 차량렌트료, 차량임차료, 중계차임차 등

⑬ **방송제작시설이용료** : 방송제작과 관련한 시설(스튜디오 등) 등 이용 비용(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포함)

※ 건물 및 송·중계소 시설 유지비용 등의 수선유지비는 제외

예시) 외부제작시설이용료, 스튜디오임차료, 사무실임차료/관리비 등

- 스튜디오 임차료 : 재임대 면적 부분은 별도로 차감

-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일반 사무실 부분은 부서별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판매관리비 처리

- 건물 전기료 : 일반 사무실 부분은 부서별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판매관리비 처리

⑭ **통신비** : 방송제작 및 송출\* 과정에서 이용하는 통신과 관련한 비용(회선사용료 포함)

\* 제작 완료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비용은 제외(판매관리비)

예시) 무선인터넷단말기사용료, LTE모뎀사용료, 웹하드사용료, 제작우편료, 제작전용회선료, 제작전화료, 라우터사용료, 중계분담금, 회선사용료, 데이터전용선료, SNG위성사용료, 전용회선료, 방송회선료, 방송회선임대, 중계회선사용료 등

⑮ **기타장비이용료** : 방송제작 관련 장비(영상촬영, 음악/음향효과, 미술 효과, 조명 등)가 아닌 기타 장비와 관련한 비용 (수선유지비 포함)

예시) 방송시스템유지보수, 방송장비수리, 송출노트북 수리, 방송장비수선비, 방송제작시스템위탁운영비, 방송IT장비수선유지비, 웹시스템위탁운영비, 방송장비수리, 송출VCR임차료, 발전기 등



⑩ 콘텐츠사용료 : 제작 관련 콘텐츠 사용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예시) 외신영상사용료, 기상정보이용료, 저작권침해합의금, 영상물소재사용료 선금, 음악모니터링시스템분담금, 재방송료/복제료/전송료, 방송보상금, 방송사용료, 음악저작권수수료, 저작권사용료 등

※ 저작권료는 기존 저작권료, 재방영 경험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비용을 추산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⑪ 기타 : 제작관련 비용 중 상기 계정과목으로 분류가 어려운 공통비용(공통 소모품 등) 및 이월 자체제작비

- 당기 이전에 선급금 또는 무형자산(제작방송프로그램) 처리한 프로그램이 당기에 방영된 경우 원가(비용성격에 따른 원가계정에 각각 기입) 처리하여 콘텐츠 투자금액에 포함

※ 다만, 무형자산 처리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손상차손) 처리하고 콘텐츠 투자금액에서도 제외

□ 프로그램 구매비용 계정과목 및 세부내용

※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적용

-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구매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선급금) 처리
- 결산일 현재 구매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 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 포함)
- 결산일 현재 구매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해 매출원가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 포함).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서 제외)

- 결산일 현재 구매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계약조건,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 포함).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관련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서 제외)

□ 콘텐츠 투자금액 불인정 계정과목

항 목	세부내용	비 고
국가지원금 등 프로그램 상각	방송발전기금 등 미방영프로그램을 상각하여 비용처리	재승인 조건은 자체자금 투입을 전제 구매 프로그램은 방영 시 비용화해야 함
시설임대수입	스튜디오 등 임대수입	시설 일시 운용수익 등은 관련 임차 비용에서 차감
과태료	방송광고 법규위반	제작비용이 아닌 행정비용에 해당
송출회선 사용료	유료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 송출 비용	프로그램 완성품 송출은 제작비용에 미포함
판관비	홈페이지 수수료, 운영대행료 등	판매 관리비용은 제작비에 포함하지 않음
인터넷 사용료	사무용과 방송제작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방송제작이 아닌 경우, 포함하지 않음
세금과공과	세금 및 각종 공과금	방송발전기금, 법인세 및 벌금과 과태료 등 방송제작과 무관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일체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개정안 시행 전 자산의 감가상각비	본 개정안 시행 이전에 투자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 상각비는 제외

**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

1. 공익성 관련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실적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자 방송,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양식)

<연도별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실적>

(단위 : 분, %)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방송시간 분)		비고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적					%			%			

※ 2020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세부 내역 >

일시	프로그램 명	방송내용	방송시간(분)	비고
'18.01.01	더불어 삼시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야기	60	재방 2회

※ 본방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방시 비고란에 횟수 기재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자 방송,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계획(양식)

2020년 4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2.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소수시청자 그룹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권익실현 관련 이행실적
-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관련 이행실적
- 장애인 지원방안 관련 이행실적
-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관련 이행실적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편성실적(양식)

**<연도별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단위 : 분, %)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방송시간) (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어린이· 청소년			-			%			%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약자·외국인												
기타												
계												

※ 2020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소수 시청자 그룹 프로그램 세부 편성 내역 >**

일시	구분	프로그램 명	방송내용	방송시간(분)	비고
	어린이· 청소년				재방 2회

※ 소수시청자 그룹별(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등) 세부 편성내역을 기재  
 ※ 본방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방시 비교란에 횟수 기재

□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양식)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방송시간) (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화방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막방송	( % )	( % )		( % )	( % )		( % )	( % )		( % )	( % )	
화면해설방송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방송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장애인 방송 편성 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구분	2020년 4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어린이·청소년	( 분 %)	( 분 %)	( 분 %)	( 분 %)	( 분 %)	( 분 %)
장애인	( 분 %)	( 분 %)	( 분 %)	( 분 %)	( 분 %)	( 분 %)
다문화가정 ·노약자·외국인	( 분 %)	( 분 %)	( 분 %)	( 분 %)	( 분 %)	( 분 %)
기타	( 분 %)	( 분 %)	( 분 %)	( 분 %)	( 분 %)	( 분 %)
전체방송시간	분 (100%)	분 (100%)	분 (100%)	분 (100%)	분 (100%)	분 (100%)

□ 장애인 방송 편성계획

분야		2020년 4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막방송	시간(분)						
	비율(%)						
화면해설 방송	시간(분)						
	비율(%)						
수화방송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시간	시간(분)						
	비율(%)						

## 4

##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중편PP)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편성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프로그램 주요 장르 편성 계획 및 실적'은 아래 양식 참조
  - ※ 장르의 분류는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134쪽) 참고
- 이 외에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구(또는 회의) 설치·운영실적 및 기타 균형적 편성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술

## □ 방송프로그램 주요 장르 편성 계획 및 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소 계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퀴즈·게임쇼								
코미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합 계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편성 계획과 이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프로그램 주요 장르 편성 계획'은 아래 양식 참조
- ※ 장르의 분류는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134쪽) 참고
- 이 외에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구(또는 회의) 설치·운영계획 및 기타 균형적 편성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경우 기술

□ 향후 5년간 방송프로그램 주요 장르 편성 계획

구분	2020년 4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소 계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퀴즈·게임쇼						
코미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합 계						

※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

## < 참고 -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

장르	정의
뉴스	○ 국내외 사건, 사고, 쟁점 등과 관련해서 진행자를 중심으로 기자가 취재한 사실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정규 뉴스 및 특별 편성 뉴스포함)
탐사보도	○ 국내외 특정 시사 쟁점에 대해, 심층적인 탐사 취재 사실 및 관련 분석 내용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시사논평	○ 국내외 시사 쟁점 관련 보도내용(자사 및 타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토론·대담	○ 특정 주제에 관해 진행자가 관련 전문가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 전문가가 찬성 반대 등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 사실에 입각한 촬영과 합리적 재구성을 통해 현실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생활정보	○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
교육문화예술	○ 교육 : 정규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 :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예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
드라마	○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
버라이어티쇼	○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정보 쇼, 토크 쇼, 연예시상식, 시청자 비디오 모음 등의 오락 쇼 프로그램
음악쇼	○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
퀴즈·게임쇼	○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
코미디	○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영화	○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서사가 있는 허구물
스포츠	○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교육·문화·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애니메이션	○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장르로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

※ 토론·대담 프로그램이란 특정주제에 관해 찬성·반대를 토론하거나 한 인물에 대해 집중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1

##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

### 1. 조직 및 인력 운영실적 및 계획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 및 인력 운영실적, 교육훈련 실적, 주52시간 시행 대비 추진실적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고용현황', '직원 교육투자 현황', '직원 교육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고용 현황(양식)

○ 개요

(단위 :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정규직								
계약직								
계								

※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필요시 별도 작성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직급별 인력 고용 현황(2020.3.31.)

(단위 : 명)

구분	임원	정규직					소계	계약직					소계	합계
인원	정원													
	현원													
인건비총액														
인건비평균														

※ 각 사업자별 내부 직급체계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 영수증 상의 연간급여총액(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기준

※ 정원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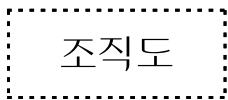
○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2020.3.31.)

(단위 : 명)

구분	임원	방송직						방송직 외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기타	소계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소계												

※ 임원,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기타 등으로 구분

※ 내부 조직도(2020.3.31. 기준)



※ 사업자별 내부 조직도를 작성

□ 직원 교육 투자 현황(양식)

(단위 : 백만원)

연도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국내전문교육			%			%			%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 타													
합 계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직원 교육실적 세부내역(양식)

(단위 : 백만원)

기간	교육유형	교육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 %)
				( %)

※ 교육유형은 「국내전문교육,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타」, 방법은 「위탁, 강사초빙, 견학, 연수」 등으로 구분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교육훈련 계획, 주52시간 시행 대비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향후 인력 수급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향후 인력 수급계획(양식)

구분		'20년 말	'21년 말	'22년 말	'23년 말	'24년 말	'25년 말
정규직	신규						
	경력	자체 외부					
계약직							
계							

※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필요시 별도 작성

## 2.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실적 및 계획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나. 향후 5년간 계획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3.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 가. 향후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

#####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기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관련 이행실적
- 신규 플랫폼 진출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이행실적
- 국내 콘텐츠 공급 및 유통 관련 이행실적

####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한 기본 경영 전략 및 방향
- 향후 5년간 시장전망
- 기업 내·외부 환경 분석
-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
- 신규 플랫폼 진출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 계획
- 국내 콘텐츠 공급 및 유통 관련 계획

#### 4.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 및 향후전략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콘텐츠 유통,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력 등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나. 향후 5년간 계획

- 콘텐츠 유통,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력 등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사업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5. 자금조달 및 운영

###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프로그램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를 제시
- 자금 조달계획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구분하여 자금운영 계획에 따른 추정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조달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 6. 사업성 분석

- 향후 5년간('20~'24년)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등에 근거하여 추정 재무제표(아래 양식 참조)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추정근거 제시) 사업성을 분석
- 추정 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DCF 방법에 의한 순현재 가치(NPV), 내부 수익률(IRR), 손익분기점을 산출하고, 할인율 등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 명시

### □ 추정재무제표(양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3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비용						
	기타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기타 판관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 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엑셀 파일 별도 제출

## 1. 재무구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전년대비 증감비율)		(전년대비 증감비율)		(전년대비 증감비율)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요약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별첨으로 제출, 엑셀파일 별도 제출
- 2016, 2017, 2018년, 2019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별도 제출
-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실적칸에 두 번째 줄로 ( )에 작성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자료 작성기준을 근거로 최근 3년간(2017, 2018, 2019년)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작성

## 2. 수입현황

###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행사 매출액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 매출액			%			%			%				
총 계			%			%			%				

※ 수입금액의 총합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금액과 동일해야 함.

※ 수입현황 구분 기준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함

나. 방송 프로그램 제공, 광고,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방송시설 임대, 행사, 기타 방송사업, 기타 사업 매출액

○ 상기 항목별 세부 매출액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합 계			%			%			%				

※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예)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은 플랫폼 사업자별로 구분하고, 방송프로그램 판매는 국내·외 등으로 구분

### 3. 추정수입

####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20년 4분기		2021년		2022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행사 매출액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행사 매출액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광고,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방송시설 임대, 행사, 기타 방송사업, 기타 사업 매출액

o 상기 항목별 세부 예상수입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20년 4분기		2021년		2022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		%
		%		%		%
		%		%		%
		%		%		%
총 계		%		%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		%	
		%		%		%	
		%		%		%	
		%		%		%	
총 계							

## 3

##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

## 1. 방송시설설치 운영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제작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실적', '국산장비 도입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 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세부 내역은 부속서류로 제출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 국산 방송장비 도입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제작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계획', '국산장비 도입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 계획(아래)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4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국산장비 도입 계획(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4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 관련 이행실적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현 관련 이행실적

###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계획 등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1

##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

### 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 기여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및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이행실적
-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계획의 이행실적
- 방송인력 양성계획의 이행실적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연구개발 총투자			%			%			%				

※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연구개발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 %)
				( %)
합 계				( %)

## 나. 향후 5년간 계획

###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 기여 계획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및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계획
  - '상생협약체 운영',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에 관한 계획 등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관련 이행 계획
- 방송장비 산업기여 및 연구개발(R&D) 계획
- 방송인력 양성계획

## 2.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나. 향후 5년간 계획

- 향후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3. 콘텐츠 산업 육성·기여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 이행실적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 이행실적

####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향후 계획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 관련 향후 계획

## 2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현황

- ※ '20.4.30일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보완
- ※ 방송법 위반 현황은 심의제재,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의 행정처분을 제외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내용을 적시할 것

□ 방송법 위반 현황(2017.2.1. ~ 2020.4.30.)      ※ MBN: 2017.9.1. ~ 2020.4.30.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방송법 위반사례
- ※ (예시) 법인의 방송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방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 방송법 외 타법 위반 현황(2017.2.1.~2020.4.30.) ※ MBN: 2017.9.1. ~ 2020.4.30.

※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법률 위반사례

※ (예시)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전파법 >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심의제재 현황(2017.2.1. ~ 2020.4.30.)

※ MBN: 2017.9.1. ~ 2020.4.30.

프로그램명	제재 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 고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0조제0항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의제재 현황을 양식대로 작성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재심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심”, “소송”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 기타 행정처분 현황(2017.2.1. ~ 2020.4.30.)

※ MBN: 2017.9.1. ~ 2020.4.30.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 고
과태료					
과징금					

-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명(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현황**

※ '20.4.30일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보완

□ 시정명령(불이행) 등 현황(2017.2.1.~ 2020.4.30.) ※ MBN: 2017.9.1.~ 2020.4.30.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사유	비고
시정명령				불이행	재승인조건 위반	소송 (00.00.00)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 불이행	소송 (00.00.00)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불이행),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 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4****[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

- 사업자별로 <붙임-참고> 항목별로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
  - 자료작성은 요약, 본문, 별첨 자료로 구성·작성 (필요시 요약·본문·별첨을 묶어서 부속서류로 별도 제출)

**1. 재승인 조건****가. 요약**

재승인 조건(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본문 (재승인 조건 내용 및 이행실적)**

< 재승인 조건 >

<이행실적>

**다. 별첨(증빙자료 등)**

## 2. 권고사항

### 가. 요약

권고사항(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 나. 본문

< 권고사항 >

< 이행실적 >

### 다. 별첨(증빙자료 등)

<붙임-참고>

□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JTBC, MBN)

< JTBC : 제이티비씨(주) >

구 분	내 용
<p><b>재승인 조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li> <li>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li> <li>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지난 3년('14년 6건, '15년 4건, '16년 5건) 중 최소 법정제재 건수(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단, '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li> <li>4.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li> <li>5.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ol>
<p><b>권고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li> <li>○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것</li> </ul>



< MBN : (주)매일방송 >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li> <li>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 계획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8년은 6월 30일까지 별도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li> <li>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4건, '15년 2건, '16년 3건을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 재승인 유효기간까지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li> <li>4.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2018년부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불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li> <li>5.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li>6.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 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 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li>7.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li> </ol>

구 분	내 용
	<p>8.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b>권고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불만 사유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li> <li>○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당 시청자의 가시청시간대를 고려하여 편성할 것</li> <li>○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수익을 창출하여 협찬수익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고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li> <li>○ 계약직 및 파견직 등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2011년 승인 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li> <li>○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국산 방송장비 도입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li> </ul>

##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1

## 재난방송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가. 재난방송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재난방송 편성 실적,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재난방송 운영 기본 방향
- 재난방송 편성실적
-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
- 재난방송 시스템 및 조직·인력 운영실적
- 재난방송 교육실적
- 재난방송 모의훈련 실적
- 재난방송 매뉴얼 관리 현황
- 재난방송 신속성·정확성 등 충실성 강화 실적

□ 재난방송 편성 실적(양식)

< 재난방송 편성 현황 >												
구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0년 (방송시간) (분)		비고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재난방송	(%)	(%)	%	(%)	(%)	%	(%)	(%)	%	(%)	(%)	
전체방송 시간	(%)	(%)		(%)	(%)		(%)	(%)		(%)	(%)	

※ 2020년 재난방송 편성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재난방송 세부 편성 실적 >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양식)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 총괄표 >

(단위 : 건, %)

구 분	①통보건수	②실시건수	③미실시건수	실시율(%) (②/①*100)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합계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시 현황 >

통보문 제목	통보시각	방송시작시간	특보 (속보 포함)	자막 (스크 롤포 함)	spot (캠페 인등)	프로그 램내 반영	방송 형태	상세입력사항 (시스템내기타처리시)	비고
지진속 보	0000-00-00 00:00:00	0000-00-00 00:00:00	1	-	-	-	속보	뉴스속보 반영함	분이내
지진조 기경보	0000-00-00 00:00:00	0000-00-00 00:00:00					속보	뉴스속보 반영함	분이내
지진통 보	0000-00-00 00:00:00	0000-00-00 00:00:00					특보	9시뉴스 지진특보 반영	분이내

※ 2020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실적은 법령에 따른 재난방송 실시 의무대상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난방송온라인 시스템 상 통보된 전체 건수 등은 총괄표의 비고란에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재난방송 편성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재난방송 운영 기본방향
- 재난 예방방송 편성계획
  - 재난별 국민 행동요령, 재난예방 캠페인 등
- 재난방송 신속성·정확성 등 충실성 강화 계획

재난 예방방송 편성계획(양식)

(단위 : 분, %)

분야	2020년 4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난 예방방송 시간(분) (비율)						
전체방송시간(분)						

##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양식)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명시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제4장.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제5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특수관계자 확인서

###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이 확인서는 주식회사oooo가 2020년 0월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데 따른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의 준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법인)은 주식회사oooo 주주(첨부1) 가운데 본인과 「방송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본인(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여부
			주식수 (주)	지분율 (%)	
본 법인명					본 법인
총 계					

또한, 본인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기간 동안 주식회사oooo 주주(첨부1) 중 본인(법인)과 채무보증 관계에 있던 자의 명단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단위 : 백만원)

연월일(보증기간)	보증인	피보증인	보증내용	보증금액	비 고

2020년 00월 일

주 주 명 :

대표자명 : (인)

- 첨부 : 1. 주주현황(2020.4.30 기준) 1부  
2. 인감증명서 1부

< 참고 > : 특수관계자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10. 1. 26., 2016. 5. 27.>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 3. 10., 2008. 2. 29., 2016. 5. 27.>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삭제 <2016. 5. 27.>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49호)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첨부1)

주주현황

(2020.4.30 기준)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주식수(주)	지분율(%)
총계				100%

(첨부2) 인감증명서 1부

## 4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2017.1.1.~2020.4.30.)

※ MBN은 2017.9.1. ~ 2020.4.30. 기준 작성

## 1. 대표자 변경 현황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 2. 편성책임자 변경현황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이전 재승인 부터 2020년 3월말까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위원회 신고일자를 기재

### 3.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자성명 및 관계	비고
성 명 (대표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 명 (편성책임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제출

### 4. 편성책임자 공표 현황

편성책임자	공표방법	공표일시	횟수(회)

## 5

## 협찬 운영 현황('17.1.1.~'20.3.31.)

※ MBN은 2017.9.1. ~ 2020.3.31. 기준 작성

## 1. 협찬 운영 방향

## 2. 협찬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프로그램 제작 협찬	( %)	( %)	( %)	
캠페인 협찬	( %)	( %)	( %)	
행사 협찬	( %)	( %)	( %)	
시상품 협찬	( %)	( %)	( %)	
기타 협찬	( %)	( %)	( %)	
협찬수입 총계	( %)	( %)	( %)	
전체매출액				

1. 개요(2017.2.1. ~ 2020.4.30)

※ MBN: 2017.9.1. ~ 2020.4.30.

2. 주요 내용



## 7

## 관계회사 현황

□ 관계회사 현황(2020.4.30. 기준)

(단위 : 천원)

법인명	관계 <sup>1)</sup>	주요사업	지분율 (%)	콘텐츠 등 거래금액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1) 신청 법인 기준으로 지배회사는 '지배', 종속회사는 '종속',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는 '계열'로 표기

## 1. 특수관계자 방송사 현황(2020.4.30기준)

특수관계자명	승인·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채널명)	유형	특수관계내용	관련 법령
		PP	계열회사	방송법시행령 3조1항0목0호
			30% 출자	
			30% 출자	
			계열회사	
			계열회사	

## 2.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2020.4.30. 기준)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명	승인·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사업자명(채널명)	유형	출자금액 (단위:천원)	지분율 (%)
		지상파		

## 9

## 각종 수상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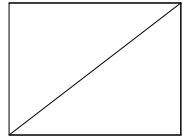
순번	수상년월일	수상자(소속)	프로그램명	수상제목	수여기관	수상내용	비고

## V. 승인장 사본

## VI. 주간기본편성표

- 재승인 대상이 되는 방송국의 주간기본편성표 제출
- 2020년 4월 30일 기준, A4 용지 규격

재승인신청서 ②



---

## 부속서류

---

원 본

2020. 00.

로고 (주)OO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 목 차

1. 법인등기부 등본 .....	0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0
3. 편성규약 전문 .....	0
4. 자체심의 실적 .....	0
5. 자체심의 규정 .....	0
6. 재무상태표 .....	0
7. 손익계산서 .....	0
8. 기타 .....	0



## 별도 제출 자료

1.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감사보고서 2부
2.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포함
3.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



## IV. 시청자 의견청취



## 1.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 의견접수 대상

- 2020년 하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유효기간 만료일
제이티비씨(주)	JTBC	홍정도 손석희 김용달	2020년 11월 30일
(주)매일방송	MBN	장승준 류호길	2020년 11월 30일

### 2. 의견접수 기간

- 2020년 8월 3일(월) ~ 2020년 9월 2일(수)

### 3.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JTBC, MBN)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JTBC, MBN)에게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고 재승인과 무관한 질문은 질의하지 않는 등 한정된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접수된 질문 중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 4. 의견제출 방법

○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참조)

※ 의견제출 및 질의는 1인 1회에 한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o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20.9.2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o 팩스 : 02-6488-9630

o 전자우편 : channel@korea.kr

## 5. 유의사항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함

o 의견제출은 [붙임]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 끝.

※ 시청자 의견은 다음과 같이 번호로 구분

- 1.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 2.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국민이 묻는다」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명(JTBC, MBN)	

### [의견 제출 내용]

1.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

2.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국민이 묻는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 2. 시청자 의견청취용 사업계획서 요약문

## 종편PP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 JTBC(제이티비씨)

구분	주요 내용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1. 명칭 : 제이티비씨 주식회사(JTBC Co., Ltd.) 2. 자본금 : 5,751억 원 3. 대표자 - 홍정도 대표이사 - 손석희 대표이사 - 김용달 대표이사 4. 편성책임자 : 윤희웅 실장 5. 주주 구성 - 최대주주 : 중앙홀딩스(유) - 주요주주 : (주)디와이홀딩스, (주)중앙일보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이행 실적</td> <td>                             1. <b>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b>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평가 공정성·다양성 4년 연속 1위                              - 7단계 사실검증(팩트체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실보도’ 노력                              - 연평균 50회 이상 가짜뉴스 검증 보도                              - 국내 최초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 인증 취득                              - 2017년 대선 선거방송, 36만 명 규모 SNS 시민자문단 운영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광고 &lt;나는 엄마입니다&gt; 등 제작·편성                              2. <b>시청자 권익 보호</b>                              - JTBC 시청자 조직 청년의회·스토리퀸 운영                              -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위해 시청자위원회·시청자평가원 운영                              - 재승인 기간 시청자 불만 접수 1만9,734건 100% 처리 완료                              - 시청자 백서 및 방송심의사례집 발간                              3. <b>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b>                              - &lt;두 도시 이야기&gt; 등 지역 밀착 프로그램 제작                              - 제주포럼·마라톤·자전거 대회 등 참여형 지역 기여 활동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가 돕겠습니다’ 캠페인 개최                              - ‘행복 동행, 테마가 있는 도서관’ 건립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향후계획</td> <td>                             1. <b>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b>                              - SNS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검증·삭제 위해 페이스북과 협업                              -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 시스템(가칭)’ 구축 자문                              -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기후변화 문제 탐사·기획 보도                              - 기술 발전·범죄 진화에 따른 공정성 가이드라인 보완                              2. <b>시청자 권익 보호</b>                              - 시청자 대상 오픈 강연 ‘토크콘서트(가제)’ 신설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시청자 접근성 개선                              - 인권보도·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신설                              3. <b>지역·사회·문화적 기여 계획</b>                              - 환경오염·지역갈등 관련 기획보도 강화                              -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 우리 역사·문화재를 조명하는 강연·다큐·드라마 제작                         </td> </tr> </table>	이행 실적	1. <b>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b>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평가 공정성·다양성 4년 연속 1위 - 7단계 사실검증(팩트체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실보도’ 노력 - 연평균 50회 이상 가짜뉴스 검증 보도 - 국내 최초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 인증 취득 - 2017년 대선 선거방송, 36만 명 규모 SNS 시민자문단 운영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광고 <나는 엄마입니다> 등 제작·편성 2. <b>시청자 권익 보호</b> - JTBC 시청자 조직 청년의회·스토리퀸 운영 -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위해 시청자위원회·시청자평가원 운영 - 재승인 기간 시청자 불만 접수 1만9,734건 100% 처리 완료 - 시청자 백서 및 방송심의사례집 발간 3. <b>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b> - <두 도시 이야기> 등 지역 밀착 프로그램 제작 - 제주포럼·마라톤·자전거 대회 등 참여형 지역 기여 활동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가 돕겠습니다’ 캠페인 개최 - ‘행복 동행, 테마가 있는 도서관’ 건립	향후계획	1. <b>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b> - SNS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검증·삭제 위해 페이스북과 협업 -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 시스템(가칭)’ 구축 자문 -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기후변화 문제 탐사·기획 보도 - 기술 발전·범죄 진화에 따른 공정성 가이드라인 보완 2. <b>시청자 권익 보호</b> - 시청자 대상 오픈 강연 ‘토크콘서트(가제)’ 신설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시청자 접근성 개선 - 인권보도·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신설 3. <b>지역·사회·문화적 기여 계획</b> - 환경오염·지역갈등 관련 기획보도 강화 -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 우리 역사·문화재를 조명하는 강연·다큐·드라마 제작
이행 실적	1. <b>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b>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평가 공정성·다양성 4년 연속 1위 - 7단계 사실검증(팩트체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실보도’ 노력 - 연평균 50회 이상 가짜뉴스 검증 보도 - 국내 최초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 인증 취득 - 2017년 대선 선거방송, 36만 명 규모 SNS 시민자문단 운영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광고 <나는 엄마입니다> 등 제작·편성 2. <b>시청자 권익 보호</b> - JTBC 시청자 조직 청년의회·스토리퀸 운영 -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위해 시청자위원회·시청자평가원 운영 - 재승인 기간 시청자 불만 접수 1만9,734건 100% 처리 완료 - 시청자 백서 및 방송심의사례집 발간 3. <b>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b> - <두 도시 이야기> 등 지역 밀착 프로그램 제작 - 제주포럼·마라톤·자전거 대회 등 참여형 지역 기여 활동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가 돕겠습니다’ 캠페인 개최 - ‘행복 동행, 테마가 있는 도서관’ 건립				
향후계획	1. <b>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b> - SNS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검증·삭제 위해 페이스북과 협업 -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 시스템(가칭)’ 구축 자문 -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기후변화 문제 탐사·기획 보도 - 기술 발전·범죄 진화에 따른 공정성 가이드라인 보완 2. <b>시청자 권익 보호</b> - 시청자 대상 오픈 강연 ‘토크콘서트(가제)’ 신설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시청자 접근성 개선 - 인권보도·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신설 3. <b>지역·사회·문화적 기여 계획</b> - 환경오염·지역갈등 관련 기획보도 강화 -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 우리 역사·문화재를 조명하는 강연·다큐·드라마 제작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이행 실적</td> <td>                             1. <b>방송 프로그램 수급</b>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편성                                  &lt;밤샘토론&gt;, &lt;신년특집 대토론&gt;, &lt;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gt;                              - 고품격 강연 프로그램 &lt;차이나는 클래스&gt; 7만 분 이상 편성                              - 건강·경제·직업·음식·취미 등 다양한 생활정보 프로그램 기획                         </td> </tr> </table>	이행 실적	1. <b>방송 프로그램 수급</b>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편성 <밤샘토론>, <신년특집 대토론>,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고품격 강연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래스> 7만 분 이상 편성 - 건강·경제·직업·음식·취미 등 다양한 생활정보 프로그램 기획		
이행 실적	1. <b>방송 프로그램 수급</b>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편성 <밤샘토론>, <신년특집 대토론>,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고품격 강연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래스> 7만 분 이상 편성 - 건강·경제·직업·음식·취미 등 다양한 생활정보 프로그램 기획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 편성 &lt;SKY 캐슬&gt;, &lt;멜로가 체질&gt;, &lt;눈이 부시게&gt;, &lt;힘센 여자 도봉순&gt; 등</li> <li>- 외주제작과 구매를 통한 프로그램 수급 비율 50% 이상 유지 (3년 간 99개 외주제작사, 24개 배급사로부터 프로그램 수급)</li> <li><b>2. 방송 프로그램의 투자 실적의 우수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승인기간 중 제작비 7천억 원 이상 투자(계획 대비 초과 달성)</li> <li>- 총 제작비 49%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보도, 예능, 다큐 제작)</li> <li>- 총 제작비 51% 외주제작 투자로 제작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li> <li>- 영화 등 다양한 방영권 구매(75억 원)로 시청권 확대 기여</li> </ul> </li> <li><b>3. 공익성 관련 방송 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2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li> <li>- 문화 다양성, 지역사회 발전, 한류 확산 기여 프로그램 편성 &lt;팬텀싱어&gt;, &lt;방구석 1열&gt;, &lt;밤도깨비&gt;, &lt;스테이지K&gt; 등</li> <li>- 비상업적 공익광고 3년 간 3,576분 편성(기준 대비 450% 편성) 성평등, 장애인식 개선, 폭력 예방 등 다양한 메시지 전달</li> <li>- 3년 간 약 3만 5,000분의 어린이 애니메이션 편성</li> <li>- 한국수어방송 5%,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 10% 이상 편성</li> </ul> </li> <li><b>4. 방송 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 20%, 교양 35%, 오락 45% 균형 편성</li> <li>- 보도·시사 장르 프로그램 편성비율 27% 유지</li> </ul> </li> </ul>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방송 프로그램 수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 심도 있는 탐사보도·토론 프로그램 편성</li> <li>- 고품격 강연 프로그램 &lt;차이나는 클래스&gt; 기획·편성</li> <li>- 생활정보 프로그램 고정 편성 및 확대 운영</li> <li>- 드라마, 연간 15 여개 타이틀 편성</li> <li>- 가족과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주말 예능, 시즌제 예능 기획</li> <li>- 올림픽 중계(2026년) 대비한 동계 스포츠, 다큐멘터리, 콘서트 편성</li> </ul> </li> <li><b>2. 방송 프로그램의 투자 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라마 기획·제작 강화, 대형 예능 프로그램 제작 투자</li> <li>- 2025년부터 UHD 방송 실시(보도, 드라마 등 25% UHD 편성)</li> </ul> </li> <li><b>3. 공익성 관련 방송 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 조작정보 검증 강화, 약자를 위한 기획 보도 강화</li> <li>- 어린이·청소년 시청권 보호를 위해 세이프티 존 운영</li> <li>- 스마트수어 서비스 활성화, 화면해설 신규 제작 확대</li> <li>- 장애 인식 개선 관련 보도 및 공익 캠페인 운영</li> </ul> </li> <li><b>4. 방송 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 20%, 교양 35%, 오락 45% 균형 편성 유지(드라마 확대)</li> <li>- 음악쇼, 스포츠, 영화 등 다양한 장르 편성</li> </ul> </li> </ul>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이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경영 전략 및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910명 직·간접 고용(직접 740명 + 간접 170명)</li> <li>-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21명의 제작인력과 18명 신입사원 총원</li> <li>-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li> <li>- 책임경영과 전문경영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li> <li>-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T기술 기업과 협업, 새로운 포맷 뉴스</li> </ul> </li> <li><b>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 5,598억 원(2017년)에서 5,751억 원(2020년)으로 증가</li> <li>- 방송사업매출 3,111억 원(2017년)에서 3,259억 원(2019년)으로 증가</li> <li>- 당기순이익 2017년 24억 원, 2018년 133억 원, 2019년 -249억 원</li> </ul> </li> <li><b>3. 방송기술 관련 투자</b></li> </ul>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 간 383억 원 방송시설 투자, 33억 원 규모의 국산 장비 도입</li> <li>- JTBC 일산제작센터와 JTBC 신사옥(서울 상암동) 구축 완료</li> <li>- 종합편성채널(방송사) 중 최대 규모인 9개의 복합 스튜디오 구축</li> <li>- 국내 최초 '친환경·초고용량 LED 조명' 공동 연구·스튜디오에 설치</li> </ul>
	향후계획	<p><b>1. 경영 전략 및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제보 핫라인 운영</li> <li>- K-IFRS로 회계기준 변경 후 SAP 최적화·내부회계관리 최신화</li> <li>- 해외 시청자를 위한 다국어 자막 삽입, 글로벌 시청자 접근성 확대</li> <li>- 글로벌向 콘텐츠 제작·한류 행사·스포츠 중계·글로벌 제휴 확대</li> </ul> <p><b>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매출 3,520억 원(2021년)에서 4,118억 원(2025년)으로 단계적 확대</li> <li>- 방송광고 외에 프로그램 판매 확대 등으로 수익 다각화 추진</li> </ul> <p><b>3. 방송기술 관련 투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HD 드라마 전용 CG 시스템 구축</li> <li>- 돌비(Dolby) 입체 음향 시스템 도입으로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li> </ul>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이행 실적	<p><b>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주제작사와 상생을 위해 &lt;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gt; 제정·실천</li> <li>- 보도제작시스템·선거방송프로그램 등 연구개발(R&amp;D)</li> <li>- VOD 콘텐츠 공급·공동 마케팅을 통해 유료방송 활성화에 기여</li> <li>- JTBC NOW·JTBC NEWS 자체 앱(APP)과 유튜브·페이스북 등 디지털 채널 운영</li> <li>- &lt;워크맨&gt;, &lt;와썹맨&gt; 등 디지털 전용 콘텐츠 제작 활성화</li> <li>- 디지털 뉴스 다양성을 위해 &lt;디지털 뉴스룸&gt;, &lt;소셜 라이브&gt;, &lt;헤이 뉴스&gt; 채널 운영</li> </ul> <p><b>2.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위반 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및 그외 타법 위반사항 없음</li> <li>- 심의제재 현황 6건, 기타 행정처분 3건</li> </ul> <p><b>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명령 처분 없음</li> </ul>
	향후계획	<p><b>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부터 매월 &lt;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gt; 자체 점검 실시, 외주정책 조기 안착 노력</li> <li>- UHD 방송장비 투자 및 디지털 플랫폼 개편·고도화 추진</li> <li>- 지역SO 활성화를 위해 SO기자 대상 저널리즘 교육 (반기 1회)</li> <li>- 해외 제작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콘텐츠 기획·제작 추진</li> <li>- Content London(영국), Series Mania(프랑스) 등 해외 콘텐츠 마켓 참여</li> </ul>
6.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이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속·정확한 통합재난방송 실시</li> <li>- 정부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통해 수신된 재난정보 즉시 송출</li> <li>- 뉴스 앱·온라인 SNS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재난 정보 실시간 제공</li> <li>- 대안을 제시하는 심층보도 및 재난피해 사전예방 정보 제공</li> <li>-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정보 집중 검증</li> <li>- 재난방송 시스템 정기 점검, 매월 전담 인력 교육·모의 훈련 실시</li> </ul>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평균 180분 이상 재난피해 사전예방 캠페인 영상 편성</li> <li>- 긴급 재해·재난 발생 시 안전예방 수칙 등 캠페인 편성 확대</li> <li>- 재난예방에 초점을 맞춘 심층보도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 편성</li> <li>- 신속한 재난 정보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적극 활용</li> <li>- 국민안전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조작정보 검증 강화</li> <li>- 재난방송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재난 CCTV 추가 설치</li> </ul>

□ MBN(엠비엔)

구분	주요 내용
<p>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이사 사장 장승준</li> <li>· 대표이사 전무 류호길</li> <li>· 편성책임자 정현석</li> <li>· 자본금 : 2,595억 원</li> <li>· 주주구성 : (주)매일경제신문사 등</li> </ul>
<p>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li> <li>(1) 공적책임·공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 3단계 검증</li> <li>- 문제 출연자 1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오보·막말·편파방송 발언에 대한 제재 강화</li> <li>- 정당별·이념별 출연자 균형 확보</li> <li>- 외부 전문가 포함 출연자심의위원회 운영</li> <li>- &lt;사실확인&gt; 뉴스 코너 신설 및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 &lt;사실확인&gt; 검증 과정 등 공개</li> <l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팩트체킹</li> <li>- 종합편성채널 유일 ‘열린 편집회의’ 도입</li> <li>- 노조 추천 외부 전문가 참여 공정방송위원회 운영</li> <li>- 감염병 보도 준칙,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 요강 등 보완한 각종 준칙 운영</li> <li>- &lt;종합뉴스&gt; 공정성 외부 평가</li> <li>-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 0건</li> <li>-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운영</li> <li>- KDX 한국 데이터거래소 설립 및 빅데이터 무료 공공서비스</li> <li>- 빅데이터 기반 분석 기사 공급</li> </ul> </li> <li>(2) 시청자 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 합의 시청자위원 선정 별도 위원회 구성</li> <li>- 장애인·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가 직접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출연</li> </ul> </li> <li>(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피해 극복 캠페인, 모금 진행</li> <li>- ‘참 좋은 의원상’, ‘공익변호사상’ 제정</li> <li>- 사회 공헌 프로그램 지속 편성</li> </ul> </li> <li>· 향후 5년간 계획</li> <li>(1) 공적책임·공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N기자협회 추천 외부전문가 포함 출연자심의위원회 운영</li> <li>- ‘열린 편집회의’ 확대 및 강화</li> <li>- 선거방송 자문단 상설화 및 정책 검증 강화</li> <li>-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격월 개최</li> </ul> </li> </ul>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 기반 각종 공공서비스 개발</li> <li>- 방송언어 및 차별적 언어에 대한 특별교육 강화</li> <li>(2) 시청자 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시청자 위원 다양성 제고</li> <li>- '시청자 뉴스 청원' 시스템 도입</li> </ul> </li> <li>(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사회 기여 프로그램 확대 및 신규 편성</li> </ul> </li> </ul>
<p>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12월~2020년 1분기 콘텐츠 투자에 2,248억 원 투자</li> <li>- 보도 30%, 교양 37%, 오락 33% 수준 편성</li> <li>- 드라마, 관찰예능, 음악 오디션 등 다양한 장르 프로그램 제작</li> <li>- 영화, 스포츠 장르 프로그램 편성 확대</li> <li>- &lt;보이스퀸&gt; 8.588%, &lt;우아한가&gt; 8.478% 등 킬러콘텐츠 개발로 MBN 최고 시청률 경신</li> <li>-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청 수요 변화 대응</li> <li>- MBN 자체 제작 프로그램 확대</li> <li>- 본방송 비율 60% 이상 달성</li> <li>- 전체 방송 시간 대비 37% 이상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li> </ul> </li> <li>·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투자비 매년 100억 원 내외 확대</li> <li>- 보도 26%, 교양 38%, 오락 36% 수준 편성</li> <li>- 정보와 재미가 조화된 예능 콘텐츠, 트렌디 드라마 편성으로 2040 세대 시청층 확대</li> <li>- 본방송 비율 매년 1% 내외 확대</li> </ul> </li> </ul>
<p>제4장. 경영·재정·기술적 능력</p>	<p>1) 경영적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12월~2020년 3월 116명 신규 채용</li> <li>- 2020년 3월 정규직 비율 94.3%</li> <li>-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으로 3천 명 이상 간접 고용 유발</li> <li>- 경영 정보 투명 공시</li> <li>- 방송·회계 전문 사외이사 3명으로 감사위원회 구성</li> <li>-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진출</li> <li>- 해외 콘텐츠 판매 매출 600% 이상 증가</li> </ul> </li> <li>·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정규직 중심 30여 명 신규 채용</li> <li>- 외주제작 협력 전담 조직 신설</li> <li>- 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수출 전담 조직 신설</li> <li>- 양성 평등 전담 조직 활성화</li> <li>- 인사 및 회계 자료 전산화</li> <li>-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li> </ul> </li> </ul>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수 프로그램의 시즌제 형태 스핀오프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li> <li>- OTT 유통 체인을 통한 MBN 킬러 콘텐츠 해외 배급</li> </ul> <p>2) 재정적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입 최소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실현</li> </ul> </li> <li>·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확대 및 협찬 의존 감소</li> </ul> </li> </ul> <p>3) 기술적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제작시스템 강화</li> <li>- UHD 방송장비 도입</li> </ul> </li> <li>·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MBN 삼송 제작센터 UHD 시스템 구축</li> <li>- 뉴스용 UHD급 영상서버·편집기 도입</li> <li>- 신규 투자 국산장비 비율 30% 초과</li> </ul> </li> </ul>
제5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주제작사의 기본 이익을 보장하는 제작비 책정</li> <li>- 외주제작사 인센티브제 운영, 선지급금·사전제작비 지급 확대</li> <li>- 표준계약서 사용, 합리적인 권리 배분</li> </ul> </li> <li>·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주제작 고충 처리 전담센터 설치</li> <li>-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제작비 인상 보장</li> <li>- AI앵커 등 인공지능 기술 방송에 적용</li> </ul> </li> </ul>
제6장.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속보 대응 및 특보 편성</li> <li>- 재난 대응책을 포함한 재난예방 프로그램 편성 강화</li> <li>- 재난 캠페인 적극 편성 및 하단 스크롤 자막 활성화</li> <li>- 재난방송 매뉴얼 수시 정비 및 교육 강화</li> <li>- 재난 전문 데스크 운영 및 신속대응팀 상시 대기</li> <li>- 재난 피해 극복 메시지를 담은 방송 편성</li> </ul> </li> <li>·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까지 'AI 앵커 속보' 시스템 도입</li> <li>- 유관 기관과 협력한 재난 전문 데스크 교육 강화</li> <li>- 재난 상황 팩트체크팀 운용 및 데이터분석팀 능력 함양</li> </ul> </li> </ul>



## V.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1.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안건, '18.12.12)

## 제 70차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일자	2018. 12. 12.	보 고 사 항
공개여부	공개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작성과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일자	2018. 12. .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2018. 12. 12.(수),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1. 보고 사유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의 재승인 조건 '17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2. 주요 경과

- '17. 3월                      보도PP 2사 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과
- '17. 3월, 11월              종편PP 4사 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과  
※ (주)조선방송 · (주)제이티비씨 · (주)채널에이('17.3.24), (주)매일방송('17.11.27)
- '18. 1월~4월                종편PP 4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접수
- '18. 4월~11월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외부 자문반\* 회의(4회) 개최  
\* 방송(2), 법률(1), 경영·회계(1), 시청자(2)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
- '18. 8월, 11월              종편PP 4사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현장실사
- '18. 10월~11월            회계 · 법률 전문가\* 자문회의(2회) 개최  
\* 회계사 4인, 변호사 2인 등 전문가 6인이 참석

## 3. 종합편성PP 재승인 조건 주요 내용

- 사업계획서상의 '17년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 이행 실적(4사 공통)

-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로 감소 또는 유지 이행 여부(4사 공통)
- 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운영 이행 여부((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
- 진행자 및 출연자 법정제재 시 출연정지 조치 이행 여부((주)조선방송)
- 사업계획서상의 '17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주)매일방송)
- 사업계획서상의 '17년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 합산비율 이행 여부((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 사업계획서상의 '17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4사 공통)
-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방안 이행 실적((주)매일방송)
- 사업계획서(추가개선계획서)상의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주)매일방송)

#### 4. 종합편성PP 이행실적 점검결과

- ① 사업계획서상의 '17년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 이행 실적(4사 공통)
  - 종편PP 4사가 재승인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음
- ②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로 감소 또는 유지 이행 여부(4사 공통)
  - '17년도 재승인((주)조선방송·(주)제이티비씨·(주)채널에이 3.24, (주)매일방송 11.27) 이후 방송분에 대해 '17년도에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는 없음

③ 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운영 이행 여부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

-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의 경우 오보·막말·편파 방송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④ 진행자 및 출연자 법정제재 시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출연정지 조치 이행 여부((주)조선방송)

- '17년도 재승인(3.24) 이후 방송분에 대해 '17년도에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가 없음

⑤ 사업계획서상의 재방비율 준수 현황((주)매일방송)

- (주)매일방송에게 부가된 재방비율 준수 조건과 관련, (주)매일방송은 '17년 12월 방송분에 대해 재방비율 47.5%이하로 유지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17.10.30.)하였으며, 위원회 실사 결과 46.45%를 기록하여 재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MBN의 '17년 12월 재방비율 현황 >

	(주)매일방송 계획 비율	(주)매일방송 제출 비율	방통위 실사* 결과
재방 비율	47.5%	47.35% (1,268,400초/2,678,400초)	46.45% (1,244,214초/2,678,400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시스템을 통해 '17년 12월 재방시간을 직접 측정한 결과 당초 (주)매일방송이 제시한 재방비율인 47.35% 보다 낮은 46.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⑥ 사업계획서상의 보도 관련 장르 편성비율 이행 여부((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 3개 종편PP((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에 부가된 보도 관련 4개 장르(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에 관한 편성비율 준수 조건과 관련, 3개 방송사 모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17년 보도 관련 4개 장르 편성비율 계획 및 실적 >

	TV조선	JTBC	채널A
계획(연간)	33.0%	32.58%	34.0%
사업자 제출 실적	30.05%	26.11%	30.1%
장르 재분류 후 실적	32.85%	26.11%	31.93%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 '17년 재승인 조건에서 제시한 15개 세부장르 기준은 붙임4 참조

- 방송사가 제출한 방송 프로그램 장르 중 방송사와 방통위 실무진 간 보도 관련 4개 장르 포함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전문가 프로그램 시사\*를 통해 장르를 판정하였음

\* 이행실적 점검 외부자문반(4.27, 11.9)은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당초 방송사가 보도 장르가 아니라고 제출한 TV조선의 '강적들'과 채널A '외부자들'은 '시사논평' 장르로서 보도 관련 4개 장르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⑦ 사업계획서상의 '17년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4사 공통)

(가) 콘텐츠 투자

- 종편4사 모두 재승인 심사('17. 3월, 11월) 시 제출한 콘텐츠 투자 계획상의 금액 이상을 준수했다고 실적을 제출함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17.12월분)
실적(계획)				

- 방통위 실사 결과,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은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 시 일부 금액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14년 제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주)채널에이와 (주)매일방송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한 결과 계획한 금액만큼 콘텐츠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18년 8월(종편PP 4사), 11월((주)제이티비씨를 제외한 3사) 2차례에 걸쳐 방송사 본사를 방문하여 방송제작비의 계정원장과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실사 진행

<방통위의 종편PP별 투자금액 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17.12월 1개월분)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계획 금액				
제출 실적(4.30)				
추가 제출(10월)				
제출 실적 합계				
차감 금액				
산정 후 콘텐츠 투자 실적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	미이행	미이행	이행	이행

※ 자체제작비의 경우 직접비만 콘텐츠 제작비로 인정되는 것과 관련, 방송 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붙임5 참조)을 좀 더 구체화,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이행실적점검 자문반의 의견이 있었음

(나) 콘텐츠 펀드 운영((주)조선방송)

○ (주)조선방송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0,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 운영은 계획대로 이행함

⑧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이행 실적((주)매일방송)

○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주)매일방송에서는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 3인의 감사위원회 구성,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18년 1월말에 제출했음

○ 그러나 (주)매일방송에서는 감사위원장으로 (주)매일방송의 현직 전무이사를 임명하여 경영의 독립성이라는 조건을 위배

- 또한 사외이사 2인을 임명했으나 방송 비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방송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최OO 제지회사 회장, 엄OO 지급결제 전문기업 회장

⑨ 사업계획서(추가개선계획서)상의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주)매일방송)

- (주)매일방송은 재승인 심사 시 추가개선계획서를 통해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제작비 현실화, 저작권 및 해외판매에 대한 권리 보장 등 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외주사와의 상생계획’을 준수하겠다고 제출함

<(주)매일방송이 제출한 ‘외주사와의 상생계획’>

① 정부 표준 계약서 사용 ② 선지급금 지급 기준 마련 ③ 외주제작사와 저작권 등 수익 배분 개선 ④ 제작사에 촬영원본 영상의 사용권 부여 ⑤ 제작비 현실화 ⑥ 외주 제작사와의 상생 간담회 반기별 1회 개최 ⑦ 저작권 및 해외 판매에 대한 권리 보장 ⑧ 사전 제작비 지급 확대

- 그러나 '17년 12월의 1개월 동안 (주)매일방송이 신규 또는 재계약한 외주제작 프로그램 4개를 대상으로 외주상생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 ① 정부표준계약서 사용, ⑤ 제작비 현실화 등 2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검토 결과, (주)매일방송의 계약서는 전체 조항의 개수가 총 00개에 불과하여 총 3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상의 내용이 상당 부분 누락되었으며, (주)매일방송 계약서의 일부 조항은 표준계약서에는 없는 외주사인 ‘을’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정부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재계약 프로그램의 경우 외주상생 계획에는 연간 물가인상률 이상의 제작비 인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제작비를 지급하여 계획을 불이행함

## 5. 종편PP 재승인 시 부과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였으나 (주)매일방송은 사회적 소수대상 방송프로그램 확대,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방안 마련, 최초 승인 시 제시한 일자리 확대방안 이행, 국산 방송장비 도입계획 이행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권고 사항	방송사	방송사 조치 현황
시청자 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	(주)조선방송, (주)매일방송	토론내용·출연자·진행자((주)조선방송), 진행자·출연자·방송언어((주)매일방송)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제작진에게 별도 송부하여 개선 요구
사회적 소수대상 프로그램 확대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는 소수대상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달성했으나 (주)매일방송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함
재방비율 감소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3사 모두 계획대비 재방비율 준수
재정건전성 확보	(주)제이티비씨	'17년도 128억원 유상증자, 방송사업매출 56%증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하여 권고사항 준수
편성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주)채널에이	편성위원회 분기 2회 개최, 회의록 사내 그룹웨어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등 권고 이행
협찬수익 의존감소	(주)매일방송	매출 다변화를 위한 신규 예능 및 드라마 편성 확대. 다만, '18년 상반기 매출만으로는 유의미한 협찬수익 의존도가 감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 방안 마련	(주)매일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시스템이 아닌 일반문서에 제작협찬 내역만 관리, 협찬 종류별 관리부서가 달라 협찬 전체 내역(제작협찬, 장소·소품, 시상품·경품 협찬)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li> <li>• 제작협찬 관련 내부 품의서를 전자결재 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하고 있어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li> </ul>

권고 사항	방송사	방송사 조치 현황
최초승인 시 제시한 일자리 확대방안 이행	(주)매일방송	비정규직의 매년 00%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18~ '22년까지 연간 00명의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초 승인 시 제시한 계획(2016년까지 직원을 000명으로 확대)을 이행하지 못함
국산 방송장비 도입계획 이행	(주)매일방송	점검대상 기간인 '17. 12월에 도입하기로 한 국산 조명 장비 도입 연기로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함

## 6. 보도PP 재승인 시 부과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권고 사항	방송사	방송사 조치 현황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고려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 티브이	프로그램에 대해 내부 전문기자, 해설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프로그램 출연자로 선정((주)와이티엔) 패널 중요성 인식, 단계별 검증 통해 선정((주)연합뉴스티브이) 하는 등 권고 이행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실효성 제고	(주)와이티엔	노사 각 5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운영('17년 2월, 3월 총 2회 개최)으로 권고 이행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주)연합뉴스 티브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연합뉴스티브이는 방송사로서 시청률, 조직구성, 수익구조 등에서 (주)연합뉴스와 차이가 있음</li> <li>• (주)연합뉴스가 다른 방송사와 비교하여 (주)연합뉴스TV에 대해 혜택을 더 주지 않기 때문에 타 방송사도 (주)연합뉴스에 불만제기를 하지 않고 있음</li> <li>• 그럼에도 연합뉴스가 (주)연합뉴스티브이의 광고영업을 대행하고 있어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li> </ul>
시청자위원회 구성다양성 제고	(주)연합뉴스 티브이	방통위가 권고한 후보자공모→적격여부 심사→( )배수 후보자 선정→위원 최종선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재정건전성 확보	(주)연합뉴스 티브이	16년, 17년 2년 연속흑자, 광고·수신료 매출액 매년 상승, 콘텐츠 판매 등을 통한 흑자기조 유지 도모 등 권고 이행

## 7. 조치방향(안)

- (주)채널에이 :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이에 관한 시정명령 부과
- (주)매일방송 : 콘텐츠 투자계획과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 (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임명)을 이행하지 않아 이에 관한 시정명령 부과
  -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중 '17년에 이행하지 않은 '외주사와 상생방안 준수' 및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중 '감사위원회 구성' 조건의 경우 '18년에 이행\*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실익이 없어짐
  - \* '18년부터 정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프로그램 제작비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였으며 감사위원장을 사외이사 중 1인으로 임명
- 권고사항 점검결과는 '20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주)매일방송과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

구분	점검사항	대상사업자	조치내용
재승인 조건	콘텐츠 투자	(주)채널에이	시정명령
	콘텐츠 투자	(주)매일방송	시정명령
	경영 전문성· 독립성·투명성 (사외이사 관련)		
권고 사항	사회적 소수대상 프로그램 확대, 출연자 선정 시 전문성·공정성 고려 등	종편·보도PP 공통	'20년 재승인 심사에 반영

## 8. 향후 계획

-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 : '18. 12. 12(수)~12. 26(수)
- 시정명령 의결 : '19. 1월 중

- 붙임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안) 1부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3.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4. 방송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1부
  5. 방송 프로그램 자체 제작비 산정기준 1부
  6. 시정명령 관련 법령 1부. 끝.

2.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속기록, '18.12.12)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12. 12.(수)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보고안전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 사유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2017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17년 3월 보도PP 2개사를 재승인하고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 3월과 11월 종편PP 4사를 재승인하고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종편PP 4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접수하고,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자문반 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과 11월 종편PP 4사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10월과 11월에 걸쳐 회계·법률 자문가에 대한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편성PP 재승인 조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 이행 실적 4사 공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로 감소 또는 유지 이행 여부(4사 공통) 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운영 이행 여부,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 해당사항입니다. 진행자 및 출연자 법정제재 시 출연정지 조치 이행 여부(주)조선방송),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주)매일방송),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 합산비율 이행여부(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4사 공통),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방안 이행 실적(주)매일방송), 사업계획서상의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주)매일방송)입니다. 다음으로 종합편성PP 이행실적 점검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종편PP 4사가 재승인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로 감소 또는 유지 조건의 경우 2017년도 재승인 이후 방송분에 대해 2017년도에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의 경우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넷째로 진행자 및 출연자 법정제재 시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출연정지 조치 이행 여부 조건의 경우 2017년도 재승인 이후 방송분에 대해 2017년도에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섯째로 매일방송에게 부가된 재방비율 준수 조건과 관련하여 매일방송은 2017년 12월 방송분에 대해 재방비율을 47.5%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위원회의 실사 결과 46.45%를 기록하여 재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3개 종편PP에 부가된 보도 관련 4개 장르에 관한 편성비율 준수 조건과 관련해서 3개 방송사 모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보도 관련 4개 장르 편성비율 계획 및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사가 제출한 방송 프로그램 장르 중에서 방송사와 방통위 실무진 간 보도 관련 4개 장르 포함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전문가 프로그램 시사를 통해 장르를 판정하였고, 이행실적 점검 자문반은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당초 방송사가 보도 관련 장르가 아니라고 제출한 TV조선의 '강적들'과 채널A의 '외부자들'은 '시사논평' 장르로서 보도 관련 4개 장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사업계획서상의 2017년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종편 4사 모두 재승인 심사 시 제출한 콘텐츠 투자계획상의 금액 이상을 준수했다고 실적을 제출하였으나 방통위 실사 결과, (주)조선방송과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은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 시 일부 금액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널에이와 (주)매일방송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한 결과 계획한 금액만큼 콘텐츠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통위의 종편PP별 투자금액 산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제작비의 경우 직접비만 콘텐츠 제작비로 인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을 좀 더 구체화,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이행실적점검 자문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방송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0,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 운영은 계획대로 이행하였습니다. 여덟째,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매일 방송에서는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 3인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2018년 1월 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일방송에서는 감사위원장으로 (주)매일방송의 현직 전무이사를 임명하여 경영의 독립성이라는 조건을 위배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사외이사 2인을 임명했으나 방송 비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째, 사업계획서상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주)매일방송은 재승인 심사 시 추가개선계획서를 통해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제작비 현실화, 저작권 및 해외판매에 대한 권리 보장 등 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외주사와의 상생계획'을 준수하겠다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의 1개월 동안 (주)매일방송이 신규 또는 재계약한 외주제작 프로그램 4개를 대상으로 외주상생계획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정부표준계약서 사용과 제작비 현실화 등 2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종편PP 재승인 시 부과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입니다.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였으나 (주)매일방송은 사회적 소수대상 방송프로그램 확대,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방안 마련, 최초 승인 시 제시한 일자리 확대방안 이행, 국산 방송장비 도입계획 이행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보도PP 재승인 시 부과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입니다. 보도PP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고려,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실효성 제고,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권고사항이 부과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지만 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에 연합뉴스가 연합뉴스티브이의 광고영업을 대행하고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방향(안)입니다. (주)채널에이는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이에 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주)매일방송은 콘텐츠 투자계획과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 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임명을 이행하지 않아 이에 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중 '17년에 이행하지 않은 '외주사와 상생방안 준수' 및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중 '감사위원회 구성' 조건의 경우에는 2018년에 이행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권고사항 점검결과는 2020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주)매일

방송과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를 2018년 12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주간 실시하고 2019년 1월 중 시정명령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우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작성하고 나서 혹시 사정변경이 있는 사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의 경우에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 관련해서 본인들이 다음번 주총에서 방송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공문 내용에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선임하겠다고 인적사항까지 온 것으로 아는데 받았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알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주총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인적사항까지 우리에게 제출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것은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참작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7년도의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계획만 가지고 이행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MBN에서 좀 더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것을 앞당겨서 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콘텐츠 제작비로 투자하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MBN과 채널A의 경우 액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방송사 이야기들 들어보면 주로 자료화면이거나 저작권에 관한 부분인데, 지상파나 또는 스포츠 중계권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협찬을 하다 보니까 지불해야 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과거 몇 년 전에 사용대가를 작년에 한꺼번에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받아야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 판단은 그것은 어쨌든 2017년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봐야 하기 때

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상파와의 프로그램사용료 대가, 그다음에 스포츠 중계권 총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저작권에 관한 문제인데, 어쨌든 돈이 그만큼 프로그램 제작비에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것이 언제 인정을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송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데 우리가 꼭 기계적으로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시정명령을 내려야겠다는 것보다는 방송현장의 어려움을 좀 더 경청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어쨌든 시정명령이 나가면 다음 재승인 심사 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방송사들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참작할 여지가 있는데 국장님 여지가 없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이것이 회계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저희가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적인 문제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 사무처에서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저희가 회계전문가 4명과 법률전문가 2명 포함해서 총 6명으로 전문가 자문반을 구성해서 저희가 두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때 자문반 6인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떠나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한 취지라는 것이 해당 연도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부과한 것을 감안할 때 예전에 2011년이나 2017년도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금액은 설사 2017년 한 해에 이것이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재승인 조건에 포함해서 전액을 다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쫓았습니다. 저희가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 안전에는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쨌든 채널A 같은 경우 약 100억원이라는 돈이 프로그램 제작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주장에 따르면 외주사에서 그 자료화면을 지상파로부터 많이 구입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을 외주사가 지불하지 않고 채널A에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제작비에 쓰인 돈은 맞습니다. 그것은 언제 인정을 받느냐는 것입니까? 과거에 썼기 때문에 과거의 회계로 처리해야 하고 털어야 되는데 돈이 '17년도에 지불됐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소급해서 회계 처리하기는 곤란한, 이미 재승인 심사가 다 끝났고, 그래서 억울한 측면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쓰였던 돈은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제작비로 투자했다는 것은 인정을 영원히 못 받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일단 회계처리하는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는 회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승인 관련해서는 회계처리 여부를 떠나서 해당 연도에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이 관점을 저희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17년도에 실제로 지출이 제작에 투자되지 않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혹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채널A에서 투자한 실적이 과거에 인정을 받아서 과거에 채널A가 콘텐츠 투자 미이행으로 인해 받았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분이 소급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종편들의 경우에 과거부터 항상 콘텐츠 투자실적의 경우에는 상당히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적이 과거 실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시정명령이나 저희가 부과했던 과징금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과거에 반영된다고 해서 채널A가 받을 수 있는 실익은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2017년 실적으로 다 인정해 주는 것은 또 저희 재승인 조건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이행실적 점검 자문반의 의견에 따르면 자체제작비의 경우에 직접비만 콘텐츠 제작비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부분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점검을 할 때 방송사들이 정확하게 이것이 간접제작비다, 직접제작비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명확하지 않은 조항이 있어서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이것은 빨리 해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제 보완하실 것입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내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서 지침을 주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우리가 방송사업자들 심사를 할 때, 이행점검 나갈 때 미리 예고했던 그 기준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마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도록 해서 안 됩니다. 예측이 가능하게 해 주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잘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매번 하는 것이지만 재허가·재승인 이행실적 점검은 일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해서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재승인·재허가 조건의 이행이라는 것은 이미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0%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작비 투자 문제, 재방비율 문제나 프로그램 편성 비율 문제는 원칙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100%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 2%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양해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석진 위원님 지적한 제작비 투자금액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안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무처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실적 점검 자문반의 의견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쪽에서 제출한 의견도 다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그리고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조건 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2017년 초에 종편사에 대해 재승인해 준 이후 지난 1년 반을 지켜보면 방송 품질 자체는 상당히 높여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재방 비율 준수나 보도 관련 장르 편성 비율 이행,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계획 또한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차이는 있었습지만 대체로 종편사들이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상당히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의무위반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종편사들이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투자도 많이 하니까 시청률이 높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종편 사업권을 승인해 줬던 취지입니다. 이 부분들, 즉 종편사들이 노력해서 실적을 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작비 투자 관련해서는 사무처에서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 이분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직접비만 콘텐츠제작비로 인정되는 부분들의 문제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잘 점검해서 우리가 일부러 사업자들이 투자비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최대한 성의를 갖고 투자도 한다면 그 부분들은 그것대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과정에서는 이런 기준에 모호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옥 부위원장

- 전반적으로 종편PP의 재승인 조건에 대해 이행실적이 양호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쟁점은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해서 콘텐츠 투자금액의 적절성 여부인 것 같습니다. 먼저 MBN의 2017년도 음악 저작권 및 스포츠중계권료 1년분 00원을 전액 제작비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점검대상기간인 '17년도 12월 한 달만을 균분해서 한 달 제작비만 인정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처리의 기본원칙인 발생주의 회계, 그리고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을 고려할 때 12월 한 달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널A의 경우에 2011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지상파 자료화면 저작권료의 일시 지급액 00원을 모두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17년분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채널A 측은 이 금액이 외주제작사의 지상파 자료화면 무단사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사용내역과 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운 우발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제 비용 지급시기인 2017년에 전액을 콘텐츠 투자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제작비로 계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처는 2017년 해당분인 00원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발 채무에 관한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고려할 때 채널A 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콘텐츠 투자를 재승인 조건의 하나로 부과 취지는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행실적의 관리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미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점들과 재승인 조건 부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17년도 해당 분만 인정한 사무처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채널A가 저작권료로 지급한 00원 가운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00원에 대해서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안분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2017년도 재무제표에 그대로 둘 것인지를 결정은 전적으로 채널A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 어떤 경우라도 방통위로서는 재승인 조건의 부과 취지와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을 감안할 때 2017년도 해당 분인 00원만 인정한 의결주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콘텐츠 제작비 부분 인정에 따라서 채널A는 당초 투자계획보다 00억 0,000만원, 즉 2.3%가 모자라고 매일방송은 0억 0,000만원, 즉 3.5%가 부족해서 재승인 조건의 미이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원칙을 고수해야만 하는 사무처 입장 역시 이해가 됩니다. 이번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원으로서 다른 안건보다 엄격한 심의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재승인 조건을 충실히 지키려는 종편사 임직원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방통위로서도 심결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자들이 아쉽긴 하겠지만 원칙을 지키려는 방통위 입장을 이해하고 내년에 좀 더 분발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김석진 위원님, 그리고 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사무처가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을 조속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작인력의 인건비나 제작에 투입되는 방송 제작비의 감가상각비가 콘텐츠 투자비에 반영되지 않는 점이나 외주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긴 하지만 외부 임대가 아닌 자체스튜디오 이용 시 시설관리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 회계원칙에 맞지 않은 내용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조속히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들 다 잘 말씀하셔서 저도 방송사 경영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채널A의 경우 정책당국에 호소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작권이라는 것이 저작권에 대한 돈을 일괄지급하게 되면 사실은 해마다 쓴 저작권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개수가 다릅니다. 2011년 다르고 2012년 다르고, 그런데 이것을 다 검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7년 분 N분의 1을 해서 회계처리상 그것만 인정한 것으로 되었는데, 회계원칙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자 측면에서는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워낙 명쾌하게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연합뉴스TV의 문제입니다.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사장이 겸임 사장입니다. 이것이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방송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인 광고를 다루는 업무가 신문 쪽인 연합뉴스 쪽에 있다는 것은 독립성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권고사항이 확실히 지켜지는지는 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YTN과 연합뉴스TV 같은 보도전문방송이 광고를 직접 영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광고제도를 개편하는데 그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이행실적 점검 하느라 사무처 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점검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것은 방송사들을 괴롭히거나 골탕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방송사로 발전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이것 가지고 지나친 규제를 하거나 불만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들이 이행실적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도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 장르 구분을 명확히 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장르를 구분해서 하는데 이런 쪽에도 할 수 있고 저쪽에도 할 수 있게 해서 뭔가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투자비 계산에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기준이 더 점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외주제작사와의 상생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방송의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생이 있지 않고서는, 말하자면 방송사가 외주제작사 또는 외주제작사에 종사하는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방송사가 몇 년은 견딜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견디기 어렵고 우리 방송이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을 통해 그들에게도 외주제작사, 그리고 외주제작사에 종사하는 또는 외주제작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안전하고 여유 있는 환경에서 제작할 수 있을 때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의 점검을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또 외주제작사의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들 간 상생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종편들, 나아가 우리 방송계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가령 정부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제작비를 현실화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근로시간



이나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는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점검해서 이런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3.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2사  
시정명령 (안건, '19.1.29)

##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 - 05 - 013 ~ 014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9. 1. 29.	
공개여부	공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9. 1.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

<2019. 1. 29.(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1. 의결주문

-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 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

의안번호	법인명 (채널명)	시정명령(안)
제2019-05-013호	(주)채널에이 (채널A)	· 2016년 10월 21일 제출한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17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부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할 것
제2019-05-014호	(주)매일방송 (MBN)	· 2017년 10월 30일 제출한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2017년 12월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부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할 것  · 2018년 1월 26일에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이행할 것

## 2. 제안이유

-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3. 경과사항

- '17. 3월, 11월                    종편PP 4사 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과  
  - ※ (주)조선방송·(주)제이티비씨·(주)채널에이('17.3.24), (주)매일방송('17.11.27)
- '18. 1월~4월                    종편PP 4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접수

- o '18. 4월~11월                    종편PP 4사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 o '18. 12. 12.                    (주채널에이·(주매일방송)에 시정명령 사전통지
- o '18. 12. 26.                    (주채널에이·(주매일방송)에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 4.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및 피심인 의견

- o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콘텐츠 투자계획(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외주사와의 상생방안(주매일방송)
- 다만, 감사제도 개선계획과 외주상생방안은 각각 '18년 12월과 '18년 6월 기준으로 이행되어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

#### < 사업자별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

법인명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주채널에이	(콘텐츠 투자계획) 재승인 신청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출('16. 10. 21.)한 '17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00,000백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00,000백만원(97.7%)을 투자하여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함
(주매일방송	(콘텐츠 투자계획) 재승인 신청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출('17. 10. 30.)한 '17년도 12월 콘텐츠 투자계획 0,000백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0,000백만원(96.5%)을 투자하여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함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18. 1. 26.)으로 제출한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함  (외주사와의 상생방안) 재승인 심사 시 추가개선계획서('17. 11. 27.)에서 제출한 외주사와의 상생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함

#### o (피심인의 주요 의견)

가. (주채널에이

- 이행실적 점검보고 당일('18. 12. 12)에 방통위의 제작비 산정기준을 정확히 파악했으며, 타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가자료 제출을 받아줘야 함

※ 방통위 측에서 언급한 “'17년도 해당비용이라도 '17년도 제작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7년도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채널A가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외부정보 이용자로부터 재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자체시설이나 장비 이용은 직접제작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외주제작시설이나 장비를 빌려 사용하는 사업자의 비용은 콘텐츠 투자비로 인정받는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은 방송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비합리적 내용임
- (주)채널에이가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항목은 ①광화문 사옥 방송시설 및 상암동 DDMC 방송시설 관리비용(전기, 공조, 세트 관련 기계시설 관리비) 0억원, ②기존 외주사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채널에이 스튜디오, 종편실 등의 이용계약을 유상으로 변경할 금액 0억원, ③작가협회, 방송실연자협회, MBC 등에 '18년에 지급한 '17년도분 저작권료 0억원, ④지상파(KBS, SBS) 자료화면 사용 저작권료 0억원('11. 12.~'17.3월분) 중 외주사 제작분 금액에 대해 (주)채널에이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비용 0억원 등 총 00억원임

#### 나. (주)매일방송

- 2018년 4월 30일 제출한 2017년 12월분 콘텐츠 투자비용에는 음악저작권, 스포츠 영상사용료와 같이 1년치 사용분을 12월에 한꺼번에 정산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12월 이전에 미리 예측하여 월별로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확정되는 시점인 12월에 제작비로 인식했음
- 매경닷컴과 체결한 운영대행 계약비용의 계약서에 '인터넷 및 모바일용 동영상 제작하고 이를 유통 및 운영'한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프로그램을 가공한 뒤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의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대가로 제작의 범주에 포함됨
- 2018년 3월 31일 제출한 현 사외이사 3인 중 최OO 이사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주)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 대표이사를 맡은 방송전문가이며, 엄OO 이사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방

송산업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사인 만큼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에 부합함

## 5. 검토 의견

### ○ (주)채널에이 관련

- 콘텐츠 투자실적 인정 여부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방통위가 사전에 제시한 현행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광화문 사옥 방송시설 및 상암동 DDMC 방송시설 관리비용(전기, 공조, 세트 관련 기계시설 관리비 등) 0억원은 방송제작에 직접 소용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주)채널에이의 스튜디오 등에 대한 이용계약을 유상으로 변경하고 외주사에 지급할 예정인 제작시설 이용비용 0억원 및 '18년에 지급한 '17년도분 저작권료 0억원의 경우, 콘텐츠 투자금액 인정은 해당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17년도 재무제표에 없는 해당 비용을 '17년도 콘텐츠 투자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지급한 자료화면 사용 관련 손해배상금 00억원 ('11. 12.~'17. 3월분) 중 외주사 제작분 금액에 대해 (주)채널에이가 외주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비용 0억원의 경우, 손해배상금 0억원 중 '17년도분 0억원을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이미 인정했으며, (주)채널에이의 외주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는 방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 ○ (주)매일방송 관련

- 음악저작권과 야구·축구·농구 등 스포츠 영상사용료는 '17년 12월전에 확정되었으므로 월별로 비용의 분배가 가능하여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매경닷컴과 체결한 운영대행 계약은 송출대행 또는 프로그램 전송료

성격을 띠고 있으며, 피심인에게 구체적 근거자료를 요청했으나 피심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 업OO 사외이사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고 하나 방송분야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박OO 사외이사도 방송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워 사외이사 2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피심인이 2018년 1월 26일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개편'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 o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피심인들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결주문과 같이 시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함

## 6. 향후 계획

- o 시정명령 통보 : '19. 1월 중

- 붙임 1. 피심인 제출 의견  
2. 종편PP 재승인조건  
3. 관련 법령. 끝.



4. '17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2사  
시정명령 (속기록, '19.1.29)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1. 29.(화) 15:0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19-05-013~014)

###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채널에이는 2016년 10월 21일 제출한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2017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부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할 것, 매일방송은 2017년 10월 30일 제출한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2017년 12월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부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할 것, 또한 2018년 1월 26일에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이행할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017년 3월과 11월 종편PP 4사에 대한 재승인과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하였고,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종편PP 4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편PP 4사의 2017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12월 12일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에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였고,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이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승인조건 위반 사항 및 피심인 의견입니다. 콘텐츠 투자계획은 (주)채널에이·(주)매일방송이,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과 외주사와의 상생방안은 (주)매일방송이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다만, 매일방송의 감사제도 개선계획과 외주상생방안은 각각 2018년 12월과 2018년 6월 기준으로 이행되어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자별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심인의 주요 의견입니다. 채널에이는 이행실적 점검 보고 당일에 방통위의 제작비 산정기준을 정확히 파악했으며, 타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받아줘야 함.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시설이나 장비 이용은 직접제작비로 인정 받지 못하고 외주제작시설이나 장비를 빌려 사용하는 사업자의 비용은 콘텐츠 투자비로 인정 받는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은 방송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비합리적 내용임.

2018년 3월 31일 제출한 현 사외이사 3인 중 최OO 이사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주)한국케 이 블TV 나라방송 대표이사를 맡은 방송전문가이며, 엄OO 이사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방송산업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사인 만큼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에 부합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채널에이의 경우 콘텐츠 투자실적 인정 여부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방통위에 사전에 제시된 현행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엄OO 사외이사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고 하나 방송분야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박OO 사외이사는 방송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워 사외이사 2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피심인이 2018년 1월 26일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개편'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피심인들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결주문과 같이 시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일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1월 중 시정명령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도 방송사에서 임원을 지낸 사람이고, 방송사 경영을 해 본 입장에서 보면, 특히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방통위가 적용하는 이 기준이 충분히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진에서 여러 회계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회계처리 원칙상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저도 달리 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축성이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승인 또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어려운 점도 우리가 정책행정기관으로서 살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 안건은 작년 제70차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방송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것으로서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밝혔지만 콘텐츠 투자금액에 대한 인정 여부는 발생주의, 그리고 기간의 구분, 수입과 비용 대응 원칙 등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방송시설 및 장비 이용에 대한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이 일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고, 사전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향후 보완키로 했다는 점도 명백하게 지난번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사무처가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통해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의 의견을 접수했고 회계사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매일방송의 경영전문성 또 투명성 확보 방안은 상반기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은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로 사외이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매일방송이 종편PP 사업 승인조건의 중대함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원안에 동의하고 각 방송사는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충분히 사업자 의견을 우리는 참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 위원님 말씀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생 언론사의 일종의 피할 수 없는 애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비용을 정산한 당해 연도만 인정해 줄 것인지, 그 전에 소급해서 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제회계처리기준을 따랐다고 하나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2017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용이 인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그 전에 사용하고도 지불하지 않았던 돈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공중에 날아간 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된다, 그것을 다시 인정을 받아서 끼워 넣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는 일단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다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피심인 제출의견을 보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로부터 재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위해서라도 실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제작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리고 자료화면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서 사업자 서로 간 논란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직접제작비, 간접제작비 간 경계선이 모호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금년도에 정책연구과제 형태로 해서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지난번 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특히 직접제작비, 간접제작비의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예시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나중에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빨리 정리를 해서 사업자에게 통지해서 재승인 또는 재허가 심사를 받을 때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회계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도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했는데 왜 한달치만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매일방송 같은 경우 신생 언론사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너무 엄격한 잣대로 해서 사업자를 옥죄고 있다는 인식을 줄 것이 아니라 뭔가 방송의 현실적인 어려움, 또 현장의 사정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처리 지침대로 하는 것은 경직된 행정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방송의 방송전문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외이사 3인 중 최OO 이사는 (주)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 대표이사 경력을 가졌다는데 이분은 방송전문가로서 경력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3인 중 2인이 방송 전문성이 없다고 봤다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부분도 지금 매일에서 피심인 제출의견서를 낸 것을 보면 이것도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설득을 해서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과 회계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투자를 했는데 회계상의 잘못으로 귀책사유는 그쪽에 있는 것이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표철수 위원님, 김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풀리도록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리 대처해서 회계를 맞게 제대로 하게 한다든지 그런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송사들이 이런 것을 제출할 때 그런 회계원칙에 맞도록 아까 김석진 위원님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미리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각 방송사들 입장에서 억울하다면서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방통위가 이번 기회에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아까 고삼석 위원님께서 떠나시면서 나머지 안전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5. '18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안건, '19.11.22)

##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일자	2019. 11. 22.	보 고 사 항
공개여부	공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8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작성과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일자	2019. 11. .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8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2019. 11. 22.(금),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1. 보고 사유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총편PP')·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의 '18년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2. 주요 경과

- '17. 3월, 11월 : 총편·보도PP (조건부)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과
  - ※ (주)와이티엔·(주)연합뉴스티브이('17.3.9.), (주)조선방송·(주)제이티비씨·(주)채널에이('17.3.24.)·(주)매일방송('17.11.27.)
- '19. 1월~4월 : 총편PP 재승인 조건에 대한 '18년도 이행실적 접수
- '19. 6월~7월 : 총편PP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현장실사
  - ※ 회계분야 3인, 방송분야 2인, 사무처 2인으로 이행실적 점검반을 구성·운영
- '19. 8월, 10월 : 외부자문단 회의(대면1회, 서면1회) 개최
  - ※ 방송분야 2인, 법률분야 1인, 경영·회계분야 1인, 시청자분야 1인 등 전문가 5인으로 구성·운영
- '19. 10월 : (주)매일방송의 재승인 조건 중 방송발전계획(외주사와 상생방안)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추가 현장실사
  - ※ 사무처 2인(방송지원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

### 3. 종편PP 재승인 조건 주요내용

#### < 재승인 조건 및 이행실적 제출시한 >

구 분		제출시한
방송의 공적책임	①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 준수 (공통)	1월말
	② 오보·막말·편파방송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 (공통)	1월말
	③ 검증기구 운영 (TV조선, 채널A)	1월말
	④ 진행자·출연자 법정 제재 시 출연정지 (TV조선)	1월말
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⑤ 뉴스 탐사,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 준수 (공통)	1월말
	⑥ 재방비율 준수 (MBN)	1월말
	⑦ 콘텐츠투자금액 준수 (공통)	4월말
	⑧ 콘텐츠 펀드 조성 (TV조선)	4월말
기 타	⑨ 외주상생방안 준수 (MBN)	1월말
	⑩ 경영전문성·독립성 확보 이행실적 (MBN)	3월말

#### < 방송의 공적책임 >

- ① (공통)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 ② (공통) 방송심의 규정(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언어 등)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 ③ (TV조선, 채널A)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 ④ (TV조선)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 시, 진행자·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

#### <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

- ⑤ (공통)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
- ⑥ (MBN)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42.4%) 이내로 편성할 것

- ⑦ (공통) 사업계획서/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 ⑧ (TV조선)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

< 기타 >

- ⑨ (MBN)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
- ⑩ (MBN)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4.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 ① (공통)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 종편PP 4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상의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을 이행하고 있음

※ TV조선 추가개선계획 : 생방송 시사 관련 프로그램 축소, 한 개의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프로그램 폐지, 타 종편PP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등

※ MBN 추가개선계획 : 진행자 징계 강화(1회 내부징계, 2회 진행자 교체),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법정제재 3회시 폐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 ② (공통) 방송심의 규정(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언어 등)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 '18년 해당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총 7건으로 4개사 모두 4건 이하임

※ TV조선 : 3건, 채널A : 1건, MBN : 3건

< 해당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주요내용 >

사업자	제 목	일 시	주요내용	적용조항	방심위 결정 (결정일)	방통위 처분일
TV 조선 (3건)	뉴스9	'18.4.17.	드루킹 댓글	제 14조(객관성) 제 15조(출처명시)	주의 (‘18.6.25.)	‘18.7.11.
	뉴스7	'18.5.19.	풍계리 취재 1만 달러	제 14조(객관성)	주의 (‘18.7.9.)	‘18.8.1.
	신통 방통	'18.6.25.	강진 살인사건 묘사	제20조(명예훼손금지)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7조(품위유지)	주의 (‘18.10.22.)	‘18.11.8.
채널A (1건)	뉴스 특급	'18.1.17.	여자하키 대표팀 자료화면 왜곡	제9조(공정성) 제 14조(객관성) 제 15조(출처명시)	주의 (‘18.5.28.)	‘18.6.18.
MBN (3건)	뉴스 파이터*	'17.9.12.	240번 버스 오보	제 14조(객관성)	주의 (‘18.4.9.)	‘18.4.24.
	뉴스 파이터	'18.6.20.	여성상의 탈의 장면 자료화면 노출	제21조(인권 보호) 제27조(품위유지) 제35조(성표현)	주의 (‘18.10.22.)	‘18.11.8.
	뉴스8	'18.7.24	노회찬 의원 타살설	제 14조(객관성)	경고 (‘18.10.22.)	‘18.11.8.

\* 해당 건은 '17년 재승인 심사 및 이행실적 점검 시 未반영 되었고, 법정제재는 처분일 기준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자문 및 외부자문단 의견에 따라 '18년 이행실적 점검 시 반영

③ (TV조선, 채널A)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o 관련 심의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기구 운영(TV조선 월1회 '공정 보도특별위원회', 채널A 분기별 '공정보도 심의위원회' 등)

④ (TV조선)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 시, 진행자·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

o 해당 프로그램(신통방통) 진행자('18.11.17.)와 외부 출연자 2명('18.11.21.)에게 무기한 출연정지 조치를 실시하였음

⑤ (공통)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

o 4개사 모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음

구 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계 획(연간)	32.80%	29.11%	34.44%	33.40%
사업자 제출실적	30.09%	26.74%	26.63%	33.10%
방통위 점검결과	32.58%	26.73%	29.21%	33.08%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 '17년 이행실적 점검 당시 외부자문단의 판정에 따라, 당초 방송사가 보도 관련 장르가 아니라고 제출한 TV조선의 '강적들'과 채널A의 '외부자들'은 보도 관련 장르에 해당함

⑥ (MBN)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42.4%) 이내로 편성할 것

○ 점검 결과 42.26%를 기록하여 재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주)매일방송 계획 비율	제출실적 및 점검결과
재방 비율	42.40%	42.26% (222,100/525,600시간)

⑦ (공통) 사업계획서/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 4개사 모두 방통위의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을 따르지 않은 금액이 일부 있었으나, 해당 금액을 가감하더라도 계획한 금액 만큼 콘텐츠 투자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

구 분 (단위:백만 원)	TV조선	JTBC	채널A	MBN
계 획				
제출실적				
점검결과				
점검 후 투자금액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 '19.6.~7월 현장실사를 통해 방송제작비의 계정원장과 증빙자료를 확인했고, 외부자문단 회의 결과 임직원 프로그램 출연료(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실비 변상적인 금액)를 추가로 직접제작비로 인정하기로 함

※ '17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시 외부자문단이 조치필요사항으로 지적한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 구체화·명확화'는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안) 의결(8.23.)을 통해 개선 완료하였음



⑧ (TV조선)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

- 만기 도래한 펀드를 재구성(총 000억 중 TV조선 출자액 00억 원)하고, 0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 0개를 추가로 조성하여 '18년 계획(0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 조성완료 및 운용 시작)을 준수(총 0000억 원)

⑨ (MBN)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

- 총 8가지의 외주상생 계획을 이행하였음

※ 총 00건(신규계약 00건, 재계약 00건)의 외주계약을 대상으로 외주상생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지원)

※ '제작비 현실화' 및 '저작권 및 해외판매 권리보장'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 현장실사를 실시(10. 25.)하여 프로그램별 계약서 원본을 확인

구분	계획	결과	세부내용
1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프로그램(25개) : 이행 완료</li> <li>- 전년 점검 시 공지한 필수조항을 계약서에 포함</li> <li>○ '18년 방영권 구매 프로그램(4개) : 수정이행</li> <li>- 표준계약서가 제작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시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li> <li>- 다만 MBN 측은 제작사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저작권, 방송횟수, 편집 등에서 제작사의 권리를 모두 수용했고 향후에는 구매 시에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함</li> </ul>
2	선지급금 기준 마련	이행	○ 선지급금 기준 마련 완료('18.2.27) 및 4개 프로그램 선지급금 지불
3	저작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제정	이행	○ 저작권 수익배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완료('18.2.27) 및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함으로써 이행
4	촬영원본 영상사용권 부여	이행	○ 계약 시, 제작사에 협의 후 영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 (다만, 영상사용권을 요청한 제작사는 없음)

구분	계획	결과	세부내용
5	제작비 현실화	이행	○ 신규프로그램 : 이행 - 기업이윤을 보장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서에도 제작비 관련 논의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기존프로그램 : 이행 - 12개 프로그램 모두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제작비 인상
6	외주사 상생간담회 및 시장동향 점검회의 개최	이행	○ 외주사 상생간담회 : 이행 - 반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외주 제작사 10곳에 포상금과 상패 등 인센티브 제공  ○ 시장동향점검회의 개최 : 이행(분기별 회의록 제출)
7	저작권 및 해외판매 권리보장	이행	○ 외주사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외판매 권리 및 저작권을 공유하며 기본적으로 저작권 및 판권은 외주사에게 부여하고 방송사가 국내방영권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계약서 작성
8	사전제작비 지급 확대	이행	○ 9개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제작비 지급 완료 - ‘초기 제작에 제작비의 상당부분이 소요되는 해외촬영 제작물, 대형 오락물, 드라마 프로그램’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

※ 자문단 의견 : 표준계약을 적용하지 않은 구매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그 실질을 살폈을 때 재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⑩ (MBN)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 '17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18.12.12. 보고)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진이 경영의 전문성·독립성 조건을 위배했다는 사유로 방통위의 시정명령 처분('19.1.)을 받았으며, MBN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19.5.)

○ MBN은 이와 별개로 '19.3.22.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인사로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진을 재편하였음

※ 감사위원장 김00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외이사 고△△ 前 방송사 감사

※ 자문단 의견 : '18년에는 이행실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나,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감안하여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위반 상황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

## 5.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

권고사항	방송사	조치현황
시청자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	TV조선, MBN	15유형으로 확대 관리하며 매일 모든 제작진에게 공유(TV조선), 5항목 13세부사유로 구분·관리하며, 홈페이지에 공개(MBN)
사회적소수자 프로그램 확대	공통	4사는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달성하였음
재방비율 감소	TV조선, JTBC, 채널A	3사 모두 전년대비 재방비율 감소 ※ TV조선 38.77%→38.63%, JTBC 38.7%→36.7%, 채널A 43.0%→40.47%
재정건전성 확보	JTBC	'18년도 153억원 유상증자, 전년대비 방송사업매출 12%증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흑자를 유지하여 권고사항 준수
편성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채널A	편성위원회 8회 개최, 회의록을 사내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 권고사항 준수
협찬 의존감소, 투명한 회계관리	MBN	- 17개 신규 예능 및 드라마 편성 확대를 통한 매출 다변화 노력과 함께, 뉴미디어 매출·콘텐츠 판매 증가 등을 통한 협찬 의존도 감소 동시 추진 - 협찬 매출을 기업별, 내역별로 관리하고 있음
일자리 확대	MBN	비정규직의 매년 00%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18~ '22년까지 연간 00명의 신규 채용 계획 수립 및 '18년 계획 이행
국산방송장비 도입계획 이행	MBN	'18년 계획 이상으로 국산방송장비를 도입하여 권고사항 준수

## 6.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

- YTN은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권고사항	방송사	조치현황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고려	YTN, 연합뉴스 TV	(YTN) 프로그램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부 전문기자, 해설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프로그램 출연자로 선정  (연합뉴스TV) ‘패널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패널 검증 강화,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및 타사 심의제재 사례 교육을 통한 보도의 공정성 및 품격제고 노력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실효성 제고	YTN	- YTN 사장 선임 및 노동조합 파업 등의 현안으로 인해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보도국장과 공정방송추진위원장 간의 면담을 통해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노력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연합뉴스 TV	- 비록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나, 연합뉴스TV는 주요주주 대표로 구성된 사외이사제도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광고매출목표 및 실적점검 등 경영사안 관련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하고자 노력  - 연합뉴스TV 측은 향후 모바일광고 등 뉴미디어 분야의 독자영업능력을 강화하고 광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
시청자위원회 구성다양성 제고	연합뉴스 TV	방통위 권고(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체운영내규를 개정  ※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구성→후보자공모→19개 민간 단체 후보자 추천 요청→적격여부 심사→최종선정
재정건전성 확보	연합뉴스 TV	- 3년('16~18년) 연속 흑자, 광고·수신료 매출 상승  - 대외 홍보·마케팅활동을 통해 매출 상승 여력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 7. 조치방향(안)

-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및 권고사항 점검결과는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20년 재승인 심사에 반영
-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9년 말까지 이행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
  - ※ MBN의 재승인 조건 중 '18년에 이행하지 않은 '경영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조건의 경우 '19년에 이행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실익이 없어짐
  - ※ YTN의 권고사항 중 '18년에 이행하지 않은 '공정방송위원회 정기적 운영'의 경우 '19년 이행(8월말 기준 6회 개최)하여 이행을 촉구할 실익이 없어짐

- 붙임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2.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3. 방송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1부
4. 방송 프로그램 자체 제작비 산정기준 1부. 끝.

6. '18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속기록, '19.11.22)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11. 22.(금) 09:03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허 욱 상임위원 (1인)

##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8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8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2018년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지난 '17년도에 종편·보도PP 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4월까지 이행실적을 접수받았고, 6월~7월에 걸쳐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외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에 (주)매일방송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편PP 재승인 조건 주요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별로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된 사항 4가지,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관련된 사항 4가지, 그리고 기타 사항 2가지 등 총 10가지 조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된 조건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재승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 언어 등과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이것을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조건이 있고,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TV조선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진행자와 출연자에 대해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과 관련해서는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TV조선 관련해서는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조건으로 MBN에 대해서 외주 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 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 그리고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10가지 재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준수하라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종편PP 4개사 모두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상의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종편 4사가 '18년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가 총 7건으로 4개사 모두 4건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은 페이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TV조선의 경우 3건, 채널A 1건, MBN 3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TV조선과 채널A에 부과된 검증기구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TV조선이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채널A가 공정보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TV조선의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시,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신통방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진행자와 외부 출연자 2명에 대해 무기한 출연정지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관련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조건에 대해서도 4개사 모두 제시한 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은 뒤 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MBN에 부과되었던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조건의 경우에 42.26%를 기록하여 재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조건 관련해서는 4개사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정 기준을 일부 따르지 않은 금액이며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가감하더라도 계획된 금액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은 역시 밑에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장실사 기간 동안 방송제작비의 계정원장과 증빙자료를 확인해서 점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TV조선에 부과한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18년도에 0,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었는데 총 0,000억원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출자 증서를 확인했습니다. 아홉 번째, MBN의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준수하라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밑에 <표>에 다음 페이지까지 걸쳐 있습니다. 8가지 외주상생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총 29건의 외주계약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송기반국의 협조를 얻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제작비 현실화 등 추가 현장실사를 실시해서 계약서 원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시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MBN에 대해서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MBN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MBN은 이와 별개로 지난 3월 22일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인사로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진을 재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문단에서 일정 부분 위반사항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입니다. 사업자별로 각각 총 8가지 권고사항을 부과했었는데 모두 준수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역시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은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연합뉴스TV의 경우에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YTN은 '18년도에 파업 등의 현안으로 인해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노사 대표 간 면담을 통해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TV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제도와 감사위원회를 통해 경영 사안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향후 모바일 광고 등 뉴미디어 분야의 독자 영업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방향입니다. 먼저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 점검결과는 2020년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자료로 제공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9년 말까지 이 부분에 관한 이행계획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매일방송과 YTN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실익이 없어진 사안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조치를 하지 않지만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이 조금 격이 다른데 재승인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행을 다한 것으로 되었으니까 잘 된 것으로 봅니다. 권고사항 가운데 아직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지요? 왜냐하면 연합 뉴스TV는 내년 초에 재승인 대상 사업자니까 아마 이것과 연계해서 이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유경영의 분리 문제, 그다음에 텔레비전의 재원의 주축인 광고영업을 연합뉴스 쪽에서 하고 있는 이 문제도 시정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는 특별히 추가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이 종편PP들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고 매체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어서 상당히 진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부적으로도 받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었는데, 다행히도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대한 법정제재가 우리가 제시했던 연 4건 이하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경영전문 성과 독립성 확보 이행실적은 MBN이 조금 처졌지만 나중에는 위반사항이 해소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떤 조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만, 보도PP인 연합뉴스 TV는 광고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도PP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도PP는 시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오락 프로그램이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공공성이 강한 뉴스전문채널입니다. 그래서 독자 영업을 하면 광고영업행위가 뉴스편성에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KOBACO나 랩을 통해 공동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YTN은 직접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서 랩을 통해 공동영업을 해서 좀 더 투명성과 공영성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도PP도 잘 안착을 해서 매체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종편과 보도PP를 승인해 줬으면 그만큼 시장에서 잘 진입되어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융합시대이고, 또 M&A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 혁신 노력을 해서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보도PP 같은 경우 YTN과 연합뉴스TV가 서로 경쟁적으로 건전한 여론조성을 놓고 경쟁을 해서 좀 더 시청률을 높여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부문에 보면 ‘시청자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에서 15개 유형으로 확대 관리하며 매일 모든 제작진에게 공유한다, 또 5개 항목 13개 세부사유로 구분·관리해서 매주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다 말하는 것은 힘들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만을 제기한 시청자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달되어서 해소가 되었는지 그 디테일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6>번에 시청자위원회 구성 다양성 제고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적격자를 뽑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는데, 시청자위원회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보면 시청자보호를 위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편성이나 제작하도록 한 옴부즈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보면 시청자 주권 확보를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인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런 내실화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언론학자들이 이 옴부즈만 프로그램이 편성이나 내용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원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어떻게 프로그램 제작이나 또 다른 시청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방송사마다 아주 잘 되는 곳도 있고 전혀 안 되는 곳도 있어서 우리가 통합방송법 개정하면서 이런 법 취지를 살려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실화가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관련 자료를 추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더 추가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10시 43분 폐회】

7.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제출결과 보고  
(안건, '20.2.19)

##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일자	2020. 2. 19.	보 고 사 항
공개여부	공개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

작성과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일자	2020. 2. .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

<2020. 2. 19.(수),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1. 보고 사유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총편PP')·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의 '19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 '17년도, '18년도 이행실적은 현장실사·자문단 논의 등 검증과정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 '19년도 이행실적은 일부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이행실적 제출결과만을 보고

## 2. 주요 경과

- '17. 3월, 11월 : 총편·보도PP (조건부)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과  
※ (주)와이티엔·(주)연합뉴스티브이('17.3.9.), (주)조선방송·제이티비씨(주)·(주)채널에이('17.3.24.), (주)매일방송('17.11.27.)
- '20. 1~2월 : 총편·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 접수

### < 이행실적 점검 관련 주요경과(재승인 이후) >

- '18. 12월 :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 '19. 1월 :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의결  
※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 '19. 1~2월 :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촉구(권고사항)  
※ (주)연합뉴스티브이('19.1월), (주)매일방송('19.2월)
- '19. 11월 : '18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 '19. 11월 : '18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촉구(권고사항)  
※ (주)연합뉴스티브이('19.11월)

### 3. 이행실적 확인대상

○ 종편PP 4개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

- 조건 부과대상 사업자 및 세부내용에 따라 3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행실적 확인

※ 재승인 심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콘텐츠 투자비 등은 가결산 자료)만을 대상으로 이행여부 확인

< 종편PP 재승인 조건 >

구 분	
방송의 공적책임	①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 준수 (4개사)
	② 오보·막말·편파방송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 (4개사)
	③ 검증기구 운영 (TV조선, 채널A)
	④ 진행자·출연자 법정 제재 시 출연정지 (TV조선)
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⑤ 뉴스 탐사,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 준수 (4개사)
	⑥ 재방비율 준수 (MBN)
	⑦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4개사)
	⑧ 콘텐츠 펀드 조성 (TV조선)
기 타	⑨ 외주상생방안 준수 (MBN)
	⑩ 경영전문성·독립성 확보 이행실적 (MBN)

○ 종편PP 4개사 및 보도PP 2개사의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

### 4.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

①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 준수 - 4개사

- (조건내용)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 (이행여부) 종편PP 4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을 이행 중

**② 오보·막말·편파방송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 - 4개사**

- (조건내용) 방송심의 규정(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언어 등)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 (이행여부) '19년 해당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총 2건(채널A 1건, MBN 1건)

< 해당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주요내용 >

사업자	제목	방송일	위반내용	적용조항	방심위 결정일	방통위 처분일
채널A (1건)	뉴스 TOP10	'19.5.31.	진행자가 잘못된 내용 언급	제 14조(객관성)	주의 ('19.11.11.)	'19.12.4.
MBN (1건)	뉴스 와이드 1부	'19.4.21.	하단 스크롤 자막에 잘못된 내용 표기	제 14조(객관성)	주의 ('19.7.22.)	'19.8.12.

**③ 검증기구 운영 - TV조선·채널A**

- (조건내용)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 (이행여부) 2개사 모두 심의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 중
  - ※ ①TV조선 : 공정보도특별위원회(월 1회 개최), ②채널A : 게이트키퍼 회의(매주), 공정보도심의위원회(분기별) 등

**④ 진행자·출연자 법정 제재 시 출연정지 - TV조선**

- (조건내용)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 시, 진행자·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



- (이행여부) 자체 심의규정에 따라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시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출연을 제한, 다만 '19년 프로그램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건수는 없음

⑤ 뉴스탐사,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 준수 - 4개사

- (조건내용)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 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
- (이행여부) 4개사 모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을 준수하여 편성

< 종편PP 편성 계획 및 제출실적 >

구 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계획(연간)	32.70%	29.11%	34.44%	32.70%
사업자 제출실적	28.89%	26.73%	27.53%	31.00%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⑥ 재방비율 준수 - MBN

- (조건내용)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 (이행여부) '19년도 MBN 재방비율은 39.4%로 재승인 조건 이행(계획 40.8%)

< MBN 재방비율 계획 및 제출실적 >

구 분	재방비율 계획	제출실적
재방 비율	40.8%	39.4%(207,293 / 525,600시간)

**7]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 4개사**

- (조건내용) 사업계획서·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 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 (이행여부) 사업자가 제출한 가결산 자료에 의할 때, TV조선과 채널A는 '19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
- '20년 하반기 재승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JTBC·MBN은 결산자료가 확정된 후 제출받을 계획(재승인 조건에 따른 제출시한 : 매년 4월 30일까지)

**<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 및 제출실적(단위 : 백만원) >**

구 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계획(연간)				
사업자 제출실적*				
이행여부	이행	-	이행	-

\* 해당 자료는 가결산 자료로 향후 회계법인 검증 과정 등에서 변동 가능

**8] 콘텐츠 펀드 조성 - TV조선**

- (조건내용)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
- (이행여부) TV조선 출자법인의 펀드 조성·운영(총 000억 중 00억 출자), 콘텐츠 관련 펀드에 대한 TV조선의 투자(펀드총액:000억, 약정액:00억, 출자액:00억) 등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 이행 중

**9] 외주상생방안 준수 - MBN**

- (조건내용)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
- (이행여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외주상생계획을 이행 중

**< MBN 외주상생계획 세부내용 >**

구분	계획	결과	세부내용
1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이행	○ 신규·재계약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 계약서 사용
2	선지급금 확대 지급	이행	○ '18년 2월 제정한 선지급금 기준에 따라 '19년 6개 프로그램에 대한 선지급금 지급
3	저작권 수익배분 개선	이행	○ '18년 2월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사 요청 시 적극 협의 진행(일부 프로그램의 OST 음반제작 판매권을 외주제작사가 소유)
4	촬영원본 영상사용권 부여	이행	○ 프로그램 계약 시, 제작사와 영상사용권 협의 (다만, 영상사용권을 요청한 제작사는 없음)
5	제작비 현실화	이행	○ 신규프로그램 : 프로그램 선정위원회를 통해 제작사가 요구한 제작비를 반영하여 제작비를 책정하고, 제작비 규모에 따라 제작사의 기업이윤을 보장 ○ 기존프로그램 : '1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1.5%) 하여, '19년 2월부터 제작비 인상(총 10개 프로그램)
6	외주사 상생간담회 및 시장동향 점검회의 개최	이행	○ 반기별로 외주제작사와의 상생간담회를 개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우수 제작사 시상 및 인센티브 지급 ○ 시장동향점검회의 개최 : 분기별 1회 개최
7	저작권 및 해외판매 권리보장	이행	○ 프로그램 계약 시 제작사와 해외 판매, 재방송권 등에 대한 권리 협의
8	사전제작비 지급 확대	이행	○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제작비 지급 - 제작기간 및 투입 인원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급

**10 경영전문성·독립성 확보 이행실적 - MBN**

- (조건내용)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 (이행여부) 사외이사진을 개편하고, 사외이사 2명\* ·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

\* 김00 신문방송학과 교수(감사위원장), 최00 前 한국케이블TV 00방송 사장

## 5.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

○ 재승인 권고사항을 미준수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판단

### <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및 조치현황 >

권고사항	방송사	조치현황
시청자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	TV조선 MBN	○ 시청자 불만사유를 14가지 유형으로 확대 관리하며 매일 모든 제작진에게 공유(TV조선), 5항목 13세부 사유로 구분·관리하며, 홈페이지에 공개(MBN)
사회적소수자 프로그램 확대	공통	○ 4사 모두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계획 달성
재방비율 지속적 감소	TV조선 JTBC 채널A	○ TV조선·채널A 전년 대비 재방비율 감소, JTBC 전년 수준 유지 ※ TV조선 : 38.63%→37.7%, JTBC : 36.70%→36.70%(’18년 계획 38.3%, ’19년 계획:37.5%), 채널A : 40.47%→39.04%
재정건전성 확보	JTBC	○ ’19년도 공모사채 발행을 통한 이자 감소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 중이나, 현재 ’19년 방송사업 매출과 영업이익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확인 예정(6~8월)
편성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채널A	○ 정기회의 0회 포함 총 0회의 편성위원회 개최, 회의록을 사내정보시스템에 공개
협찬 의존감소, 투명한 회계관리	MBN	○ 전체 매출액 대비 협찬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18년:00% →’19년:00%)하였으며, 신규 프로그램 런칭·뉴미디어 매출 확대 등을 통해 협찬의존도 감소 및 매출 다각화를 위해 노력 ○ 협찬 매출을 기업별, 내역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협찬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규 및 윤리교육 실시
일자리확대	MBN	○ MBN·MBN 미디어텍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 ’19~ ’23년까지 연간 00명의 신규 채용 계획 수립 및 ’19년 계획 이행
국산방송장비 도입계획 이행	MBN	○ 그래픽 제작장비 투자 등 ’19년 계획 달성

## 6.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

-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및 조치현황 >

권고사항	방송사	조치현황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고려	YTN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TN)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섭외, 정책담당자·사건 당사자의 출연 확대 등 프로그램 출연자의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고려를 위해 노력</li> <li>○ (연합뉴스TV) ‘패널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패널 검증 강화,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및 타사 심의제재 사례 교육을 통한 보도의 공정성 및 품격제고 노력</li> </ul>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실효성 제고	YT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 각각 0명으로 구성된 공정방송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19년 총 0회 개최</li> </ul>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채용 확대, 사외이사제도 운영,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운영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위해 노력 중</li> <li>○ 연합뉴스의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가치 ‘연합뉴스TV의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 영업 업무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li> </ul>
시청자위원회 구성다양성 제고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한 자체 운영내규를 바탕으로 제5기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중</li> <li>※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구성→후보자공모→19개 민간 단체 후보자 추천 요청→적격여부 심사→최종선정</li> </ul>
재정건전성 확보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16~'19년) 연속 흑자, 광고·수신료 매출 증가(계획대비)</li> <li>○ 비용절감과 추가 수익창출(온라인 및 사업수익 강화)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li> </ul>

## 7. 기타 : '18년도 종편PP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 점검결과 정정

- '18년도 종편PP의 콘텐츠 투자실적 점검결과(위원회 보고 '19.11.22.) 중 당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야 하는 항목들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정정 시에도 '18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은 달성)

- (채널A) '18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이행실적을 00,000백만원으로 정정

※ (추가 불인정 항목) ① DDMC 방송시설 관리비용(000백만원) ② '18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에 지급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금 중 '18년도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000백만원)

- (TV조선) '18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이행실적을 00,000백만원으로 정정

※ (추가 불인정 항목) '18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에 지급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금 중 '18년도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000백만원)

< 채널A·TV조선 콘텐츠 투자금액 정정사항(단위:백만원) >

사업자	계획금액	이행실적		이행여부
		정정 전	정정 후	
채널A				이행
TV조선				이행

## 8. 조치방향(안)

- (기본방향) 사업자별 재승인 심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치방향 검토
  - (TV조선·채널A·YTN·연합뉴스TV) 4개 사업자는 3월 재승인 심사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승인 심사에 반영
    - ※ 재승인 이루어지는 사업자의 경우 향후 제출자료 검증과 외부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6~8월 예정)
  - (JTBC·MBN) 하반기 심사예정인 2개 사업자는 제출자료 검증과 외부자문단 논의 등을 거쳐 이행실적 여부를 점검(6~8월 예정)한 후, 조치방향 검토

- 붙임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2.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3. 방송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1부  
4. 방송 프로그램 자체 제작비 산정기준 1부. 끝.

8.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제출결과 보고  
(속기록, '20.2.19)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0. 2. 19.(수)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

###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19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 이행실적은 현장실사와 자문단 논의 등 검증과정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으나, 2019년도 이행실적은 일부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지난 2017년 3월과 11월에 종합 및 보도 PP 재승인 관련해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2월까지 종편 및 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을 접수받았습니다. 이행실적 점검 관련된 세부적인 경과는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확인대상입니다. 종편PP 4개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와 종편PP 4개사 및 보도PP 2개사의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조건 부과대상 사업자 및 세부내용에 따라 3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행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승인 심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였고, 콘텐츠 투자비 같은 경우 가결산 자료로 점검하였습니다.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입니다. 첫 번째,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입니다. 4개사에 공통적으로 부과된 조건이고, 조건 내용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 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이행여부는 종편PP 4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을 이행 중인 것으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해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입니다. 4개사 공통입니다. 조건내용의 세부내용은 방송심의 규정(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언어 등)과 관련해서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채널A가 1건, MBN이 1건 이렇게 2건이 있었습니다. '19년도 해당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가 2건으로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증기구 구성 관련해서는 TV조선과 채널A에 부과된 조건인데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TV조선의 경우에는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있고, 채널A의 경우에는 게이트 키퍼링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공정보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진행자·출연자의 법정제재 시 진행자와 출연자를 출연정지시키라는 TV조선에 부과된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여부 관련해서 자체 심의규정에 따라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시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출연을 제한하라는 조건인데, '19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법정제재받은 건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탐사,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사 공통조건입니다.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관련된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하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적인 계획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방비율 관련해서 MBN에 부여된 조건입니다.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계획 40.8%였는데 '19년도 재방비율이 39.4%로 확인되어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인데 사업자가 제출한 가결산 자료를 확인했는데 TV조선과 채널A는 '19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JTBC과 MBN의 경우 하반기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가결산이 끝나고 본결산 자료를 받아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TV조선에 부여된 조건입니다.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이고, TV조선이 출자법인을 통해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고, 콘텐츠 관련 펀드에 TV조선이 일정금액을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펀드 조성 관련된 내용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외주상생방안 준수와 관련해서 MBN에 부여된 조건입니다.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8가지 외주상생계획 세부내용을 보시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열 번째, 경영전문성·독립성 확보 이행실적 관련해서 MBN에 부여된 조건입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사외이사진을 개편하고, 사외이사 2명·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입니다. 시청자 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 관련해서는 TV조선, MBN, 그리고 사회적소수자 프로그램 확대 관련해서는 공통, 이렇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항목별로 방송사에 부과된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권고사항 내용도 역시 미준수하고 있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치현황 관련해서 연합뉴스TV와 YTN이 이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연합뉴스TV 관련해서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 참조 동그라미 2개에 있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18년도 중편PP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 점검결과에서 정정하는 내용을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18년도 중편PP 콘텐츠 투자실적 점검결과, 당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야 하는 항목들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11월 22일자로 위원회에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콘텐츠 투자계획은 달성하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채널A 관련해서는 2018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이행실적을 000억 0,000만원으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불인정하는 항목은 당구장 표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DDMC 방송시설 관리비용 0억 000만원, '18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에 지급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금 중 '18년도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0억 0,000만원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TV조선과 관련해서는 '18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이행실적을 000억 0,000만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불인정하는 항목은 '18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에 지급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금 중 '18년도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0억 0,000만원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동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치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은 사업자별 재승인 심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치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TV조선·채널A·YTN·연합뉴스TV 4개 사업자는 3월 재승인 심사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승인이 이루어지는 사업자의 경우 향후 제출자료 검증과 외부자문단 논의 등을 거쳐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JTBC와 MBN은 하반기에 심사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제출자료 검증과 외부자문단 논의 등을 거쳐 이행실적 여부를 6~8월 까지 점검을 한 후에 조치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재승인 조건 부과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재승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재승인이라는 행정행위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재승인 조건의 이행점검은 행정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고안건>은 '17년과 '18년에 이어서 '19년도 종편 및 보도PP의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도는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일단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업자의 지난해 재승인 이행실적이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에 대해 질문을 하면 하는데 <4>번 항목에서 진행자·출연자 법정제재 시 법정제재 판정을 받아도 만약 소송을 하면 최종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산업이 안 됩니다. TV조선의 경우 실제 법정제재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불산입했던 것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TV조선의 경우 소송 중인 건이 2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그 2건의 경우 검증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작년에는 TV조선의 경우 진행자·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자와 외부 출연자를 출연정지 조치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 외 종편PP는 재승인 권고사항 가운데 미준수 항목은 없는 것으로 집계된 반면, 보도PP 가운데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독립성 확보의 권고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고, 연합뉴스TV 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권고사항의 내용은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이었고, 관련해서는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다거나 광고를 연합뉴스에 위탁해서 광고판매를 하고 있다는 등 2가지 정도 중점사항이 있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운영의 독립성에 구체적 내용을 두고서 다소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그 부분은 다음 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심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우선 종편과 보도PP에서 특히 종편채널에서 권고사항 또 재승인 조건을 다 잘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는데 품격제고 계획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노력에 대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보·막말·편파방송 법정제재를 매년 4건으로 줄이라는 조건에 대해 2개사가 1건씩만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무슨 의도된 잘못이 아니고 진행자가 잘못된 내용을 언급했거나 자막이 잘못된 오기가 나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습시다. 특히 지금까지 종편방송들이 초창기에 보면 보도전문채널이나 마찬가지로 너무 보도 장르에 방송비율을 할애해서 그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서 방통위에서 합산비율을 준수하라는 조건을 내건 바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보도 장르라면 뉴스나 탐사보도, 또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인데 합산해서 계획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지켰습시다. 특히 30% 미만으로 대부분 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보도채널 같은 성격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편, 종합편성의 당초 허가 취지를 잘 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종편들이 종합편성채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해서 꽤 반가운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콘텐츠 투자금액을 보면 당초 TV조선과 채널A가 000억원 정도를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연간 또는 0,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런데 모두 지난 '19년도에 제출실적을 보면 이것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이 아닌가, 특히 종편들이 오락부분도 어느 프로그램은 지상파를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편들이 보도 장르에 치중했던 방송들을 다 떠나서 이제는 정말 종합편성 방송으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현상이 눈에 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계속 내보내서 국민들에게 행복한 방송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입부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19년도 실적은 저희가 현장실사와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콘텐츠 투자비용도 가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정도부터 시작할 실제 점검으로 인해 약간의 변동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 낼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하도록 추가로 여기에 언론인들이 게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종편사업자들에게 심의에서 법정제재가 1년에 4건 이내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는 대로 4월 15일 총선거가 실시되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재를 받아도 방송평가의 감점으로 반영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및 조치현황에 보면 YTN은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노사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공정방송 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했고, '19년도에 7차례 개최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점검한 것 같은데, 회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작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구성 다양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시청자의 권익보호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서 1차적으로는 구성의 다양성 제고가 되겠지만 시청자위원회 회의의 내용이 프로그램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 그것이 반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잘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이것도 같이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9.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안건, '20.9.16)

## 제 50 차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일자	2020. 9. 16.	보 고 사 항
공개여부	공개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작성과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일자	2020. 9.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2020. 9. 16.(수),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1. 보고 사유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총편PP')·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의 '19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20.3월에 진행됨에 따라 '19년도 이행실적 제출 결과를 위원회에 기 보고한 바 있음('20.2.19)

## 2. 주요 경과

- '17. 3월, 11월 : 총편·보도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부과
- ※ (주)와이티엔·(주)연합뉴스티브이('17.3.9.), (주)조선방송·제이티비씨(주)·(주)채널에이('17.3.24.), (주)매일방송('17.11.27.)

### < 이행실적 점검 관련 주요경과 >

- '18. 12월 :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 '19. 1월 :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의결
- ※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 '19. 1~2월 :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촉구(권고사항)
- ※ (주)연합뉴스티브이('19.1월), (주)매일방송('19.2월)
- '19. 11월 : '18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 '19. 11월 : '18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촉구(권고사항)
- ※ (주)연합뉴스티브이('19.11월)
- '20. 1~4월 : 총편·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 접수
- '20. 2.19 : 총편·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 위원회 보고
- '20. 6~7월 : 총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이행실적 현장점검 실시

### 3. 이행실적 점검대상

○ 종편PP 4개사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

- 조건 부과대상 사업자 및 세부내용에 따라 3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행실적 확인

#### < 종편PP 재승인 조건 >

구 분	
방송의 공적책임	①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 준수 (4개사)
	② 오보·막말·편파방송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 (4개사)
	③ 검증기구 운영 (TV조선, 채널A)
	④ 진행자·출연자 법정 제재 시 출연정지 (TV조선)
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⑤ 뉴스 탐사,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 준수 (4개사)
	⑥ 재방비율 준수 (MBN)
	⑦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4개사)
	⑧ 콘텐츠 펀드 조성 (TV조선)
기 타	⑨ 외주제작 상생방안 및 방통위 기준 준수 (MBN)
	⑩ 경영전문성·독립성 확보 이행실적 (MBN)

### 4. 종편PP 4개사 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결과

#### ㉠ (4개사 공통)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

- (조건내용)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 (이행여부) 종편PP 4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을 이행하고 있음

※ TV조선(바로옴부즈맨 구성·운영 등), 채널A(품격제고TF 운영 등), JTBC(출연자 관리위원회 운영 등), MBN(출연자 1진 아웃제 및 진행자 징계 강화 등)

## ② (4개사 공통) 오보·막말·편파방송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

- (조건내용) 방송심의 규정(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언어 등)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 (이행여부) '19년 해당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총 2건(채널A 1건, MBN 1건)

※ 채널A: 뉴스TOP10 주의 처분('19.12), MBN: 뉴스와이드1부 주의 처분('19.8)

## ③ (TV조선·채널A) 검증기구 운영

- (조건내용)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 (이행여부) 2개사 모두 심의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 중

※ ①TV조선 : 공정보도특별위원회(월 1회 개최), ②채널A : 게이트키퍼 회의(매주), 공정보도심의위원회(분기별) 등

## ④ (TV조선) 진행자·출연자 법정 제재 시 출연정지

- (조건내용)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 시, 진행자·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
- (이행여부) 자체 심의규정에 따라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시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출연을 제한하고 있음

※ 다만, '19년 프로그램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건수는 없음

㉔ (4개사 공통)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 준수

- (조건내용)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 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
- (이행여부) 4개사 모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을 준수하여 편성

< 종편PP 뉴스 등 장르의 편성계획 및 제출실적 >

구 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계획(연간)	32.70%	29.11%	34.44%	32.70%
사업자 제출실적	28.90%	26.73%	27.53%	31.07%
방통위 점검결과	31.16%	26.73%	27.53%	31.07%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 종편PP 뉴스 등 장르의 편성계획 및 제출실적의 세부내역 >

구 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	76,795	14.78%	101,020	19.22%	103,940	19.96%	73,145	13.92%
탐사보도	5,470	1.05%	13,195	2.51%	140	0.03%	-	-
시사논평	45,365	8.73%	22,370	4.26%	39,080	7.50%	89,530	17.03%
토론대담	22,505	4.33%	3,910	0.74%	200	0.04%	620	0.12%
소계	150,135	28.90%	140,495	26.73%	143,360	27.53%	163,295	31.07%
방통위 수정*	11,710	2.26%	-	-	-	-	-	-
수정후 소계	161,845	31.16%	140,495	26.73%	143,360	27.53%	163,295	31.07%

\* TV조선의 '강적들'은 정치 분야 패널들이 출연하여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내용을 분석·토론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예능(버라이어티) 분야가 아닌 시사논평에 해당함

⑥ (MBN) 재방비율 준수

- (조건내용)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 (이행여부) '19년도 MBN 재방비율은 39.4%로 재승인 조건 이행(계획 40.8%)

< MBN 재방비율 계획 및 제출실적 >

구 분	재방비율 계획	제출실적
재방 비율	40.8%	39.4%(207,293 / 525,600시간)

⑦ (4개사 공통)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 (조건내용) 사업계획서·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 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 (이행여부)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회계법인의 검증결과, 4개사 모두 '19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

<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 및 제출실적(단위 : 백만원) >

구 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계획(연간)				
'17년 미이행분				
사업자 제출실적				
방통위 점검실적	101,038	194,142	104,287	102,486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 채널A는 '17년 콘텐츠 투자 미이행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시, 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청구하였고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동 시정명령이 '19.12.19부터 '20.5.24까지 정지되었음. 이에 따라, '17년 콘텐츠 투자 미이행분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20년까지 연장되었으며 '17년 미이행분 중 '19년 중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000백만원은 '20년 콘텐츠 투자에 포함하여 이행되어야 함('20년 투자실적 점검시 확인예정)

\*\* MBN은 '17년 미이행분을 포함하여 '19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였음

**㉔ (TV조선) 콘텐츠 펀드 조성**

- (조건내용)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
- (이행여부) TV조선 출자법인의 펀드 조성·운용(총 000억 중 00억 출자), 콘텐츠 관련 펀드에 대한 TV조선의 투자(펀드총액:000억, 약정액:00억, 출자액:00억) 등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 이행 중

**㉕ (MBN) 외주제작 상생방안 및 방통위 기준 준수**

- (조건내용) 외주사와의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
- (이행여부) MBN 자체 외주상생방안 및 방통위 기준을 준수
  - (외주상생방안) 표준계약서 사용, 선지급금 확대 등 상생계획 이행 중

**< MBN 외주상생방안 세부내용 및 점검결과 >**

구 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표준계약서 사용	○ 신규·재계약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 계약서 사용 ※ 단서조항("프로그램의 품질이나 방송사의 편성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 추가됨에 따라, 동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필요	이행
선지급금 기준 마련	○ 선지급금 기준('18.12월)에 따라 '19년 7개 프로그램에 지급	
저작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 저작권 수익배분 개선 가이드라인('18.2월) 이행 중	
촬영원본 영상사용권 부여	○ 프로그램 계약 시, 제작사의 영상사용권 관련 내용 명시	
제작비 현실화	○ 신규·기존프로그램의 기업이윤 보장 및 제작비 인상	
상생간담회 및 시장동향 점검회의 개최	○ 상생간담회 : 상·하반기 개최 ○ 시장동향점검회의 : 분기별 1회 개최	
저작권, 해외판매 권리보장	○ 프로그램 계약 시 제작사와 협의하여 수익배분 등 권리 보장 또는 제작비 배분	
사전제작비 지급 확대	○ 사전제작기간에 대한 사전제작비 지급 및 확대	

- (방통위 기준 준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음('20.7.29. 편성평가정책과 위원회 보고)

**< 가이드라인 점검사항 및 결과 >**

구 분	주요 점검사항	점검결과
표준제작비 산정	① 산정기준 마련 여부 ② 산정기준 제시 여부	이행
상생협의체 운영	①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②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외주제작 계약서	① 표준계약서 활용 ② 사전 계약체결 ③ 저작권 수익배분	

※ 가이드라인이 '19.11월 시행됨에 따라, '19.11~12월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Ⅳ (MBN) 경영전문성·독립성 확보 이행실적

- (조건내용)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 \* MBN이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계획(2018.1.26.) >

<p>① 감사위원회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부 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li> <li>- 기존 감사 2인 체제에서 <b>감사위원 3명 이상</b>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구성</li> <li>- <b>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b>하여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li> <li>-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더욱 강화해 경영의 투명성 제고</li> <li>- 2018년 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감사위원 선임</li> </ul>
<p>② 사외이사진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b>을 갖추고 <b>경영의 독립성을 제고</b>할 수 있는 인사로 사외이사진 개편</li> </ul>

- (이행여부) 감사위원회 구성계획은 계획대로 이행하였으나, 사외이사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① 기존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하였으나, '20.3월 이사회를 통해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 3인으로만 구성하도록 변경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였음
- ② 기존에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OO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나, 김OO 사외이사는 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로는 볼 수 있으나, 방송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점은 방송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려움

※ MBN은 김OO 사외이사가 금융업계에 종사하면서 기업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회계·경영 관리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서 MBN의 경영구조 개선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설명함

< MBN 사외이사 현황 >

2019.3.22. 개편	2020.3.20. 개편
최OO(前 (주)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 대표이사)	<u>김OO(방송경력 없음)</u>
고OO(前 YTN 감사)	고OO(前 YTN 감사)
김OO(동국대 신방과 교수)	김OO(동국대 신방과 교수)

## 5.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

○ 재승인 권고사항을 미준수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및 조치현황 >

권고사항	방송사	조치현황
시청자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	TV조선 MBN	○ 시청자 불만사유를 14가지 유형으로 확대 관리하며 매일 모든 제작진에게 공유(TV조선), 5항목 13세부 사유로 구분·관리하며, 홈페이지에 공개(MBN)
사회적소수자 프로그램 확대	공통	○ 4사 모두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계획 달성
재방비율 지속적 감소	TV조선 JTBC 채널A	○ TV조선·채널A 전년 대비 재방비율 감소, JTBC 계획에 비해 재방비율 감소 ※ TV조선 : 38.63%→37.88%, JTBC : 36.70%→36.70%('18년 계획 38.3%, '19년 계획:37.5%), 채널A : 40.47%→39.04%
재정건전성 확보	JTBC	○ 비광고부문 매출 신장을 통해 광고매출 의존도('18년 00% → '19년 00%)를 낮춰 향후 안정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19년도 공모사채 발행을 통한 이자 비용(이자율 0%→0%)을 절감
편성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채널A	○ 총 8회의 편성위원회 개최(씩수달, 5월, 11월 개최), 회의록을 사내정보시스템에 공개
협찬 의존감소, 투명한 회계관리	MBN	○ 전체 매출액 대비 협찬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18년:00% →'19년:00%)하였으며, 신규 프로그램 런칭·뉴미디어 매출 확대 등을 통해 협찬의존도 감소 및 매출 다각화를 위해 노력 ○ 협찬 매출을 기업별, 내역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협찬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규 및 윤리교육 실시
일자리확대	MBN	○ MBN·MBN 미디어텍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 ○ '19년 00명(MBN 00명, MBN미디어텍 0명) 채용으로 이행
국산방송장비 도입계획 이행	MBN	○ 그래픽 제작장비 투자 등 '19년 계획 달성

※ MBN은 '20.1월 가결산 자료에 기초하여 제출한 '19년의 협찬매출 비중을 본 결산 자료로 수정하여 당초 00%에서 00%로 변경 제출함



## 6.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

○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는 ‘20년 재승인시 권고 미이행 사항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 통보한 바 있으며, 위원회는 ‘20년 재승인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관련 하여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음

### <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및 조치현황 >

권고사항	방송사	조치현황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고려	YTN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TN)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섭외, 정책담당자·사건 당사자의 출연 확대 등 프로그램 출연자의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고려를 위해 노력</li> <li>○ (연합뉴스TV) ‘패널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패널 검증 강화,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및 타사 심의제재 사례 교육을 통한 보도의 공정성 및 품격제고 노력</li> </ul>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실효성 제고	YT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공정방송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19년 총 0회 개최</li> </ul>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채용 확대, 사외이사제도 운영,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운영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위해 노력 중</li> <li>○ 연합뉴스의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가칭 ‘연합뉴스TV의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 영업 업무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li> </ul>
시청자위원회 구성다양성 제고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한 자체 운영내규를 바탕으로 제5기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중</li> <li>※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구성→후보자공모→19개 민간 단체 후보자 추천 요청→적격여부 심사→최종선정</li> </ul>
재정건전성 확보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16~'19년) 연속 흑자, 광고·수신료 매출 증가(계획대비)</li> <li>○ 비용절감과 추가 수익창출(온라인 및 사업수익 강화)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li> </ul>

## 7. 조치방향(안)

- (TV조선, 채널A, YTN)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및 권고사항 점검결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별도 조치 없음
  - (연합뉴스TV) 재승인 권고사항 점검결과,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관련 권고사항을 미준수 하였으나, 동 사항이 '20년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어 조건으로 부가됨에 따라, 향후 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
  - (JTBC, MBN)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및 권고사항 점검결과, MBN의 일부 재승인 조건의 미이행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검 결과를 '20년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예정
  -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MBN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예정
- ※ 위원회는 '19.2월 MBN이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에 따른 이행실적 중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2인이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보고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MBN은 '19.3월 사외이사 2인을 방송 전문가로 변경하였음. 다만, MBN은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임

## 8. 향후 계획

-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 : '20. 9. 16(수)~9. 28(월)
- 시정명령 의결 : '20. 10월 초

- 붙임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안) 1부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3.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4. 방송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1부
  5. 방송 프로그램 자체 제작비 산정기준 1부
  6. 시정명령 관련 법령 1부. 끝.

10.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속기록, '20.9.16)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0. 9. 16(수)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o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o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19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에는 3월에 심사가 진행되어서 지난 2월 19일 사업자 제출자료를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17년 3월, 그리고 11월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한 바 있습니다. 승인유효기간은 사업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1월, 4월까지 해서 이행실적 접수를 받았고, 6월, 7월에 걸쳐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점검대상입니다. 종편PP 4개사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입니다. 조건 부가대상 사업자 및 세부내용에 따라 그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3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행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10개 항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결과입니다. 첫 번째, 4개사 공통사항인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입니다. 각 사별로 제출한 계획에 대한 점검내용이 되겠습니다. 품격제고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오보·막말·편파방송 법정제재 4건 이하라는 조건에 대해 채널A와 MBN이 각 1건씩 해서 2건이 법정제재를 받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증기구 운영입니다. 조건내용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검증기구를 구성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에 TV조선과 채널A 해당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진행자·출연자 법정제재 시 출연정지하는 내용입니다. 자체 심의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19년도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건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 준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다양성 제고를 위해 편성 관련된 내용들을 다양화 시키라는 조건인데 보도분야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밑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밑에 구체적인 <표>가 있는데 TV조선의 경우에는 일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을 TV조선은 예능으로 분류해 왔는데 내용상 시사논평에 해당하여 이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방비율 준수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MBN에 대한 조건입니다. 재방비율 계획을 40.8%로 제출했었는데 39.4%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 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이고, 밑의 <표>를 보시는 것처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채널A의 경우 '17년도 미이행분이 00억원가량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제기가 되어서 인용이 됨으로써 밑에 보시는 것처럼 '19년 12월 19일부터

'20년 5월 24일까지 시정명령 효력이 정지 되어 '20년 6월에 나머지 금액을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하지 못한 0억 0,000만원 정도의 금액은 '20년 콘텐츠 투자 금액에 포함해서 이행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콘텐츠 펀드 조성 관련된 TV조선에 대한 조건입니다.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 내용이고, 이행여부는 TV조선이 출자한 법인 KC상생투자조합이라는 펀드 총 000억원 중 00억을 출자함으로써 이행을 하고, 콘텐츠 관련 펀드에 대해서도 총 출자한 내용을 제출해서 조성 계획을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홉 번째, MBN의 외주제작 상생방안 및 방통위 기준 준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건내용은 사업자가 스스로 제출한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등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는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주상생방안은 밑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고, 선지급금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수익 배분 가이드라인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밑에 제작비 현실화라든가 저작권 권리 보장 부분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방통위 기준과 관련해서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7월에 별도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밑에 <표>로 요약했습니다. 표준제작비 산정이나 상생협업체 운영, 외주제작 계약서 사용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 가이드라인이 '19년 11월에 시행되어서 두 달치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MBN에 대한 경영전문성·독립성 확보 이행실적입니다. 조건내용은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MBN이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 등 확보계획이 그 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된 내용과 두 번째 사외이사진 개편 내용입니다. 이행여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구성 부분은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사외이사진 개편 관련해서는 방송분야 경력이 없는 인사로 사외이사가 선임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려워서 별도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사회 현황은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입니다. 미준수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권고사항 내용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방송사업자별로 시청자 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확대, 국산방송장비 도입계획 등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20년 1월에 보고드렸던 가결산 자료였기 때문에 협찬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MBN의 경우에 00%에서 00%로 변경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PP의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입니다. <표>에 보시는 2개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관련된 확보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조치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방향(안)입니다. TV조선과 채널A, YTN의 경우에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및 권고사항 점검결과, 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별도 조치는 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뉴스TV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관련 권고사항을 미준수했습니다. 이것이 3월에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조건으로 상향하도록 의결한 바 있어서 내년도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행실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와 MBN은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및 권고사항 점검결과, MBN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이행한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반기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MBN에 대해서는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를 9월에 진행하고, 시정명령은 10월 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MBN과 사외이사가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지요? 방송 전문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로 사외이사를 둔다, MBN 스스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가 다시 고치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불복해서 MBN이 법정으로 가서 1심에서 우리가 졌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고법에 계류가 되어 있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만약의 경우 MBN에 우리가 끝까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MBN의 재승인 심사에 보고가 되고 반영되는데 그것이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방통위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저희가 시정명령 처분을 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감점처분은 하지 않고 있어서 재승인 감점 여부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 고생했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두 분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 김 현 부위원장

-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김창룡 위원님 원안 동의이십니까?

○ 김창룡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네 분 모두 원안 동의 의견이셨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11.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시정명령(안건, '20.10.)

##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2020-53-239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공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매일방송 -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20. 10.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매일방송 -

< 2020. 10. 7.(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 1. 의결주문

-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 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

의안번호	법인명 (채널명)	시정명령(안)
제2020-53-239호	(주)매일방송 (MBN)	· '18년 1월 26일에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미이행 부분을 '21년 4월말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를 '21년 5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2. 제안이유

-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3. 경과사항

- '17. 11월 : (주)매일방송 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 부가
- '20. 1~4월 : 종편·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 접수
- '20. 2. 19 : 종편·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 위원회 보고
- '20. 6~7월 :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이행실적 현장점검 실시
- '20. 9. 16 : 종편·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20. 9. 16 : (주)매일방송에 시정명령 사전통지
- '20. 9. 28 : (주)매일방송,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 4.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및 피심인 의견

-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재승인조건 7번)을 위반

##### 【 (주)매일방송이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18.1.26.) 】

① 감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부 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li> <li>- 기존 감사 2인 체제에서 <b>감사위원 3명 이상</b>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구성</li> <li>- <b>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b>하여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li> <li>-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더욱 강화해 경영의 투명성 제고</li> <li>- 2018년 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감사위원 선임</li> </ul>
② 사외이사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b>을 갖추고 <b>경영의 독립성을 제고</b>할 수 있는 인사로 사외이사진 개편</li> </ul>

##### 【 (주)매일방송의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

법인명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주)매일방송	·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18. 1. 26.)으로 제출한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함

- (피심인 주요 의견) '20.3.20.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19년 이행실적 점검 대상이 아니므로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 '19.2.11. 시정명령과 관련된 행정소송 1심에서는 '사외이사 중 일부가 방송경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재승인 조건 미이행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 판단을 보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법인은 '21.3월 정기 주주총회 시 사외이사진 변경·재선임을 준비하고 있고, 재승인 조건의 이행결과를 '21.5월까지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경우, 이행기한의 도래 전에 이행이 완료되므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음

## 5. 검토 의견

- 기존에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OO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나, 김OO 사외이사의 경력사항을 검토한 결과 방송분야 경력이 전혀 없어 방송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재승인 조건은 재승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심인이 '20.3.20에 김OO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음은 명백하고, 방송법 제99조의 규정상 특정연도의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서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음

※ 피심인은 '20.3월경 김OO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러한 사실을 '19년의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이행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한 바 있음

- 피심인이 2021.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취지를 존중하여 사외이사진을 변경·재선임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 피심인은 2019.1월경 동일한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방송산업의 전문성이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 피심인이 밝힌 사외이사진 변경·재선임 의사만으로는 사외이사진이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제 개편될 것인지 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움
-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피심인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방송법 제 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결주문과 같이 시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함

## 6. 향후 계획

- 시정명령 통보 : '20. 10월 중

- 붙임 1. 피심인 제출 의견  
2. 종편PP 재승인조건  
3. 관련 법령. 끝.

12. '19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관련 종편PP  
시정명령(속기록, '20.10.7.)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0. 10. 7.(수) 10:0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0-53-239)

###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법인명은 (주)매일방송이고, 채널명은 MBN이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안)입니다. 2018년 1월 26일에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 중 미이행 부분을 2021년 4월 말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21년 5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지난 '17년 11월에 재승인 조건을 MBN에 부가한 바 있고, 올해 1월~4월까지 이행실적 접수를 받았고, 2월에 제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6~7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9월 16일에 점검결과를 보고드렸고, 같은 날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해서 9월 28일에 (주)매일방송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조건 위반사항 및 피심인 의견입니다. 재승인 조건 위반사항은 재승인 조건 <7>번 항목입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입니다. (주)매일방송이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은 밑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감사위원회 구성이고, <2>번 사외이사진 개편인데 사외이사진 개편 관련해서는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사로 사외이사진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매일방송의 재승인 조건 위반사항은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제출한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심인 주요 의견입니다. 2020년 3월 20일 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를 2019년도 이행실적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시정명령과 관련된 행정소송 1심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정명령 판단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 사외이사진 변경하고 재선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기존에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선임된 신규 사외이사 김○○씨는 경력사항을 검토한 결과 방송분야 경력이 전혀 없어서 방송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승인 조건은 재승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심인이 2020년 3월에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음은 명백하고, 방송법 제99조의 규정상 특정 연도의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서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심인도 그 이행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심인이 2021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취지를 존중하여 사외이사진을 변경·재선임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2019년 1월경 동일한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방송산업의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서 변경·재선임 의사만으로 사외

이사진이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제 개편될 것인지 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명령 통보를 오늘 의결해 주시면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심인 제출 의견 등은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매일방송은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제고라는 2017년도 재승인 조건과는 달리 올해 3월 방송 분야 경험이 없는 분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서 해당 조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외이사진 개편은 매일방송이 스스로 마련해서 제출한 이행방안으로 방통위와 함께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시정명령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반사항이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방송은 책임 있는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바라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앞서 김창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19년 1월에 동일한 건으로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이력까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네 분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고 저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VI. 재승인 심사



## 1.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분 야	이 름	현 직
심사위원장	윤 석 년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3인)	한 선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 성 중	한국언론정보학회 총무이사
	손 병 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법률(2인)	조 원 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권 형 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경영 · 회계 (3인)	장 현 민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엄 은 숙	정동회계법인 전무이사
	송 민 섭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기술(1인)	허 남 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시청자 · 소비자 (3인)	전 삼 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강 수 곤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김 향 란	부산소비자연맹 회장

## 2. 세부 심사기준

---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

---

2020. 11. 3.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1 개 요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분류되며,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서는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을 제시
  -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그에 따른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 2 세부평가 방법

- (기본원칙)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12인) 전원이 각자 신청 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시정명령, 법령위반 등 이미 방송평가에 반영된 행정처분 사항은 제외하여 계량항목의 중복을 최소화
- (평가유형)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평가 : 방송평가와 재정적 능력, 법령 위반 정도, 시정명령 건수 및 이행여부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
  - 비계량평가 :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 점수를 부여

### < 비계량 평가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

구분	등급	내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점수 계산) 재승인 대상 사업자의 최종 점수는 세부심사항목별 계량평가 점수와 비계량평가 점수의 합으로 구함

- 계량평가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량적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를 부여 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 비계량평가는 세부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 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재승인 여부 결정)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심사평가 후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 중, 감점 항목(관계법령 위반 정도 및 시정명령 건수 등)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

- 다만, 심사사항 중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2020년도 종편PP 재승인 세부계획에서 정한 재승인 여부 결정 방안 >**

총점	심사사항 점수	재승인 여부
	-	재승인
650점 이상	다음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조건부 재승인 / 재승인 거부
	상기 심사사항을 제외한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재승인(조건부거)
650점 미만	.	조건부 재승인 / 재승인 거부

### 3

## 세부항목별 심사

### 【 세부심사항목 구성 】

- 각 심사항목을 과거실적과 계획 간 균형 있게 심사평가하기 위해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하여 세부심사항목 구성

#### < (예시) 세부심사항목 구성 >

심사항목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세부심사항목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u>이행실적의 적정성</u>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u>실현계획의 적정성</u>

- 일부 심사항목은 실적과 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실적만 반영

### 【 세부심사항목 배점 】 \*상반기 심사위원회 기 결정 사항임 (음영은 계량평가 부분)

심사 사항	심사항목	실적	계획
1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400	-
2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20)	60	60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30	40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5	15
3	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20	30
	⑥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80)	35	45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20)	10	10
	⑧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40)	15	25
4	⑨ 경영 전략 및 관리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20	30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30	-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10	10
5	⑫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0)	10	20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	-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감점)	-	-
	⑮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70)	70	-
6	⑯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15	35
<b>합 계</b>		<b>730</b>	<b>320</b>

##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계량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이후의 방송평가 점수를 반영
  - 따라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 방송평가 평균 점수를 반영하되, 동일사안이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17년 재승인 시 반영된 감점 점수(JTBC : '16.1.1.부터 '17.1.31.까지, MBN : '16.1.1.부터 '17.8.31.까지)를 제외하고 반영
  - ※ '17년 재승인시 JTBC는 '14.2.1~'17.1.31까지, MBN은 '14.9.1~'17.8.31까지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이 반영되었음
- 심사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방식은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여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계량

○ (적용대상) 재승인 신청법인의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반영하되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은 제외

※ 방송법 위반 중 종편PP와 관련없는 일반PP 운영과 관련된 법 위반은 제외

○ (적용기간) JTBC는 '17.2.1~'20.8.31까지이며 MBN은 '17.9.1~'20.8.31까지임

○ (관계법령)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규정된 법 위반사항은 감점 항목으로 반영하고, 그 밖의 법 위반사항은 심사항목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에서 비계량평가로 반영

- 그 밖의 상사, 콘텐츠, 저작권, 금융, 중소기업, 형사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한 후, 위반 내역을 심사에 반영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재허가 등)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생략>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⑥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말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 「전파법」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참조기준) 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참조하고 그 외 위반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 참조

법령위반	기준점수
방송법* (편성관련규정)	.과태료 : -6점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15점, 5천만원 초과 -22.5점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태료 : -4점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10점, 5천만원 초과 -15점 .심의제재 :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공정거래법	.과태료 : -4점, ·시정명령 : -8점, ·과징금 : -10점
그 외 법령	.과태료 : -2점, ·시정명령 : -4점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5점, 5천만원 초과 -7.5점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 (감점기준) 종편PP는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법령위반	행정처분	종편PP감점	
방송법 위반 (편성관련규정)	과태료	-3.43	
	과징금	5천만원 이하	-8.57
		5천만원 초과	-12.86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 법 위반	과태료	-2.29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71
		5천만원 초과	-8.57
	심의제재	① 주의	-0.57
		② 경고	-1.14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2.29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2.29
		②+③, ②+④	-2.86
③+④, ②+③+④		-3.43	
공정거래법 위반	과태료	-2.29	
	시정명령	-4.57	
	과징금	-5.71	
그 외 법령 위반	과태료	-1.14	
	시정명령	-2.29	
	과징금	5천만원 이하	-2.86
		5천만원 초과	-4.29

- ※ '16.7.1. 이후 방송실적분에 대해 강화된 심의제재를 반영하여 감점 적용
- ※ 소송 중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감점 유예
- ※ '17년~'18년말까지는 방송평가 결과(연평균 감점 사항)로 반영

- ('19년~'20년 위반사항 감점계산) 관계법령 위반 감점은 '17년~'18년 위반 사항은 방송평가 점수로 반영되므로 3개년 평균치로 반영하나,
  - '19년~'20년 위반에 대해서는 1개년 감점으로 평가

※ 최근연도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을 가중하는 측면과 별도의 심사항목이라는 점에서 '14년, '17년 및 '20년 상반기 재승인시 1개년 감점으로 평가

구분 (예시)	방송평가 반영 (종편PP : 700점만점)	재승인 반영	
		'17년, '18년 위반 (방송평가 점수로 환산)	'19년~'20년 위반
방송법 (과태료)	-4 점	- 4 x 400/700 = -2.29 점	- 4 x 400/700 = -2.29 점
		- 2.29 점/3 =-0.76 점	

【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이행여부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여부	시정명령 건수, 시정 명령 이행여부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 (적용대상) 재승인 신청법인의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을 반영
- (적용기간) JTBC는 '17.2.1~'20.8.31까지이며 MBN은 '17.9.1~'20.8.31까지임
- (시정명령 범위)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하되, 방송 평가에 이미 반영된 시정명령 등은 제외 단, 소송중인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감점 유예

○ (참조기준) 방송평가 시 적용한 감점기준을 참조

구분	기준점수
방송편성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명령 : -12점</li> <li>• 시정명령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15점/5천만원 초과 -22.5점</li> </ul> </li> </ul>
그 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명령 : -8점</li> <li>• 시정명령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10점/5천만원 초과 -15점</li> </ul> </li> </ul>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 (감점기준) 관련법령 위반사례에서와 동일하게 방송평가 점수의 환산비율을 고려하여 적용

※ 종편PP는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행정처분		편성관련	그외
시정명령		-6.86점	-4.57점
과징금	5천만원 이하	-8.57점	-5.71점
	5천만원 초과	-12.86점	-8.57점

※ '17년~'18년말까지는 방송평가 결과(연평균 감점 사항)로 반영

○ ('19년~'20년 위반사항 감점계산) 관계법령 위반정도에 대한 감점 계산방식을 적용

【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평가지표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 80)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30)	부채비율	12	계량
		자기자본순이익율	9	계량
		총자산증가율	9	계량

○ (세부심사항목) 지상파 재허가와 방송평가 등에서 심사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의 주요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과 총자산증가율을 세부심사항목으로 마련



※ '10년, '14년, '17년 및 '20년 상반기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시 재정적 능력  
평가지표와 동일

○ (대상기간)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17년, '18년, '19년)의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함

- MBN은 '19년 감사보고서 발행시 '11년부터 '18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바, '19년 감사보고서(주석)에 기재된 수정후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함

- JTBC는 '19.1.1.자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바, '19년은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재무현황을 평가하고, '17~'18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재무현황을 평가함

\* 일반기업회계기준(~'18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19년~)

○ (평가방법)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지표별 전 산업 평균(m), 표준편차(a)와 대상회사의 지표값(A)을 비교

○ (최저점 설정) 최저점수를 배점의 20%로 적용

세부심사항목	지표값(A) 범위별 취득점수		
	$A < m - 2a$	$m - 2a \leq A \leq m + 2a$	$A > m + 2a$
부채비율(12점)	12점	$[0.6 + 0.8 \times (m - A) / 4a] \times$ 배점	2.4점
자기자본순이익율(9점)	1.8점	$[0.6 + 0.8 \times (A - m) / 4a] \times$ 배점	9점
총자산증가율(9점)	1.8점		9점

※ 붙임 :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붙임]

##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심사사항(배점)	심사항목(배점)	세부심사항목(배점)	평가방법(안)
1. 방송평가 (400)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400)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점수를 400점으로 환산</li> <li>- '16년,'17년,'18년도 방송평가 평균점수를 반영</li> <li>- '17년 재승인시 반영된 감점점수를 제외하고 반영</li> </ul>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공적책임·공정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5조(공적책임) 실현실적</li> <li>·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실적</li> <li>·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실적</li> <li>·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실적(심의제재 건수 감축 노력, 출연자 자질 검증 및 심의제재의 원인이 된 출연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li> <li>·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신뢰성 및 여론 다양성 (패널의 다양성 포함) 관련 이행실적</li> <li>·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이행실적</li> <li>· 방송언어 순화실적</li> <li>· 편성규약 제정·공표 현황 및 이행실적</li> <li>· 공익적 캠페인, 행사 등의 실적 등</li> <li>· 기타 법령 위반 실적</li> </ul>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5조(공적책임) 실현방안의 구체성</li> <li>·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li>·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방안의 구체성</li> <li>·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실현 계획(심의제재 건수 감축 노력, 출연자 자질 검증 및 심의제재의 원인이 된 출연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등</li> <li>·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신뢰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실현계획</li> <li>·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실현 계획</li> </ul>

심사사항(배점)	심사항목(배점)	세부심사항목(배점)	평가방법(안)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③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언어 순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li>·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의지</li> <li>· 편성규약 이행 관련 향후 계획</li> <li>· 공익적 캠페인, 행사 등의 계획 등</li> </ul>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이행실적</li> <li>·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방송법 제87조)</li> <li>·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실적(방송법 제89조)</li> <li>· 시청자 불만처리 이행 실적</li> <li>· 자체심의기구 설치·운영 실적(방송법 제86조) 등</li> </ul>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의 타당성(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발전관련 기여실적</li> <li>· 사회적 기여 관련 이행실적</li> <li>·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실적</li> <li>·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실적 등</li> </ul>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발전관련 기여 계획</li> <li>· 사회적 기여 계획</li> <li>· 일자리 창출 관련 기여 계획</li> <li>·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기여계획 등</li> </ul>
	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의 적정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방송분야별, 제작주체별 등) 수급 실적</li> <li>·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관련 이행실적(방송법 제4조) 등</li> </ul>

심사사항(배점)	심사항목(배점)	세부심사항목(배점)	평가방법(안)
(19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실현계획의 적정성(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방송분야별, 제작주체별 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li>·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방송법 제4조) 등</li> </ul>
	⑥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80)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의 우수성(35)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투자 이행실적 등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의 우수성(45)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투자 계획 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20)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편성 실적</li> <li>·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실적</li> <li>· 장애인 방송 편성 실적</li> <li>·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등</li> </ul>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편성 계획</li> <li>·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계획</li> <li>· 장애인 방송 편성 계획</li> <li>·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li> </ul>
	⑧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40)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의 적절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편성 실적</li> <li>·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구(또는 회의) 설치 및 운영실적 등 기타 균형적 편성을 위한 제도운영 실적 등</li> </ul>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계획의 적절성(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편성 계획</li> <li>·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구(또는 회의) 설치 및 운영계획 등 기타 균형적 편성을 위한 제도운영 계획 등</li> </ul>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의 적정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및 인력 운영 실적</li> <li>· 교육훈련 실적</li> <li>· 경영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이행실적</li> <li>·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의 이행실적</li> </ul>

심사사항(배점)	심사항목(배점)	세부심사항목(배점)	평가방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이행실적</li> <li>·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li> <li>· 신규 플랫폼 진출 실적</li> <li>· 국내외 콘텐츠 유통 실적</li> <li>·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이행실적 등</li> </ul>
		경영전략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li> <li>· 교육훈련 계획</li> <li>· 경영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계획</li> <li>·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관련 계획</li> <li>·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전략적 관계 구축 계획</li> <li>·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전략 관련 계획</li> <li>·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li> <li>· 신규 플랫폼 진출 계획</li> <li>· 국내외 콘텐츠 유통 계획</li> <li>·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향후계획</li> <li>· 프로그램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li> <li>· 자금조달 규모의 실현가능성</li> <li>· 추정 재무제표의 적정성</li> <li>· 추정 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등</li> </ul>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부채비율(12)	· 부채총액/자기자본('17년,'18년,'19년)
		자기자본순이익률(9)	· 당기순이익/자기자본('17년,'18년,'19년)
		총자산증가율(9)	·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전기총자산('17년,'18년,'19년)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제작, 송출 시설 등에 대한 투자실적</li> <li>· 국산장비 도입실적</li> <li>· 콘텐츠 제작·편집기술 등 방송기술 확보 관련 이행실적</li> <li>·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적 등</li> </ul>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 연도별 제작, 송출 시설 등에 대한 투자계획	

심사사항(배점)	심사항목(배점)	세부심사항목(배점)	평가방법(안)
		계획의 적정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장비 도입계획</li> <li>· 콘텐츠 제작·편집기술 등 방송기술 확보 계획</li> <li>·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계획 등</li> </ul>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⑫ 외주 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0)	외주 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li> <li>· 방송장비산업 기여 및 연구개발(R&amp;D) 이행실적</li> <li>· 방송인력 양성 이행실적</li> <li>·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관련 이행실적</li> <li>·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실적</li> <li>· 콘텐츠산업 관련 사회환원 이행실적</li> <li>·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이행실적</li> <li>·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관련 이행실적 등</li> </ul>
		외주 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 기여계획</li> <li>· 방송장비산업 기여 및 연구개발(R&amp;D) 계획</li> <li>· 방송인력 양성 계획</li> <li>·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li> <li>·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li> <li>· 콘텐츠산업 관련 사회환원 계획</li> <li>·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향후계획</li> <li>·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관련 향후계획 등</li> </ul>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법인이 위반한 법 위반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 평가에 반영된 법 위반 건수는 제외하고 평가</li> </ul> <b>감점기준</b> <b>(편성관련 방송법 규정* 위반 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3.43점</li> <li>-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8.57점 5천만원 초과 -12.86점</li> </ul>

심사사항(배점)	심사항목(배점)	세부심사항목(배점)	평가방법(안)
			<p>*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6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b>(그외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 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2.29점</li> <li>-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5.71점 5천만원 초과 -8.57점</li> <li>- 심의제재 : ①주의 -0.57점, ②경고 -1.14점, ③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2.29점, ④방송편성 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2.29점, ②+③, ②+④ -2.86점, ③+④, ②+③+④ -3.43점</li> </ul> <p><b>(공정거래법 위반 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 -2.29점</li> <li>- 시정명령 : -4.57점</li> <li>- 과징금 : -5.71점</li> </ul> <p><b>(그 외 법령 위반 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 -1.14점</li> <li>- 시정명령 : -2.29점</li> <li>-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2.86점 5천만원 초과 -4.29점</li> </ul>
	<p>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감점)</p>	<p>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법인이 받은 시정명령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 평가에 반영된 시정명령은 제외</li> <li>· 시정명령은 방송법 위반에 한정</li> <li>· <b>감점기준(편성관련 규정* 위반시 감점기준)</b></li> <li>- 시정명령 : -4.57점(-6.86점)</li> <li>- 과징금 : 5천만원 이하</li> </ul>

심사사항(배점)	심사항목(배점)	세부심사항목(배점)	평가방법(안)
			<p>-5.71점(-8.57점) 5천만원 초과 -8.57점(-12.86점)</p> <p>*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6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p>
	<p>⑮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70)</p>	<p>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주요내용 변경 시 사전승인 취득 여부</li> <li>- 재승인조건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여부</li> <li>- 이행실적 점검 관련 필요사항 협조 여부</li> <li>- 재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의 적정성</li> <li>- 이행촉구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여부</li> <li>- 이행촉구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 대비 이행실적의 적정성</li> </ul> </li> <li>• 재승인시 부과한 권고사항 이행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사항 이행실적 제출 여부</li> <li>- 권고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 등</li> </ul> </li> </ul>
<p>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p>	<p>⑯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p>	<p>재난방송 실적의 적정성(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방송 운영 실적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방송 시스템 및 조직·인력 현황</li> <li>-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li> <li>- 재난방송 관련 캠페인 및 프로그램 편성 실적</li> <li>- 재난방송 교육 및 모의훈련 실적</li> </ul> </li> <li>• 재난방송 신속성·정확성 등 충실성 강화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방송 조직·인력 전문성 강화</li> <li>- 재난방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완 실적 등</li> </ul> </li> </ul>
		<p>재난방송 계획의 적정성(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방송 운영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 및 조직·인력 운용 계획</li> <li>- 재난방송 교육 및 모의훈련 계획</li> <li>- 재난방송 관련 캠페인 및 프로그램 편성 계획</li> </ul> </li> </ul>



심사사항(배점)	심사항목(배점)	세부심사항목(배점)	평가방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방송 신속성·정확성 등 충실성 강화 계획의 적정성</li> <li>- 재난방송 조직·인력 전문성 강화</li> <li>- 재난방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완 계획 등</li> </ul>

### 3. 심사평가 결과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세부심사 항목별 심사결과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JTBC	MBN
<b>1. 방송평가</b>	<b>400</b>	<b>계량</b>	<b>344.74</b>	<b>332.07</b>
<b>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b>	<b>210</b>		<b>128.08</b>	<b>109.24</b>
<b>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120</b>	<b>비계량</b>	<b>73.63</b>	<b>59.79</b>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비계량	36.18	29.59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비계량	37.45	30.20
<b>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70</b>	<b>비계량</b>	<b>43.20</b>	<b>38.55</b>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30	비계량	18.04	16.65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0	비계량	25.16	21.90
<b>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20</b>	<b>비계량</b>	<b>11.25</b>	<b>10.90</b>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의 타당성	5	비계량	2.65	2.70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비계량	8.60	8.20
<b>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b>	<b>190</b>		<b>126.73</b>	<b>102.85</b>
<b>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50</b>	<b>비계량</b>	<b>32.40</b>	<b>27.55</b>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13.20	11.22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실현계획의 적정성	30	비계량	19.20	16.33
<b>3-2.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b>	<b>80</b>	<b>비계량</b>	<b>54.73</b>	<b>42.20</b>
3-2-1.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의 적정성	35	비계량	25.15	18.51
3-2-2.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의 우수성	45	비계량	29.58	23.69
<b>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b>	<b>20</b>	<b>비계량</b>	<b>13.50</b>	<b>10.80</b>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10	비계량	6.75	5.40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10	비계량	6.75	5.40
<b>3-4.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b>	<b>40</b>	<b>비계량</b>	<b>26.10</b>	<b>22.30</b>
3-4-1.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9.83	8.35
3-4-2.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계획의 적정성	25	비계량	16.27	13.95
<b>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b>	<b>100</b>		<b>56.61</b>	<b>53.12</b>
<b>4-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50</b>	<b>비계량</b>	<b>28.87</b>	<b>23.37</b>
4-1-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11.50	9.50
4-1-2. 경영전략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30	비계량	17.37	13.87
<b>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b>	<b>30</b>	<b>계량</b>	<b>14.34</b>	<b>18.35</b>
4-2-1. 부채비율	12	계량	2.66	12.00
4-2-2. 자기자본순이익률	9	계량	5.08	1.88
4-2-3. 총자산증가율	9	계량	6.60	4.47
<b>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20</b>	<b>비계량</b>	<b>13.40</b>	<b>11.40</b>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6.90	5.80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6.50	5.60
<b>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b>	<b>100</b>		<b>59.37</b>	<b>45.04</b>
<b>5-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30</b>	<b>비계량</b>	<b>18.90</b>	<b>16.29</b>
5-1-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6.47	5.30
5-1-2.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2.43	10.99
<b>5-2.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b>	<b>감점</b>	<b>계량</b>	<b>-1.71</b>	<b>-7.43</b>
<b>5-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b>	<b>감점</b>	<b>계량</b>	<b>-1.52</b>	<b>-3.42</b>
<b>5-4.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b>	<b>70</b>	<b>비계량</b>	<b>43.70</b>	<b>39.60</b>
<b>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b>	<b>50</b>		<b>35.10</b>	<b>30.20</b>
<b>6-1.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50</b>	<b>비계량</b>	<b>35.10</b>	<b>30.20</b>
6-1-1. 재난방송 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11.00	9.30
6-1-2. 재난방송 계획의 적정성	35	비계량	24.10	20.90
<b>합 계</b>	<b>1,050</b>		<b>750.63</b>	<b>672.52</b>
<b>1,000점 환산</b>	<b>1,000</b>		<b>714.89</b>	<b>640.50</b>

■ 제이티비씨(주)(JTBC)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b>1. 방송평가</b>	<b>400</b>	<b>계량</b>	<b>344.74</b>	<b>344.74</b>	<b>344.74</b>	<b>344.74</b>	<b>344.74</b>	<b>344.74</b>	<b>344.74</b>	<b>344.74</b>	<b>344.74</b>	<b>344.74</b>	<b>344.74</b>	<b>344.74</b>
<b>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b>	<b>210</b>		<b>118.00</b>	<b>113.00</b>	<b>128.00</b>	<b>138.00</b>	<b>114.00</b>	<b>178.00</b>	<b>123.26</b>	<b>124.00</b>	<b>124.00</b>	<b>122.00</b>	<b>139.00</b>	<b>147.00</b>
<b>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120</b>	<b>비계량</b>	62.00	64.00	75.00	81.00	65.00	110.00	70.26	72.00	72.00	72.00	80.00	85.00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비계량	30.00	32.00	37.50	36.00	30.00	55.00	35.26	36.00	36.00	36.00	40.00	43.00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비계량	32.00	32.00	37.50	45.00	35.00	55.00	35.00	36.00	36.00	36.00	40.00	42.00
<b>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70</b>	<b>비계량</b>	44.00	38.00	43.00	47.00	38.00	50.00	42.00	42.00	42.00	40.00	46.00	48.00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30	비계량	17.00	17.00	18.40	17.00	16.00	20.00	18.00	18.00	18.00	17.00	20.00	21.00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0	비계량	27.00	21.00	24.60	30.00	22.00	30.00	24.00	24.00	24.00	23.00	26.00	27.00
<b>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20</b>	<b>비계량</b>	12.00	11.00	10.00	10.00	11.00	18.00	11.00	10.00	10.00	10.00	13.00	14.00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의 타당성	5	비계량	3.00	3.00	2.50	2.00	3.00	4.00	2.50	2.00	2.50	2.00	3.00	3.00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비계량	9.00	8.00	7.50	8.00	8.00	14.00	8.50	8.00	7.50	8.00	10.00	11.00
<b>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b>	<b>190</b>		<b>112.00</b>	<b>113.00</b>	<b>115.00</b>	<b>151.00</b>	<b>131.00</b>	<b>172.00</b>	<b>109.00</b>	<b>120.00</b>	<b>124.00</b>	<b>127.00</b>	<b>152.00</b>	<b>118.00</b>
<b>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50</b>	<b>비계량</b>	27.00	29.00	30.00	34.00	35.00	45.00	30.00	30.00	30.00	38.00	40.00	28.00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	20	비계량	11.00	13.00	12.00	13.00	15.00	18.00	12.00	13.00	12.00	15.00	16.00	11.00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실현계획의 적절성	30	비계량	16.00	16.00	18.00	21.00	20.00	27.00	18.00	17.00	18.00	23.00	24.00	17.00
<b>3-2.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b>	<b>80</b>	<b>비계량</b>	49.00	48.00	45.00	65.00	60.00	75.00	45.00	50.00	56.00	55.00	64.00	55.00
3-2-1.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의 적절성	35	비계량	21.00	20.00	19.70	30.00	30.00	33.00	20.00	23.00	24.50	28.00	28.00	27.00
3-2-2.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의 우수성	45	비계량	28.00	28.00	25.30	35.00	30.00	42.00	25.00	27.00	31.50	27.00	36.00	28.00
<b>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b>	<b>20</b>	<b>비계량</b>	12.00	13.00	14.00	16.00	12.00	16.00	11.00	14.00	14.00	10.00	16.00	13.00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10	비계량	6.00	7.00	7.00	8.00	6.00	8.00	5.50	7.00	7.00	5.00	8.00	6.00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10	비계량	6.00	6.00	7.00	8.00	6.00	8.00	5.50	7.00	7.00	5.00	8.00	7.00
<b>3-4.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b>	<b>40</b>	<b>비계량</b>	24.00	23.00	26.00	36.00	24.00	36.00	23.00	26.00	24.00	24.00	32.00	22.00
3-4-1.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9.00	9.00	9.80	13.00	9.00	14.00	8.50	10.00	9.00	9.00	12.00	8.00
3-4-2.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계획의 적정성	25	비계량	15.00	14.00	16.20	23.00	15.00	22.00	14.50	16.00	15.00	15.00	20.00	14.00
<b>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b>	<b>100</b>		<b>56.34</b>	<b>55.34</b>	<b>52.34</b>	<b>72.34</b>	<b>58.34</b>	<b>65.34</b>	<b>52.00</b>	<b>59.34</b>	<b>51.34</b>	<b>50.34</b>	<b>53.34</b>	<b>60.34</b>
<b>4-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50</b>	<b>비계량</b>	30.00	27.00	24.00	42.00	32.00	35.00	27.66	30.00	25.00	25.00	25.00	32.00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4-1-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12.00	11.00	9.60	15.00	12.00	14.00	12.00	12.00	10.00	10.00	10.00	12.00
4-1-2. 경영전략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30	비계량	18.00	16.00	14.40	27.00	20.00	21.00	15.66	18.00	15.00	15.00	15.00	20.00
<b>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b>	<b>30</b>	<b>계량</b>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4-2-1. 부채비율	12	계량	2.66	2.66	2.66	2.66	2.66	2.66	2.66	2.66	2.66	2.66	2.66	2.66
4-2-2. 자기자본순이익률	9	계량	5.08	5.08	5.08	5.08	5.08	5.08	5.08	5.08	5.08	5.08	5.08	5.08
4-2-3. 총자산증가율	9	계량	6.60	6.60	6.60	6.60	6.60	6.60	6.60	6.60	6.60	6.60	6.60	6.60
<b>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20</b>	<b>비계량</b>	12.00	14.00	14.00	16.00	12.00	16.00	10.00	15.00	12.00	11.00	14.00	14.00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6.00	7.00	7.00	8.00	6.00	8.00	5.50	8.00	6.00	6.00	8.00	7.00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6.00	7.00	7.00	8.00	6.00	8.00	4.50	7.00	6.00	5.00	6.00	7.00
<b>5. 방송발전을 위한 자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b>	<b>100</b>		<b>56.77</b>	<b>51.77</b>	<b>61.77</b>	<b>89.77</b>	<b>64.77</b>	<b>73.77</b>	<b>55.00</b>	<b>57.77</b>	<b>49.77</b>	<b>57.77</b>	<b>59.77</b>	<b>56.77</b>
<b>5-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30</b>	<b>비계량</b>	17.00	18.00	20.00	23.00	18.00	27.00	16.23	19.00	18.00	18.00	18.00	20.00
5-1-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6.00	6.00	6.70	8.00	6.00	9.00	6.00	7.00	6.00	6.00	6.00	7.00
5-1-2.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1.00	12.00	13.30	15.00	12.00	18.00	10.23	12.00	12.00	12.00	12.00	13.00
<b>5-2.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b>	<b>감점</b>	<b>계량</b>	-1.71	-1.71	-1.71	-1.71	-1.71	-1.71	-1.71	-1.71	-1.71	-1.71	-1.71	-1.71
<b>5-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b>	<b>감점</b>	<b>계량</b>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b>5-4.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b>	<b>70</b>	<b>비계량</b>	43.00	37.00	45.00	70.00	50.00	50.00	42.00	42.00	35.00	43.00	45.00	40.00
<b>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b>	<b>50</b>		<b>30.00</b>	<b>28.00</b>	<b>40.00</b>	<b>34.00</b>	<b>40.00</b>	<b>45.00</b>	<b>29.00</b>	<b>33.00</b>	<b>45.00</b>	<b>35.00</b>	<b>31.00</b>	<b>33.00</b>
<b>6-1.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50</b>	<b>비계량</b>	30.00	28.00	40.00	34.00	40.00	45.00	29.00	33.00	45.00	35.00	31.00	33.00
6-1-1. 재난방송 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9.00	10.00	12.00	11.00	12.00	13.00	8.50	12.00	13.50	10.00	11.00	10.00
6-1-2. 재난방송 계획의 적정성	35	비계량	21.00	18.00	28.00	23.00	28.00	32.00	20.50	21.00	31.50	25.00	20.00	23.00
<b>합 계</b>	<b>1,050</b>		<b>717.85</b>	<b>705.85</b>	<b>741.85</b>	<b>829.85</b>	<b>752.85</b>	<b>878.85</b>	<b>713.00</b>	<b>738.85</b>	<b>738.85</b>	<b>736.85</b>	<b>779.85</b>	<b>759.85</b>
<b>1000점 환산</b>	<b>1,000</b>		<b>683.67</b>	<b>672.24</b>	<b>706.52</b>	<b>790.33</b>	<b>717.00</b>	<b>837.00</b>	<b>679.05</b>	<b>703.67</b>	<b>703.67</b>	<b>701.76</b>	<b>742.71</b>	<b>723.67</b>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주) 매일 방송(MBN)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b>1. 방송평가</b>	<b>400</b>	<b>계량</b>	<b>332.07</b>	<b>332.07</b>	<b>332.07</b>	<b>332.07</b>	<b>332.07</b>	<b>332.07</b>	<b>332.07</b>	<b>332.07</b>	<b>332.07</b>	<b>332.07</b>	<b>332.07</b>	<b>332.07</b>
<b>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b>	<b>210</b>		<b>104.00</b>	<b>96.00</b>	<b>109.00</b>	<b>103.00</b>	<b>90.00</b>	<b>114.00</b>	<b>107.93</b>	<b>118.00</b>	<b>102.50</b>	<b>120.00</b>	<b>116.00</b>	<b>141.00</b>
<b>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120</b>	<b>비계량</b>	57.00	50.00	60.00	54.00	45.00	60.00	60.93	64.00	54.00	70.00	66.00	86.00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비계량	28.00	23.00	30.00	25.00	25.00	30.00	30.93	32.00	27.00	35.00	33.00	43.00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비계량	29.00	27.00	30.00	29.00	20.00	30.00	30.00	32.00	27.00	35.00	33.00	43.00
<b>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70</b>	<b>비계량</b>	36.00	35.00	40.00	40.00	35.00	42.00	37.00	42.00	38.50	40.00	37.00	42.00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30	비계량	15.00	15.00	17.00	18.00	15.00	18.00	16.00	20.00	16.50	17.00	15.00	19.00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0	비계량	21.00	20.00	23.00	22.00	20.00	24.00	21.00	22.00	22.00	23.00	22.00	23.00
<b>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20</b>	<b>비계량</b>	11.00	11.00	9.00	9.00	10.00	12.00	10.00	12.00	10.00	10.00	13.00	13.00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의 타당성	5	비계량	3.00	3.00	3.00	2.00	2.00	3.00	2.50	3.00	2.50	2.00	3.00	3.00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비계량	8.00	8.00	6.00	7.00	8.00	9.00	7.50	9.00	7.50	8.00	10.00	10.00
<b>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b>	<b>190</b>		<b>107.00</b>	<b>98.00</b>	<b>95.00</b>	<b>120.00</b>	<b>117.00</b>	<b>83.00</b>	<b>97.00</b>	<b>103.00</b>	<b>92.50</b>	<b>113.00</b>	<b>112.00</b>	<b>115.00</b>
<b>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50</b>	<b>비계량</b>	29.00	25.00	23.00	24.00	33.00	20.00	26.00	27.00	22.50	38.00	30.00	36.00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	20	비계량	11.00	10.00	9.20	11.00	15.00	8.00	10.00	11.00	9.00	15.00	12.00	14.00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실현계획의 적절성	30	비계량	18.00	15.00	13.80	13.00	18.00	12.00	16.00	16.00	13.50	23.00	18.00	22.00
<b>3-2.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b>	<b>80</b>	<b>비계량</b>	42.00	40.00	38.00	50.00	50.00	35.00	41.00	42.00	40.00	43.00	48.00	41.00
3-2-1.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의 적절성	35	비계량	17.00	18.00	16.60	22.00	25.00	15.00	17.00	20.00	17.50	18.00	21.00	18.00
3-2-2.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의 우수성	45	비계량	25.00	22.00	21.40	28.00	25.00	20.00	24.00	22.00	22.50	25.00	27.00	23.00
<b>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b>	<b>20</b>	<b>비계량</b>	12.00	12.00	14.00	10.00	10.00	10.00	10.00	12.00	10.00	10.00	12.00	10.00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10	비계량	6.00	6.00	7.00	5.00	5.00	5.00	5.00	6.00	5.00	5.00	6.00	5.00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10	비계량	6.00	6.00	7.00	5.00	5.00	5.00	5.00	6.00	5.00	5.00	6.00	5.00
<b>3-4.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b>	<b>40</b>	<b>비계량</b>	24.00	21.00	20.00	36.00	24.00	18.00	20.00	22.00	20.00	22.00	22.00	28.00
3-4-1.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9.00	8.00	7.50	13.00	9.00	6.00	7.50	8.00	7.50	8.00	8.00	11.00
3-4-2.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계획의 적정성	25	비계량	15.00	13.00	12.50	23.00	15.00	12.00	12.50	14.00	12.50	14.00	14.00	17.00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b>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b>	<b>100</b>		<b>53.35</b>	<b>54.35</b>	<b>44.35</b>	<b>56.35</b>	<b>51.35</b>	<b>50.35</b>	<b>56.00</b>	<b>60.35</b>	<b>48.35</b>	<b>42.35</b>	<b>62.35</b>	<b>55.35</b>
<b>4-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50</b>	<b>비계량</b>	23.00	25.00	16.00	25.00	23.00	20.00	25.65	28.00	20.00	18.00	30.00	26.00
4-1-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9.00	10.00	6.40	11.00	10.00	8.00	10.00	11.00	8.00	7.00	12.00	11.00
4-1-2. 경영전략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30	비계량	14.00	15.00	9.60	14.00	13.00	12.00	15.65	17.00	12.00	11.00	18.00	15.00
<b>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b>	<b>30</b>	<b>계량</b>	18.35	18.35	18.35	18.35	18.35	18.35	18.35	18.35	18.35	18.35	18.35	18.35
4-2-1. 부채비율	12	계량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4-2-2. 자기자본순이익률	9	계량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4-2-3. 총자산증가율	9	계량	4.47	4.47	4.47	4.47	4.47	4.47	4.47	4.47	4.47	4.47	4.47	4.47
<b>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20</b>	<b>비계량</b>	12.00	11.00	10.00	13.00	10.00	12.00	12.00	14.00	10.00	6.00	14.00	11.00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6.00	5.00	5.00	8.00	5.00	6.00	6.00	7.00	5.00	3.00	7.00	6.00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6.00	6.00	5.00	5.00	5.00	6.00	6.00	7.00	5.00	3.00	7.00	5.00
<b>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b>	<b>100</b>		<b>45.15</b>	<b>40.15</b>	<b>39.15</b>	<b>58.15</b>	<b>49.15</b>	<b>39.15</b>	<b>45.00</b>	<b>40.15</b>	<b>39.15</b>	<b>50.15</b>	<b>47.15</b>	<b>55.15</b>
<b>5-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30</b>	<b>비계량</b>	16.00	16.00	15.00	19.00	15.00	15.00	15.85	16.00	15.00	18.00	18.00	18.00
5-1-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5.00	5.00	5.00	6.00	5.00	5.00	5.00	6.00	5.00	6.00	6.00	5.00
5-1-2.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1.00	11.00	10.00	13.00	10.00	10.00	10.85	10.00	10.00	12.00	12.00	13.00
<b>5-2.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b>	<b>감점</b>	<b>계량</b>	-7.43	-7.43	-7.43	-7.43	-7.43	-7.43	-7.43	-7.43	-7.43	-7.43	-7.43	-7.43
<b>5-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b>	<b>감점</b>	<b>계량</b>	-3.42	-3.42	-3.42	-3.42	-3.42	-3.42	-3.42	-3.42	-3.42	-3.42	-3.42	-3.42
<b>5-4.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b>	<b>70</b>	<b>비계량</b>	40.00	35.00	35.00	50.00	45.00	35.00	40.00	35.00	35.00	43.00	40.00	48.00
<b>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b>	<b>50</b>		<b>30.00</b>	<b>26.00</b>	<b>35.00</b>	<b>28.00</b>	<b>30.00</b>	<b>25.00</b>	<b>30.00</b>	<b>21.00</b>	<b>35.00</b>	<b>35.00</b>	<b>31.00</b>	<b>33.00</b>
<b>6-1.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b>	<b>50</b>	<b>비계량</b>	30.00	26.00	35.00	28.00	30.00	25.00	30.00	21.00	35.00	35.00	31.00	33.00
6-1-1. 재난방송 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9.00	8.00	10.50	9.00	10.00	7.00	9.00	6.00	10.50	10.00	11.00	10.00
6-1-2. 재난방송 계획의 적정성	35	비계량	21.00	18.00	24.50	19.00	20.00	18.00	21.00	15.00	24.50	25.00	20.00	23.00
<b>합 계</b>	<b>1,050</b>		<b>671.57</b>	<b>646.57</b>	<b>654.57</b>	<b>697.57</b>	<b>669.57</b>	<b>643.57</b>	<b>668.00</b>	<b>674.57</b>	<b>649.57</b>	<b>692.57</b>	<b>700.57</b>	<b>731.57</b>
<b>1000점 환산</b>	<b>1,000</b>		<b>639.59</b>	<b>615.78</b>	<b>623.40</b>	<b>664.35</b>	<b>637.69</b>	<b>612.92</b>	<b>636.19</b>	<b>642.45</b>	<b>618.64</b>	<b>659.59</b>	<b>667.21</b>	<b>696.73</b>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4. 심사의견서



## 2020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2020년도 하반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020.11.30.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심사평가 등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11. 6. (금)

### 1. 종합 의견

- 2017년과 비교하여 장르의 다양성이 개선되었고, 공정성 관련 심의 제재가 다소 감소하는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음
- 미디어 환경의 급변에 대해 사업자들이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재정적인 위기 극복, 콘텐츠 투자계획 등이 기대에 못 미치므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전 재승인 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시청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작여건 개선이 요구됨
- 시청자들은 종편PP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MBN의 공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시청자들의 불만이 높게 나타났음. 이에 사업자는 보도의 공정성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정례화하여야 함
-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언론환경에서 종편PP 뉴스의 신뢰도 하락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뉴스 등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외부 기관의 컨설팅 등 지적을 수용하여 조속한 신뢰성 회복이 필요함

## 2. 심사사항 별 소견

###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JTBC)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을 높은 수준으로 함양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경영 환경 상 추가적인 지역·사회에의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직능별 다양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
- (MBN)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이 미흡함
  - 공정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있어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함
  - 최초 승인 과정에서의 불법으로 인하여 윤리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주주 대표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 시청자 불만처리 이행실적은 많은데 상담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필요함

##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JTBC) 장르별 균형성,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수준의 우수성으로 시청률의 성취도 거두었고, 시청률이 낮은 경우도 기획의 참신함을 갖춘 프로그램이 많았음
  -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봄. 언론사가 대주주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도의 독립성 및 편성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문임
- (MBN)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사고와 변화하는 방송환경과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함
  - 시사논평 프로그램은 과도한 반면,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여, 편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기여도도 낮음. 또한 재난방송 및 어린이 방송 편성 등이 매우 저조함
  - 홈쇼핑사와의 연계편성과 관련하여 타 종편PP에 비해 문제가 심각하고 시청자의 신뢰 상실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보전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부적절함

## □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JTBC) '19년말 기준 자본의 00%가 잠식 상태이며, '20년에 상환해야 할 부채규모가 000억원에 달하므로 영업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자금계획을 실현가능성 있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MBN)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최초 승인 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므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님에도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

####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JTBC) 보도국 기자의 상당수가 중앙일보사 소속이며 JTBC는 중앙일보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MBN) 건강한 방송생태계 조성 및 외주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함

### 3. 정책 건의사항

- 재승인 사업기간 동안 동일한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 재무제표는 수익성이 악화된 종속 회사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 종속 회사의 경영상황을 반영하는 연결재무제표로 심사평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JTBC의 경우 '17년~'18년은 일반기업회계기준, '19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여 작성

#### 4. 재승인 조건(안)

##### □ JTBC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li> <li>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방송콘텐츠 품격제고,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다양성 강화, 선거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송편성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li>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또한,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3항, 제25조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의 경우, '20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li> <li>- 다만, 개별 제재조치의 위반근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복수인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 건수에만 포함함</li> </ul> </li> <li>4. 방송 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2021년부터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li> <li>5.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 다만, 고지 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역의 명칭, 제공업체 등을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지 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등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월의 이행 실적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ul> </li> </ol>

구 분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방송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양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할 것. 다만, '20년 콘텐츠 투자계획은 '20년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20년 연간 투자계획금액을 준수할 것</li> <li>7.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직전 반기 동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li> <li>8.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 문제를 해소할 것. 아울러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권고 사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의견반영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li> <li>2.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li> <li>3. 어린이·청소년의 노동권,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표준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이행할 것</li> <li>4. 장애인 방송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고 장애인 고용 관련 법령도 잘 준수할 것</li> <li>5.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직능별 다양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할 것</li> <li>6.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할 것, 아울러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li> <li>7. 중·단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발생하는 채무의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li> <li>8.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 및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영에 적극 활용할 것</li> <li>9. 이사회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사외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것</li> </ol>

□ MBN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p>1.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p> <p>※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p> <p>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방송콘텐츠 품격제고,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다양성 강화, 선거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송편성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또한,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p> <p>※ '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3항, 제25조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의 경우, '20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p> <p>- 다만, 개별 제재조치의 위반근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복수인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 건수에만 포함함</p> <p>4. 방송 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2021년부터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p> <p>5.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 다만, 고지 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역의 명칭, 제공업체 등을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지 말 것</p> <p>- 또한,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등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월의 이행 실적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구 분	내 용
	<p>6. 방송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양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할 것. 다만, '20년 콘텐츠 투자계획은 '20년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20년 연간 투자계획금액을 준수할 것</p> <p>7.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직전 반기 동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p>
<p><b>권고 사항</b></p>	<p>1.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의견반영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p> <p>2.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p> <p>3. 어린이·청소년의 노동권,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표준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이행할 것</p> <p>4.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p> <p>5. 장애인 방송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고 장애인 고용 관련 법령도 잘 준수할 것</p> <p>6.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아울러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p> <p>7.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 및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영에 적극 활용할 것</p> <p>8. 이사회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것</p> <p>9.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p>



## 5. 심사위원회 회의 및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

- 일 시 : 2020. 11. 3.(화) 11:19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회의실

**방송통신위원회**

##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20. 11. 3.(화) 11:19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회의실

□ 참석위원 : 윤석년 (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 선 (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성중 ( 한국언론정보학회 총무이사 )  
손병우 (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조원희 (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  
권형돈 ( 공주대 법학과 교수 )  
장현민 (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  
엄은숙 ( 정동회계법인 전무이사 )  
송민섭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허남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삼현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강수곤 (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  
김향란 ( 부산소비자연맹 회장 ) (13명)

□ 불참위원 : 없 음

---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

---

【11시 19분 개회】

###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회의 개최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회 열세 분 중 열세 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3. 의결사항

####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안녕하십니까. 심사지원반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I> 개요입니다. 심사위원회 주요일정은 1일차,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및 세부심사기준 등을 의결합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를 구성하겠습니다. 2일차, 수요일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계량평가 결과를

의결하며, 3일차에 있을 의견청취를 준비합니다. 3일차 목요일에는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며, 심사 평가표 및 의견서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4일차, 금요일에는 이어서 종합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사의견서를 의결하며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 후 해산할 예정입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운영방안입니다. 심사위원회 직무는 방통위에서 의결로 정한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는 심사위원장님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 안건은 심사위원장님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는 분과를 구성하여 심사자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장은 분과별 논의사항을 정리 및 보고하기 위해 분과별로 심사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서 및 속기록 관련입니다. 심사위원회 안건 의결 시, 출석 심사위원이 확인 서명한 심사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내용은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공개 여부입니다. 심사위원별 평가결과와 심사의견은 개별 심사위원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으나 익명으로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사자료입니다. 첫 번째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본문과 부속서류, 보정서류 및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서류입니다. 필요 시 심사위원회는 신청법인에 보정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료 채택여부는 추후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신청법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신청법인·대표자·편성책임자 행정처분 등 조사결과입니다. 네 번째는 신청법인 대상 의견청취 결과를 심사자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II>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1차 회의이며, 현재 제가 보고드리고 있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및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사항>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입니다. 이는 2019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 계획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2019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입니다.

오찬 후 오후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 관련입니다.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고, 이때 <의결 사항>과 <보고사항>이 각 1건씩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청취 접수 결과를 의결하고, 이후 종편·보도PP 20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회의 때 진행 사항이 하나 있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과별 분과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하시면 됩니다.

제3차 회의입니다. 심사 2일차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개최합니다. 재승인 사업자의 계량평가 결과를 의결한 후 다음 날 있을 사업자 의견청취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4차 회의입니다. 심사 3일차인 목요일 밤 7시 30분 정도에 개최할 예정이며, <보고사항>은 그 전날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1분과 논의 결과, 2분과 논의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의결사항>으로는 추가 심사자료 채택 건을 의결합니다.

마지막 제5차 회의는 4일차 금요일 10시부터 시작되며,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의결합니다.

다음으로 <Ⅲ> 심사위원회 분과 구성·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2개 분과를 심사 1일차 오후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분과위원회 일정은 우선 심사 2일차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제1분과는 심사위원님 중 방송·미디어 분야 2인, 법률 분야 2인, 시청자·소비자 분야 2인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1분과의 직무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시청자 권익보호, 프로그램 기획·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관련 검토 의견을 심사위원회에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2분과는 심사위원 중 방송·미디어 분야 1인, 경제·경영·회계 분야 3인, 기술 분야 1인, 시청자·소비자 분야 1인으로 구성합니다. 직무는 심사항목 중 계량평가 항목별 평가방법 및 결과를 논의하고, 경영·재정에 관한 사항, 콘텐츠 투자실적 및 콘텐츠 펀드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승인조건·권고사항 관련 검토의견을 심사위원회에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Ⅳ> 신청사업자 의견청취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취일시는 3일차 목요일 9시 30분~13시까지 3시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청취대상은 재승인 대상 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이 참석합니다. 배석자는 4인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의견청취 순서는 저희 사무처에서 지난 10월 13일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JTBC, MBN 순으로 진행합니다. 결과처리는 의견청취 결과는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 평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심사위원회 의견청취 준비는 심사 2일차인 내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논의하고, 이 회의는 공식회의는 아닙니다. 이 회의에서 의견청취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논의사항으로 질의서를 확정된 후 심사위원 간 역할 분담을 정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 의견청취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는 목요일 의견청취를 마친 이후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진행됩니다. <붙임>자료는 심사장 배치도, 일정,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붙임>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사위원

- 분과 구성을 어떻게 나누어서 합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분과 2개를 나눌 때….

○ **심사지원반**

- 분과를 2개로 나눌 때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셔서….

○ **심사위원장**

- 의견을 물어서 사전에 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보고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장**

- 다음으로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건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재승인 기본 계획 및 세부계획 하에 수립된 것이고, 상반기 종합·보도PP 4개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 시 마련된 세부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결에 앞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 **심사지원반**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관한 건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 5월에 의결한 계획이고, 이 기본계획은 종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PP, 지상파DMB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내용이라서, 이후에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 계획을 보시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세부계획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으니까 이 기본 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세부계획을 보고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서면보고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나.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장**

- <보고사항 나> “20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사지원반

-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입니다.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를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계획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를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승인 심사 대상사업자는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2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회사는 승인유효기간이 2020년 11월 30일로 만료되는 사업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나>번 심사 기본방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합니다. 앞에 놓여 드린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첫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두 번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세 번째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합니다. 특히 재난·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가 최근에 증가함에 따라 종편PP의 재난방송 공적책무를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송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였고, 또한 이번 주 목요일에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이 장소에서 의견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저희 사무처에서 사전에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검증을 실시한 바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참고자료에 포함해 놓았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심사위원회 운영 부분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보고드린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지금 현재 보고드리고 있는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결과와 목요일에 있을 의견청취 내용을 반영해서 평가하고 심사위원들께서 심사의견을 제시합니다. 재승인 여부 및 재승인 조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심사위원회 임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서 세부심사항목, 배점과 평가방법을 결정합니다. 심사평가 및 과거에 부가된 사업자별 재승인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합니다. 의견청취도 실시하고 결과적으로 심사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전원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다음은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사전 기본계획을 방통위에서 의결한 후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이를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이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간 <표>는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사항별 배점표입니다. 심사사항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이 <6>번 심사사항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50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편PP 재승인 사항의 총점은 1,050점입니다.

<마>번 재승인 여부 결정 관련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앞서 말씀드린 1,050점을 1,000점으로 환산해서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합니다. 이 중 총점이 7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을 5년 부여하고,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을 할 경우 3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650점 이상을 획득 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따로 부가할 수 있습니다. 중점 심사사항 은 <2>번 심사사항과 <3>번 심사사항이 있는데 이 심사사항의 배점의 50%에 미달 하면 이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합니다.

5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자들의 콘텐츠 투자 금액이 있는데 인정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자료도 추후 배포해 드릴 참고자료에 포함해 놓았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이것은 과거 일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11월에 운영한 후 11월 중 종편PP 방통위의 재승인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더 세부적인 사항은 그 뒤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1페이지 박스 하단에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심사지원반**

- TV조선과 채널A가 상반기 4월 21일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TV조선과 채널A는 상반기에 심사를 진행해서 이미 재승인이 결정되었고, JTBC와 MBN는 11월 30일 이기 때문에 이번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참고로 상반기 때는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 같이해서 4개 사업자를 재승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종편사업자 중에서 11월 말에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JTBC와 MBN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4페이지를 보시면 650점 미만 조건부 재승인 시 3년의 승인유효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3년 이하입니까, 딱 바뀌어서 3년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3년까지 해야 합니다. 방송법에는 승인유효기간을 5년으로 부가할 수 있는데 단축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4페이지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조건부 재승인이냐, 재승인 거부냐 결정은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방식은 다수결이 될 수도 있고, 전원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환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설명이 미진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재승인 여부 결정이 1,000점을 기준으로 650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송이 들어감으로써 1,050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50점 중 총점 기준으로 682.5점 이상이 되면 재승인을 의결할 수 있고, 그 미만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환산하면 650점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입니다. 심사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길 때 밑의 하단에 나오는 점수가 682.5점 이하가 나오면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거부 의결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이 나오면 재승인을 의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참고로 제 앞에는 계산기가 없는데 위원님들은 계산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심사하실 때 열두 분만 채점하시고 저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를 주시면 실무진에서 평균을 내서 봉해서 방통위원회에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심사지원반

- 예. 구체적으로 심사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계산하는 방식은 뒤에 있을 세부심사기준에 좀 더 명확하게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심사지원반

-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만 11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의결합니다. 그리고 재승인 거부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과 방송법에 따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문을 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미리 10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고려할 때 그렇게 여유 있는 일정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50점 차이로 승인가간이 1년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사업자들은 다른 이견은 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부계획과 기본계획을 의결할 당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제시받아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심사지원반

- 기존에는 3년을 통상 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높게 받으면 더 많이 주는, 좋은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자들이 반대하거나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50점 차이로 1년 적게 받는 것에는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그동안 계속 3년을 받아 오다가, 2017년도에는 JTBC가 700점이 넘었는데 그때도 역시 3년 7개월이었습니다.

○ 심사위원

- 심사위원회 역할이 점수 산정하는 것까지가 업무입니까?

○ 심사지원반

- 평가하는 것까지가 업무입니다. 그리고 심사의견서 의결하는 것까지입니다.

○ 심사위원장

- 1,050점을 우리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방송평가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점수하고

그 다음에 회계사 분들이 하는 정량점수가 일단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정성 평가 하는 점수를 합쳐서 최종 평가점수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종합심사의견서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낸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전체 점수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장

- 의견서는 심사하면서 각자 개인이 '이 방송사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질문해야겠다'든지, 아니면 '승인조건에 이러이러한 것이 명시되어야겠다'는 내용을 적시하시면 그 적시를 마지막 날에 저희가 의견을 다 모아서 위원들이 전부 다 의결해서 그 내용을 방통위에 넘깁니다. 그러면 방통위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재승인 심사에 조건들을 부가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점수 산정과 종합의견서 작성하는 것...

○ 심사위원장

- 예. 점수를 매기면서 A라는 방송사는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써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에 투자가 미흡하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콘텐츠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든지, 재난방송에 문제가 있다면 재난방송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보시고 소팅하셔서, 열두 분이 소팅하시면 의견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 의견을 올려놓고 '이 의견은 꼭 들어가야겠다', 아니면 '이 의견은 빼자', 아니면 '수정하자' 이렇게 의결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올리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그리고 점수를 평가한 이후에는 본인이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핑을 다해서 본인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나중에 취합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 심사위원장

- 개별적으로 매긴 점수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모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까 682.5점이라면 650점을 넘어갈만한 사업자인지, 650점이 넘어가지 않을 사업자인지 결정을 각자 위원들이 양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더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고사항 나> "2020년도 종합·보도

PP 재승인 세부계획”을 접수하겠습니다.

## 5. 의결사항

### 나. 2020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한 사항

#### ○ 심사위원장

- 종편PP 재승인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대해 접수하였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 나>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사지원반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JTBC·MBN)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건」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입니다. 동 세부심사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요입니다.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분류되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앞서 보고드린 재승인 세부계획에서 심사사항과 심사항목 및 관련 배점은 이미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과 그에 따른 평가방법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세부평가 방법입니다. 평가의 기본원칙은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12인 전원이 각자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목요일에 있을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받은 시정명령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은 이미 방송평가에 반영되어 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평가유형입니다. 첫 번째, 계량평가와 두 번째 비계량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계량평가 항목은 방송평가 항목과 재정적 능력, 관련 법령 위반 정도, 시정명령 건수 및 이행여부 등의 항목이며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가 됩니다. 비계량평가는 이 밖의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먼저 부여한 후 각 등급별로 평점 환산비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합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수계산 방식입니다. 재승인 대상 사업자의 최종점수는 세부심사항목별 계량평가 점수와 비계량평가 점수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계량평가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량적 방법으로 산출된 점수를 부여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비계량평가는 세부심사항목별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하되, 이것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다만, 최고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합니다. 재승인 여부의 결정 방식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 세부항목별 심사입니다. 세부심사항목의 구성 방식은 아래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라는 심사항목인 경우에는 세부심사항목은 실적의 적정성과 계획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심사사항의 경우에는 계획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실적만 반영합니다. 중간 <표>를 보시면 세부심사항목별 배점입니다. 이 배점 부분은 상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번에는 동일하게 표시해서 제안드립니다.

심사사항 6가지 중 심사항목 16가지가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심사사항 <2>번의 ②를 보시면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 120점으로 배점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적으로 평가할 점수가 60점이고, 계획으로 평가할 점수가 60점입니다. 음영이 칠해진 부분이 계량평가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정량적 평가항목인데 방통위의 법정 위원회인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방송평가 점수입니다. 이것은 총 400점이 들어가고,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은 총 배점 30점으로 계산됩니다. ⑬은 배점이 별도로 없고 법령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감점되는 항목입니다. ⑭ 시정명령 건수 및 이행여부도 같이 감점되는 항목입니다. 음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께서 실적과 계획을 나누어서 각각 평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실적은 730점을 평가하게 되고, 계획은 320점을 평가하게 됩니다.

4페이지 <4> 주요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항목인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입니다. 이는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이 모두 동일합니다. 계량평가이고 400점 만점입니다. 방송평가는 앞서 보고드린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서 종전 재승인이 2017년에 있었는데 그때 반영된 이후의 방송평가 점수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 신청법인의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매년 방송평가 점수가 나오는데 이 방송평가의 평균 점수를 반영합니다. 다만, 방송평가에도 관계법령 위반이나 시정명령 이행의 불이행 같은 감점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점 항목들이 심사에서 중복해서 반영되지 않기 위해 방송평가 점수에서 제외하고 반영합니다. 또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7년 재승인 시 반영된 감점 점수 JTBC는 2016년 1월 1일~2017년 1월 31일까지 감점 점수와 MBN은 2016년 1월 1일~2017년 8월 31일까지의 감점 점수는 방송평가 점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였습니다.

방송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방식은 종편PP의 경우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방송 점수가 총점이 700점입니다. 다만, 이를 종편PP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400점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재승인 신청법인 JTBC·MBN의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반영하되, 방송평가에서 이미 반영되어서 점수에 감점되어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적용기간은 2017년 2월 1일~2020년

8월 31일까지 위반사항을 반영하며, MBN은 2017년 9월 1일~2020년 8월 31일까지 반영합니다. 2020년 8월 31일이란 날짜는 저희가 모든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 사안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조회를 띄워서 취합된 기간입니다.

또한 이때 포함될 관계법령의 범위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시 반영해야 할 관련법령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4가지 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은 감점항목으로 반영하되, 이 밖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항목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에서 비계량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상사, 콘텐츠, 저작권, 금융, 중소기업, 형사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사항은 관계기관 조회 후 위반 내역을 심사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동 사업자별로 위반사항은 참고자료로 제시해 드립니다.

관계법령 위반할 때 감점 및 기준이 되는 참고기준입니다. 점수를 감점하는 기준에 대한 참고 기준은 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평가 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그 기준을 참고하고, 그 외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상파 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점수를 토대로 종편PP 심사에 반영되는 점수는 방송평가가 700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중간 <표>대로 이렇게 점수가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방송법 편성관련 규정의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으면 사업자별로 -3.43점이 감점됩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두 번째 참고 표시에 소송 중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감점이 유예됩니다. 이 사안은 심사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위반사항을 감점하다 보면 연도별로 감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요한데 '19년, '20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7년, '18년 위반사항과 약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7년, '18년 위반사항은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방송평가가 3년치 평균으로 반영되어서 위반사항이 3년치 평균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19년, '20년 최근 위반사항은 아직 방송평가 점수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직접 감점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1개년 감점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4년도, '17년도, '20년 상반기 재승인 심사 시에도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과태료 한 번 처분시 방송평가에서는 종편PP 사업자당 -4점이 감점됩니다. 재승인에 오면 '17년도 혹은 '18년도 위반사항이었다면 -4점을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한 -2.29점이 되는데 이를 3년치 평균으로 감점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0.76점이 감점됩니다. 다만, '19년, '20년 위반사항이었다면 이를 -2.29점으로만 감점하는 방안입니다.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감점 항목입니다. 재승인 신청법인의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 있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감점을 적용하게 됩니다. JTBC는 관계법령 위반의 적용기간과 동일합니다. MBN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명령의 범위는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하되,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시정명령 등은 제외합니다. 여기에서도 소송으로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유예합니다. 방송평가 시 적용한 감점기준을 참고한 기준입니다.

8페이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적 안정성·수익성의 심사사항은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으로 종편PP의 경우 100점 배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심사항목은 30점 만점으로 관련한 세부심사항목은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배점은 부채비율 12점, 자기자본순이익률 9점, 총자산증가율 9점입니다. 이들 모두 계량평가 항목입니다. 이 계량평가 항목은 2010년 최초 승인, 2014년 및 2017년 재승인, 2020년 상반기 재승인 시 평가지표와 동일합니다.

9페이지 마지막 입니다. 대상기간입니다.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즉, '17년, '18년, '19년의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발생해서 보고드립니다. MBN의 경우에는 이번 '19년 감사보고서를 발생할 때 과거 2011년~2018년까지의 재무제표를 모두 재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MBN이 최근 금융위와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MBN은 2011년도 자본금 편법충당을 숨기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19년도에 이르러 전기오류 수정을 해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7년, '18년도의 감사보고서가 모두 숫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신청법인의 재무현황 평가대상의 항목은 '19년도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된 수정 후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JTBC입니다. JTBC는 2019년 1월 1일자로 회계기준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19년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현황으로 평가하고 '17년~'18년도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재무현황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평가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해서 각 지표별로 전 산업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합니다. 그래서 대상회사의 지표값과 비교해서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을 계산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붙임>으로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책상에 가로표가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이 세부심사항목별로 배점을 적시해 놓았고, 그 안에 세부심사항목별로 평가할 때 참고할 만한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적책임·공정성을 볼 때 주로 봐야 하는 부분들을 예시로 적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평가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정량평가는 지금 산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심사지원반

- 사무처에서 초안을 만들어 놓았고, 2분과 회의에서 한 번 논의를 거친 후 계량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심사위원

-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재승인 신청법인의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반영하되, 방송 평가에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 심사지원반

- 방송평가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송평가에도 관계법령 위반을 하면 감점을 이미 시키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린 종편PP별로 700점 만점에 관계법령이 이미 거기에도 감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번 감점되면 되지 그것을 재승인 때 또 감점을 하면 같은 법령의 위반을 가지고 두 번 감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방송평가에서 이미 감점을 시켰다면 뒤에 재승인 때 별도로 감점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심사위원

- 적용기간이 2020년 8월 31일까지인데 이 말은 MBN의 이번 처분은 여기 심사대상과는 관계 없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MBN의 경우에는 현재 방통위에서 의결이 지난 주인 10월 30일 금요일에 됐습니다. 방송법 제18조 위반으로 방송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에게 통보가 아직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8월 31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관계 법령 위반으로 설정한 기준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 부처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기한을 설정해 놓은 것인데, 특이하게도 방통위에서 중요한 처분이 최근에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 심사위원

- 따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장

- 올해 방송평가는 다 끝났는데 발표하지 않았지요?

○ 심사지원반

-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19년의 방송평가 점수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심사위원

- JTBC가 회계기준을 변경했는데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저희가 '17년, '18년도와 비교해 보지 않았고, '19년도 감사보고서에서 '18년도 비교재무제표를 감사받기 전 재무제표로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계정과목별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보고서는 사업자로부터 다 받았고 그것을 자료로 놓아드릴 예정입니다.

○ 심사위원

- 소송 중인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감점이 유예되는데 적용기간이 3년 반 정도 되는데 만약 회사가 계속 소송을 해서 대법원 가다가 3년이 넘어가면 그다음 회차에서 그 전 것을 고려합니까, 아니면 계속 소송이 길어지면 어차피 계속 누락이 되어서...

○ 심사지원반

- 소송 건과 관련해서는 확정판결이 난 시점에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감점을 합니다. 가령 3년이 걸려서 재송인기간을 넘어 가서 다음 재송인 기간에 딱 걸렸다면 행정벌을 받은 것은 훨씬 그 전이지만 처분이 확정된 시점에 저희가 감점항목으로 반영합니다.

○ 심사위원

- 적용기간이라는 것이 확정기간이 이 적용기간에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에서는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처분에 대해서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령위반 사실은 명확한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행정처분에 관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위반 여부를 처분의 종류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그동안 해 온 것입니다. 만약 처벌한 것을 감점했는데 소송에서 처벌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반영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감점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감점을 계산할 때 MBN의 주식사항을 보고 왔는데 연도별로 다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 경우 산출방식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MBN의 경우 2019년 감사보고서 주식에서 재무제표를 10년치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재무적 안정성·수익성을 평가하는 데서만 영향을 줍니다. 관계법령 위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심사위원

- 기타 법의 위반이지 않습니까? 공시 위반은 금감원 감리에서 다 지적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법 시행령에서 계량평가로 반영되는 법은 4가지로 한정되었습니다.

○ 심사위원

-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라서...

○ 심사지원반

- MBN의 경우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지만 현재 2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지원반

-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MBN은 금융위 검찰고발과 행정처분 때문에 1심에서는 판결이 났지만 2심으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나>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6. 폐 회

### o 심사위원장

- 오늘 제1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14분 폐회】

---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

- 일 시 : 2020. 11. 3.(화) 13:58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회의실

### 방송통신위원회

##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20. 11. 3.(화) 13:58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회의실

□ 참석위원 : 윤석년 (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 선 (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성중 ( 한국언론정보학회 총무이사 )  
손병우 (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조원희 (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  
권형돈 ( 공주대 법학과 교수 )  
장현민 (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  
엄은숙 ( 정동회계법인 전무이사 )  
송민섭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허남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삼현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강수곤 (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  
김향란 ( 부산소비자연맹 회장 ) (13명)

□ 불참위원 : 없 음

---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속기록

---

【13시 58분 개회】

###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회 열세 분 중 열세 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3. 의결사항

####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국민이 묻는다」 포함)’ 접수 결과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국민이 묻는다」 포함]’ 접수 결과에 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국민이 묻는다」 포함]’ 접수 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으로는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국민이 묻는다」 포함)’ 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개요는 방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종편 2개사 JTBC와 MBN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시청자 의견을 접수받을 때 사업자에 대한 질의인 「국민이 묻는다」도 동시에 접수받았습니다. 접수기간은 2020년 8월 3일~9월 2일

까지 한 달간이었습니다. 기존 시청자 의견접수 및 법인 대표자 등 의견청취 방식 외에 「국민이 묻는다」를 추가한 이유는 국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이렇게 접수된 의견은 재승인 심사대상 사업자의 의견청취 시 법인 대표자 등에게 질의가 이루어 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접수 결과입니다. 총 101건이 접수되었으며, JTBC는 48건, MBN은 5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통계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2페이지 접수의견입니다. 접수의견을 전수 검토한 결과, JTBC는 '승인' 의견이 더 많았으며, MBN은 '불승인'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승인', '불승인' 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의견 없이 단순 문제제기, 지적사항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자별 접수의견입니다. JTBC에 대한 '승인' 의견에는 뉴스보도의 정확성 및 신뢰성, 다양하고 인기 있는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불승인' 의견으로는 반대로 뉴스보도의 왜곡, 편파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콘텐츠의 자극성, 과거보다 하락한 진실 보도 등이 있었으며, 편파·왜곡 보도 등의 일부 의견도 존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MBN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승인' 의견에는 공정한 방송,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며, '불승인' 의견으로는 최초 종편 승인 시 자본금 총당 의혹, 보도의 편파성, 부정확한 건강·의료정보 제공 등이 지적되었고, 기타 의견으로는 구체적 조치에 대한 의견이 없을 뿐 편파·왜곡 보도, 험찬 방송 등 공정성을 의심하는 부정적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사업자별 주요 접수 의견은 <붙임 2>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3페이지 '국민이 묻는다' 관련입니다. 시청자 의견 접수 시 함께 접수하였고, 총 15건이 접수되었으며 JTBC 7건, MBN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양사 모두 시청자 의견과 거의 유사하였으며, 주요 접수의견은 <붙임 3>으로 같음하겠습니다. 본 자료 외 시청자 의견 및 「국민이 묻는다」 접수 의견 전체를 엑셀 파일로 별도로 출력하여 제공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시청자 의견은 재승인 업무 종료 후 관보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며, 재승인 심사 반영 결과는 추후 백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민이 묻는다」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법인 대표에게 의견청취 시 별도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심사위원장

- 위원님들 읽어보셨겠지만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상반기에도 「국민이 묻는다」에 대한 내용과 이런 계획을 접수했고, 당시 제가 의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결되면 이 내용을 모레 사업자들 왔을 때 제가 대표해서 「국민이 묻는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에서 꼭 물어야 할 질문 1~2개



정도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보고사항

###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 심사위원장

- <보고사항 가> “종편PP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사지원반

-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편·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이유입니다. 「종편·보도PP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19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TV조선, 채널A의 경우 재승인 심사가 상반기에 있어서 2019년도 이행실적 제출 결과는 위원회에 상반기에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17년 3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습니다. 이번 심사 대상인 JTBC는 2017년 3월에, 매일방송은 2017년 11월에 부가하였습니다. 주요 경과는 밑에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1~4월까지 이행실적을 접수하였고, 2월에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6~7월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이행 실적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점검 시 종편PP 4개사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조건 부과대상 사업자 및 세부내용에 따라 3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행실적을 확인하였는데, 아래 10가지 항목이 그 사항입니다. 이 중 ③, ④, ⑧은 TV조선, 채널A 사항이므로 이외 보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점검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개사 공통으로 부가된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입니다. 관련 조건의 내용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JTBC(출연자 관리위원회 운영 등), MBN(출연자 1진 아웃제 및 진행자 징계 강화 등) 종편PP 4개사가 제출한 사업서 및 추가개선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이 모두 이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4개사 공통 부가된 오보·막말·편파방송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와 관련된 건입니다. 조건은 방송심의 규정(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언어 등)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입니다. 2019년도 해당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총 2건입니다. 이 중 이번 심사대상인 MBN의 경우 뉴스와이드 1부에 대해서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TV조선, 채널A 건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5>번 항목입니다. 4개사 공통으로 부가된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 준수와 관련된 조건으로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입니다. 4개사 모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는데, 특히 JTBC 26.73%, MBN 31.07%로 모두 이행되었습니다. 이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MBN에 한한 조건으로서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 MBN 재방비율은 39.4%로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실적은 밑에 <표>에 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4개사 공통으로 부가된 조건입니다. 사업계획서·추가개선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이고, 4개사 모두 2019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쳤고, 이하 <표>를 보시면 JTBC와 MBN 모두 이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 MBN 관련해서는 <표> 아래 두 번째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MBN은 2017년도 미이행분을 포함하여 2019년도에 콘텐츠 투자 계획이 이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8>번 TV조선 건은 생략하고, <9>번 MBN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외주사와의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MBN은 자체 외주상생방안 및 방통위 기준을 준수하였고, 특히 외부상생방안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 선지급금 확대 등 상생계획을 이행 중입니다. 세부적인 점검결과는 <표>로 같음하겠습니다. 이후 방통위 기준 준수와 관련된 건으로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였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같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번 항목 역시 MBN에만 부가된 조건이고 사

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MBN이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계획은 감사위원회 구성과 사외이사진 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감사위원회 구성계획은 계획대로 이행되었으나 사외이사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하였으나 '20년도 3월 이사회를 통해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 3인으로만 구성하도록 변경되어 위원회에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되신 분이 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이기는 하나, 방송분야 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MBN은 해당 사외이사가 금융업계에 종사하면서 기업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회계·경영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서 MBN의 경영구조 개선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선임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하는 사외이사 인원 현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승인 권고사항입니다. 재승인 권고사항은 미준수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항과 관련된 조치현황은 이하 <표>로 같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치방안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JTBC, MBN의 경우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 및 권고사항 점검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BN의 일부 재승인 조건이 미이행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이 점검 결과를 현재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MBN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를 거쳐 10월 27일자로 시정명령이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후는 <붙임>이고, 본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심사지원반

- 배경설명을 드리면, 오전에 보고드렸던 세부심사항목 배점 기준을 보시면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70점 배점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3년 재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위원회에서 보고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18년도, '17년도는 나누어드린 참고자료 책자에 보시면 배경이 다 설명되어 있고, '17년도에 시정명령까지 한 내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사위원

- MBN 재승인 시 권고 미이행 사항이 무엇이지요?

○ 심사위원장

- 지난 3년 동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지난 3년의 재승인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이행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다는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17년도 조건 이행실적 미이행한 부분은 참고자료 74페이지를 보시면 시정명령에 관한 건이 의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에 나와 있는 경영의 독립성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에 관한 이행계획 제출을 위원회가 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 페이지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영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관련해서 2017년도에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관해서 시정명령했던 내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ooo위원님 궁금증 해결되셨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지요.

○ 심사지원반

-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면 권고사항과 조건이 다른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미이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미이행했다는 부분은 재승인 조건에 대해 MBN이 '17년도에 한 번 위반한 것이 있고, '19년도에 한 번 위반한 것이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콘텐츠 투자계획도 미이행했고, 사외이사 건도 미이행해서 시정명령이 한 번 나왔습니다. '19년도에는 MBN이 사외이사 건을 다시 위반해서 시정명령 건이 한 번 나간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널A도 '17년도에 콘텐츠 투자를 적게 해서 시정명령이 한 번 나왔습니다. 총 3년 동안 종편4사 중 시정명령이 나간 사업자는 채널A 1건, MBN 2건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현재 2심 재판 중이라는 것이 '17년 건입니까, '19년도 건입니까?

○ 심사지원반

- 지금 2심 재판 중이라고 제가 오전 회의 때 말씀드렸던 건은 금융위원회에서 고발한 건이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났는데 2심 진행 중인 것입니다. 17년도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방통위가 채널A와 MBN에 시정명령을 내린 건은 현재 전부 다 2심으로 가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9년도 조건 미이행에 따라 MBN에 내린 시정명령 건은 현재 소송이 제기된 것은 없고, 10월에 처분이 나가서 계량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 심사위원

- JTBC는 '17년 3월에 재승인됐는데 이번에 11월로 된 것이 그 당시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17년도에 JTBC가 평가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700점이 넘어서 심사결과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JTBC에 대한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 7월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JTBC는 하반기까지 유효기간이 11월 30일로 MBN과 맞춰졌습니다.

○ 심사위원

- 이번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콘텐츠 투자실적을 보면 매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최초 승인받을 때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황인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대부분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 종편이 출범할 당시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행해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종편의 지금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이상이 걱정할 것이라는 계산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전에 이미 줄여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심사지원반

-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어느 정도 선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해 가면서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비해 줄어든 부분 관련해서 내년이 되면 종편이 출범해서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정책 방안을 다시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처음에 재승인 심사가 있을 때 첫 해 사업 승인할 때 내용에 비해 콘텐츠 투자가 JTBC 제외하고 현저히 모자랐지요.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 거기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패널티가 더 세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전에는 그렇게 세계 하지 않았지요?

○ 심사지원반

- 콘텐츠 투자계획 부분은 방통위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시한 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초 때부터 거의 '17년도까지 본인들이 제시했던 계획을 다 미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2013년도부터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은 계속 부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그때부터 계속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사업자들이 계획을 다 맞춰가는 추세로 갔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해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없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 심사위원

- MBN 사외이사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구체적으로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방송산업에만 특정되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사외이사 자격 요건에 의해서 자격미달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 심사지원반

- 설명드리면 법률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BN이 경영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느냐는 계획을 제출하라는 부분에 7페이지 위쪽 박스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MBN이 제출한 것입니다. ②번 항목 사외이사진 개편을 보시면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로 하겠다고 본인들이 제시한 계획을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제시한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이해가 되셨습니까?

○ 심사위원

- 예. 2명은 교체된 한 사람이 MBN이 제시한 기준을 못 맞췄다는 말씀이지요?

○ 심사지원반

-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처음에 계획서를 낼 때 나중에 이 계획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계획서를 냈는데 상황이 다르다, 다르게 됐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사정변경이 됐을 때….

○ 심사지원반

- 사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위원회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평가하는 부분이 심사 때마다 있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제출하는데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 부분은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경승인 들어온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그대로 이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변경승인 신청하면 그것을 방통위가 거절할 수도 있고 승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자가 자기네 경영 사정이나 특성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약속한 계획은 이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별로 3년, 4년 받아갔는데 계속 바뀌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심사의 적정성이 떨어지니까요.

○ **심사위원장**

- 방통위원회에 허가받을 때 사업자들이 방통위에서 요구하는 종편이 지상파와 똑같이 편성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 보도는 20% 이상, 교양은 30% 이상, 오락은 50% 이내 이러한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서를 냈는데 그 계획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사업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조건부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가 좀 더 세게 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oo방송사의 경우 'oo'프로그램이나 'ooo'프로그램에 투자를 했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종편들이 그전에는 실제로 그런 투자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MBN도 요즘 투자를 늘려서 시청률도 올라가고 나름대로 효과를 봤지요. 옛날에는 비용이 적게 되는, 제작비가 적게 되는 것만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렇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하나만 더 여쭙보면 방송산업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합니까, 아니면 한 것을 그냥 동의하면 됩니까?

○ **심사지원반**

- 이것은 기존 위원회에 보고드려서 접수받은 상황이어서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결론이 난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질문은 다 되셨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가> “종편PP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접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사항으로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 구성을 합니다. 모레 의견청취하기 전까지 2개 분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과와 2분과인데 1분과, 2분과는 1차 회의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 원편에 계신 분들은 2분과로 거의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계신 분들 방송·미디어 분야 앞에 세 분 000 위원님, 000위원님, 000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2분과로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신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세 분 중 한 분이 2

분과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자발적으로 지원자를 말씀드렸는데 세 분이 상의하셔서 한 분은 2분과로 가고 나머지 두 분은 1분과에 계시면 됩니다. 지금 세 분이 상의하십시오. 미리 한 분이 가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ooo 위원님이 아까 콘텐츠 분야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2분과로 가셔야 합니다.

○ 심사지원반

- 참고로 말씀드리면 2분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계량평가와 관련된 검토와 사업자별로 재정적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조건 권고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논의해서 발굴해 주시는 일이 2분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분과는 그 이외 편성이나 공정성에 조건 부가가 필요한 것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합니다.

○ 심사위원장

- 1차 회의에서 분과별 내용을 보시고 세 분 중 한 분만 분과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제가 2분과로...

○ 심사위원장

- 2분과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ooo 위원님이 가시고...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법률 분야 두 위원님께서 자리를 바꾸셔야 합니다. ooo 위원님과 ooo위원님 두 분이 자리를 바꾸셔야 합니다.

○ 심사지원반

- 위원장님 자리를 지금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분과 회의는 여기에서 하지 않고, 다른 회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과위원회 간사님을 정하셔서 간사님이 발표를 전체회의에서 합니다. 그때 하기 때문에 굳이 전체회의장은 자리를 이미 세팅을 다해 놓았기 때문에...

○ 심사위원장

- 분과위 간사를 먼저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예. 간사는 지금 정하셔도 되고 따로 논의하셔서 정하셔도 됩니다.

○ 심사위원장



- 같이 모여 있어야 분과별로 논의하니까요.

○ 심사지원반

- 그것이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래서 1분과 가서 간사님 정하시고, ooo 위원님과 ooo 위원님이 여기 오셔서 여기 네 분과 간사를 정하셔야 합니다.

○ 심사지원반

- 지금 분과회의장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간사만 정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간사만 선출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자리를 바꿨습니까?

○ 심사위원장

-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좋으니까 바꿔서 이야기하시지요. 정하시기 전에 먼저 심사지원반에서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차회의에 의결한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오전 회의에 했던 부분이요?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지원반

-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심사위원장

- 아까 1분과, 2분과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1분과 회의에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된 조건 부가나 사업자별로 권고할 만한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논의해 주시고, 그 밖의 프로그램 기획·편성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셔서 분과회의가 종료된 후 전체회의에 간사님이 '1분과 회의에서는 이리이러한 부분에 특이한 조건이나 권고가 부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2분과

회의에서는 사무처에서 계산해 온 계량평가 자료를 보고받게 됩니다. 그 자료들의 정합성이 나 다른 논의사항이 있으시면 그것을 한 번 논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분과별로 구체적인 분야별로 논의를 하신 다음에 간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됐으니까 간사를 뽑으셔야 합니다.

○ **심사지원반**

-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과에서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간사님이 전체 회의에 보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체점은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심사평가에 참고할 수 있게끔 전체 위원들에게 검토사항을 공유하게 됩니다.

○ **심사위원장**

- 각 분과별로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들끼리 상의하셔서, 예를 들면 사업자가 왔을 때 질문할 내용도 미리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도 다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간사를 일단 선출해 주시는 것이 제일 우선이니까 간사 선출을 먼저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1분과는 아무래도 방송 관련된 위원님이 간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이것 말고 방송사는 아니고 다른 종류의 것을 다루어 본 적은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가 보기에 회계사 분들 중 한 분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000 위원님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가급적이면 회계사님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분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평가에 대해 검토해서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000 위원님이 하십시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1분과도 정하셨습니까?

○ 심사위원

- 예, 000 위원님이요.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분과회의는 내일부터 합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분야별 소위 구성 결정사항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제1분과 위원은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000 위원님, 그리고 000 위원님입니다. 법률 분야에서 000 위원님과 000 위원님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자·소비자 분야에서는 000 위원님과 000 위원님입니다. 그리고 간사님은 방송·미디어 분야의 000위원님이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섯 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2분과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000 위원님이 되셨고, 경제·경영·회계 분야의 위원님은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이 되셨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000 위원님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소비자 분야에 000 위원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총 여섯 분입니다. 간사는 000 위원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제1분과, 제2분과의 위원 각각 여섯 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오늘 저녁까지 논의사항 정리 및 분과별 회의는 내일 2일차 오후에 개최 예정이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신 경우, 분과별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분과별 논의결과는 운영계획에서 정한 일정대로 5일 목요일 오후에 개최되는 제4차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폐 회

○ 심사위원장

- 오늘 제2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35분 폐회】

---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

- 일 시 : 2020. 11. 4.(수) 15:06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회의실

**방송통신위원회**

##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 일 시 : 2020. 11. 4.(수) 15:06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회의실

□ 참석위원 : 윤석년 (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 선 (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성중 ( 한국언론정보학회 총무이사 )  
손병우 (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조원희 (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  
권형돈 ( 공주대 법학과 교수 )  
장현민 (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  
엄은숙 ( 정동회계법인 전무이사 )  
송민섭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허남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삼현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강수곤 (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  
김향란 ( 부산소비자연맹 회장 ) (13명)

□ 불참위원 : 없 음

---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속기록

---

【15시 06분 개회】

###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회 열세 분 중 열세 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3. 의결사항

####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을 <붙임>과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본 건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붙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계량평가 결과입니다. 방송평가 400점 기준으로 JTBC는 344.74점, MBN은 332.07점입니다. 이 사항은 이후 나올 보정이 반영된 점수입니다. 관계법령 위반사례와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은 감점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위반사례 감점은 JTBC -1.71점, MBN -7.43점이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감점은 JTBC -1.52점, MBN -3.42점입니다.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은 30점 만점에 JTBC가 14.34점, MBN은 18.35점을 획득했습니다.

다음 방송평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미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청법인의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방송 평가점수를 4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심사와의 중복감점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와 2017년도 방송 평가점수에서 2017년도 재승인 시 반영된 감점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평가결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2017년도는 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정 후 점수를 이번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별도 보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방송 평가점수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3개년도 방송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이것을 400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은 점수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입니다. 신청법인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반영하되, 중복반영을 방지하기 위해 아까와 마찬가지로 '17년도 및 '18년도 방송평가에 반영된 사항은 제외합니다. 세부평가방법은 <표>로 같음하겠습니다. 감점 세부내용은 <붙임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감점사항입니다. 이 또한 동일하게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17년도와 '18년도 방송평가에 반영된 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세부평가방법은 <표>로 같음하고, 세부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감점 세부내용은 <붙임 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6페이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입니다. 신청법인의 '17년~'19년도 재무현황을 기준으로 지표별 평가점수의 3개년 평균을 합하여 반영합니다. 세부심사항목은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이며, 배점은 각 12점, 9점, 9점입니다. 한국은행의 '연도별 기업경영분석'을 기초로 하여 업종별 평균과 표준표차를 구했고 이를 토대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JTBC는 14.34점, MBN은 18.35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외하고 미리 다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이고, 이번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은 회계분야 심사위원분들이 해서 정한 점수지요?

#### ○ 심사지원반

- 예. 위원장님, 재무적 안정성 부분은 당연히 검증하셨고, 나머지 부분도 일단 확인하신 것으로...

#### ○ 심사위원장

-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폐 회**

o 심사위원장

- 오늘 제3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12분 폐회】**



---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

- 일 시 : 2020. 11. 5.(목) 19:31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회의실

## 방송통신위원회

##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 일 시 : 2020. 11. 5.(목) 19:31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회의실

□ 참석위원 : 윤석년 (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 선 (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성중 ( 한국언론정보학회 총무이사 )  
손병우 (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조원희 (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  
권형돈 ( 공주대 법학과 교수 )  
장현민 (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  
엄은숙 ( 정동회계법인 전무이사 )  
송민섭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허남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삼현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강수곤 (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  
김향란 ( 부산소비자연맹 회장 ) (13명)

□ 불참위원 : 없 음

---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속기록

---

【19시 31분 개회】

###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회 열세 분 중 열세 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3. 보고사항

####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장

- <보고사항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심사위원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분과위원회 제1분과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어제 이루어졌고, 상반기에 있었던 조건과 권고사항을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수정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대로 형평성 차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을 참고하겠습니다. 총 5건의 조건과 6번에 권고사항이 있는데 권고사항은 각 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범정제재 5건 이하 관련 조건 부가입니다. 개요는 '20년 상반기 종편PP에 대해 방송심의와 선거심의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 방송심의는 매년 5건 이하, 선거심의는 선거별 2건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송사에 대한 규제인데 상반기 방통위 재승인 의결때 매년 4건에서 5건으로 1건이 늘어난 사안입니다.

1건이 늘어난 이유는 세부적으로 위반조항 적용 범위가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4건에서 5건 이하로 된 것입니다. 관련된 <표>들은 오보·막말 관련 위반사례 등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그대로 조건 부가하는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있는 <2>번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계획...

○ 심사위원장

-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연도별 심의처분 문제에 있어서 5건,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와 관련해서는 선거별로 2건 이하라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2>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계획 이행 촉구 및 외부기관의 공정성 관련 객관적 진단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심사 대상 사업자의 계획서를 받아봤더니 관련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들, 또 필요하다면 추가 계획서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더불어서 공정성 관련 객관적 진단 부분입니다. 이 사업자들이 이런 계획서만을 낼 것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제3의 전문적인 외부기관에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실효성 문제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방송 관련 학회 복수의 전문기관에서 객관적 진단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여져서 상반기에 부가된 조건이라고 합니다. 저희 논의에서도 역시 유사하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등등의 논의가 있었습지만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 연계편성 프로그램 [협찬고지 의무] 입니다. 의견청취에서도 나왔지만 연계편성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고지 의무를 부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으나 이 조건 관련 내용은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종편PP와 TV홈쇼핑 간의 연계편성 그 자체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연계편성을 원하는 납품업자가 먼저 연계편성을 진행하는 형편이어서 이것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신 협찬고지를 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였고, 상반기에도 이런 것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연계편성 프로그램에는 협찬고지를 하도록 의무를 부가하도록 했고, 상반기에 이런 협찬고지 의무를 한 결과, 약간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4>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부가입니다. 외주 제작은 상생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방송 제작인력의 안전이나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17년 12월에 방통위를 비롯해서 정부 5개 부처에서 관련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도 종합대책에 근거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또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가하는 것을 상반기에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준수 의무 부가하는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5> '20년 콘텐츠투자 실적 점검 관련 내용입니다. '20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재승인 받기 위해 '16년에도 계획서를 한번 받았고 이번에도 계획을 받아서 2020년이 두 번 겹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보다는 이번에 재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계획서가 새로 갱신된 계획이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콘텐츠투자 실적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역시 저희도 이 부분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상반기와 동일하게 부가하는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재승인 조건입니다.

다음은 <6> 기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은 사업자 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를 임명할 시 내부 구성원, 종사자들의 의견 반영 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처럼 방송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포함시킨 내용이라고 합니다. 역시 상반기에 부가된 내용이고 일관성 유지 차원, 또 방송의 독립성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어서 1분과에서는 그대로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 의견청취에서도 나왔지만 외주제작사들이 연도별로 예측 가능한 제작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주제작사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 역시 상반기와 동일하게 논의됐고 따르기로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노동권,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표준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규로 MBN에 부가된 내용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 방송평가 결과를 보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총 30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MBN이 가장 낮은 1.88점으로 너무 낮은 편성제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것을 MBN에만 특별히 권고사항으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또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파견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2가지 사항입니다. 우리가 많은 자료도 받고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상반기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이야기

기입니다. 아울러,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해소 노력 계획을 수립해서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1분과 회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논의는 나중에 하고,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분과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파견 그 이슈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언제 이야기합니까?

○ 심사위원장

- 지금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 심사위원

- 저희가 파견 이슈를 권고사항으로 둔 것인데 아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파견이고 도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위반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조건 부가로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법적인 판단은 저희가 서류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제출된 자료로 봤을 때 이것이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소유·경영 분리의 원칙이나 방송의 독립성이 파견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훼손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방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적어도 저희 심사위원회에서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면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오늘 의결할 사항은 아니고 자료가 채택되면 채택한 것을 가지고 내일 종합의견서와 제이티비씨(주)에 관련된 의견 쓸 때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의견서 올릴 때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하면 됩니다. 의견서에 올릴 것인가, 올리지 않을 것인가는 내일 의결하는 내용이고, 지금은 논의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기타 권고사항에서 보면 어린이·청소년 관련된 방통위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상반기와 계속되는 연속성에서 잡기는 했는데 장애인 쪽 관련된 이런 부분은 지금 넣는 것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주제로 잡아서 이야기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여기에서 접수된 이외 권고사항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추가해도 관계없습니다.

○ 심사위원

- 그 정도로 의견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여기에서 의견을 줘서 기록에 나와 하니까, 그냥 회의록에 남기는 것으로만 하겠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의견서에 충분히 담아두시면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취합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필요하시면 그 문구를 만들어서 내일 의결하실 때 권고사항에 넣으면 되니까 그것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어린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대도 '어린이가 시청가능한 시간대', 그것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됐으면...

○ 심사위원

- 다른 궁금한 것인데 상반기 때 파견근무 관련해서 위법사항인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까? 위법사항이 만약 확인이 된다면...

○ 심사지원반

- 당시에는 JTBC가 심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 심사위원

- 이것이 JTBC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편도 유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까? 해당 상반기에 문제가 됐던 종편이나 연합뉴스TV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까? 여기는 권고사항이었는데 지금 조건부가 된다면 거기도 조건부가 될 수 있는...

○ 심사위원장

- 아니지요.

○ 심사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이것은 JTBC와 매일방송만 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 자체가 법 위반이니까 고발하고….

○ 심사지원반

- 이것이 법 위반사항이라면 조건에 달 일은 아니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거나 별도 조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의견 개진이 끝났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나.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장

- <보고사항 나>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제2분과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붙임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1> 계량평가 결과 관련해서는 어제 계량평가에 대해 별도로 논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 JTBC 자본잠식 관련 권고사항으로 JTBC의 자본금은 총 0000억원 규모이지만 2019년 현재 자본총계는 000억원 수준으로 약 00%의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최초 승인 당시 자본금은 0000억원 규모이었으나 총 6회에 걸쳐 증자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최초 승인 이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콘텐츠 투자실적을 확인한 결과 타 종편PP 대비 JTBC의 투자실적이 약 0배에 이르러 이러한 콘텐츠 투자가 자본잠식을 가속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페이지 JTBC 최근 3년간 손익 및 재무현황 <표>와 종편 출범 이후 2019년까지 콘텐츠 투자금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2분과 논의결과,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계획 제출을 권고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권고(안)는 중·단기적 재정건전성 확인 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발생



하는 채무의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3> MBN 업무정지 처분에 부가된 권고 사항 관련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권고사항은 <표> 안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분과에서 논의된 결과는 MBN의 업무정지가 경영진의 낮은 윤리의식, 부족한 내부개혁 의지에서 초래된 바, 경영혁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정지에 위와 같이 경영혁신 방안을 권고하였으므로 해당 권고사항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방송사업에 대한 재승인 여부와 그 다음에 조건 부가는 약간 별개라고 봤습니다. 이유는 만약 재승인이 된다면 재승인이 됐을 때 조건 부가되는 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차원이지만 이것을 전제로 해서 재승인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는 따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및 사외이사 관련 사항입니다. 논의사항은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권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항이고,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영에 적극 활용할 것, 이 부분은 MBN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소유·경영 분리, 최대주주로부터의 영향력 배제 및 이사회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JTBC 관련된 사항인데 MBN은 현재 사외이사가 대주주의 소유·경영에 저촉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외이사 교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사 공히 이 사항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5> 기타 정책건의 사항입니다. JTBC는 2017년~2018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고, 2019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되어서 작성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량평가 결과의 기준 변경으로 인한 영향이 계량평가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 필요사항으로 결국에는 계량평가 결과에 사용되는 향후 3개년치 재무제표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종속회사의 손익이 반영되지 않은 별도 재무제표로 계량평가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한,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량평가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권고하고자 합니다.

#### ○ 심사위원장

- 제2분과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사위원

- <3>번 21페이지 관련해서 그전 시간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방통위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이미 방통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지금 재승인 단계에서 이 내용이 특히나 재승인 조건으로 부가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저희가 물론 자료도 받았고 행정처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항목 중 행정처분과 관련 있는 부분에 적절하게 반영해서 심사하겠다는 취지였지, 저희가 방통위의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 또는 MBN의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바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없는 사항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재승인이 된다면 이런 권고를 지켜라' 이런 것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처분 대상이 아닌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적절한지, 예를 들어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넣어서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넣는 것은 체계상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의견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참고로 방통위의 행정처분 권고사항이 없더라도 이런 취지의 권고 또는 재승인 조건 사항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2분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의식 개선이나 아니면 경영혁신 그 다음에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설령 없었더라도 저희가 권고를 당연히 드려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심사위원

- 예를 들어 제작협력업체 보호, 고용안정, 경영진이 책임지는 것들은 다 정책적인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방송이 제작협력업체를 보호하면 좋지만 이것이 실제로 저희 평가항목도 그렇고 재승인과는 직접 내용이 관련 없는 것 같아서...

○ 심사위원장

- 저는 업무정지 건을 재승인의 조건부로 하기는 조금 별건이라서 예를 들면 영업정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권고사항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 정도는 괜찮으시지요?

○ 심사위원

- 여기도 권고사항으로 했습니다.

○ 심사위원

- 권고인데 이것이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 심사위원장

- 재승인 심사에서 권고이지요. 왜냐하면 재승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6개월간 어떠한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자가 예를 들면 제2의 개국을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됐고, 그 논의가 권고사항으로 주어졌다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재승인 조건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 심사위원

- 그러니까 권고사항, 방통위 행정처분을 준수해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정도는 괜찮은데, 조건부로 들어가니까 조건부가 들어가면 해석에 따라서 이것이 강제인지, 의무인지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에 불과한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법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지요. 명확하게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애매해서….

○ 심사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구 위딩을 그대로 우리 것에 옮겨 놓는 것은 조금 어색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리이러한 조치에 대해 한 번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권고하는 정도는….

○ 심사위원장

- 1월 말까지 이렇게 날짜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에 따른 플랜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다른 것은 없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나>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잠시만요. 권고사항의 강제성이 어느 선입니까?

○ 심사위원장

- 권고사항은 강제성은 조금 약하지요.

○ 심사위원

-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아닙니다.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매년 할 때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실적 점검을 같이 합니다. 조건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부과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합니다. 계속 이행 촉구를 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으면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조건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나> “201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분과 논의결과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 4. 의결사항

###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자 의견청취 후 추가 요청한 심사자료와 관련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료 요청하신 자료 사항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할 수 있는 자료 한 건 한 건에 따라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먼저 의결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장

- <붙임>자료를 보시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예. <붙임>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 심사위원장

- 다 검토하셨습니다까?

○ 심사위원

- 위원님, JTBC와 중앙일보사 간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파견근로에 대한 방안으로 한 것 같은데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본사 모회사이죠. 직원을 일괄적으로 파견하는 것을 업무대행계약 하나로 처리하는 것은 공정성에 반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실제로 반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이것을 채택해야 합니까?

○ 심사위원

- 제 생각은 채택은 이것이 허위라거나 아니면 위조됐다면 채택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 내용을 봐도 예를 들어 위반인 것이 분명한 것 같다고 해도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채택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JTBC가 의견청취 후에 제출한 요청 자료 중에서 정관은 채택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두 번째로 드라마 연도별 제작 및 편성 계획이 와 있습니다. 이것 채택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 다음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 자료 채택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 다음에 JTBC의 일정지분을 보유한 건물의 지분 매각, 일정지분을 보유한 JTBC 스튜디오와 IPO 등을 통한 자금충당 계획 및 유상증자 계획 등, 회계사님들 어떻습니까? 채택합니까?

○ 심사위원

- 채택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JTBC의 의견청취 요청자료는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청취 후 MBN, 즉 (주)매일방송에 한 요청자료입니다. 공정성·공적책임 이행을 위한 추가 계획서 제출, 위원님 보셨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요청한 것이 맞는데 자료 제출을 채택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원래 제출했던 계획서와 사실상 다를 바 없는 내용인데...

○ 심사지원반

- 맞습니다. 추가자료 채택은 MBN이 제출한 자료를 종편 심사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공히 공유해서 반영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자료의 충분성이나 신뢰성 등 여러 가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평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

- 그렇다면 채택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드라마 연도별 편성 계획 채택합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MBN 정관은 채택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 다음에 2019년 11월~2020년 1월 3개월간 특집 다큐 아이템 목록과 간략한 내용 설명 채택합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회의록 및 해당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이사회가 아닌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인지에 대한 설명 관련 자료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채택합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 다음에 2019년 2월 26일 개최한 이사회 현황이 사업보고서에 누락된 이유인데 이사회 현황 자료가 왔습니까?

○ 심사위원

- 예, 왔습니다.

○ 심사위원장

- 채택합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JTBC와 MBN의 의견청취 요청자료는 모두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채택에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 심사지원반

- 위원장님, 의견청취 후에 요청한 자료는 다 공유가 됐는데 의견청취 전에도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하신 자료도 어제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다 같이 공유됐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다 일일이 읽지 않더라도 그 자료들이 전부 들어왔다고 하시면 한꺼번에 채택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특별히 자료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 의견청취 전 요청자료와 의견청취 후 요청자료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폐 회

### o 심사위원장

- 오늘 제4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시 06분 폐회】



---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5차 회의

---

- 일 시 : 2020. 11. 6.(금) 11:1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회의실

**방송통신위원회**

##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5차 회의

□ 일 시 : 2020. 11. 6.(금) 11:1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회의실

□ 참석위원 : 윤석년 (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 선 (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성중 ( 한국언론정보학회 총무이사 )  
손병우 (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조원희 (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  
권형돈 ( 공주대 법학과 교수 )  
장현민 (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  
엄은숙 ( 정동회계법인 전무이사 )  
송민섭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허남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삼현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강수곤 (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  
김향란 ( 부산소비자연맹 회장 ) (13명)

□ 불참위원 : 없 음

---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5차 회의 속기록

---

【11시 1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회 열세 분 중 열세 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3. 의결사항

####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입니다. 종합의견은 2017년도와 비교해서 장르의 다양성이 개선되었고, 공정성 관련 심의 제재가 다소 감소하는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다. 미디어 환경의 급변에 대해 사업자들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재정적인 위기 극복, 콘텐츠 투자계획 등이 기대에 못 미치므로 향후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전 재승인 시 약속한 투자계획을 이행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시청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작 여건의 개선이 요구된다.

시청자들은 종편PP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MBN의 공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시청자들의 불만이 높게 나타났고, 이에 사업자는 보도의 공정성 의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사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정례화하여야 한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언론환경에서 종편PP 뉴스의 신뢰도 하락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뉴스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외부 기관의 컨설팅 등 지적을 수용하여 조속한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심사사항별 소견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특별하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관한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 4. 폐 회

#### ○ 심사위원장

- 오늘 제5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공식 일정은 종결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두드러진 심사위원회였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이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점심식사 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 신청법인 의견청취

---

- 일 시 : 2020. 11. 5.(목) 09:29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회의실

**방송통신위원회**

##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 신청법인 의견청취

□ 일 시 : 2020. 11. 5.(목) 09:29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회의실

□ 참석위원 : 윤석년 (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 선 (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성중 ( 한국언론정보학회 총무이사 )

손병우 (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조원희 (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

권형돈 ( 공주대 법학과 교수 )

장현민 (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

엄은숙 ( 정동회계법인 전무이사 )

송민섭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허남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삼현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강수곤 (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

김향란 ( 부산소비자연맹 회장 ) (13명)

□ 불참위원 : 없 음

---

## 2020년도 하반기 종편PP 재승인 심사 신청법인 의견청취 속기록

---

【09시 29분 개회】

### 1. 개회선언

####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 2. 신청법인 의견청취

#### ○ 제이티비씨(주)(JTBC)

#### ○ 심사위원장

- 의견청취 진행 순서는 지난 10월 13일 방통위에서 진행한 사전 추첨 결과에 따라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이티비씨(주) 관계자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관계자 입장)

#### ○ 심사위원장

-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이티비씨(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의견청취는 대면방식의 비공개로 진행되며,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제이티비씨(주) 대표자이신 000 님 맞습니까?

####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최대주주

- 예.

#### ○ 심사위원장

- 000 님 맞습니까?

####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000 님 맞습니까?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000 님 맞습니까?

○ 제이티비씨(주) 편성책임자

- 예.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 대표해 오신 000 님 맞습니까?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최대주주

- 예, 참석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참석자 분께서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예” 하는 대표자 있음)

그러면 금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최대주주

-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이 긴 관계로 제가 적어왔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2월 1일은 JTBC가 개국한지 만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JTBC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방송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성원 모두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을 오늘 심사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JTBC가 걸어온 길을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도의 독립성입니다. JTBC 뉴스는 사실·공정·품위·균형 4가지 가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경영진이 보도에



일체 간섭하지 않고 보도국 구성원들도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JTBC 뉴스룸은 앵커브리핑, 팩트체크를 통해 많은 가짜뉴스를 직접 검증해 왔고 다른 뉴스에도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팩트체크는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의 공식인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JTBC는 연공서열이나 기존의 문법을 의지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히든싱어', '효리네 민박', '몽쳐야 찬다' 같은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와썹맨', '워크맨' 같은 창의적인 디지털 전용 프로그램, 그리고 'SKY 캐슬', '눈이 부시게', '이태원 클라쓰' 같은 창의적이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를 만날 수 있었고, '스포츠 라이트'나 '차이나는 클라쓰' 같은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보도, 교양, 예능 프로그램의 균형 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개국 이래 0000억원가량을 콘텐츠에 투자해 왔습니다. 올해와 내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미래를 위해 콘텐츠 투자를 계속 지속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JTBC의 경영 상황을 걱정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JTBC의 대표이사로서, 그리고 최대주주 대표로서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JTBC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해외 유통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 교육, 글로벌 마케팅, 해외 미디어그룹이나 OTT 플랫폼과의 제작 협력, 페이스북, 구글과 뉴스제작 협력까지 교육, 제작, 유통 등 미디어 전반에서 글로벌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JTBC가 만든 프로그램은 중국, 일본, 베트남 같은 아시아 지역을 넘어 미국과 뉴질랜드,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되어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10년대를 빛낸 인터내셔널 TV프로그램 TOP 30위 중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6위에 선정되었고, 뉴욕TV&필름 페스티벌, 아시아TV 어워즈 등에서 다수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수상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JTBC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부터 2032년 하계올림픽까지 중계권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재승인 기간 중에 올림픽 중계를 철저히 준비해 모두가 즐기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꼼꼼한 장비 투자, 인력 투자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JTBC가 글로벌 미디어사업자로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격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JTBC는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안주할 수 없습니다. 보도, 제작, 경영진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국내 시청자, 글로벌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JTBC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실 모든 것들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저희가 프

로그그램을 제작하고 회사를 경영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심사위원장

- 000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제이티비씨(주)의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각 심사위원들 질의에 앞서 심사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제이티비씨(주)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3일~9월 2일까지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여러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이 자리에서 시청자를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JTBC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뉴스의 신뢰성 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대체로 많은 반면에 드라마와 뉴스 콘텐츠의 자극적인 표현과 멘트의 부적절성, 이전보다 하락한 신뢰도 지적 등 부정적인 의견 또한 접수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품격 향상과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에 JTBC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 같은데 이런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품질 제고, 신뢰도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대표 중 한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보도 부문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여러 가지 부문이 함께 되어 있는데, 특히 신뢰도 문제나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 심사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000 대표께서 말씀하신 뉴스의 4가지 원칙은 저희들이 이미 저희 방송이 시작할 때부터 지켜왔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공정·품위·균형 4가지 원칙을 어떻게 꼭 지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클레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꼭 해 가는 과정에서 혹시 미흡하거나 능력이 안 되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떤 의도적으로, 혹은 게을러서 그랬던 적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도 부분이 하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치만 가지고 외부에서 판단한 바로는 저희들의 신뢰도는 여전히 가장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거에 큰 폭으로 신뢰도에서 앞섰던 것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언론의 환경의 변화라든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정부의 언론환경과 지금의 언론환경은 바뀐 것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뢰도를 좀 더 나누어가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도 저희들이 신뢰도에서 크게 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길어서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JTBC 뉴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인본주의이고, 하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 2가지의 큰 축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과정에서 환경이 변하거나 인식이 변하거나 해서 저희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원칙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굴절시킨 바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평가가 세대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지 않나,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드라마 관련된 자극적인 언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귀담아 들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제가 대신해서 한 것입니다. 시청자 의견을 합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알겠습니다. 드라마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지상파나 타 방송사업자에 비해서 많은 양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분께서 우려하시는 드라마상의 자극적인 언어나 이런 부분들은 드라마 연출진의 최대한 크리에이티브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방심위의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 A 질문 부탁드립니다.

○ 심사위원 A

- 방송의 공적책임과 재난방송 운영과 연계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 있는 보도, 특히 지역 간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서는 수도권, 서울은 물론이고 심도 있는 지역보도 또는 지역총국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재난보도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총국의 운영이 매우 중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재난은 서울·수도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지역총국의 현황, 총 4개 총국에서 운영 되고 있는데 지역총국의 현황이 다소 미흡합니다. 또 추가 5년간의 계획에서도 총국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기 힘든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역문제는 늘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의 지상파들이 19개, 20개 계열사를 갖게 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의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규모가 갑자기 커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자면 10년밖에 되지 않는,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시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지상파만큼의 계열사들을 갖추라고 요청받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o개 총국 o개 지역에 기자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 기자들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큼니다. 재난방송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만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고성 산불 같은 경우 재난방송의 필요성이나 시스템에 있어서 JTBC가 지상파를 견인해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후에 KBS가 저희들에게 자극받아서 재난방송 시스템도 갖추고 했으니까요.

그만큼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결과물에 있어서는 절대 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고, 적어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온 것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규모에 의한 영향력은 분명히 있고, 실효성도 규모가 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를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갖춰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모두 o개 지역에서 oo명의 기자나 영상취재기자나 아니면 사무직 요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차차 좀 더 지역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뉴스룸을 많이 봐 주시겠지만 보시면 지역기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뛰고 있는가는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o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 o 심사위원 B

- 콘텐츠 품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연도별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을 보면 2020년에 약 0000억원이고, 2025년이면 약 0000억원으로 00% 정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추정손익계산서의 직접제작비를 보면 동일한 연도 2020년에 0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0000억원 정도로 약 0% 정도 증가합니다. 근데 물가 상승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서 인건비 상승이 계속 지속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든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쟁 범위를 사실상 국내에만 제한하지 않고 국제까지 글로벌 사업자들까지 고려할 때 콘텐츠 품질과 또 그를 통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는 가장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이고 경쟁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내신 계획을 보면 제작비가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 o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질문하신 것 중 콘텐츠 제작비 증가가 수익성과 연관되어서 큰 폭의 증가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제작비의 증가에 대한 부분은 예전과 달리

전체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비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작비의 증가분이 미흡하다고 느껴진 것은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거래구조가 상당 부분 많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저희가 상당 부분의 단위당 콘텐츠 금액을 많이 부담했다면 제작사와 저희와의 거래조건의 변경, 즉 예를 들어 방영권료를 낮추는 대신 콘텐츠에 대한 IP 권리를 제작사에 많이 줌으로써 외형상으로 보는 콘텐츠의 제작비 증가는 정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2025년까지 콘텐츠 제작비 투자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감소된 추세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 심사위원장

- 추가 질문은 나중에 시간되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심사위원 C 부탁드립니다.

#### ○ 심사위원 C

- 제작 시기의 균형성 관련해서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이 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외주제작사와의 공존 상황에서 제작 생태계의 안정적인 유지와 성장에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어떤 해는 제작물량이 넘치고 또 어떤 해는 제작물량이 없는 데 따른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JTBC의 경우에는 물론 그동안 다양한 장르에 걸쳐 매우 균형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배출해 와서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재승인 신청서상에는 2021년~2025년까지 드라마 등 연도별 제작·편성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채워서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사위원장

- 이것은 추가 자료 요청 상황입니다. 메모하셨다가 바로...

#### ○ 제이티비씨(주) 편성책임자

- 답변드려도 됩니까?

#### ○ 심사위원장

- 답변하실 것은 하십시오.

#### ○ 제이티비씨(주) 편성책임자

- 저희가 개국 9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9년을 돌이켜보면 현재까지 슬롯을 하나둘씩 늘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규모나 여러 가지

저희 여건을 바라봤을 때 프라임타임 슬롯은 꼭 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드라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말씀 주신 것처럼 드라마는 원래 금·토 한 슬롯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월·화, 수·목, 금·토 3개 슬롯으로 론칭을 확대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지금 드라마는 더 이상 슬롯은 늘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쪽 앞으로 꾸준하게 3개 슬롯에 타이틀 투자를 계속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프라임시간에 예능, 교양 장르에 있어서 8~9개 슬롯을 계속 꾸준하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것 이외에 오전에도 교양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고, 주말 오전에도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 **심사위원 D**

- 저는 직원 파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독립성 차원에서 최대 출자회사와의 직원 교류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도 규제하고 있고, 또 평가 심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기자·PD 0명, 행정 0명이 JTBC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이라는 것은 파견근로자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를 한 업종이 있는데 방송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여쭙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JTBC 기자들의 신분이 중앙일보 소속인 것은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견 3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 **심사위원 D**

-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파견이 기자·PD는 0명이고 행정이 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혹시 대표자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자께서 대답하셔도 관계없습니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예, 알겠습니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최대주주**

- 자료를 준비하는 도중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파견 0명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혼란이 있었던 이유는 보도국에 소속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자들이 소속이 중앙일보이고, JTBC 파견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국 당시 보도국을 꾸리는 과정에서 신생회사인

JTBC에 우수한 기자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수한 보도국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 중앙일보 소속으로 채용해서 JTBC로 파견했던 것을 아직도 바꾸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인 줄 알았는데 0명의 파견은 저희가 PD도 그렇고...

#### ○ 심사위원 D

- 제가 본 자료는 2020년 11월 4일 하반기 종편 재승인 관련해서 제1분과 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 생각에는 직원 교류가 어떤 경우에는 파견인지 아니면 전직을 하신 경우인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파견근로자법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법상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송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위법입니다. 위법이니까 파악하셔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사위원장

- 참고로 방통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실 것입니다.

####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심사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각 방송사별로 직원 파견 현황 자료 제출을 연초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 직원 중 기자·PD들이 신문사에서 방송사로 파견된 직원은 JTBC는 현재 0명으로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위원님께서 여쭙보시는 것입니다.

#### ○ 제이티비씨(주) 대외협력본부장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이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아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에 추가로 답변을, 숫자 자체에 대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 ○ 심사위원장

- 빨리 파악해서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오늘 중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보내셔야 합니다. 다음 심사위원 E 질문 부탁드립니다.

#### ○ 심사위원 E

- 저는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2가지로 짧게 질문드리고 답변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도입 초기다 보니까 수어방송이나 자막방송을 의무 비율에 맞게끔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장애인을 고려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지키려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이드라인의 현재 준수 현황과 이 준수를 높이기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 관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편성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력 고용에 대한 질문이신지...

○ 심사위원 E

- 장애인 전반에 대한 편성과 방침에 대한 것을 여쭙보는 것입니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먼저 장애인의 전반적 고용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는 지난 재승인 기간 동안 실적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0명의 장애사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할 때 경증장애인의 경우 어느 기업이나 취업 참여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장애인관리공단과 협력 하에 내년도에 자회사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총 00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꾀할 생각입니다. 장애인 편성 관련된 부분은 편성책임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이티비씨(주) 편성책임자

- 저희가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수어방송,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은 제출된 자료처럼 약속된 부분보다는 조금씩 초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을 통해서 물리적인 편성량을 늘려서 약간 비율을 맞추는 개념이었다면 요즘에는 저희 프로그램 중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예능, 영화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자체가 크게 되지는 않지만 저희 스스로 대표 프로그램 위주로 제작을 해서 질적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E

- 그래서 노력 중에도 작년에 부과 받은 장애인 고용유지 분담금이 0000만원이라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채용 규모에 맞는 장애인 채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부여받은 과태료이고, 작년부터는 그것이 세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적정 비율 내에서 고용 비율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000명의 인원을 보고한 상황에 향후 5년간 인원 증가 계획을 0명씩 제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 고용 비율을 00%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00명의 인원 증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체 0명 규모에, 어제도 JTBC 자막에 보면 경력직 직원모집이 나오던데 000명에 0명의 신규인력 증가가 0%인데 우리 규모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향후 5년간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경영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계획 수치입니다. 사실 수치상으로는 미미한 인력 증가로 보이지만 제작 인력이나 그리고 디지털 인력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채용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성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수치상으로 00%라고 목표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수치이고 그 이상의 고용 의지를 반영한 여성인력에 대한 수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E**

- 장애인 비율도 말씀해 주십시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장애인 비율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송국 내 장애인 비율도 높일뿐더러 그리고 자회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장애인 인력 비율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는 00명의 장애인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E**

- 알겠습니다. 0년간 전체 인력을 00명 늘리겠다고 하는데 여성에서는 열 몇 명을 따로 늘리고 장애인은 00명을 늘리면….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장애인에 대한 수치는 인력채용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심사위원 E**

- 너무 따로 되어 있어서 지적 드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 부탁드립니다.

○ **심사위원 F**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청자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타 방송사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납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분포에 있어서도 부산이나 기타 지역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적인 분포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청자 권익보호 부문은 배점이 70점입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계획을 봐야 하는데 2016년 승인 시 계획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차기 시청자위원회는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다문화 등 취약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자들을 위해서 1년에 특별회의를 개최해서 약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봤을 때, 2017년과 2018년 소외계층 위원으로 00여대 아동학과 교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이 00000협회 회원입니다. 과연 이분을 봤을 때 여기에서 말씀하신 장애인·다문화를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는 어떻게 되었을까? 2019년과 2020년도를 보면 소외계층 위원으로 또 oo여대 교수로 oooo학회 교수가 들어갔습니다. oo여대 oooo학회 교수는 제 생각에 학술단체로 가는 것이 맞고, 앞에 있는 oo여대 아동복지과 교수님은 청소년 관련 단체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왜, 장애인과 다문화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여성단체 대표로 oo대 교수가 들어갔습니다. 추천은 oooooooooo학회 회원이라서 들어갔습니다. 이 교수님은 언론정보학부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언론 관련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어떻게 여성단체 대표로 들어왔는지, 제가 아는 여성단체만 해도 100개가 넘고, 제가 아는 장애인·다문화 관련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전부 교수님으로 집어넣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2020년 향후 5개년 계획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 번 봤습니다. 계획은 40점 배점인데 거기에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각 계층 시민단체 추천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 소수자 보호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발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2016년에 하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2020년에 하신 이 약속을 제가 어떻게 믿고 그것도 40점이나 되는 배점인데 점수를 드려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o 제이티비씨㈜ 대표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자세히 봐 주셔서 저희들이 곤혹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봐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주신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의 정책실천이 변화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명삼아 말씀드리자면 일단 각 분야의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한 추구할만한 일임에 틀림없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 다만, 제가 그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여성단체나 장애인에 대해서 학계에 계신 분이 온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한 연구자료나 혹은 지적할만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o 심사위원 F**

- 예를 들어 소비자단체도 그렇습니다. 소비자단체는 oo대 교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oo대 교수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소비자하고, 일반 소비자단체가 전국에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단체에서 직접 받는 것이 소비자 상담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데 과연 학계의 이야기와 현장의 이야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JTBC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o 제이티비씨㈜ 대표자**

- 아마도 당시 판단은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각종 데이터를 받기에는 그 연구자들로부터 받는 것이 취합되어서 받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o 심사위원장**

-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 ○ 심사위원 가

-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맥이 같습니다. JTBC가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맞습니다만 종종 방송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청자위원회나 시청자평가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참 의아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방송의 편향성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다, 물론 다 좋은 의견입니다만 부차적인 내용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F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서 선정하신 시청자위원이나 시청자평가원 분들이 국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청자위원회나 시청자평가원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좀 더 본질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못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의견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운영인지, 그리고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조직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같은 결의 질문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시청자 평가 의견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청자 상담실을 통해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방통위의 쪽 의견을 저희 정책실에서 받아서 소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자평가위원들이 어떻게, 즉 시청자위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청자위원께 부탁드리고 요청드리는 것은 본인의 의견도 연구도 중요하지만 시청자 의견이라면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오는 역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냥 앉아서 혼자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청자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편입니다. 특히 이익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00개 이상의 소비자단체가 있다면 그 소비자단체도 각각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만 모시기에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연구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각종 의견들은 취합해서 전해 달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시청자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실효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는 사측의 인원이 예를 들면 대표 이사나 담당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바꾼 시스템은

뛰냐 하면 담당국장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자가 들어와 달라고 사측에서 결정했습니다. 사측 대표는 저니까요.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이야기들이 약화되고 이야기가 또 왜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무자, 예를 들면 담당PD가 들어온다거나 CP가 들어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현장에 바로 시청자위원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타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청자위원들은 시청자 의견을 모아오고 그것이 시청자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그것이 곧바로 제작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경로, 채널은 저희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고된 내용만 보고 판단하시면 저희들보다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 심사위원 F

-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6년 재승인 신청 시 장애인·다문화 취약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하겠다고 계획을 냈는데, 왜 이것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팩트를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 ○ 심사위원 가

- 시청자 상담원이나 불만접수창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청자위원회라는 제도를 두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전화오고 인터넷에 댓글 남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들을 뽑아서, 그리고 JTBC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보도하고 방송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양한 의견 채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원칙에 문제는 없는지 계속 돌아보는 과정은 더더군다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 구성이나 혹은 시청자평가원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두 분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 심사위원 나

- 방송 발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외주제작사와의 관계에서 상생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계획을 잘 제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주사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에만 국한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000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그룹을 지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제작사와의 관계에서 저작권 배분과 같이 제작사의 권리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 방송산업을 획기적으로 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외주제작사의 상생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 지원에 계획서를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문대로 저희가 향후 국내 드라마 제작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도 외주제작사의 IP 권리에 대한 양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콘텐츠 중에서도 '팀세프'나 '백 투 더 북스'는 방송 권한만 가지고 있고 모든 권리를 외주제작사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렇듯이 국내용 콘텐츠뿐만 아니라 글로벌형을 지향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외주제작사의 IP 권리를 귀속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최대주주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방송환경이 매우 바뀌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콘텐츠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희 내부에 제작사도 있지만 외부의 우수한 제작사들과 공동제작 형태로 이미 많은 드라마들과 다른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제작의 형태는 만약 1:1로 투자하면 IP 저작권 소유권리도 당연히 1:1로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 ○ 심사위원 나

- 잘 알겠습니다.

####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 ○ 심사위원 다

- 경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중요한 방송사업자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000께서는 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출신이고, 또 특히나 회사의 2대주주의 000홀딩스의 000 회장께서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신 것이 사외이사의 독립성 측면과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최대주주

-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철학은 왜 그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지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제 주위의 주변 환경을 봤을 때 나쁜 선례들을 보면서 저런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조금 특이한 것이 방송업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방송업계가 어느 정도 성숙기에서부터 쇠퇴기 시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변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변화에 부응하는 개혁입니다. 스스로의 개선과 스스로의 개혁인데, 이때는 빠른 판단력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사회 의장을 이번에 함께 맡은 가장 큰 이유도 빠른 판단을 해서 회사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2대 주주가 현재 사외이사 멤버로 등재되어 계십니다. 저희가 2017년, 2018년 딱 두 해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적자로 다시 전환이 됐는데 오히려 2대 주주 분께서 사외이사로 계시면서 최대주주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견제가 되고 또 저희가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심사위원 다

- 부연해서 더 여쭙보고 싶은 것이 이사회 구성과 실질적인 운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 중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의 예산,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 검토를 이사회에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 ○ 제이티비씨(주) 경영지원실장

- 경영지원실장 ooo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이사회 의결사항 중 당연히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요건에 맞춰서 이사회 규정상 초과되는 투자나 경영 현황은 정상적인 이사회 가동을 통해서 다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안건 이후에 또 주총 결의를 통해서 다 확정하고 있습니다.

#### ○ 심사위원장

-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에 흑자였다가 2019년에 갑자기 적자폭이 많이 늘어났고, 전체적인 시청률도 조금 하락세에 있는데 2020년에 코로나 문제로 더욱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다시 'V'자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최대주주

- 자세한 말씀은 대표자 을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가 2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고 나서 그 이후에 프로그램 시청률도 하락한 것은 맞고, 그 다음에 광고시장의 점유율도 일정 부분 하락한 것이 맞습니다.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 2018년에 했던 제작행위들이나 회사의 경영진들이 2019년, 2020년도에 바뀌느냐? 전혀 바뀌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개국 이래 항상 일관되게 우수한 콘텐츠, 남들하고 차별화하고, 또 남들보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부로는 용어가 있습니다. 'hit ratio'라고 '히트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오히려 히트율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듯이 어쩌다 보니 실제로 경제환경도 좋아지지 않았고 당시 미·일, 미·중 무역갈등도 있었습니다.

저희 제작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똑같이 제작했는데 작년에 특히 히트율이 부진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내부적으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항상 제작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저희는 똑같이 투자할 테니까 한 번 다음 기회를 노리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V'자 반등까지는 반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광고매출 계획에서도 보셨듯이 내년도가 되면 코로나 시국이 완화 내지는 종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0년 악화된 상황에서도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이 호전된다면 저희가 투자했던 콘텐츠 경쟁력으로 타사 대비 분명히 광고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 ○ 심사위원 라

-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이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현재 자본금이 0000억원인데 2019년 말 기준해서 00%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상환해야 할 차입금과 사채가 000억원이 이르고 있고, 또한 JTBC가 00%를 보유하고 있는 JTBC플러스가 현재 장부가액으로 00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회사의 순자산가치는 - 000억원이고, 그리고 JTBC플러스에 대한 지급 보증이 0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현재, 더더욱 2019년도에 손실을 기록하다 보니 지금 자금계획이나 여러 가지 영업에 대한 캐시플로를 추정해 주셨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타파 방안으로 내주신 것이 영업활동을 통한 캐시 창출, 또한 차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020년 8월 말 현재로 매출 대비가 계획 대비 00%밖에 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획하신 영업활동을 통한 캐시 창출이 현재 어려움에 있다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을 유지해서 자금 조달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손실이 나면 바로 그다음 해에 차입금 상환압력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차입 조달이 가능할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들은 이런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나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데 재무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o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위원님 질문은 제가 일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경영지원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0년의 경영 활동 위축에 따른 재무 상황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송사 본연의 업이 콘텐츠에 대한 투자 그리고 경쟁력 콘텐츠로 인한 광고 수신료 유통 매출의 증대 이런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개국 이래 2016년까지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 거쳐 오다가 콘텐츠의 투자로 인한 2017년, 2018년에 흑자의 턴어라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경영 상황은 어렵지만 2021년~2025년까지 매출 계획에 의해서 상당 부분 선순환 구조가 확립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차기의 경우지만 저희가 뜻한 대로 자금이나 매출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만약 위축된다면 일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확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 유통, 수신료의 매출 제고를 통해서 그 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JTBC플러스에 대한 부분은 경영지원실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o 제이티비씨(주) 경영지원실장

-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재무 상황이나 경영 현황은 외부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고, 지적해 주신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본연의 활동인 영업의 정상화를 통해서 자금의 선순환이나 재무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이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운영상 자금이 부족하면 유상증자나 외부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구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산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출범할 때 0000억원 자본금으로 출범했고 2013년, 2014년, 2017년, 2018년 4차에 걸쳐 추가로 0000억원 정도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지금 0000억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10년차 지나면서 지금 시점이 경영상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년도 운영에 대해서 영업활동을 더 늘리는 방법, 비용을 최적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 계속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계열사 중에 JTBC플러스가 있습니다. JTBC플러스에 자금상 지급보증도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JTBC플러스의 채널을 보면 JTBC2라는 자회사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지급보증하게 된 과정은 당연히 후방채널이고, JTBC 본방송 뿐만 아니라 계열 후방채널들을 통해서 크로스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JTBC플러스에 자본잠식이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 차입금도 적지 않은 금액이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잠식이나 차입금의 발생은 2015년도 전·후



로 해서 JTBC플러스 안에 JTBC골프라는 채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프 채널도 스포츠라는 장르적 다양성 때문에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예전에 JTBC골프가 가지고 있던 적자가 JTBC플러스에 반영되어 재무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방송과 계열 후방 방송과의 연계편성을 통해 재무적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연의 기본적인 영업활동 개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 투자를 통해서 분명히 저희에게 다시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최대주주

- 추가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순환 때는 JTBC도 과연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또 후방 채널도 전방 채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악순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5년 전부터 JTBC가 불같이 올라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선순환으로 돌아가면 자회사 문제도 같이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콘텐츠가 잘 풀리기 시작하면 모든 환경이 바뀐다는 것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입금 말씀하셨는데 차입에 대해서 당연히 캐시플로에 문제가 생기면 차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만약 차입이 안 될 경우를 상정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대표자 을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JTBC가 들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중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빌딩의 지분입니다. 지분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드래곤에 대비되는 JTBC STUDIOS를 지금 IPO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인데 그것의 상당 부분을 꽤 많은 00%에 해당하는 지분을 JTB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금 같은 것이고, 만약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 부분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주주 대표로서 드리는 말씀은 방송법상 대주주가 30% 이상 소유하지 못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현재 방송환경을 잘 인지하고 있는 기타 주주 분들에게 증자를 해주십사 하면 거의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의 노력을 가지는 것보다는 대주주가 의결권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투자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순환의 힘을 제가 한 번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 ○ 심사위원 마

- 방송산업 특성상 공정성이 굉장히 강조가 될 것입니다. JTBC도 그런 점 많이 강조하셨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경영의 안정성이 없이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JTBC 제안서에 보면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열심히 했다는 부분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의 대부분이 상법상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단순 반복한 것 밖에 안 되어서,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 번 봤더니 감사위원회가 2019년도에 딱 한 번, 2018년도에 한 번만 열렸습니다. 공지상 이것이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운영된 것인지, 그리고 방송사업 특성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의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 내부 통제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감사위원회는 저희가 상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감사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보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젠다가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가 열려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마

-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셔야지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 제이티비씨(주) 경영지원실장

- 지금 질문이 감사위원회의 활동....

○ 심사위원 마

-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내부 통제가 어떤 원칙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그 원칙을 구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장

- 설명하신 분은 다시 한번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이티비씨(주) 경영지원실장

- 경영지원실장 ooo입니다. 기업의 재무적인 활동에 대한 견제나 통제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외부 법에 따라서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부감사법에 따라서 외부감사인 감사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하게 요구되는 내부 회계관리 제도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 활동도 적법하게 절차에 맞춰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라는 것이 남들이 하지 않는 저희만의 활동이라는 것은 사례를 따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다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사례라고 대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가 잠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하면서 논의된 것 중의 하나가 있는데 JTBC가 회계기준을 제시했을 때 2017년~2018년은 일반회계기준이고, 2019년도에는 회계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제이티비씨(주) 경영지원실장**

- 2019년에 IFRS 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IFRS로 전환했던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무상감자를 추진했습니다. 무상감자의 그때 목적은 외부에 다 말씀드렸던 공시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IPO 상장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작년에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IFRS 전환을 먼저 추진했었고, 현재 적용되는 부분도 회계기준은 IFRS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2019년도는 2018년도와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바**

- 기술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14페이지 해당 내용입니다. 2024년에 UHD 전용채널을 확보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채널을 확보하시면 첫 해 UHD 편성 비율을 얼마로 가져가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편성 비율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UHD 방송 시점을 202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르별로 보면 먼저 스포츠, 보도, 드라마 위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르만 일단 결정된 상황이고, 2027년에는 예능까지도 장르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바**

- 그런데 UHD 전용채널이니까 편성비율이 100%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100%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심사위원 바**

- 그러면 기존 JTBC HD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교차 편성해서 쓰실 것입니까?

○ **제이티비씨(주) 방송정책팀장**

- 방송정책팀장 000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유료방송을 통해서 채널을 송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널 2개를 송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IPTV나 SO들에 지금 나가는 HD 채널은 셋톱박스를 가지고 있는 기존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 UHD 채널을 확보해서 2025년에 편성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UHD 채널을 통해서 나가지만 100% UHD 채널이라기보다는 일부 말씀드린 뉴스나 드라마 같은 교양 프로그램에서 먼저 송출하고, 나머지는 upconverting을 통해서 UHD 채널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바

- 그러면 지금부터 UHD 콘텐츠 투자는 고려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기 제작한 UHD 콘텐츠가 있고,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백두대간'이라는 다큐멘터리도 UHD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상으로 준비된 심사위원들마다 1개의 질문을 배정했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추가 질문하실 분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A

- 저는 연계편성 관련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서 그 질문을 추가로 더 드리고 연계편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계획에 0명 정도 추가한다는 계획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JTBC가 비정규직 포함해서 0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뢰도 1위를 자임하는 회사 치고는 너무 소극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됐습니다. 그것과 연계 지어서 조금 전에 지역총국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지역총국은 지상파 수준의 것을 종편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200~300만명 정도가 사는 각 지역에 촬영·취재 포함해서 0~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미흡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대표님 계시니까 일종의 요청사항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연으로 드리면서 연계편성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연계편성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했습니다. 다른 종편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합니다만 JTBC도 여전히 몇몇 프로그램에서 홈쇼핑과 연계되어 있는 연계편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 제이티비씨(주) 편성책임자

- 다른 채널에 비해서 저희는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게 합니다. 오전에 교양프로

그램이 보통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계편성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어떤 협찬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방송사와 합의하에 연계편성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찬사나 제작사나 외주제작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편성에 대해서 일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계편성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 협찬사나 제작사 쪽에서 저희에게 편성시간을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편성시간이 홈쇼핑과 맞물려야 연계편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요구를 절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계편성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류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퀄리티 성격을 많이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 A**

- 제가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못 들었는데, 원래 연계편성이 제가 알기로도 방송사에서 요청하기보다는 홈쇼핑사 또는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요청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까?

○ **제이티비씨(주) 편성책임자**

- 저희는 일절 그런 요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A**

- 방통위에서 확인한 바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제이티비씨(주) 편성책임자**

-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약간 오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저희는 외주제작사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편성 논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주제작사가 저희와는 상의 없이 그 물품을 저희 시간대를 가지고 홈쇼핑과 후단에서 협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 **심사위원 A**

- 그래도 결국에는 JTBC를 통해서 방영되기 때문에 외주제작사가 홈쇼핑업체와 연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연계편성이 아닙니까?

○ **제이티비씨(주) 편성책임자**

-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오전에 정보 프로그램들인데 그런 프로그램의 성격을 많이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 ○ 심사위원 D

- 아까 제가 질문드린 직원 인적교류 관련해서 데이터들이 JTBC에서 제출한 내용이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현재 파견된, 기자라는 분들이 파견인지 아닌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기자들도 파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파견을 00명 보고했고, 2018년에는 00명, 2019년에는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인적교류 관련해서 파견인지, 아니면 전대인지 여러 가지 정확하게 법적 개념을 따져봐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파견근로자법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방송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자 분들이 파견 상태인지, 아닌지도 한 번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추가로 왜 0명을 파견이라고 보고했는지, 자료 제출했는지, 또 2018년도에 제시됐던 00명, 2017년에 파견 00명 이런 분들이 왜 파견에서 빠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최대주주

- 물어봐 주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구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누가 어디에 기자를, PD를 몇 명 파견했다는, 어디에서 어디로 파견했다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보도국의 직책자를 제외한 모든 기자들은 중앙일보 소속이고, JTBC에 파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PD는 JTBC 소속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개국 이후에 특별히 조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중앙일보가 만약 원소속자로서 JTBC 보도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관계면 문제가 있습니다. 보도의 독립성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할 생각이었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인지 하다시피 중앙일보 편집국과 JTBC 보도국은 매우 다른 성격을 이미 띠게 되었고, 또 운영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연차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멀티미디어 세상인데 자신이 실제로 펜기자가 되고 싶은지, 방송기자가 되고 싶은지 적성을 찾는 기간이 부여된 것과 부여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일터로서 매력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저연차 기자들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속이 달라지면 퇴사 후 재입사, 다시 퇴사 후 재입사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허들을 줄이고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습니다.

## ○ 심사위원 D

- 000명은 기자분이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고, 0명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 추가로 증가된 인원 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최대주주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B

-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더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직접제작비가 크게 증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외주제작 부분에서 JTBC가 제작비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식으로 했던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외주제작과의 협력방안을 고려해서 실제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최소한 제작비가 줄어들지 않고 더 커지게 할 수 있다는 식의 요지입니까?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체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외주 제작비 관련해서 직접제작비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심사위원 B

- 아까 대답해 주시기를 직접제작비가 늘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콘텐츠 품질이 올라가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 그것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 그런 식이라고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제작비의 정채라는 부분들은 계획서상 직접제작비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보도 그리고 스포츠 관련된 부분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보도 관련해서 직접제작비가 많이 늘어나는 케이스는 총선이나, 대선이 있는 해에는 직접제작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실적에 비해서 향후, 내년을 비롯한 직접제작비의 감소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전체 외주제작비에 대한 증가폭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B

-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라면 고질적인 인건비 상승이 문제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콘텐츠 품질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있습니다. 물론 제작비가 그대로 콘텐츠 품질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게다가 넷플릭스가 유발한 제작비 무한경쟁 시대인데 글로벌 사업자로 협력하실 생각까지 하시고 있는 부분이면 넷플릭스조차도 협력상대 및 경쟁상대로 의식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제작비가 늘지 않으면서 어떻게 콘텐츠 경쟁력이 늘어나겠냐고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 제이티비씨(주) 편성책임자

-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 B

- 예.

○ 제이티비씨(주) 편성책임자

-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문에 비슷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개국 이래 현재까지는 굉장히 슬롯을 늘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에 약간 킬러콘텐츠 방정식이 있습니다. 야구와 빗대서 등판 횟수 곱하기 히트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콘텐츠에 킬러콘텐츠를 늘리는데 저희가 등판 횟수를 많이 늘려가는 방식을 취해 왔다면,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다른 채널처럼 모든 프라임에 슬롯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등판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나 히트율을 높일 것인가에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등판 횟수가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제작비가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유는 드라마나 예능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변화입니다. 드라마는 우수 자원들이 예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외부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IP를 상당 부분 세어하는 구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드라마에 100이라는 돈을 썼다면 이제는 100이라는 돈을 쓰더라도 세어를 하면서 퀄리티를 더 개선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최대주주

-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방송사들이 100을 제작사에 투자했다면 저희가 30만 투자하고, 공동제작할 경우에는 외주제작사가 30을 투자하고, 또 재무투자자가 30을 투자해서 저작권을 1/3로 갖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수익은 언젠지만 유통을 할 경우에는 저희의 권리가 1/3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회수하는 리턴이 동일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질문에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두 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양보하시든지...

○ 심사위원 E

- 질문은 아니고 잠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 E님은 맨 뒤에 하시고, 먼저 마 위원님 해 주십시오.

o **심사위원 마**

- 추정재무제표에 의하면 2020년도 영업현금흐름은 약 00억원 정도 음(-)의 값이 나올 것이고, 당기순이익은 0억원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금흐름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광고수익과 직접제작비입니다. 아픈데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게임률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JTBC에서 생각하는 거시적 측면에서 향후 게임률은 무엇이며, 그리고 JTBC가 지금 어떠한 포지션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게임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광고시장의 축소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고시장의 축소라는 것은 방송이 광고가 주 수익모델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글로벌 OTT 출연으로 인해서 구독경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예측한 광고시장은 정체 내지는 감소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저희만의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다면 축소되는 광고시장에서도 TOP 2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면 이 시장에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편성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지속되지만 지상파와 달리 드라마 슬롯을 계속 늘릴 것이고, 예능 슬롯도 8개 프로그램에서 9개 프로그램으로 계속 콘텐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o **심사위원장**

- 다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심사위원님 F님.

o **심사위원 F**

- 저는 간단하게 지역사회발전 관련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6년 승인 시 냈던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해는 괜찮은데 2019년에 00000분을 계획하셨는데 00000분이시요. 00000여분의 차이가 있었고, 전년 대비 00% 이상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기여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나는 클라스' 등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2017년 000, 2018년 000, 2019년에는 00, 2017년에 비해서 0/0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한 일원으로서 상당히 JTBC는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문화적 기여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제이티비씨(주) 편성책임자**

- 첫 번째 지역사회발전 프로그램이 연도별로 잘 진행하다가 한번 혹 떨어지는 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지역사회에 기여하던 프로그램 중 이효리 씨가 나오는 '효리네 민박'이라는 시즌제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제

동씨가 각 지역 대학교를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는 '톡투유'라는 시즌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저희 내부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편성량이, 저희가 반응이 좋으면 재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성량이 많았다가 두 프로그램 모두 시즌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영된 일시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그램이어서 저희 콘텐츠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시국에 맞춘 '비긴어게인 코리아', 그 다음에 각 지역 명소에 가서 캠핑을 하는 '캠성캠핑'이라는 프로그램, '서울엔 우리집이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지역을 벗어나면 서울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저희가 잘 이해를 했고, 일반시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교양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심사위원장

- 추가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1~2분 정도 해 주십시오.

#### ○ 심사위원 E

- 질의로 하려다가 다 된 내용이라 아까 대표자 을께서 답변 중 자체제작의 직접제작비라는 것이 추정재무제표에서 2020년에서 2021년도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스포츠와 선거가 빠져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재무정보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의혹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제작시간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보이는데 별도로 제출한 승인서의 자체제작시간에서는 연도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 간 투자계획, 인력고용 계획이 뒤에 나오는 추정재무제표에서의 재무 숫자들과 약간의 연동성들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었고 마치겠습니다.

#### ○ 심사위원장

-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A께서 연계판매와 관련된 편성책임자에게 하나 당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외주 제작업체라도 혹시 사후에 연계편성의 분위기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외주제작에 대한 퇴출 또는 거기에 대한 주의 이런 조치가 JTBC의 품격을 고려할 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즉답을 피하셔도 되지만 조건부 내용에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위원님들의 모든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신청법인에서는 질의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이티비씨(주) 대표를 해서 3분 정도 대표자 분들 중 한 분께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리겠습니다.

**○ 제이티비씨(주) 대표자**

- 오늘 여러 심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귀담아 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당장 개선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연계편성 부분,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경영 투명성 부분, 저희 의지에도 불구하고 재무 악화에 대한 우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JTBC는 사회적 공적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시사·교양, 예능 전 프로그램을 다양성 있고 다채롭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000 대표님, 000 대표님, 000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이티비씨(주)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사 관계자 퇴장)**

**○ 심사위원장**

- 11시 20분까지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이전에 반드시 입장해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주)매일방송(MBN)**

**○ 심사위원장**

- 이어서 (주)매일방송(MBN)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 의견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매일방송(MBN) 관계자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사 관계자 입장)**

**○ 심사위원장**

-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매일방송(MBN)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의견청취는 대면방식의 비공개로 진행되며,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주)매일방송(MBN) 대표자이신 000 님 맞습니까?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000 님 맞습니까?

○ (주)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예.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000 님 맞습니까?

○ (주)매일방송 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참석자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다가?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예.

○ (주)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작성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000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매일방송 대표자

- MBN 대표 000입니다. MBN은 1995년 3월 케이블TV 개국과 함께 방송을 시작해서 26년째 방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승인을 맞아서 심사위원님들 앞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종편 개국 이후에 MBN은 과거 방송 경험을 살려서 75개월 동안 종편 시청률 1위를 하는 등 종편 방송사업자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는 자연인이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하기도 하였고, 10년 동안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제작사가 많을 정도로 외주제작사와의 상생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사의 최초 승인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하여 재판을 받고 행정 처분을 받는 송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드리는 말씀이 모두 변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분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MBN을 사랑해 주신 하루 평균 900여만 가구의 시청자들, 그리고 지금도 각 현장에서 땀을 쏟고 있는 MBN의 구성원과 외주제작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MBN이 정상적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재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불편·부당한 보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고 국민들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 노력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책과 조언들이 MBN 방송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심사위원장

- ooo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주)매일방송의 종합편성 방송 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각 심사위원들 질의에 앞서 시청자 의견을 대신해서 심사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MBN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9월 2일까지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여러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이 자리에서 심사위원장인 제가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BN은 “공정하지 않은 편파성으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연예 등 자극적인 뉴스 기사를 양산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방송심의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정치 문제를 다룰 때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이 공정하지 않은 편파성의 문제나 극단적인 여론 형성 분위기 조성이나 자극적인 연예뉴스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청자 의견을 종합해서 공정성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BN은 원래 사업 목표가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이 가장 큰 저희들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감동과 재미를 주는 방송이 두 번째 가치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생태계를 같이 아우르는 방송, 글로벌 미디어로 나가는 방송이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앞세우고 있는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이라는 이미지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질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사실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정파성이나 그 다음에 성향을 띠지 않는 공정한 방송이 되어 보자고 해서 '공정과 신뢰'라는 2가지 가치를 보도국에 주고 종합뉴스나 일반뉴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더욱 공정한 가치를 가진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예뉴스를 양산한 면에 대해서도 사내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연예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전에 기획을 하다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 다른 방송에서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연예뉴스만 전담적으로 하면 가십성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중단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뉴스 가치가 있는 연예뉴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끔 균형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사회와 문화 쪽으로 할 때 연예뉴스 아이টে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비중을 저희가 많이 줄였는데 위원장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서 공정한 방송의 이미지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N은 최근 한 5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의, 경고 등의 법정제재 건수가 5년 동안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그렇게 나타나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이미지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심사위원장

- 참고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시청자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님의 개별적인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질문 순서를 정한 것이 있어서 그 순서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 A 질문해 주십시오.

## ○ 심사위원 A

- 방송의 공적책무·공정성은 중편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일 것입니다. 대표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도 공정과 신뢰를 제1 가치로 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공적책무·공정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심지어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공적책무·공정성 부문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특히 다른 종편에 비해서 좀 전에는 방송제재 건수가 가장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2018년 방송평가 자료를 확인하면 다른 종편에 비해서 언론중재위의 오보 결정 건수도 가장 많았고, 또 방송심의규정 준수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뉴스에서 광고효과가 있는 보도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정과 신뢰를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과 상당히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보도국 내부의 객관보도, 공정보도를 위한 단계별 실천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나, 마련되어 있다면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국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게이트키퍼라고 하지요. 기자들의 보도 과정을 객관보도, 공정보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 설명과 별도로 공적책무·공정성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추가 계획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 심사위원장

- 대표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대표자님 답변 이후에 뒤에 배석하신 분이 저의 허락을 받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 ○ (주)매일방송 대표자

- 공정성은 대표이사님 가장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도국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보도국이 아침마다 편집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그 아이템이 계속 저녁까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왜냐하면 방송시간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고, 마지막에 주요 데스크들이 서서 하는 미팅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젊은 기자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도국 내 '열린편집회의'라고 해서 메인뉴스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계획할 때 열린편집국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기자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시선으로 발제를 하기도 하고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합니다. 그리고 데스크를 거쳐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객관적인 뉴스냐, 사실에 관련된 뉴스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사실 확인 코너'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뉴스마다 Q&A, 요즘 같은 경우 그야말로 전염병 관련해서도 가짜뉴스가 많아서 이런 것 하나가 방송심의에 걸리면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방송위원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열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최근에는 임시로 열자고 해서 열기도 하는데 여기에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정방송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정방송위원회는 외부전문가들도 서로 추천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팩트는 맞는데 그것의 경계선, 보도가 되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를 가지고 물의를

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전염병을 보도할 때 어디까지 할 것이냐, 또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성적인 표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단계마다 준칙을 만들어서 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이 회사 내에서 모니터가 되고 바깥에서도 들릴 경우에는 그것을 공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더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스템으로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데스크를 내부에서 15년차 이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책임자를 세우고, 또 낮 시간대에 패널들이 공정성을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동인이 되기도 해서 이번에 한 사람을 더 인사발령을 내서 다음부터는 낮 시간대 와이드뉴스에 있는 것도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오·탈자보다도 그래픽이나 텍스트와 영상과 조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크로스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시스템이 서로 크로스 체크하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 심사위원 B

- 주로 MBN의 경쟁전략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영상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나 시청자들의 매체이용 형태도 너무 다변화되어서 과거 TV를 통해서만 접근하던 것에서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전략보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종편들은 신규사업자들이니까 기존 방송사업자들, 특히 지상파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시장 내에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시장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플랫폼이나 서비스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도 바뀌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약간 아쉽다고 느꼈다는 것은 분명히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아직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전략으로 이야기할 때 앞으로 어떤 것에 주력하려는 것인지, 딱 요약하면 차별화 전략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이나 앱 콘텐츠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고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것의 문제점은 이것이 비용은 늘어나는데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익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생각인지, 그리고 이것이 수익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 (주)매일방송 대표자

- 방송의 임원으로 또 경영자로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종편을 처음



시작하고 만 9년이 됐는데 그때는 종편이 큰 특혜를 받는 새로운 진입장벽이 있는 곳에 정부가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플랫폼의 개념이 바뀌면서 시청자들이 전통적인 TV만을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고 전혀 다른 형태로 엄청 급격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빨리 따라 가려다 보니까 아직 거기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들의 콘텐츠가 처음 초기에 4060을 타깃해서 지상파에서 소외되는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전환하는데 연령대가 많지 않으니깐 그것이 새로운 미디어로 넘어가는 유통속도를 저희들이 따라 가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성공했다고 판단했는데 한 3~4년 지나서는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콘텐츠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에 디지털 콘텐츠를 성공시켜서 유통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wavve나 티빙 등 새로운 플랫폼 OTT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OTT도 들어와서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49를 한번 겨냥해 보자고 해서 한 3~4년부터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DNA 자체가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DNA를 바꾼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바이스나 또 다른 형태의 플랫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콘텐츠가 안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도 협상해서 다 넣기는 하는데 콘텐츠의 체질이 변해야 한다는 쪽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그쪽으로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다른 방송들도 보면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별도의 채널전략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내부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필요한 것을 별도 국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깐 그들이 앞서 나가는 길이 기도 하지만 좀 더 미세조정을 해 가면서 그 방향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 유니크한 전략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반성하고, 또 그쪽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B

-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2049 쪽을 확장하려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예.

○ 심사위원 B

- 그것을 구체적으로 2049의 취향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 o (주)매일방송 대표자

- 오래된 프로그램은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예를 들어 같은 음악방송을 하더라도 '로또싱어'라는 것은 그동안 MBN에서, 지난번에 트로트를 가지고 경연을 한 번 해 봤는데 그것이 저희 시장과 맞아서 최고 시청률이 18% 정도, 저희들로서는 가장 많은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좀 더 젊은 분야의 베스트 멤버들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사인히어'도 MBN의 그동안 이미지로 볼 때 감당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락 쪽 음악을 가지고 경연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미쓰백'이라고 해서 전성기를 갖 지난 여성 아이돌 그룹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중심 무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디지털로 콘텐츠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서 한 주에 수차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200만 건 정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채널 이미지를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속도가 늦습니다.

### o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 o 심사위원 C

- 심사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청드리고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로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외주제작사와의 공존 상황에서 어떤 해에는 드라마 발주가 많았다가 또 어떤 해는 적으면 안정적인 외주제작 성장 조건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한데, MBN의 경우에는 다른 장르는 연차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향후 5년간 oo편의 제작 계획은 작성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로 통합 작성되어 있어서 제작 발주 균형성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연도별로 드라마 제작·편성 계획을 구분해서 <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드릴 것은 아무래도 최대주주님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방송사 존립의 의의라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BN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각인시킬 프로그램이 지난 약 10년간 무엇이 있었던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물론 '나는 자연인이다'를 생각하면 저도 항상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MBN이 방송사로서 우리 사회에 존립하고자 한다면 다른 데 비해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우리는 MBN이기 때문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동안 방송사로서 MBN은 너무나 총체적으로 소극적인 자세가 보였다, 가령 프로그램 수출이나 포맷의 수출 실적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수상실적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공정성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무엇을 추진하지 않

고 네거티브로만 있고, 또 네거티브한 쪽으로만 있고 또 프로그램 범주 내에서도 장르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가령 보도·시사 쪽에서 보면 시사논평은 굉장히 많은데 탐사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여에서도 재난방송 편성은 정말 미미하고, 어린이방송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것이 결국 MBN이 왜 방송사로서 존립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시청자들은 뚜렷하게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주주님께서서는 지금 최대주주 대표자를 맡고 계시니까 향후 시청자의 기억에 남을 MBN을 대표하는 명품 프로그램, 또는 우리 사회에서 MBN은 정말 존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상적인 것 말고, 지금 비상 상황 아닙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짧게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주)매일방송 최대주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관련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프로그램이 초창기부터 대표적인 MBN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초창기에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주고, 또 건강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일 최근에 '보이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18% 정도 시청률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드루와'라는 프로그램은 드라이브 부스를 통해서 독특한 포맷으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미쓰백'이나 '로또싱어' 같은 프로그램들도 나름 독특한 포맷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기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MBN이 공헌했던 점은 올 초에 공익변호사상을 제정했던 일이 있습니다. ooo 변호사님이라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변호한 점들이 또 평가가 되어서 저희가 시상을 해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또 '히어로 콘서트'라고 최근에 시상을 했는데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경찰, 소방관분들, 또 최근에 코로나19로 고생하셨던 의사, 간호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서 시상했습니다. 시상을 받으셨던 분들이 감사 표현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뿌듯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 o 심사위원 C

- 시상들은 신문사가 해도 되는 일인데 별로 그런 쪽의 철학이나 구상을 못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송사를 우리가 한 번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사제를 털어서라도 국제 어디 방송제에 나가서 우리 MBN 이름을 달고 '대한민국의 방송이 이렇게 훌륭해졌다'라고 하는 수상작 하나 한 번 내가 사제로라도 후원해 보겠다, 지금 MBN이 굉장히 저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최대주주 대표자님의 말씀은 2등, 3등 하고 말겠다, 트로트는 어디가 1등 하고 우리도 로또 트로트 이런 것으로 한 2등은 가겠다, 시청률 어느 정도 나오면 이 정도로 만족하겠다, 저는 그런 태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 기회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철학이 생기는 것은 아닐 테니까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은 같이 치열하게

속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최대주주**

- 예. 어떻게 하면 사회와 방송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 부탁드립니다.

○ **심사위원 D**

- 저는 경영전략 관련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방송 기술이나 방송 관련 경쟁시장이 급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MBN의 방송평가 결과표를 봤더니 인적자원 개발투자, 기술이나 경영, 지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투자가 2016년에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는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인적자원은 특히 방송 같은 경우 저희들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물론 다른 일반 루틴적인 것은 충성스럽고 적절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다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방송사로서 고유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철학을 가지고 MBN답다라는 것을 하려면 정말 대형 프로그램 한 번 성공해서 시청자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개발 관련해서 수치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이 기존 MBN DNA 가지고는 대형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으니깐 정말 그런 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 번 모셔 보자고 해서 외부에 팀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인적자원 투자를 해 가면서 제작본부 말고 스페이스레빗이라는 것을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 큰 성과는 나오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MBN을 먹여 살릴만한 대형 프로그램의 성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적 투자, 교육 이런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2016년, 2017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동기로 해서 수치상 교육 시스템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또 답변할 기회가 있겠지만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도 적극적으로 뽑고 있고, 시설도 계속 빌려 쓰고 최소한의 시설로 하던 것을 조금 더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 해서 스튜디오 투자도 하고, 또 대형 음악당 같은 것도 기획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적 투자, PD나 기술 분야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낮은 투자였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반성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 심사위원 E

- 대표님 모두 발언에서 지난 방통위 처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은 처분이고 재승인은 재승인이어서 그런 이야기가 되는지, 아니면 향후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내용들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이어서 현재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삼송 건립이나 엄청난 자금 투자계획이 바로 내년, 후년으로 해서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현재 까지 나오는 예상수익으로, 유보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처분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면 5년 계획에서 6개월이 빠져야 하는 상황이고, 엄청난 여파들이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와 지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도 빠져 있고 공시가 나가 있는데 분양사업 부분에 대한 분할을 결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상에도 2022년부터는 분양 관련 매출을 아예 추정도 하지 않았고 사전에 요청드린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분양계획이 없어서 잡지 않았다는 아주 성의 없는 답변이 왔는데, 그것을 하나도 잡지 않을 것이면 광고도 미래 것들을 잡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 분할의 목적이 무엇이고, 분할하려는 사업부의 일정 정도 값어치가 있으니까 별도로 운영을 계획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분할한 이후에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방송사업에 어떻게 기여하려는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매일방송 대표자

- 몇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 ○ 심사위원장

- 대표자님, 답변이 어려우면 뒤에 배석자가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자세히 모르시는 내용은 뒤에 배석자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예. 우선 처분과 관련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는 그 처분에도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은 3개월 내 제출하라는 것도 있고 어떤 권고사항은 6개월 내 제출하라는 것도 있고, 이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내 직원들의 동요를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부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어떤 예측도 현재는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삼송 건립 관련해서 MBN이 일단 분양사업은 어려움 없이 잘했습니다. 대신 우리의 건물을 갖게 되고 거기에 스튜디오를 짓는 것이 내년도에 0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금융이나 아니면 내부 자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렵기는 하지만, 그나마 방송 분야 광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수익이나 특히 분양 쪽의 수익이 있어서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적절한 수준으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사업의 결의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결의를 했고,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할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할하려는 목적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방송은 방송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데 전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이나 부동산 부분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라서 물적 분할해서 별도 규제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양쪽에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분양하는 해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조금 미래를 보고 거기에서 100% 물적 분할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콘텐츠 재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송 건립과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양계획이 없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냈느냐고 보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분양이라는 것이 올해 분양이 되고 분양된 것이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2~3년 후에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분간 그 시기만은 분양수익은 별도로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것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내지 못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 질문하실 때...

○ **심사위원 E**

- 추가는 아니고, 지금 말씀 중에서도 부동산 사업 부분이 넓어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별도의 시너지를 위해서 **빠**다고 하셨으면 지금 재승인 상황에서 분할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승인도 안 나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 부분을 적정해서 추정해서 3년 뒤에 것이라도 그 부분이 우리 MBN 방송에 어떻게 녹아들어가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번에 제출됐어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잘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F**

- 시청자 권익보호와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100페이지에 있는데 시청자

모니터단 2020년에 0명이 있는데 20~50대까지로 나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대하고 60대가 빠져 있는데 2017년 어린이 프로그램 실적이 제로, 2018년에 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3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모니터단에서조차도 10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구성에서도 보면 시청자위원 구성에서 계획 대비 실적, 그 다음에 향후 계획 3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2016년 승인 시에 어떻게 계획서를 제출했느냐 하면 여성위원 수를 절반 수준으로 점진적인 확대를 하고, 이것은 173페이지입니다. 2016년 자료입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연령의 다양화를 수립하겠다,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성별을 보면 2018년에 00% 00명 중 0명, 2019년에도 00%, 2020년에는 00%입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서 여성위원 수를 반으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00%, 00%, 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이 제로이고 0점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도 마찬가지로입니다. 50대와 60대가 00% 이상입니다.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을 비교해 보면 정말 거의 50~60대가 다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17년에는 00%가 50~60대입니다. 그래서 연령 분포에 관한 부분은 2016년 계획서 제출 당시 내신 계획하고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능이나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총 의견 건수가 000건입니다. 다른 언론사보다는 0배 정도 많은 의견수입니다. 그리고 미처리 건수가 00건이고, 의견 활용 건수가 000개인데 000개 중에서 제출하신 신청서 자료와 별 건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성실하게 답변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간략한 예를 들면 뉴스 분야가 다양하지 못하고 줄줄 한참 말을 시청자위원님께서 다양한 말을 해 놓았는데 답변은 딱 한 줄입니다. '뉴스의 다양화를 위해 애씀' 이것이 처리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청자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그 의견들을 녹아 들여서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경영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심사위원장

- 답변은 편성책임자가 하시나요, 대표자님이 하시나요?

####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제가 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서 경영과 관련 없이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참석하고 있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저희들이 변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 1년, 2년씩 보통 2년 평균 모시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10대, 20대가 전혀 없는 것, 단지 지방은 몇 분을 넣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MBN이 5060 중심 아니냐, 그래서 시청자위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발상을 바꾸겠습니다. 발상을 바꾸고, 10대는 잘 모르지만 어린이

콘텐츠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사실 20대, 30대가 시청자위원회 말고 프로그램 모니터단이 한 열 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령별로 들어가고 젊은 사람들로,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 심사위원장

- 질문을 이쪽에서 이어가겠습니다.

#### ○ 심사위원 가

- 외주상생 방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통위에서 MBN의 2019년 외주제작사 계약 현황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촬영원본 영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유는 요청한 제작사가 없어서 안 줬다는 취지입니다.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저작권과 해외 판매 권리보장인데 oo건 중 oo건은 10:0입니다. 전혀 수익분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의 계약을 가지고 외주제작사와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외주제작사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려면 외주제작사와 계약에 있어서 해외 판권 보장이나 이런 저작권을 MBN이 계속 고집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외주제작사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MBN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이런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주제작사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표준화해서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작사와 상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작비는 선지급 규정도 있고, 미리 돈을 받아야지 초기에 자금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급할 때 달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명절 앞두면 과감하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권을 소유할 때 물가상승률까지 다 포함해서 외주제작비를 책정해서 그것도 오랫동안 할 경우에는 매년 2월에 물가상승률이 반드시 반영되어서 장기계약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자동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작을 해서 해외 판권이 많아지면 이것을 공유해서 비용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리스크가 있지만 판권을 공유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합니다. 사실은 MBN에 납품을 했다가 그런 계약이 생기면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대신 드라마는 거의 공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외주를 줄 때, 우리는 내부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국내 판권이나 해외 판권을 공유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2016년도에 5개 타이틀 정도 했던 것이 있는데, 드라마도 아까 말씀하시듯이 스테디하게 매년 예측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하기도 하고 가짓수를 많이 늘렸다고 어떨 때는 큰 건을 또 하나씩 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해외 판권과 관련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판권 관련해서 일반예능이나 교양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외에 유통할만한 것으로 해서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 심사위원 나

- 설립 당시 자본금 편법 조성과 관련해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시청자 의견청취 및 국민이 묻는다는 통해서 방송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자본금 불법 조성한 방송사이므로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방송사업 영위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답변 듣고 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 (주)매일방송 대표자

- 국민들이 그렇게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그 이외 것을 관리해 온 과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청문할 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렇게 방송할 자격, 깨끗한 회사가 방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나

- MBN은 이후 공식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셨는데 제가 재승인 신청서 서약서를 보면 '재승인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서약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이 서약을 아마 하셨을 테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계획서도 신뢰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이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구제받고자 하는 구체적 법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승인 신청서가 처분을 받기 전에 작성한 것인데 MBN 입장에서는 재승인 기간 동안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아까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고, 법적 대응 관련해서 처분이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이 저희들이 받아보면 알게 되겠지만 굉장히 경제적 충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6개월 동안 블랙이 될 경우 광고가 연간 기본수입이 그만큼 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더라도 그것이 6개월 만에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MBN이 지금까지 시청자들과 신뢰를 쌓아 와서 지금 경영할 수 있는 것은 9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MBN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은 우리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될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당장 내부

에서 수습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적 대응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당장 세울 수가 없고, 우리 회사에서 저 혼자 이것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성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외주제작사들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것을 전담해서 하는 인력이 0,000명입니다. 우리 내부인력이 000명 정도입니다. 0,000명입니다. 저 혼자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송사 수익이라는 것이 너무 뻥합니다. 방송 수익만으로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적 분할 이야기 하는 그 수익이 그나마 수익의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방통위 처분이 내려지고 또 실제로 그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현실화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직원들과 같이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승인 처분을 받기 전에 서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당연히 서약서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들 계획은 서약서를 준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채승인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채승인할 때 서류를 낼 때 주주와 관련되거나 특히 재무와 관련되어서 그때 항상 점수를 환산하거나 평가항목이 있지 않아서, 저도 그때 당시에 실무를 했습니다만 실무자들은 특별한 그런 의식 없이 방통위에 제출하는 서류는 공적기관에 나오는 DART에 있는 재무제표, 그리고 주주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산하기구에서 나오는 그것을 주주명부 그대로 폐쇄한 상태로 갖다 주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장으로서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의견청취 후에 저희가 심사할 예정입니다.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여기에서 심사할 때,

○ **심사위원장**

- 예, 심사 결과에 대해서.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존중만 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영업정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속기록에 남기려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심사 결과를 각각 채점하지만 그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저희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가타부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심사위원들이 더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약속 부탁드립니다.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심사위원님들이 접수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다

- 경영 분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2가지 정도이고,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 권고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먼저 권고사항을 말씀드린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사외이사 적격성 관련해서 방송 전문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가 이행실적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외이사 세 분이 감사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상법상 회계·재무 전문가 한 분이 구성되도록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분들은 외부 감사인과 감사 기획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 자료 말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 사항을 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것이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편법 자본금 총당사항을 묵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본연의 기능에 있어서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향후에 사외이사 구성 및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적격성과 독립성을 갖추신 분들로 구성하는 것을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처분 관련해서 청문 결과를 보니까 2018년 8월에 000 회장님께서 이미 이 사안을 인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최대주주 대표님과 대표님께서 회계적인 사항 이외라도 회사에서 외부에 드러나기에 우려가 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행정처분은 최근에 있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은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1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행정처분이 있었을 때 회사에서 불복을 했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수용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노력들을 진행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질문을 제가 파악하기에 3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리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외이사 구성은 우리가 방송의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도 방송 분야에 오래 근무했지만 일반회계 쪽보다는 방송전문가들을 모셔야겠다고 해서 사외이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2017년도 계획에 '사외이사 분들을 방송전문가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계획서를 내면서 사외이사를 추천받아서 할 때 한 분은 아주 방송에서 감사까지 하시고 보도도 해 보시고 제작도 해 보신 훌륭한 분을 한 분 모셨고, 또 한 분은 학계에서 방송 분야

에 오랫동안 가르치고 책임을 맡으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회계나 경영과 관련된 전문가를 한 분 더 모시는 것이 좋지 않으나, 그래서 사외이사 세 분 중 한분은 경영 쪽 하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지적받은 것은 계획은 방송전문가로 하겠다고 하고 한 분은 왜 방송 전문가가 아닌 분으로 했느냐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지적해 주셨으니까 '행정처분에 앞서서 방송전문가를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형식을 통해서 그분을 방송전문가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사외이사라고 하면 회계전문가가 적절하지 않느냐, 그것이 좋지 않으나,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해야지 사내 통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 ○ 심사위원 다

- 제가 감사위원을 말씀드렸습니다.

####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예, 감사위원입니다. 그래서 사외이사로 감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드리고 자료를 사전에 드리고 이사회 할 때는 모셔서 같이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것은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 방송전문가가 좋은 방법인지, 그분들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깊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18년도에 ooo 회장이 인지했다고 했는데, 그때 답변한 것을 저도 옆에서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회계적인 사항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지적을 받고 나서, 조사 받고 나서 내부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외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지정감사인 제도를 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것을 DART에 올리고 있습니다. DART에 재정을 올리는 것도 사실은 종편 중에서 MBN이 분기별로 올리는 것은 유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도 전산화하고, 투명성 강화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고 해서 다 외부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 중에서는 이사회를 할 때 보통 대표이사나 지정받은 사람이 하는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도입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영을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은 2019년 10월에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을 받을 때 그 처분을 불복했느냐? 불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잘못은 명백한 잘못이니까요. 그 일을 한 것은 맞으니까, 그것은 다 사실을 인정하되, 소송하려고 하는 것은 양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고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다**

- 부연해서 궁금한 사항이 회계투명성 강화 관련해서 제가 조금 기대했던 것은 대표님과 최대 주주 대표님 두 분이 회계 분야뿐만 아니라 회사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감사인을 지정감사 허가 받는 것은 행정처분 제재조치의 일환인 것이지, 회사의 자구 방안이 아닙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알겠습니다. 아까 내부 통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외이사들 중심으로 더 받아야 되겠다...

○ **심사위원장**

- 답변이 되셨으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라**

-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명주주, 회계분식 문제로 투명성 또한 공정성이 중시되는 방송사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영투명성 강화나 경영의 합리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사업보고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보고서는 저희가 내려고 한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공시 의무가 있는 법인들은 공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JTBC도 사업보고서는 공표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제가 받은 이사회 의사록, 그리고 저희에게 제출하신 재승인 신청서에 있는 이사회 의사록과 감사위원회 3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이 실수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관리능력의 부재라고 해야 할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자료를 보면 관계회사의 지배존속 관계회사에 대한 표기 자체가 틀려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그냥 오류가 아니라 일관되게 틀립니다. 이것은 잘 모르고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영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실적 계획을 여러 가지 냈는데 당연히 법인들이 해야 할 상법상 의무들을 그냥 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방송사로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경영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위원님이 하셨던 것처럼 2018년도에 차명주식 회계분식 문제가 2018년 8월에 수면으로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지 그것 하나 질문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고 감사위원회는 감독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자료에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재를 해서 주시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외이사 분 000 사외이사님이 제가 추측하기에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신 000 대표님과 '81년생으로 미국 000대 동문으로 보이는데, 과연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로 선임했다는 사외이사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되는 질문이지만 경영투명성이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회사에서 노력하고자 하는 자구노력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매일방송 대표자

- 지적해 주신 것을 일일이, 어떻게 보며 디테일한 것은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일단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계 투명성과 전체 경영을 위해서 보는 분야가 서로 다른 것은 맞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우리 회사의 경영 내용을, 재무 내용을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감사하는 기능을 하고, 그것의 자체 의결해서 이사회에 넘기는데 이사회에서는 의결한 것을 다시 의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역시 이사회 멤버니까 그것이 얼마나 투명성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더 투명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사업보고서를 법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것은 맞고, 지적해 주신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면 회계담당자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o 심사위원 라

- 예. 추가적인 답변을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서...

o (주)매일방송 대표자

-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았고, 안에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사회 의장 제도를 향후 계획으로 도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새롭게 질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o 심사위원 라

-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보다도, 질문을 드려도 계속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경영관리 파트에 있어서 인력보강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료만 봐서도 이쪽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서류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o (주)매일방송 대표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 ○ 심사위원 마

- 2019년도 당기순이익이 0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흑자 전환하는데 노력에 치하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흑자 전환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분양 매출이 00억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유형자산처분이익 00억원 정도 해서 000억원 정도 이익이 나와서 사실상 다른 분야, 분양사업 분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방송사업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방송사업에 있어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어떠한 전략으로 방송사업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산업 트렌드가 광고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재 추이인데 장기적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아까 말씀하신 정말 MBN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딱 정답이 있으면 한 군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사지선다형도 아니어서 진짜 고민 중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방송산업 부문은 그렇게 흑자가 난 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 한 번 000억원 흑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광고수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OTT로 전환하는 것도 비용 대비 효율이 아직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회사들도 보면 올해는 경영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테디하게 하다 보니까 MBN은 정말 특별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쪽 부문을 강화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조금 강하게 MBN을 각인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시리즈화물로 하겠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큰 상을 타서 MBN에 대한 생각을 국민들에게 확 바꾸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드라마도 00억원, 00억원, 00억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000억원 정도 타이틀을 해야 하고, 내년에는 편당 0억원 정도 해서 000억원 정도 되는 드라마 타이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가 조금 축적되면 드라마 띠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 프로그램이, 보통 예능프로그램은 0억~0만원 정도 되는데 음악의 경연 프로그램은 0억 0000만원~0억원 정도 갑니다. 그 부분도 과감하게, 물론 트렌드가 독창적이어야 성공하고 이미지가 확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해서 일단 프로그램의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 이미지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나머지 다른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은 리스크 테이킹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결국 본질적인 곳에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바

- 2024년 UHD 방송 시스템 도입 계획만 나와 있고 거기에 채널 확보 계획, 또 서비스 시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확보 계획과 서비스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매일방송 대표자

- 기술국장이 여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기술국장 직책과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 MBN미디어텍 기술국장

- 기술국장 000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UHD는 2012년부터 고민을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지상파부터 보통 시작해서 종편 쪽으로 넘어오는 순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상파도 완전한 UHD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2023년도까지 00% 할당한 상태입니다. 저희 종편 쪽에서 고민할 때 2024년도에서 아니면 2025년 정도 UHD 방송시설을 완성해 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투자하는 모든 방송장비는 UHD 장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스 시스템뿐만 아니라 삼송 제작센터도 UHD로 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바

- 서비스 시기는요.

○ MBN미디어텍 기술국장

- 그 부분은 확답을 여기에서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2025년까지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심사위원 질문을 마치고 시간이 10분 이내로 남았기 때문에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2~3개 정도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먼저 의사를 표명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A

- MBN이 워낙 경영 관련된 이슈가 주요 안건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제가 의견청취를 들으면서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편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산업적으로 방송산업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광고수익이 계속해서 줄다 보니까 신문 산업에서 주로 나타나면 형태 중 하나인데, 광고수익이 줄다 보니까 협찬으로 그 광고수익을 메우는 매우 우려되는, 저널리즘



측면에서 보자면 매우 우려되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송에서도 연계편성이라는 문제가 광고수익이 줄어들고 경영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연계편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MBN은 다른 종편에 비해서 연계편성된 홈쇼핑사도 많고 횟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계편성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쇼닥터들의 출연정지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 (주)매일방송 대표자

- 먼저 쇼닥터 관련해서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방송 출연자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이슈 때문에 의학계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지나치게 의학지식이 상업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 지침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MBN이 처음에 종편을 출범시킬 때 지상파에서 그동안 주로 오락이나 드라마 중심으로 상업적인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 음식 관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식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키고 이것이 국민들 건강정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MBN이 상당히 기여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관련기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건강에 증진도 되고 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했는데, 이것이 너무 그쪽 방향으로 특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적받고 조사받아서 크게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디어랩 광고를 전담하는 것에서는 전혀 건들지 마라라고 하고 일반 기획·협찬은 MBN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편성 관련해서 방통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연계편성을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오해받고 있습니다.

일단 선은 분명히 그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광고냐 아니면 이것이 홍보냐, 광고냐 아니면 콘텐츠냐라고 해서 애매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잘 지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 ○ 심사위원장

- 다른 분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 심사위원 나

-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조금 부족하지만 잘하겠다는 정도 이외에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방송이라는 것이 콘텐츠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최대

주주 대표자께서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이 아닌지, 과연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고 계신지, 철학이나 의지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처분을 받을 때 그랬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중대한 위법사유입니다. 중대한 위법사유인데 어떤 사적인 이익이라고 하지요. 직원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라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잘못했으니까 잘해 달라고 읍소해서 처분을 너그럽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소송 가서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투고자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은 애들러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처분신청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 ○ (주)매일방송 최대주주

- 먼저 콘텐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OTT나 다른 방송 포털이나 뉴미디어들의 출연으로 방송산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1인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기존에 저희 방송사가 전통 방송사가 경쟁하지 않았던 플랫폼들과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방송사로서 1인 방송들이 할 수 없는 분야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향후 VR이나 3D 같은 영역들이 발전하는데 그런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또 투자하고 진출하겠습니다.

#### ○ (주)매일방송 대표자

- 가처분 신청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처분이 내려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분이라서 우선 구성원들에게 고용안정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직원들은 저희들이 지켜 나가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청자와의 약속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MBN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청자들을 보호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송구스럽지만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해서 구성원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아까 질의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모든 심사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oo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매일방송 대표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님들 좋은 질문과 지적, 와 보니까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회사 경영상 정말 경청해서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가셔도 우리의 소신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뭔가를 내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큰 방송사로 가려면 어떤 철학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 부족했던 부분 보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인력도 보완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MBN은 최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최초 승인 과정에서 잘못된 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희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님들께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고, 정말 1995년 케이블TV 개국 이후 26년 동안 시청자와 매일매일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국민의 사랑 받는 견실한 방송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MBN을 사랑하시는 국민들 시청자 분들께 봉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또 3,000명이 넘는 MBN 구성원과 외주제작사 종사원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정하고 신뢰받고 또 품격을 갖춘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방송사 또 외주제작사와 상생하는 방송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임해 주신 000 대표님, 000최대 대표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매일방송(MBN)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사 관계자 퇴장)

### 3. 폐 회

#### ○ 심사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의 의견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위원님들 아주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53분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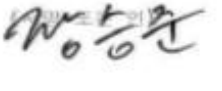


## VII. MBN 청문



## 1. 청문조서

## 청문조서

제목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주대일방송)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청문주제자	소 속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성 명	주 정 민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출석 여부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류호길 <small>(대일방송 대표이사)</small>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	출석	
	장승준 <small>(대일방송 최대주주)</small>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	출석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직위	방송지원정책과장, 담당 등	출석	
	성명	차중호, 이해련, 황경희 등		
청문의 일시 및 장소	2020년 11월 23일 14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정부과천청사 2동 4층)			
청문공개	공개 여부	비공개		
	이유	공개할 이유 없음(행정절차법 제30조)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요지	"불임"		
	제출된 증거	경명두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개편 방안 등		
증거조사	요지			
	증거			
기타				
2020년 11월 23일				
청문주제자 성명 :		주 정 민	(서명) 	
열람·확인자 성명 :		류 호 길	(서명) 	
		장 승 준	(서명)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청문요지

### **㈜매일방송 측 모두발언**

- 행정처분에 이어 재송인과 관련하여 다시 청문하게 되어 송구스러우며, 지난 3년간의 방송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평가받는 자리이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 지난 9년간 방송하면서 장기간 사랑받은 프로그램도 있으나, MBN을 상징하는 대형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여전히 부족함
- 본 청문회를 앞두고, 과락점수를 받은 방송발전·상생협력 계획을 검토하여 외주상생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했음. 외주 제작사 제작비를 현실화 하고, 중소 외주제작사를 위한 외주 상생기금을 매년 100억원 씩을 별도로 조성할 예정임. 또한 공모제를 통해 좋은 기획안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예정임

### **㈜매일방송의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항목 감점 관련**

- 방송법령 준수여부항목에서 감점을 받았는데,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 관련 질의에 대해
- 당초 MBN이 재송인시 제출한 제작비 투자 계획 등을 이행하지 못해서 시정명령을 받아 감점이 되었음
- 오보·막말 관련 제재를 받는 경우 감점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자체 징계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

##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 관련

- '17년 재승인 시에도 경영 투명성 확보 관련 지적이 계속되었고, 금번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도 해당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는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관련
  - 내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하도록 개선하겠으며, 회계전문가 1인을 포함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사외이사 추천제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가 선발되도록 하겠음

## 재정안전성 확보 방안 관련

- '20년 상반기 누적적자가 400억이나 되는 상황에서 외주상생기금 매년 100억원 씩의 투자가 재정 여건상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 MBN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광고수익이 전부 감소하여 연간 1천억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나,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외주상생기금은 사내유보금으로 먼저 집행할 예정임
- 업무정지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 매출이 연간 1천억원이 감소하더라도 제작비가 들지 않아 이익 감소는 크지 않을 수 있고, 업무정지 기간 동안 대형 프로그램 기획 등을 할 계획이고 MBN의 다양한 수입재원으로 감당할 예정임
- ※ MBN의 재정상황에서 부동산 사업부문 물적분할로 인해 잉여금이 분할되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잉여금으로 영업손실을 보전한 후 물적분할을 할 필요가 있고, 방송누적 이익이 물적분할로 이전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방송발전·상생협력 계획 관련

- MBN은 청문 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매년 100억원 규모의 외주 상생 기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 외주제작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MBN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생 위원회에서 선정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를 선 지급하고 공모제를 운영해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힘
  - MBN 상생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배분 방안, 부대수의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하여 방송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 보도의 공정성 관련

- MBN 보도의 공정성 의심 해소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공정성 강화계획 질의에 대해
  - 노사 동수 공정방송 위원회, 평기자가 참석하는 열린 편집회의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 운영 외에 종편 4사 중 유일하게 한국기자협회가 운영하는 '팩트 체크넷'에 참여하기로 함
  -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보도국장 신임투표제,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추천 등을 수용하고, 또한 방송관련 학회 또는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공정성 평가'를 의뢰하여 결과를 반영할 예정임
- ※ 보도국장 신임투표제,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추천 등은 공정성과 큰 연관성이 없으므로 보도의 공정성 강화계획 관련한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청문위원의 요구가 있었음

## 편성의 다양성 제고 관련

- 탐사보도, 어린이 프로그램, 드라마 등의 편성을 통해 편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연계편성이 심각하다는 질의에 대해
  - 오늘부터 14시 50분경 어린이 프로그램을 30분씩 편성하고 주말에도 60분씩 편성하여 어린이들의 시청접근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최근 버라이어티, 음악 프로그램 등에 많이 진출했으며, 드라마는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한편씩 준비 중에 있음. 또한 탐사보도 프로그램도 편성을 검토하겠음
  - 미디어랩사가 편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연계편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행정처분 및 소유경영분리 관련

- 방통위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MBN 대표 및 대주주의 책임지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 행정처분 관련 내부 동요를 줄이기 위해 노조와 고용·임금·복지에 대해 현행 유지 합의를 우선적으로 했으며, 행정처분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방통위 권고에 따라 협력업체 피해 감소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최대주주 대표로서 지난해 금감원 조사 이후 대국민 사과를 실시하고 금번 방통위 처분 직전에 장승준 전 MBN 대표가 물러날 때도 사과를 드렸음. MBN이 신뢰받는 방송이 되기 위해 최대주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음

- 소유경영분리를 위해 최대주주가 방송사의 업무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 장승준 전 MBN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현재 MBN의 사내이사는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측에서 맡고 있지 않으며 향후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만 주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음
- ※ 앞서 청문위원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추가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외부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콘텐츠 투자계획과 방송의 공정성 관련 보완계획을 포함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함

**(주)매일방송 측 마무리발언**

-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과 지적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더 깊이 검토하고 신속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MBN 내·외부 구성원이 3,000명이 넘고, 약 900만 시청가구가 있음. 내·외부 구성원과 함께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주제자 성명 :	주 정 민	(서명 또는 인)
열람·확인자 성명 :	류 호 길	(서명 또는 인)
	장 승 준	(서명 또는 인)

## 2. 청문주재자 의견

##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매일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 가. 처분의 원인

- 행정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20. 11. 3. ~ 6.)하였음
-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매일방송은 총 1,000점 만점 중 640.50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의결기준인 650점에 미달하였음
- ※ '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는 '재승인',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처분

#### 나. 당사자의 진술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는 ㈜매일방송의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심사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2019년 5월 재승인 사전기본계획을, 2019년 8월에는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하였음
  - 이러한 재승인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처분을 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으며,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후 방통위는 금년 10월경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총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음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매일방송은 총점 1,000점 중 640.50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였고,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항목에서는 45.04점을 획득하여 배점의 50%에 미달하였음
  - 심사위원회는 심사항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의견을 제시하였음
  - 첫째, 공정성 실현과 관련하여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고, 최초 승인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의견청취 과정

에서 대주주 대표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 둘째, 프로그램 편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이 부족하고, 홈쇼핑사와의 연계편성이 타 종편PP에 비해 심각하여 공익성을 훼손함
- 셋째, 최초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및 관리 시스템이 요구됨
- 또한, 심사위원회는 건강한 방송생태계 조성 및 외주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한 ㈜매일방송에 대해 재승인 기본계획 등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20년 11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당사자 의견을 듣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에 ㈜매일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행정청의 진술에 대하여 ㈜매일방송은 다음과 같이 진술함

- 지난 9년간 방송하면서 장기간 사랑받은 프로그램도 있으나, MBN을 상징하는 대형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여전히 부족함
- 과락점수를 받은 방송발전·상생협력 계획을 검토하여 외주상생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했음. 외주 제작사 제작비를 현실화 하고, 중소 외주제작사를 위한 외주 상생기금을 매년 100억 원씩을 별도로 조성할 예정임
- MBN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광고수익이 전부 감소하여 연간 1천억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나,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외주상생기금은 사내유보금으로 먼저 집행할 예정임
- 외주제작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MBN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생위원회에서 선정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를 선 지급하고 공모제를 운영해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임
- 노사 동수 공정방송위원회, 평가자가 참석하는 열린 편집회의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 운영 외에 종편 4사 중 유일하게 한국 기자협회가 운영하는 '팩트 체크넷'에 참여하기로 함
-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보도국장 신임투표제,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추천 등을 수용하고, 또한 방송관련 학회 또는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공정성 평가'를 의뢰하여 결과를 반영할 예정임
- 행정처분 관련 내부 동요를 줄이기 위해 노조와 고용·임금·복지에 대해 노조와 우선적으로 현행 유지를 합의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방통위 권고에 따라 협력업체 피해 감소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소유·경영분리를 위해 최대주주가 방송사의 업무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승준 전 MBN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현재 MBN의 사내이사는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측에서 맡고 있지 않으며 향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음



다. 증거조사 및 사실 확인

- 청문과정을 통해 MBN이 제출한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개편 방안 등을 확인하였음

종합의견

1. ㈜매일방송은 2020년 11월 3일~6일에 실시된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640.50점의 평가점수를 받아 재승인 의결기준인 650점에 미달했음. 이에 따라 ㈜매일방송에 예정된 처분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임
2. ㈜매일방송 청문결과, 2011년 최초 승인시 자본금 편법충당으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의 행위가 2018년까지 이어졌고, 2020년 11월에 실시된 재승인 심사에서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지 못했으며, 이후 실시된 청문회에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앞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뚜렷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음. 특히 청문과정에서 밝힌 재승인 심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에서 '경영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고,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했음. 이에 따라 ㈜매일방송은 방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승인 거부'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다만, ㈜매일방송은 2011년 최초 승인시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에 대해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내·외부 종사자가 3,000여명에 달함과 동시에 약 900만의 시청가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재승인 거부 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의 방송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매일방송이 재승인 심사결과를 충분히 수용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실행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봄
4. ㈜매일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부여할 경우, ㈜매일방송이 청문회에 밝힌 바와 같이 외부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콘텐츠 투자계획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가 개선계획을 조속히 제출해 이행하도록 해야 함.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첫째로 경영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둘째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재정안정성 확보와 협력업체 보호방안 및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 안정화 방안, 셋째로 방송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외주제작사 외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넷째로 편성의 다양성 제고 및 홈쇼핑 채널과의 연계편성 금지 방안, 다섯째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조치 방안 및 최대주주가 방송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임. 이를 통해 ㈜매일방송이 설립목적에 충실하고, 시청자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사가 되어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2020년 11월 24일

청문주재자 성명 : 주(재정)본(인)

210mm×297mm[백상지 80g/㎡(저활용종)]



## VIII. 재승인 의결



1. 종편PP 재승인 의결(안건, '20.11.27.)

##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 - 64 - 291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공 개	

###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20. 11. 27 .

#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

< 2020. 11. 27.(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 1. 의결 주문

### 가. 제이티비씨(주)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제이티비씨(주)에 대해 <붙임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년 12월 1일부터 '25년 11월 30일까지 5년으로 한다.

### 나. (주)매일방송

#### < 1안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매일방송에 대하여 재승인을 거부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붙임2>와 같이 방송연장을 명령한다.

#### < 2안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매일방송에 대해 <붙임3>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하고 승인 유효기간은 '20년 12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3년으로 한다.
- 승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붙임3>의 재승인 조건 중 3번 및 10~16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3. 경영투명성 확보 및 외주상생 등을 위해 추가개선계획(공정성 강화방안, 투명성 개선계획, 상생강화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10.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주)매일방송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동 처분과 관련된 대표이사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1.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의 의견 및 외부 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 경영혁신방안에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임원선임 절차 개선, 경영·회계 관련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정비 방안 등을 포함할 것
12.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주주의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것.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3.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공모제도를 시행하여 선임할 것. 또한,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고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 시 부가된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작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업무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제출할 것
15.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협의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은 관련 방안을 이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16.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와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 내부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종사자 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할 것.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 2. 제안 이유

- 승인 유효기간이 '20년 11월 30일 만료되는 제이티비씨(주)와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

## 3. 경과 사항

- '19.5.10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
- '20.5.28 ~ 5.29 (주)매일방송 및 제이티비씨(주) 재승인 신청서 접수
- '20.8.3 ~ '20.9.2 시청자 의견청취('국민이 묻는다' 포함) 실시
- '20.11.3 ~ '20.11.6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총 4일)
  -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기간 중 대상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 실시('20.11.5)
- '20. 11. 23 (주)매일방송 청문 실시

##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가. 구성

- 「'20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

분야	이름	주요 이력
심사위원장	윤 석 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미디어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 성 중	한국언론정보학회 총무이사
	손 병 우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법률	조 원 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권 형 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경제·경영·회계	장 현 민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엄 은 숙	정동회계법인 전무이사
	송 민 섭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기술	허 남 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시청자·소비자	전 삼 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강 수 곤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김 향 란	부산소비자연맹 회장

## 나. 운영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 '20. 11. 3. ~ '20. 11. 6. (총 4일)

## 5. 심사평가 결과

- (JTBC) 심사총점 714.89점, 중점심사사항 과락이 발생하지 않았음
  - 재승인 요건을 충족함

- (MBN) 심사총점 640.50점, 중점심사사항 과락이 발생하지 않았음
  -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

\* 개별심사사항(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였음

### < 방송사업자별 심사평가 결과 >

심사사항 (배점)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344.74	332.07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점)	128.08	109.24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점)	126.73	102.85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점)	56.61	53.12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점)	59.37	45.04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50점)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5.10	30.20
합계(1,050점)	750.63	672.52
<b>최종 환산점수(1,000점)</b>	<b>714.89</b>	<b>640.50</b>

## 6.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

### 1. 가. 종합 소견

- 2017년과 비교하여 장르의 다양성이 개선되었고,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가 다소 감소하는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음

- 미디어 환경의 급변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재정적인 위기 극복, 콘텐츠 투자계획 등이 기대에 못 미치므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전 재승인 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시청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작여건 개선이 요구됨
- 시청자들은 종편PP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주)매일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시청자들의 불만이 높게 나타났음. 이에 사업자는 보도의 공정성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정례화하여야 함
-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언론환경에서 종편PP 뉴스의 신뢰도 하락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뉴스 등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외부 기관의 컨설팅 등 지적을 수용하여 조속한 신뢰성 회복이 필요함

#### 나. 심사사항 별 소견

#####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JTBC)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을 높은 수준으로 함양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경영 환경 상 추가적인 지역·사회에의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직능별 다양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

○ (MBN)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의식이 미흡함

- 공정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있어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함
- 최초 승인 과정에서의 불법으로 인하여 윤리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주주 대표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 시청자 불만처리 이행실적은 많은데 상담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필요함

####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JTBC) 장르별 균형성,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수준의 우수성으로 시청률의 성취도 거두었고, 시청률이 낮은 경우도 기획의 참신함을 갖춘 프로그램이 많았음

-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봄. 언론사가 대주주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도의 독립성 및 편성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임

○ (MBN)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사고와 변화하는 방송환경과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함

- 시사논평 프로그램은 과다한 반면,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여 편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기여도도 낮음. 또한 재난 방송 및 어린이 방송 편성 등이 매우 저조함
- 홈쇼핑사와의 연계편성과 관련하여 타 종편PP에 비해 문제가 심각하고 시청자의 신뢰 상실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보전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부적절함

## □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JTBC) '19년말 기준 자본의 00%가 잠식 상태이며, '20년에 상환해야 할 부채규모가 000억원에 달하므로 영업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자금계획을 실현 가능성 있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MBN)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최초 승인 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므로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님에도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

##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JTBC) 보도국 기자의 상당수가 중앙일보사 소속이며 JTBC는 중앙일보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MBN) 건강한 방송생태계 조성 및 외주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함

## 7. (주)매일방송 청문 결과

### 가. 청문 개요

- 일시/장소 : 2020. 11. 23.(월) 14:00~16:00 / 4층 위원회 회의실
- 청문 주재자 : 주정민 교수(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 청문위원 : 고민수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손해진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
- 참석자 : 류호길 (주)매일방송 대표이사, 장승준 (주)매일경제신문사 대표이사 등

## 나. (주)매일방송 및 최대액출자자 의견 진술 주요 내용

- 지난 9년간 방송하면서 장기간 사랑받은 프로그램도 있으나, (주)매일방송을 상징하는 대형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여전히 부족함
  - 과락점수를 받은 방송발전·상생협력 계획을 검토하여 외주상생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했음. 외주 제작사 제작비를 현실화 하고, 중소 외주제작사를 위한 외주 상생기금을 매년 100억원씩 별도로 조성할 예정
- (주)매일방송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광고수익이 전부 감소하여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나,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외주상생기금은 사내유보금으로 먼저 집행할 예정
- 외주제작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MBN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생위원회에서 선정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를 선 지급하고 공모제를 운영해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임
- 노·사 동수 공정방송 위원회, 평가자가 참석하는 열린 편집회의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 운영 외에 종편 4사 중 유일하게 한국기자협회 등이 운영하는 ‘팩트 체크넷’에 참여하기로 함
-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보도국장 신임투표제,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추천 등을 수용하고, 방송관련 학회 또는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공정성 평가’를 의뢰하여 결과를 반영할 예정임
- 행정처분 관련 내부 동요를 줄이기 위해 노조와 고용·임금·복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행 유지를 합의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방통위 권고에 따라 협력업체 피해 감소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소유경영 분리를 위해 최대주주가 방송사의 업무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승준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현재 (주)매일방송의 사내이사는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에서 맡고 있지 않으며, 향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음

## 다. 청문주제자 의견

- (주)매일방송 청문결과, 최초 승인 시 자본금 편법충당으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의 행위가 2018년까지 이어졌고, 2020년 재승인 심사 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지 못했고 청문회에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앞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뚜렷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음.
  - 특히, 청문과정에서 밝힌 ‘경영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고,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했음
  - 이에 따라 (주)매일방송은 방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승인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주)매일방송은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에 대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관련 종사자가 3,000여명에 달함과 동시에 약 900만의 시청가구가 있다는 점을 볼 때,
  - 재승인 거부 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의 방송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주)매일방송이 재승인 심사결과를 충분히 수용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실행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봄
- (주)매일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도 마련하고 시행하여 시청자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사로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① 경영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②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재정안정성 확보와 협력업체 피해방안 및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 안정화 방안, ③ 방송발전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외주제작사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④ 편성의 다양성 제고 및 홈쇼핑 채널과의 연계편성 금지 방안, 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조치 방안 및 최대주주가 방송사업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 8. 검토 의견

### < 제이티비씨(주) >

- 방송법령 및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이티비씨(주)는 과락 없이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
  - 또한, 재승인 기본계획('19.5.10 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심사평가 결과 70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 기간은 '20년 12월 1일부터 '25년 11월 30일까지 5년을 부여하고 이행실적 점검주기도 2년마다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및 콘텐츠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조건 및 권고를 부가할 필요가 있음
  - 즉, 외주제작사와의 상생을 위해 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건강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협찬고지를 의무화하여 시청자들이 협찬 받아 제작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 제이티비씨(주)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중앙일보(주)에서 채용한 기자(보도총괄 등 직책자 포함)가 중앙일보(주)와 제이티비씨(주) 간에 체결한 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제이티비씨(주) 보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동 사항 대해 검토한 결과,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취지에 맞지 않고, 소유·경영의 분리가 미흡하여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중앙일보(주)의 기자파견 등을 해소하도록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앙일보 소속 기자가 제이티비씨(주)에서 근무하는 행태는 그 실질이 파견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이에 따라, 파견법 등을 소관하는 부처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감독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 (주)매일방송 >

- (주)매일방송은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사평가 총점이 650점에 미달하여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
- 심사위원회에서는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이 미흡하다고 평가함
- 또한,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최초 승인 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며, 방송사업자의 윤리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나,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
- 청문주재자도 (주)매일방송이 ‘경영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승인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만, (주)매일방송에 대해 이미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재승인 거부 시 관련 종사자 및 시청자 등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주)매일방송이 재승인 심사결과를 충분히 수용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실행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가 재승인 거부 요건에는 해당했으나, 청문 이후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과 외주 상생방안 등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을 거부하기보다는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방안도 있음
- 다만, (주)매일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할 경우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경영혁신이 필요함
  - 즉, 위원회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한 경영진 및 임직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종사자 대표의 의견과 외부기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음
  - 사외이사 제도를 개편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 선임하도록 하여 내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경영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표이사 선임 시 공모제도를 활용하여 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송전문경영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차명주식에 해당되는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감소한 자본금을 최초 승인 시 위원회와 약속한 금액으로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심사평가 총점이 650점 이하로 나온 점, 심사위원회에서도 사업자의 윤리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점, 청문주재자도 경영의 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주)매일방송이 제출한 추가개선계획의 이행과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 등과 관련된 조건을 주요조건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주)매일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다면 아래 주요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방송법 제101조)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함

- o 또한, 심사평가 총점이 650점에 미달하고 부가된 조건·권고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권고의 점검주기를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6개월로 하기로 함
- o 재승인 기본계획 등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 시 재승인 유효기간은 3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주)매일방송 주요 재승인 조건 >**

3. 경영투명성 확보 및 외주상생 등을 위해 추가개선계획(공정성 강화방안, 투명성 개선계획, 상생강화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10.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주)매일방송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동 처분과 관련된 대표이사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1.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의 의견 및 외부기관의 경영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 경영혁신방안에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임원선임 절차 개선, 경영·회계 관련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정비 방안 등을 포함할 것
12.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주주의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것.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3.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공모제도를 시행하여 선임할 것. 또한,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고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 시 부가된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작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업무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제출할 것

15.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협의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은 관련 방안을 이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16.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와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 내부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종사자 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할 것.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 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 9. 향후 계획

- '20. 11월 말 방송연장명령((주)매일방송 재승인 거부시)
- '20. 11월 말 승인장 교부(제이티비씨(주) 재승인 및 (주)매일방송 조건부 재승인 의결시)
- '20. 12월 초 고용노동부 등에 제이티비씨(주) 관련 사실관계 통보
- '20. 12월 말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 붙임 1. 제이티비씨(주)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안)
2. 방송연장명령 결정사항
3. (주)매일방송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안)
4.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5. (주)매일방송 청문조서
6. (주)매일방송 청문주재자 의견서
7. 종편PP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끝.

**제이티비씨[주]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구 분	내 용
<b>재승인 조건</b>	<p>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p> <p>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방송콘텐츠 품격제고,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다양성 강화, 선거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송편성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 까지 제출할 것</p> <p>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또한,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p> <p>※ '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3항, 제25조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의 경우, '20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p> <p>- 다만, 개별 제재조치의 위반근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복수인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 건수에만 포함함</p> <p>4. 방송 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2021년부터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p> <p>5.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 다만, 고지 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역의 명칭, 제공업체 등을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지 말 것</p>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등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월의 이행 실적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제출할 것</li> <li>6. 방송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양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할 것</li> <li>- 다만, '20년 콘텐츠 투자계획은 '20년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20년 연간 투자계획금액을 준수할 것</li> <li>7.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직전 반기 동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li> <li>8.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 소속 기자(보도총괄 등 직책자 포함)의 파견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세부실행계획을 제출할 것. 관련 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후 이행실적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li> </ul>
권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의견반영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li> <li>2. 사업계획서 및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li> <li>3. 어린이·청소년의 노동권,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표준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이행할 것</li> <li>4.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하여 직능별 다양화 및 실효성을 제고할 것</li> <li>5.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할 것. 아울러 재승인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li> <li>6. 중·단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발생하는 채무의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 아울러,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li> </ol>

**[주]매일방송 - 1안 : 방송연장명령 결정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방송법 제1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4,5항에 근거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하도록 (주)매일방송에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가.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사업승계자가 방송을 개시할 경우 단축될 수 있음)

나. 방송을 계속하여야 할 방송사업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다. 기타 : 방송이 계속되는 기간동안 방송법 등을 잘 준수하도록 하고, 2017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시 부가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시청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주)매일방송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p>1. 사업계획서 및 2020.11.24.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p> <p>※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p> <p>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방송콘텐츠 품격제고,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다양성 강화, 선거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송편성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p> <p>3. 경영투명성 확보 및 외주상생 등을 위해 추가개선계획(공정성 강화방안, 투명성 개선계획, 상생강화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p> <p>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또한,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p> <p>※ '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3항, 제25조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의 경우, '20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p> <p>- 다만, 개별 제재조치의 위반근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복수인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 건수에만 포함함</p>



구 분	내 용
	<p>5. 방송 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2021년부터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p> <p>6.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 다만, 고지 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역의 명칭, 제공업체 등을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지 말 것</p> <p>- 또한,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등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월의 이행 실적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제출할 것</p> <p>7. 방송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양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할 것. 다만, '20년 콘텐츠 투자계획은 '20년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20년 연간 투자계획금액을 준수할 것</p> <p>8.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직전 반기 동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p> <p>9.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다양성 및 편성의 균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편성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p> <p>10.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주)매일방송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동 처분과 관련된 대표이사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p>

구 분	내 용
	<p>11.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의 의견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p> <p>- 경영혁신방안에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임원선임절차 개선, 경영·회계 관련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정비 방안 등을 포함할 것</p> <p>12.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주주의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것.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p> <p>13.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공모 제도를 시행하여 선임할 것. 또한,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고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p> <p>14.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 시 부가된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작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업무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제출할 것</p> <p>15.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협의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은 관련 방안을 이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p> <p>16.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와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 내부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종사자 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할 것.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은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p> <p>17. 최대주주의 대표자는 방송법 제8조, 제18조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p>

구 분	내 용
권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의견반영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li> <li>2.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li> <li>3. 어린이·청소년의 노동권,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표준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이행할 것</li> <li>4.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li> <li>5.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아울러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li> </ol>

(붙임7)

**중편PP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1. 방송평가(400)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400)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210)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20)	공적책임·공정성 이행실적의 적정성(60)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계획의 적정성(60)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30)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의 타당성(5)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15)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19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이행실적의 적정성(2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실현계획의 적정성(30)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80)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의 우수성(35)
		방송프로그램 투자 계획의 우수성(45)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20)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10)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10)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40)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의 적절성(15)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계획의 적절성(25)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의 적정성(20)
		경영전략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30)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부채비율(12)
		자기자본순이익률(9)
		총자산증가율(9)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10)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1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100)	외주 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0)
외주 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20)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감점)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70)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7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50)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재난방송 실적의 적정성(15)
		재난방송 계획의 적정성(35)

## 2. 종편PP 재승인 의결(속기록, '20.11.27.)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11. 27.(금) 14:0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가.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20202-64-291)

### o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제이티비씨(주)에 대해 <붙임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5년으로 한다. (주)매일방송에 대한 의결주문입니다. <1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매일방송에 대하여 재승인을 거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붙임2>와 같이 방송연장을 명령한다. <2안>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매일방송에 대해 <붙임3>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승인하고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3년으로 한다. 승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붙임3>의 재승인 조건 중 <3>번 및 <10>~<16>번까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주요조건 보시겠습니다. <3>번 경영투명성 확보 및 외주상생 등을 위해 추가개선계획(공정성 강화방안, 투명성 개선계획, 상생강화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0>번입니다.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주)매일방송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동 처분과 관련된 대표이사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1>번입니다.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의 의견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경영혁신방안에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임원선임 절차 개선, 경영·회계 관련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정비 방안 등을 포함할 것. <12>번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주주의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것.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3>번입니다.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공모제도를 시행하여 선임할 것. 또한,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고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14>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 시 부가된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작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 방안을 성실히 이



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업무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제출할 것. <15>번입니다.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협의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은 관련 방안을 이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16>번입니다.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와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 내부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종사자 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할 것.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승인 유효기간이 2020년 11월 30일 만료되는 제이티비씨(주)와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 사항입니다. 작년 5월 10일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고, 올해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국민이 묻는다’가 포함된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4일 동안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중 대상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주)매일방송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심사위원회는 「2020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제이티비씨(주)는 총 1,000점 만점의 714.89점을 획득하였고, 중점심사사항 중 과락이 발생하지 않아서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MBN의 경우 640.50점을 받았고, 중점심사사항 과락은 없었지만 개별심사사항 <5>번 항목에서 50%에 미달하였습니다. 650점에 미달하여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방송사업자별 심사평가 결과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종합 소견은 2017년과 비교하여 장르의 다양성이 개선되었고, 공정성 관련 심의제제가 다소 감소하는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미디어 환경의 급변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전 재승인 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시청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작여건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종편PP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주)매일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시청자들의 불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보도의 공정성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정례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언론환경에서 종편PP 뉴스의 신뢰도 하락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뉴스 등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외부 기관의 컨설팅 등 지적을 수용하여 조속한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사항별 소견입니다. 첫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JTBC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을 높은 수준으로 함양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나, 기업의 경영 환경상 추가적인 지역·사회에의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직능별 다양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실

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공정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있어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승인 과정에서의 불법으로 인하여 윤리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주주 대표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과 시청자 불만처리 이행실적은 많은데 상담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견입니다. JTBC에 대해서는 장르별 균형성,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수준의 우수성으로 시청률의 성취도 거두었고, 시청률이 낮은 경우도 기획의 참신함을 갖춘 프로그램이 많았다는 의견과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사가 대주주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도의 독립성 및 편성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사고와 변화하는 방송환경과 시청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하며, 시사논평 프로그램은 과다한 반면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여 편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기여도도 낮고, 재난방송 및 어린이 방송 편성 등도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사와의 연계편성과 관련하여 타 종편PP에 비해 문제가 심각하고 시청자의 신뢰 상실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보전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견입니다. JTBC에 대해서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자본의 00%가 잠식된 상태이며, 2020년에 상환해야 할 부채규모가 000억원에 달하므로 영업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자금계획을 실현 가능성 있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최초 승인 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므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고,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님에도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견입니다. JTBC에 대해서는 보도국 기자가 중앙일보사 소속이며, JTBC는 중앙일보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건강한 방송생태계 조성 및 외주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매일방송에 대한 청문 결과입니다. 청문은 지난 11월 23일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루어졌고, 청문 주재자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였습니다. 참석자는 (주)매일방송에서 류호길 대표이사, (주)매일경제신문사에서 최대주주 자격으로 장승준 대표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매일방송 및 (주)매일경제신문사 의견진술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9년간 방송하면서 장기간 사랑받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나 (주)매일방송을 상징하는 대형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과락점수를 받은 방송발전·상생협력 계획을 검토하여 외주상생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했으며, 외주 제작사 제작비를 현실화하고 중소 외주제작사를 위한 외주 상생기금을 매년 100억원씩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광고수익이 전부 감소하여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나,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외주 상생기금은 사내 유보금으로 먼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주제작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MBN 상생 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생위원회에서 선정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를 선 지급하고 공모제를 운영해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사 동수 공정방송 위원회, 평가자가 참석하는 열린 편집회의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 운영 외에 종편 4사 중 유일하게 한국기자협회 등이 운영하는 '팩트 체크넷'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보도국장 신임투표제,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추천 등을 수용하고, 방송관련 학회 또는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공정성 평가'를 의뢰하여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 관련 내부 동요를 중이기 위해 노조와 고용·임금·복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행 유지를 합의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방통위 권고에 따라 협력업체 피해 감소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유·경영 분리를 위해 최대주주가 방송사의 업무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승준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현재 (주)매일방송의 사내이사는 최대주주에서 맡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는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청문주재자 의견입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한 청문결과, 최초 승인 시 자본금 편법충당으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의 행위가 2018년까지 이어졌고, 2020년 재승인 심사 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지 못했고 청문회에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앞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뚜렷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청문과정에서 밝힌 '경영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고,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주)매일방송이 방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승인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주)매일방송은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에 대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관련 종사자가 3,000여명에 달함과 동시에 약 900만의 시청자구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재승인 거부 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의 방송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서 (주)매일방송이 재승인 심사결과를 충분히 수용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실행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승인' 처분도 고려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도 마련하고 시행하여 시청자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사로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건부 재승인 시의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박스를 보시면 첫 번째, 경영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재정안정성 확보와 협력업체 피해방안 및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 안정화 방안, 방송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외주제작사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편성의 다양성 제고 및 홈쇼핑 채널과의 연계편성 금지 방안,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조치 방안 및 최대주주가 방송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제이티비씨(주)에 대한 검토 의견은 방송법령 및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이티비씨(주)는 과락 없이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승인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심사평가 결과 70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5년을 부여하고 이행실적 점검주기도 2년마다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송의 공적책

임 강화 및 콘텐츠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조건 및 권고를 부가할 필요가 있는데, 외주제작사와의 상생을 위해 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건강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협찬고지를 의무화하여 시청자들이 협찬받아 제작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제이티비씨(주)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중앙일보(주)에서 채용한 기자가 중앙일보(주)와 제이티비씨(주) 간에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제이티비씨(주) 보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취지에 맞지 않고, 소유·경영의 분리가 미흡하여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중앙일보(주)의 기자파견 등을 해소하도록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중앙일보 소속 기자가 제이티비씨(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태는 그 실질이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매일방송은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사평가 총점이 650점에 미달하여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의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고,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최초 승인 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며, 방송사업자의 윤리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나,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청문주재자도 (주)매일방송이 ‘경영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승인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주)매일방송에 대해 이미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재승인 거부 시 관련 종사자 및 시청자 등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매일방송이 재승인 심사결과를 충분히 수용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실행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위원회 평가점수가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했으나, 청문 이후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과 외주 상생방안 등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을 거부하기보다는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주)매일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할 경우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위원회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한 경영진 및 임직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종사자 대표의 의견과 외부기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외이사 제도를 개편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 선임하도록 하여 내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경영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선임 시 공모제도를 활용하여 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송전문경영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차명주식에 해당되는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감소한 자본금을 최초승인 시 위원회와 약속한 금액으로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 총점이

650점 이하로 나온 점, 심사위원회에서도 사업자의 윤리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점, 청문주재자도 경영의 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매일방송이 제출한 추가개선계획의 이행과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 등과 관련된 조건을 주요조건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매일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다면 아래 주요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평가 총점이 650점에 미달하고 부가된 조건·권고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권고의 이행 점검주기를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6개월로 하기로 합니다. 재승인 기본계획 등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 시 재승인 유효기간은 3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한 주요 재승인 조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MBN에 대해 <1안>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방송연장명령을 11월 말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안>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승인장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12월 말에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이상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들어가겠는데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순서에 따라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 순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이티비씨(주)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효재 상임위원

- JTBC에 관한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기업이나 특정 언론의 여론시장 지배를 다양한 방법으로 견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신문산업이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언론시장 진입에 장벽을 두어 제한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신문사가 공공재인 방송사업에 진출할 경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 여론시장에서의 독과점을 경계한 것입니다. 법으로 신문사나 통신사의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두고 신문사가 경영하고 있는 종편채널방송사의 시청률을 조사·발표할 때에도 단순히 종편 시청률만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문구독률을 방송시청률로 환산하고 이를 방송 시청률에 더해 시청점유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도 여론시장에서 특정 언론의 독과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신문 또는 통신사와 방송을 겸영하고 있는 종편 또는 뉴스 전문채널 사업자 사이에 상호간 취재 보도인력 파견을 해소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사와 종편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의 인력 교환 문제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까지 여론시장 참여자들에게 국가가 지켜줄 것을 권유한 규칙이었고, 스스로 지키려 노력해 온 규범이고, 이 자리가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공박 하자는 자리도 아닌 만큼 일단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재승인 시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채널A나 TV조선, 연합뉴스채널 등이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일보와 JTBC 양사의 인력 운용 방식은 우리 사회의 여론시장 참여자들이 동의해 온 자본과 경영, 이것은 편집국 또는 보도국의 운영이 되겠지요. 경영의 상호 독립, 그리고 인쇄매체를 보유한 언론이 방송까지 장악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언론의 운영규범을 일거에 무력화한 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JTBC는 손석희, 홍정도 등 공동대표이사과 몇몇 임원을 제외한 전원이 중앙일보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논리로만 말하자면 중앙일보가 JTBC가 방영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돈을 받고 JTBC에 파는 구조입니다. JTBC 측은 이를 JTBC와 중앙일보사 간에 체결한 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것인 만큼 중앙일보 사원으로 JTBC 사원이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JTB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JTBC는 중앙일보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중앙일보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자 등 사원이 만든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체의 용역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앙일보는 JTBC를 대신해 사원 선발과 인력운용 프로그램 제작 등 모든 일을 한 결과, 그 결과물을 JTBC에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판매했으며, JTBC는 이를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했으므로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문제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JTBC 주장대로라면 중앙일보가 JTBC의 뉴스제작은 물론 인력운용 등 전반에 걸쳐 관여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공공재인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적용해 온 방송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여론시장에서 특정 언론의 독과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 중앙일보와 TBC 그리고 경향신문과 MBC가 같은 회사일 때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동시에 사원을 선발해 개인 선택이나 적성에 맞추어 신문으로 또 방송으로 대체하는 방식의 인력운용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2008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고 종편 채널이 개국할 당시에 자본의 방송시장 지분제한과 특정 언론의 과도한 여론 지배력 경계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또 그 이후에 방통위가 각 개별 사업자들에게 인력 파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JTBC의 주장은 그 근거가 허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JTBC의 주장대로라면 방송법상 허가 취지에 맞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심사위원회의 시각에 동의합니다. 여론 시장에서 독과점을 극도로 경계하며, 합의한 우리 사회의 공동체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한 방송사에 5년 재승인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장의 규칙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번에 JTBC가 얻은 점수가 우리가 그동안에 합의하여 만든 채점표에 따른 것이며, 이 점수는 다른 종편 사업자를 훨씬 능가하는 높은 점수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또 이번에 드러난 문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문제제기에 잘못이 있음을 즉시 시인하고 전면적인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또 일정 기간 이내에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재승인(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같은 고용과 도급방식을 파견으로 볼 경우 파견법 위반 가능성은 없는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가능성은 없는지 등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소방안을 마련할 때 현재 중앙일보에 고용된 형식을 취하고 있는 JTBC 직원들의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사무처가 이행점검은 물론 이행방안 마련에도

많은 점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에 동의하는 취지이면서 기자 파견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는 원안에 동의하고 MBN에 대한 심의 말미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하고 JTBC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원안에 동의하고, 존경하는 김효재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그 점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부연하고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제이티비씨(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처가 제시한 원안에 따라 5년간의 재승인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매일방송 관련입니다. (주)매일방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합편성 채널은 초기보다는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시청률이 높아진 점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종합편성을 하는 채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별사업자로서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역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방송 그리고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매일방송 같은 경우 많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또 JTBC도 마찬가지로 여러 조건과 권고사항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권고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방통위에서도 다음 심사계획을 짤 때는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수에 따라서 승인유효기간을 차등화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공정성처럼 계량화하기 어렵고 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항목을 심사 평가 항목으로 넣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방송의 경우 조건부 재승인인 <2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2안>인 승인기간 3년으로 하는 조건부 재승인(안)에 동의하시면서 심사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MBN 재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논의과정에 따라 이 문제를 보는 저의 시각과 처분방향에 대해 충분히 제 의견을 밝혔으므로 추가로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한 가지 이 기회를 빌려 말씀드리자면 10년도 훨씬 더 전 일에 있었던 대주주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왜 오늘의 MBN 종사자들과 외주제작업체들, 또 관련업체들, MBN 시청자들이 져야 하느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들이 져야 하느냐는 언론학자의 질책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MBN 대주주와 경영책임이 있는 임원들도 이와 같은 지적과 함께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주렁주렁 달린 재승인의 조건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방통위와 한 약속을 지키는데 추호의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대주주나 특정 언론사의 과도한 여론지배력도 물론 경계해야 하지만 숫자를 앞세운 특정 세력의 여론 지배 또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대주주의 사소한 사익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지배를 허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승인 거부가 아닌 <2안> 조건부 재승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조건부 재승인에 동의하시면서 사무처가 제시한 조건(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신다는 의견 이시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번에 사무처에서 자세한 조건(안) 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집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2안>에 동의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도 <2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MBN의 자본금 편법 총당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과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지난 10월 30일 6개월간 방송업무 전부 정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MBN이 재승인 심사 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점수를 떠나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막강한 방송사가 차명주식을 통해 승인을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6개월 전부 정지할 때 '95년도부터 보도채널을 운영했고 종사자나 외주제작자들의 처지, 시청자의 권리, 그리고 늦었지만 대국민 사과와 최대주주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방송 전부 정지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지난 25일 노사합의문에 있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승인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국장 신임 투표제 시행하는 점, 시청자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추천해서 구성하겠다는 것, 방통위 행정 처분에 대해 노사 상호 협력을 하겠다는 점 등이 이후에 추호의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2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부위원장님 역시 <2안>에 동의하시면서 매일방송에 대한 강력한 조건 이행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피력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이 매일방송에 대해 <2안>으로 의결한다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위원장님, <2안>으로 결정되어서 일반 공통조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시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이 <2안>으로 결정되면서 JTBC와 MBN에 공통적으로 부가되는 조건들은 상반기 종편 사업자에게 부가됐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내용과 방송심의규정 법정제재를 5건 이하로 하고, 선거방송의 경우 2건 이하로 하고, 그리고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공정성 평가를 받으라는 내용과 연계편성을 통한 협찬을 고지하라는 내용과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준수하라는 내용, 권고사항에서는 편성위원회 관련된 내용과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하라는 내용, 그리고 소유·경영 분리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권고사항으로 각각 공통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의 공통조건과 각사에 특별한 조건들이 부가된 <2안>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JTBC의 승인조건은 <붙임>에 있는 <8>번이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종편 4사가 동일하게 제시된 의견을 아까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제가 물어본 것은 JTBC의 조건부 가운데 <8>번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아까 보고할 때 <붙임>으로 해서 <8>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8>번 사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 소속 기자(보도총괄 등 직책자 포함)의 파견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세부실행계획을 제출할 것. 관련 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후 이행실적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매일방송에 대해 3년간 조건부 재승인하는 <2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로 종편 4개사에 대한 세 번째 재승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종편 출범 후 약 10년 동안 외형적 성장도 있었고 콘텐츠 다양성도 초기 출범 시보다는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가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나 기대와는 그렇지만 여전히 간극이 있고 그로 인해 재승인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의견들을 보탠 것 같습니다. 종편 재승인을 위해 제출한 계획과 부가받은 조건의 성실한 이행으로 특허사업자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도 종편사업자의 개선계획 승인과 이행 여부 점검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재승인·재허가의 심사 체계 효과 전반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MBN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이은 조건부 재승인은 추가 개선계획을 통해 이행의지를 밝힌 것과 시청자 피해를 고려한 결정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의 결정이 위원회가 종편의 공적 책임을 견인하고 종편이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7. 기 타

###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41분 폐회 】



IX.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1. 종편PP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공고문)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와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구분	법인명	심사결과	승인 유효기간
종합편성	제이티비씨(주)	재승인	2025년 11월 30일
	(주)매일방송	조건부 재승인	2023년 11월 30일

### 2. 시청자 의견 접수(‘국민이 묻는다’ 포함) 결과 및 반영여부

- (접수기간) 2020. 8. 3.(월) ~ 2020. 9. 2.(수)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우편
- (접수결과) 총 101건
- (반영여부) 접수된 시청자 의견(‘국민이 묻는다’ 포함)을 재승인 심사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특히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국민을 대신해 재승인 대상 사업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등 이번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였음